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특집 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과 개입전략

일반 논문

북핵 신 전략 구상: 한·미·중 연대 강압외교 전략
북한의 시장교환 질서와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연구(1995-2006):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性) 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북·중 변경무역의 실태분석 및 향후 전망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범법행위
중앙기록보존소의 의미: 탈북자 인권침해기록보존소의 한 모델로서
한국전쟁기 북한에 대한 소련의 문화적 개입: 러시아측 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발간자료 안내

본지에 수록된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15권 2호 2006년

통일정책연구

본지는 연2회 발간되는 학술논문집입니다.

발행인 겸 편집인 : 박영규
등록일 : 1992년 8월 19일
등록번호 : 서울 사0248
발행처 : 통일연구원
발행일 : 2006년 12월 30일

(142-076)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 02)901-2613, 900-4300
FAX : 02)901-2543
Homepage : <http://www.kinu.or.kr>
E-mail : kiwha@kinu.or.kr

© 통일연구원, 2006

편집위원장 : 여 인 폰
편집위원 : 김 영 윤
 박 형 중
 손 기 용
 임 순 희
 황 병 덕

외부편집위원 : 남 중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박 순 성 [중국어대학교]
 전 상 인 [서울대학교]
 계 성 호 [중앙대학교]
 최 대 석 [이화여자대학교]

편집간사 : 송 기 화

가격 : 10,000원
ISSN 1229-6112

외국은 바뀐 드립니다

【특 집】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경희 · 배성우1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조정아 · 정진경29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과 개입전략	조영아 · 유시은53

【연구 논문】

북핵 신 전략 구상: 한 · 미 · 중 연대 강압외교 전략	최종철79
북한의 시장교환 질서와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홍 민103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연구(1995-2006):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性) 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박영자129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이규창163
북 · 중 변경무역의 실태분석 및 향후 전망	홍익표191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범법행위 중앙기록보존소의 의미: 탈북자 인권침해기록보존소의 한 모델로서	윤여상 · 이건호221
한국전쟁기 북한에 대한 소련의 문화적 개입: 러시아측 자료를 중심으로	강인구 · 조한범247

【 Special Articles 】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Lee, Kyunghee & Bae, Sungwoo*

A Study on Conflicts in Workplace of North Korean Refugees *Cho, Jeongah & Chung, Jeankyung*

A Study on the Role and the Intervention Strategies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for North Korean Defectors *Cho, Younga & You, Sieun*

【 General Issue 】

A New Strategic Initiative on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e ROK-US-China Coalitional Coercive Diplomacy *Choi, Jongchul*

The Market Exchange Order and Amoral Familism in North Korea *Hong, Min*

The Sexuality of North Korean Women in 'Songun' Politics Period (1995-2006) *Park, Youngja*

A Study on Legal Characters and Forces of Inter-Korean Agreements *Lee, Kyuchang*

A Study on Cross-border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Hong, Ihkpyo*

The Meaning of "the Central Archiving Center against Illegal Activities" at the Sociality Unity Party in Germany at Viewpoint of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Model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Archiving Center for Refugees from North Korea *Yoon, Yeosang & Yi Kunho*

Cultural Intervention by the Soviet Union toward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Focus on Russian Data *Kang, Inngoo & Cho, Hanbum*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경 희* · 배 성 우**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결론

Abstract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settlement of the increas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Even though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individual factors, social factors, cultural factors, and so on, previous studies tended to examine only a part of those factors. Under such circumstance, the level of correlation and interdependency among the above factors cannot be thoroughly understood in a comprehensive manner.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analyzed and tested the correlation and interdependency among individu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comprehensively in an attempt to better understand the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employed multiple measures including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in order to examine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analyses revealed the following two major findings. First, depress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and acculturation rate. These results may indicate that personal cognitive factors such as self-esteem and acculturation are closely related with depression. Second, the presence of family member living together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related only with life-satisfaction..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depression, life-satisfaction, self-esteem, cultural difference, family

*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겸임교수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I.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현황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이전까지는 이들 입국자 수가 십 명 단위 수준에 머물렀으나 1999년 이후 백 명 단위 수준, 2002년 이후에는 천 명 단위 수준으로 증가하여 2004년 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6,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정부는 2004년 7월 ‘보호’가 중심이었던 기존의 정책을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강화하고, 또 중앙정부가 도맡아 온 정착지원을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기구가 함께 나눠 맡는 삼각 지원체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귀순자’, ‘귀순북한동포’,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등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사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이러한 용어에서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새터민’¹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여 200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몇몇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나 설명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을 주제로 한 TV프로그램도 증가²했으며,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사업 등 남북경제협력 또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증대했으나, 이들은 여전히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중국체류 중의 불안감, 잔류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 등 정서적 문제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질병, 정신적 질환, 심리적 문제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 언어문제로 겪는 곤란,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의 어려움, 문화적 충격 즉, 가치관 및 도덕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달라 받게 되는 혼란, 돈에 대한 가치인식의 미정립으로 인한 혼란, 국가

¹ 최근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새터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새터민’은 ‘새로운 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목적으로 선택한 이름이지만, 새터민 또한 낯설고, 일반 국민들에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以下)에서는 이들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자 한다.

²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남북의 창’, ‘통일전망대’, ‘남북은 하나’, ‘TV 속 북한, 북한 속 TV’, ‘북한리포트-서울에서 평양까지’ 등과 같이 KBS, MBC, EBS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이들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또는 기관의존적인 소극성 등이다. 또 구직 시 겪는 어려움,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 냉정함, 경멸로부터의 어려움,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한 지적 열등감, 사회적 지위가 북한에 있을 때보다 하락했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³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및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이해 향상, 지역사회 통합, 그리고 앞으로의 통일준비 등 다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방법 또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서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일부영역과의 관계만을 파악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의 전반적인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부요인과의 관계만을 파악함으로써 인해, 이들 요인들이 지니는 상호 연관성의 파악,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있어서 이들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등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심리사회적 환경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변인들을 다양한 영역에 걸쳐 설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의 다양한 영역을 주요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 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개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 및 적응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각각은 북한이탈주

³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김영수,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사회과학연구』, 제9호 (2000), pp. 102~117;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이기영,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99), pp. 161~176.

민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정착의 개념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에서의 정착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적응 또는 정착을 중심개념으로 설정하여 왔다. 먼저 ‘적응’의 경우 이기영은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의 제반 사회환경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영위하며, 심리적으로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⁴ 윤인진은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였다.⁵ 반면, 박하진의 경우, ‘인간이 자연환경과 사회적 조건에 알맞게 그 습성이나 생활방식이 변함’이라는 의미의 ‘적응’과, ‘일정한 곳에 자리잡아 쉼’을 의미하는 ‘정착’ 중 ‘정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⁶ 북한이탈주민은 완전히 달라진 사회적 조건 아래 남한사회의 규범과 가치, 행동양식을 배워가는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응’의 의미를 가지고, 이들을 단지 새로운 환경을 맞아 적응하는 개념이 아니라,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북한주민’으로서 매개체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정착’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이민이나 난민관련

⁴ 이기영, “북한출신 남한주민의 사회적응 척도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1), p. 128.

⁵ 윤인진, “탈북자와 남한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탈북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 『한국사회문화연구원 공개토론회』 (2000), p. 2.

⁶ 박하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pp. 27~28.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해서 연구해 왔다. 먼저 이민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문화적응개념을 도입한 연구들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Berry나 Gordon의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⁷ Berry 등은 이민자들이 문화적응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 이는 본국사회의 특성(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정도), 문화적응집단의 본성(이민의 자발성, 접촉의 지속성 등)과 두 가지 주요문제에 따른 문화적응형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 두 가지 문제란 이민자 집단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본국사회에 대한 접촉과 참여정도를 말하는데, 이에 따라 ethnic group, native people, immigrants, refugees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⁸ 한편, Gordon은 문화적응(acculturation)을 새로운 사회와의 경쟁을 포기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닮아가는 행동적 동화(behavioral assimilation)와 종족 간의 결혼 등의 방법으로 새로 살게 되는 사회로 뚫고 들어가는 구조적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로 구분하였다. 그는 동화를 문화적 동화, 구조적 동화, 결혼동화, 정체성 동화, 태도 수용적 동화, 행위 수용적 동화, 시민적 동화 등 7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⁹ 이렇듯 문화적응은 한 집단이 새로운 거대사회를 만남으로 인해 나타나는 제반현상으로 이는 집단의 특수성이나 개인적 특징, 그리고 거대사회에서의 수용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난민은 이민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난민¹⁰은 대개 박해, 정치적 폭력, 사회 내부적 혼란, 생태적 재해 혹은 빈곤 등과 같은 동기를 불문하고 난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난민은 탈출동기를 고려하여 대

⁷ 윤인진, “탈북 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지원대책,” 『한국사회학회』 (1999), pp. 1~38;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⁸ Berry J. W., Uichol Kim, Thomas Mind, Doris Mok,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1, No. 3 (1987), pp. 491~511.

⁹ Gordon, M. M.,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USA: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 71;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pp. 12~13 재인용.

¹⁰ UN의 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국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강권찬, “기획망명후의 탈북자문제 해결방안,” 『민족연구』, 10호 (2003).

체로 정치적 난민,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인도적 난민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¹¹ 이기영·엄태완은 이런 난민의 개념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해 탈출 과정에서 심리정신적 경험과 정착지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 등은 난민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난민들은 이주과정에서 고문, 강요된 잔학행위, 죽음 목격, 가족구성원의 상실, 박해, 강간과 성폭행, 기아, 고국에서의 위험한 탈출 등의 외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이 실제 정착과정에서는 고용, 사회적 지지, 생존자로서의 죄책감, 문화변용,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았다.¹²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은 보다 복잡하고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 즉 단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화적응이나 난민들의 정착과정과는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난민은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자국을 떠난 특징을 갖고, 이민의 경우 자의적 의사와 목표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아직 국제사회에서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민자들과도 차이가 있다. 둘째,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고향 귀환 가능성에 대해 향수심과 좌절감, 통일에 대한 기대감 등이 중 감정을 가지게 된다. 셋째, 이들이 정착해서 같이 생활해야 할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동정심과 호기심, 그리고 의심과 불신의 뒤섞인 감정으로 대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은 동독주민들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동독과 북한은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볼 때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 중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에 해당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또 동독민은 탈출이유가 정치적 자유가 많았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최근까지 경제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섯째, 서독은 동독민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화합을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했지만, 남한의 경우 사회적 화합보다는 과거 정치체제의 우월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탈북자들을 영웅시하기도 했다. 상술한 이유들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자 또는 이민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적응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사회에

¹¹ 강권찬, “기획망명후의 탈북자문제 해결방안,” 『민족연구』, 10호 (2003), p. 176.

¹² Chung, R. C. -Y. & Bemak, F., “Revisiting the California Southeast Asian Mental Health Needs Assessment Data : An Examination of Refugee Ethnic and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80 (2002), pp. 11~119; Chung, R. C. -Y., “Psychosocial Adjustment of Cambodian Refugee Women : Implication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Vol. 23 (2001), pp. 115~126 ;이기영·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명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6권 (2003), pp. 10~11. 재인용.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관련된 연구는 연간 입국자가 처음으로 두자리 숫자를 기록한 1994년부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작은 수의 표본을 통해 이들의 정착실태를 중심으로 연구¹³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정착과정과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적 제언,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¹⁴ 남한사회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연간 100명 이상인 2000년 이후에는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 적응이란 개념을 측정함에 있어서 우울,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경제적 만족도 등으로 조작화하고,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이 검토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정착기간, 자존감, 대인관계 등이 고려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었던 개인적 요인 중, 성별은 이들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⁵ 연령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또한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가족의 요인을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으며,¹⁷ 거주기간은 이들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거주기간

¹³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 “북한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Vol. 36, No. 1 (1997).

¹⁴ 한만길, “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통일논총』, 제5권 2호 (1996); 이장호, “북한출신 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북한』, 311호 (1997); 윤인진, “탈북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지원대책,” 『한국사회학회 신진교수과제』 (1999); 강구섭, “북한이탈주민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모형개발,” 『민족발전연구』, 제3호 (1999).

¹⁵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 11 (2001), pp. 88~89;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p. 57~58.

¹⁶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pp. 66~68;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pp. 88~89; 이기영·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pp. 17~18.

¹⁷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pp. 48~50;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pp. 87~88; 엄태완·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8호 (2004), pp. 17~19.

이 길수록 우울이나 무망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다는 결과¹⁸와, 기간이 길수록 심리문화적 적응도가 높다¹⁹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독고순은 거주기간이 1년 이하에서 가장 높은 적응 평가를 나타내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하다가, 3년~5년까지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²⁰

한편, 최윤정 등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적요인을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²¹ Felix Neto의 이민자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사회적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Wills(1985)는 난민들이 가지는 대인관계는 심리적으로 많은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즉, 난민들이 가지는 사회적 친교활동은 이들의 자존심을 유지·강화시켜주고, 자신들이 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²³ 유시연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외로움, 그리움, 소외감, 열등의식 등을 느끼게 되어 부적응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⁴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정착기간, 동거가족여부, 자존감, 대인관계를 개인적 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서 가장 우선적인 욕구로 꼽히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²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¹⁸ 이기영·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pp. 19~20; 엄태완·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p. 21.

¹⁹ 손문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p. 63~64.

²⁰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연구』, p. 118.

²¹ 최윤정·권현진·이시연, “빈곤 청소년의 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3호(2004), p. 534.

²² Felix Neto, “Social Adaptation Difficulties of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30, No. 4 (2002), p. 341.

²³ Wills, T. A., “Supportive Func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hen, S. and Symee, S. L.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Orlando* (Florida, Academic press, Inc, 1985);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 p. 87.

²⁴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p. 3.

²⁵ 김정옥,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79;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지역 북한이주민 정착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북한이주민지원센터 사업보고서)』(2004), p. 12.

소득획득 수단으로서 생활력의 지표일 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정도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의 편견, 자격 문제, 취업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Wallin과 Ahlström은 혼자 거주하는 청소년난민을 대상으로 생활만족을 연구한 논문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생활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²⁷ Werner도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말하고 있다.²⁸ 엄태완 등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윤인진²⁹은 북한이탈주민을 관리·지원하고 있는 후원자의 지원정도가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³⁰ 이소래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 적응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전우택 등도 사회연계체제의 빈약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³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취업여부, 사회적 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가진다. 이들은 남한사회의 생활방식에 대해 나름대로의 편향적 인식을 하거나, 성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 화이트칼라만 대우받는 사회, 모든 것이 돈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등 그들의 이분론적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남한사회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왜곡된 선입견은 남한적응에 역기능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 및 외래어 사용에 익

²⁶ 손문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p. 49.

²⁷ Wallin A-M, M. and Gerd I. Ahlström, “Unaccompanied Young Adult Refugees in Sweden, Experience of their Life Situation and Well-being: A Qualitative Follow-up Study,” *Ethnicity and Health*, Vol. 10, No. 2 (2005), pp. 129~144.

²⁸ Werner, E. E., “Resilient offspring of alcoholics: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ge 18,” *Journal of Study on Alcohol*, Vol. 47, No.1 (1986), pp. 34~40; 최윤정 · 권현진 · 이시연, “빈곤 청소년의 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p. 534 재인용.

²⁹ 윤인진, “탈북자와 남한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탈북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

³⁰ 엄태완 · 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p. 22.

³¹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p. 68.

³² 전우택 · 민성길 · 이만홍, 이은설, “북한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p. 147.

숙하지 못함이 초기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컴퓨터 등에 관한 지식이 부재하여 직장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가진다.³³ 이와 같이 문화차이로 인해 적응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로, Dung(1984)은 베트남 사람들의 미국생활 정착에서 두 문화 사이에 대한 차이인식이 이들의 적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Tobin · Friedman(1983)은 난민 연구에 있어서 이들의 문화적 측면에 예민해야 한다고 보았다.³⁴ Uzi Ben Shalom과 Gabriel Horenczyk는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적응관계는 복잡하며, 이들의 적응에 있어서 두 문화 정체성(bicultural identity)이 이민자의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고 보았다.³⁵ 즉, 자국의 정체성 포기 없이 이민국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으로 남북한 문화차이로 인한 불편함 정도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고찰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그 나름대로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연구내용 또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들의 부적응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최근 들어 Seligman과 Csikszentmihalyi 등은 긍정적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으로서 생활만족도, 희망, 행복감, 낙관성 등을 주로 다루는데,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더 많이 가진다면 삶에 대한 적응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³⁶ Marta Y. Young과 David R. Evans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삶의 질(Quality of Life),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을 적응의 척도로 활용했는데, 초기 이민에 대한 연구는 부정적 결과에 치중해 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적응을 연구

³³ 이기영, “남한거주 탈북자의 정착과 사회적 지원방안,” 『통일논총』, 제18호 (2000), p. 40.

³⁴ Dung, T. N., “Understanding Asian Families: A Vietnamese Perspective,” *Children Today*, Vol. 13 (1984), pp. 10~12; Tobin, J. J. & Friedman, J., “Spirit, Shamans and Nightmare Death: Survivor Stress in a Hmong Refugee,”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3 (1983), pp. 439~448;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 p. 50.

³⁵ Uzi Ben Shalom, Gabriel Horenczyk, “Cultural identity and adaptation in an assimilative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28 (2004), p. 462.

³⁶ Seligman, M. E. P. & M. Csikszentmihalyi,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2000), pp. 5~14;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p. 3 재인용.

하고 있다고 보았다.³⁷ 이렇게 볼 때 기존의 부적응 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적응이라는 긍정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적극 고려하는 연구로 나아가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한계점은 정착에 대한 측정지표와 관련된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단일영역의 측정에 머무르고 있다³⁸는 한계를 가진다. 심리적 문화적응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단일 지표(single index) 사용과 다중 지표(multiple index) 사용주장이 대립해 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신건강과 같은 영역에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전의 양면과 같지는 않다고 알려져 왔다. 즉, 정신건강의 어느 한 측면을 측정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다른 한 측면을 측정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일영역의 측정보다는 다중영역의 측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각각 연구된 적은 있었지만,³⁹ 이들 세 가지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중 하나만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의 요인이 다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술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걸친 다양한 영역의 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긍정적 심리학적 관점과 다중지표를 활용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개인적 요인(정

³⁷ Marta Y. Young & David R. Evans, "The Well-being of Salvadoran Refuge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 32, No. 5 (1997), pp. 289~300.

³⁸ 김진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대균,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중양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이기영·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³⁹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채정민·김종남,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18권 1호 (2004); 이태희,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이기영·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엄태완·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8호 (2004).

착기간, 동거가족여부, 자존감, 대인관계), 사회적 요인(취업여부, 사회적 지지), 문화적 요인(남북한 문화 차이인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선행연구와 대별되는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은 궁극적으로 현재 생활에서 느끼는 사회·심리적 안정감 및 심리적 안녕감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크게 긍정적 부분으로서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과 부정적 부분으로서 우울(depression)을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들 수 있다.⁴⁰ 즉, 생활만족과 우울은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생활에서 갖는 안정감을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 긍정적인 면은 생활만족도를, 부정적인 면은 우울감을 선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구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수도권 이외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특징을 조사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구지역은 수도권 이외 부산과 대전 다음으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⁴¹하고 있어, 이들의 정착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그 특성상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는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혹은 전문가의 협조 없이는 접촉이 현실상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부산 등 기타 지역을 포괄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타 지역에 위치한 단체 혹은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대구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북한이주민지원센터)만이 협조가 가능하였기에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⁴⁰ 김오남,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3권 4호 (2004), p. 2.

⁴¹ 이정희,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모델 개발,” 『사회복지연구』, 제6권 1호 (2005), p.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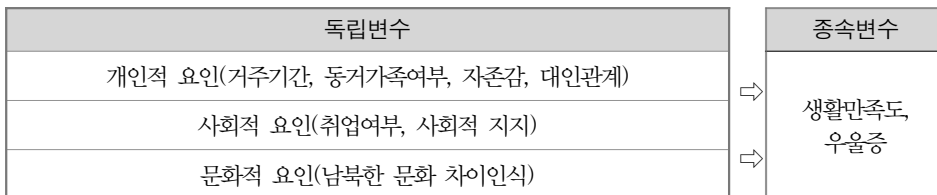
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2005년 3월 현재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총 227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277명 중 171명은 타 지역에서 일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접촉이 불가능하였다. 협조기관의 도움으로 조사당시에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106명의 조사대상자는 모두 설문에 참여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10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방법은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직원 4명과 대학원생 9명이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 또는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을 취했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각각이 이들의 생활거주지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또 이들 각 요인들이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가. 독립변수

(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는 거주기간, 동거가족여부와 자존감, 대인관계를 측정하였다.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단일문항(동거가족의 존재여부)으로 조사하였고,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SE(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63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Schlein과 Guerney의 대인관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우리 실정에 맞게 문선모가 번안한 척도⁴²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내용은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북한이탈주민의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 의사소통, 신뢰감, 개방성의 영역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66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현재 취업여부와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취업여부와 관련해서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였고(취업여부), 사회적 지지척도는 Tracy, E. M.과 Whittaker, J. K.가 개발한 'The Social Network Map'을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⁴³ 척도의 구성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및 유형의 구조적 측면과 물질적 원조, 정서적인 원조, 정보에 대한 원조 등 기능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89로 나타났다.

(3) 문화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 제도적 차이, 경제체제의 차이, 경제적 생활수준 차이, 각종 사회제도의 차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 언어의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된 척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적은 것을 의미하며, 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85로 나타났다.

⁴² Schlein and Guerney, "Relationship Change Scale" (1971); 문선모,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연구," 『경상대 논문집』, 제19권 (1980), pp. 195~204.

⁴³ Tracy, E. M. & Whittaker, J.K., "The Social Network Map: Assessing Social Support in Clinical Practice," *Family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Vol. 71, No. 8 (1990), pp. 461~470.

나. 종속변수

종속변수로는 생활만족과 우울을 측정하였다. 생활만족은 양옥경의 삶의 만족척도를 사용하였는데,⁴⁴ 이 척도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삶의 철학에 이르는 추상적인 것 등 삶의 만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척도의 내용은 의식주 영역, 친구관계 영역, 가족 및 친척관계 영역, 신체 및 정신건강 영역, 일(직업) 영역, 경제 영역, 대인관계 영역,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 영역, 행복감 영역, 자율성 및 자아감 영역 등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14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89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우울정서, 긍정적 정서, 대인관계의 문제, 신체적 증상과 행동저하 등 4가지 영역에 대해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88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WIN 12.0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및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과 우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64명, 61.5%)가 남자(40명, 38.5%)보다 좀 더 많았으며,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t=-.64$, $p>.05$)이나 우울($t=-.20$, $p>.05$)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는 10대~60대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나 20대~3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생활만

⁴⁴ 양옥경, “삶의 만족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제24호 (1994).

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3.66, p<.05$), 특히 20대(Mean=46.79)와 30대(Mean=45.72)가 60대 이상 연령층(Mean=57.00)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에 따른 우울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생활만족($F=3.00, p<.05$)과 우울($F=3.35,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소학교졸업 이하 집단(Mean=53.50)이 대학 이상 집단(Mean=44.00)보다 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이상 집단(Mean=24.19)이 소학교졸업 이하 집단(Mean=13.57)이나 고등중학교졸업 이하 집단(Mean=15.89)보다 우울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른 생활만족과 우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생활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우울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03, p<.05$). 즉,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Mean=19.42)이 취업을 한 사람(Mean=15.11)보다 우울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거형태를 보면 혼자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북에서 함께 온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형태에 따라 생활만족($F=4.01, p<.05$)과 우울($F=4.46,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북에서 함께 온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집단(Mean=53.45)이 혼자 사는 집단(Mean=46.20)보다 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자 사는 집단(Mean=20.36)과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사는 집단(Mean=22.91)이 북한에서 함께 온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집단(Mean=13.00)보다 우울증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2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거주자, 3년 미만 거주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기간에 따라 생활만족($F=1.41, p>.05$)이나 우울($F=1.04, p>.05$)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평균값

구 분		빈도(%)	생활만족 (Mean/SD)	t/F	우울 (Mean/SD)	t/F
성별	남	40(38.5)	48.53(9.79)	t=-.64 p=.523	17.25(9.54)	t=-.20 p=.843
	여	64(61.5)	49.86(10.30)		17.70(12.08)	
연령	10대	7(6.7)	54.86(7.95)	F=3.66* p=.005	16.14(9.77)	F=2.13 p=.068
	20대	30(28.8)	46.79(7.67)		20.13(8.96)	
	30대	32(30.8)	45.72(10.24)		20.23(13.64)	
	40대	20(19.2)	52.79(10.42)		14.50(10.98)	
	50대	5(4.8)	51.00(12.65)		8.60(7.70)	
	60대 이상	10(9.6)	57.00(8.88)		12.80(6.13)	
학력	소학교 졸업 이하	14(13.7)	53.50(9.30)	F=3.00* p=.035	13.57(6.96)	F=3.35* p=.022
	고등중학교 중퇴	15(14.7)	52.43(6.48)		19.27(9.59)	
	고등중학교 졸업	56(54.9)	49.22(10.21)		15.89(10.49)	
	대학 재학 또는 중퇴	11(10.8)	40.09(8.19)		28.00(13.27)	
	대학 졸업	5(4.9)	50.00(13.45)		15.80(12.11)	
	대학원 이상	1(1.0)	57.00		-	
취업 여부	취업	46(44.7)	50.76(9.41)	t=1.17 p=.244	15.11(9.24)	t=-2.03* p=.045
	미취업	57(55.3)	48.38(10.58)		19.42(12.23)	
	혼자 산다	48(46.6)	46.20(10.44)		20.36(11.95)	
동거 형태	북에서 함께온 가족	38(36.9)	53.45(8.31)	F=4.01* p=.010	13.00(7.85)	F=4.46* p=.006
	남한에서 결혼한 가족	5(4.9)	48.00(12.79)		14.40(12.86)	
	다른 북한이탈주민	11(10.7)	47.70(9.58)		22.91(12.40)	
	친척	1(1.0)	58.00		17.00	
거주 기간	1년 미만	29(29.3)	51.52(8.87)	F=1.41 p=.244	16.00(8.40)	F=1.04 p=.379
	1년~2년 미만	38(38.4)	46.58(10.71)		20.19(12.79)	
	2년~3년 미만	25(25.3)	49.58(9.54)		16.96(11.39)	
	3년 이상	7(7.1)	50.86(12.13)		14.57(12.50)	

*p<.05

2.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과 종속변수와의 관계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및 우울과 생활만족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은 자존감($r=-.32, p=.001$), 동거가족여부($r=-.23, p=.019$), 문화차이인식($r=-.3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생활만족은 대인관계($r=.20, p=.046$), 동거가족여부($r=.29, p=.004$), 문화차이인식($r=.20, p=.043$)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 각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존감과 대인관계($r=.27,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지만, 독립변수로 선정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은 각각의 요인 상호간에는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로 설정한 우울과 생활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0, p=.001$).

<표 3>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및 우울과 생활만족과의 상관관계

구분	자존감	동거가족 여부	취업 여부	대인 관계	사회적 지지	문화 차이 인식	거주 기간	우울	생활 만족
자존감	-								
동거가족 여부	-.03	-							
취업여부	.03	.13	-						
대인관계	.27*	-.11	.06	-					
사회적 지지	-.03	-.02	.07	-.01	-				
문화 차이인식	.12	.03	-.03	.09	.09	-			
거주기간	-.00	.16	.03	.08	-.02	-.13	-		
우울	-.32*	-.23*	-.19	-.14	.01	-.35*	-.02	-	
생활만족	.16	.29*	.12	.20*	-.11	.20*	.01	-.60*	-

* $p<.05$

3.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F=4.906$,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과의 동거여부($\beta=-.259$, $t=-2.680$, $p<.05$)와 자존감($\beta=-.299$, $t=-3.056$,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개인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표준오차	β	t	p
(상수)	56.736	10.688		5.308	.000
거주기간	.034	.094	.034	.356	.723
동거가족여부	-5.804	2.166	-.259	-2.680	.009*
자존감	-.943	.309	-.299	-3.056	.003*
대인관계	-.176	.179	-.097	-.983	.328
R=.417 R ² =.174 (수정된 R ² =.139) F=4.906*					

* $p<.05$

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F=.477$,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5> 사회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표준오차	β	t	p
(상수)	17.307	2.268		7.630	.000
취업여부	-2.629	2.702	-.103	-.973	.333
사회적 지지	.011	.144	.008	.077	.938
R=.104 R ² =.011 (수정된 R ² =-.012) F=.477					

다.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F=13.396$, $p=.04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느낄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문화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표준오차	β	t	p
(상수)	29.528	3.446		8.568	.000
문화차이인식	-.554	.151	-.345	-3.660	.000*
R=.345 R ² =.119 (수정된 R ² =.110) F=13.396*					

* $p<.05$

라.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증하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F=4.800$,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3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31$).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개인

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beta=-.365$, $t=-3.662$, $p<.05$)과 문화차이인식($\beta=-.347$, $t=-3.482$,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느낄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중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문화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7>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구분	B	표준오차	β	t	p
(상수)	60.894	11.217		5.429	.000
거주기간	-.054	.092	-.057	-.580	.564
동거가족여부	-2.862	2.223	-.130	-1.287	.202
자존감	-1.142	.312	-.365	-3.662	.000*
대인관계	.111	.190	.060	.585	.560
취업여부	-.604	2.487	-.024	-.243	.809
사회적 지지	.090	.136	.065	.666	.507
문화차이인식	-.553	.159	-.347	-3.482	.001*
R=.554 R ² =.307 (수정된 R ² =.243) F=4.800*					

* $p<.05$

4.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F=3.961$, $p=.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동거가족여부($\beta=.292$, $p<.05$)와 대인관계($\beta=.207$,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거하는 가족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일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개인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표준오차	β	t	p
(상수)	19.597	9.989		1.962	.053
거주기간	-.045	.088	-.050	-.506	.614
동거가족여부	5.882	1.978	.292	2.974	.004*
자존감	.409	.283	.144	1.443	.152
대인관계	.345	.169	.207	2.046	.044*
R=.385 R ² =.148 (수정된 R ² =.111) F=3.961*					

*p<.05

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F=.921,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9> 사회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표준오차	β	t	p
(상수)	50.780	2.095		24.244	.000
취업여부	2.250	2.437	.099	.923	.358
사회적 지지	-.126	.131	-.103	-.964	.338
R=.145 R ² =.021 (수정된 R ² =-.002) F=.921					

다.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F=4.188,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남북한 문화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표준오차	β	t	p
(상수)	42.839	3.325		12.884	.000
문화차이인식	.300	.147	.202	2.046	.043*
R=.202 R ² =.041 (수정된 R ² =.031) F=4.188*					

*p<.05

라.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증하기 위해 선행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F=2.503$, $p=.02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 중 동거가족여부($\beta=.223$, $t=2.042$,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중 생활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개인적 요인 중 동거가족여부만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구분	B	표준오차	β	t	p
(상수)	16.971	11.405		1.488	.141
거주기간	-.015	.093	-.017	-.159	.874
동거가족여부	4.500	2.204	.223	2.042	.045*
자존감	.539	.313	.186	1.723	.089
대인관계	.237	.191	.136	1.238	.219
취업여부	1.196	2.437	.052	.491	.625
사회적 지지	-.173	.135	-.136	-1.277	.205
문화차이인식	.258	.160	.175	1.613	.111
R=.435 R ² =.189 (수정된 R ² =.114) F=2.503*					

*p<.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5년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남한사회정착에 대한 측정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생활적응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으로는 동거가족여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에서 혼자 살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회적 요인으로는 취업여부와 사회적 지지에 따른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남북한 문화에 대한 차이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한 문화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개별요인별 영향력을 연구한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단위 이주자일수록 우울성향이 높다는 한인영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⁴⁵ 이와 같은 차이는 한인영의 연구에서는 남한 입국시 이주형태를 고려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고려한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 있다. 또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채정민⁴⁶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요인과의 관계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⁴⁷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일영역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때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들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전체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beta=-.365$, $t=-3.662$, $p<.05$)과 문화차이인식($\beta=-.347$, $t=-3.482$, $p<.05$)이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⁴⁵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p. 87~88.

⁴⁶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⁴⁷ 이기영·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엄태완·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남북한 문화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클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문화에 대한 차이 인식과 같이 개인의 인지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남한생활적응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으로는 동거가족여부와 대인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거가족이 있고, 대인관계가 좋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남한사회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취업여부와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녕감 및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태희, 손문경의 연구결과⁴⁸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 문화적 요인의 경우 남북한 문화차이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한 문화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각된 문화이질감이 생활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채정민⁴⁹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전체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동거가족여부($\beta=.223$, $t=2.042$, $p<.05$)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요인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했을 때는 동거가족여부, 대인관계, 문화차이인식이 각각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동시에 분석하였을 때에는 남한에서 동거가족이 있는가에 대한 요인만이 유일하게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사회에서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혼자 생활하기보다는 동거가족이 있는 편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및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우울과 같은 성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남북한

⁴⁸ 이태희,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p. 34; 손문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p. 64.

⁴⁹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부적응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나 남한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을 조사한 선행연구 중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부산·경남과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엄태완·이기영⁵⁰의 연구에서는 CES-D의 평균점수가 25.34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01년 하나월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인영⁵¹의 연구에서는 CES-D의 평균점수가 16.77로 나타났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평균 17.52로 나타났다. 또한 엄태완·이기영⁵²의 연구결과에서는 정착기간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착기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은 거주지나 기간에 따라 동일한 양상을 띠는다고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 있는 민간·공공기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우울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할 때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 적응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생활만족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중 동거가족 여부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단지 부적응요인을 밝히고 이에 대해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서 주요변수로 간주되는 경제적 부분의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여부는 이들의 우울이나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사전연구(pilot study)의⁵³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82명) 중 현재 취업 중(23.5%)이거나 이전에 취업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44.4%)들 중 정규직은 단 1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임시직이거나 일

⁵⁰ 엄태완·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p. 16.

⁵¹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p. 86.

⁵² 엄태완·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p. 21.

⁵³ 북한이주민지원센터, “2004년 대구지역 북한이주민 정착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통일문제연구』, 제25~26집 (2003~2004), pp. 243~244.

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직장 경력은 3개월 이하가 55.6%, 6개월 이하가 27.8%, 1년 이하가 16.7%로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짧은 직장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등에 종사하여 이직이 잦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낮은 고용상 지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전체응답자의 95.5%가 월수입이 100만 원 이하(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권 생계비 포함)의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경제적·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요인보다는 동거하는 가족의 지지와 같은 개인적 요인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동거가족이 남한 사람이든 북한사람이든 혼자 생활하기보다는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동거가족 지원프로그램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단지 긍정적 측면이나 부정적 측면 중 하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즉, 이들의 적응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각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는 이들의 적응 및 부적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부적응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다양한 영역에 걸쳐 폭넓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경우와 이들 요인들을 동시에 분석했을 경우의 결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 등에 걸친 다양한 변인들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조사한 결과로서 전국적인 결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전체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지역별 비교연구까지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 둘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정착지원기관 및 서비스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 및 시스템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연구는 지역별 지원시스템의 정비 및 대안제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나의 요인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이들의 적응에 관한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 지원 시 현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조 정 아* · 정 진 경**

I. 서론

II. 직업선택과 취업

III. 직장생활의 갈등과 어려움

IV. 결론

Abstract

A Study on Conflicts in workplace of North Korean Refugees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and interpreting difficulties that North Korean refugees have experienced on the job and in workplace in South Korean society from their perspectives.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28 North Korean refugees and 7 interface personnel, this research examines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the difficulties and conflicts are North Korean refugees have experienced on the job and in their workplace; how they perceive these difficulties themselves; and what South Koreans' perspectives are toward these issues.

Being protected as a regular worker is extremely difficul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addition, they have also experienced the suspension of past careers they had in North Korea. North Korean refugees are subjected to

go through the following difficulties such as experiencing conflict due to language difference, insufficient computer and English skills, different labor intensities and regu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prevailing indifference and competitiveness at workplace, different ways of communication, and South Koreans' prejudiced and negative views against them.

Difficulties and conflicts North Korean refugees have experienced on the job and in workplace cannot be resolved by relying only on their unilateral adaptation and assimilation. South Koreans' adaptation toward them is also critical, and in this regard, education to broaden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has its important meaning as preventive measures and positive solutions toward the conflicts.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adaptation, difficulties of employment, conflicts in workplace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I. 서론

한국에 입국하는 새터민의 규모는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 말 현재 9,000여 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새터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사회 내에서의 갈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새터민들의 남한생활은 앞으로 남북한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었을 때 서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남북한 사회통합의 효과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소규모 예비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새터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동화’와 ‘일방적 적응’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¹ 이러한 관점에서 새터민은 적응의 주체가 아니라 적응의 대상이며, 새터민과 남한 사람들 간의 문화적 ‘차이’는 소멸되어야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서 새터민들이 겪는 ‘부적응’과 갈등의 문제는 그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부적응’과 ‘구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²에서 이 문제를 남한 사람의 시선만이 아닌 새터민 스스로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취업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이 무엇인지를 새터민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새터민들은 직장생활을 통해 남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전면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남북한 사회와 남북한 사람들 간의 차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취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 무사히 정착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려는 새터민들의 꿈은 그 시작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터민이 남한의 직장에 취업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적응한다고 보기보다는, 새터민으로 대표되는 북한 문화와 남한의

¹ 최근 동화와 일방적인 적응이 아닌 ‘통합’과 ‘상호적응’의 관점에 새터민의 사회적응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진웅, “‘적응’을 넘어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교육연구』, 제12집 제2호 (2004);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 외,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 출판부, 2006).

² 강주원, “남한 사회의 구별짓기,”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 엮음,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 출판부, 2006). p. 99.

주류문화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새터민의 갈등과 통합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 연구의 질문은 새터민이 취업과 직장생활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갈등이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를 새터민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주관적이고 해석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계량적 분석보다는 심층면접이나 참여관찰과 같은 질적인 연구방법이 적합하다. 즉 이 연구는 취업 및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새터민이 겪는 갈등을 새터민에게 의미있는 방식으로 범주화하고 해석하는 에믹(emic)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론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최소한 2년 이상, 길게는 10년 정도 남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 성인 남녀 28여 명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적응기간별로 표집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성별, 연령별, 적응기간별 면접대상자수는 <표 1>, <표 2>, <표 3>과 같다. 면접조사에 참가한 새터민의 인명은 약자로 표시하였으며, 간단한 인적 사항을 인용문 뒤에 첨부하였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 성별 인원

성별 인원 (명)	남성	여성	합계
	12	16	28

<표 2> 심층면접 대상자 연령별 인원

연령별 인원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2	10	10	3	3	28

<표 3> 심층면접 대상자 적응기간별 인원

적응기간별 인원 (명)	2년 미만	2~3년	3~5년	5~7년	7~10년	합계
	2	5	7	12	2	28

심층면접은 2006년 5월과 6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에게 먼저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조사 참가의사를 타진한 후 새터민 거주지나 연구자의 연구실 등에서 2~3시간 정도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후에 면접 내용을 전문(全文) 녹취하고 녹취록을 여러 차례 읽으

면서 주요 내용을 범주화하고 주제별 코딩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및 코딩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중심 주제들을 도출하고, 주제별 해석을 정교화 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남한 사람들이 새터민과 이들이 직장에서 겪는 갈등을 어떻게 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변보호담당관과 새터민 지원단체의 상근자 각각 3명, 4명을 대상으로 새터민 접촉집단에 대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직업선택과 취업

1. 구직 과정: ‘좁은 문’, ‘미래를 위한 유보’, ‘생존전략적 의존’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때, 우리 사회와는 다른 교육 체계와 사회화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생활한 새터민을 원하는 일터는 정말 드물다. 새터민이 ‘귀순 용사’로 불리며 대접받던 시절에는 이들이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하여 일하는 것이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그 어디에도 일자리에 대한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새터민들의 구직에는 신변보호담당관인 경찰이나 남한 거주 가족, 이미 정착한 친분있는 새터민, 종교기관 등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능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최초의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이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신변보호담당관(사례 C4, H1, K7)이나 친지(사례 C1, C7, H2, K4, K8, L1)를 통해 남한 사회에서의 첫 직장을 선택하게 된다. 새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또 다른 구직 경로는 ‘벼룩시장’과 같은 지역 정보지나 구인 전단(C4, L2)이다. 또 고용안정센터나 직업훈련기관의 취업알선(K3)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를 통해 얻은 일자리는 대부분이 안정적인 정규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비정규직이기 쉽다.

새터민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하여 높고, 고용형태의 안정성은 낮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새터민의 실업률은 30%를 넘어선다.³ 취업을 원하는 새터민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원천봉쇄’를 경험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직업적 능력과 경

힘이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 노동 시장에서도 새터민이라는 신분은 중국교포들보다도 열악한 조건이 된다. 취업의 문은 고령자에게는 더욱 좁다. 40, 50, 60대에 입국한 새터민들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고, 기술이나 자격증이 있어도 연령 때문에 구직이 어렵다. 이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저임금의 단순 아르바이트직인데, 이마저도 이들에게는 쉽지 않다. 새터민들은 구직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내가 벼룩시장 보고 전화드립니다, 직업을 구할라고 하는데.” “나이 얼마요?” “오십 칠세인데, 들어가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아,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왔어요?” “나는 대한민국....” “어, 솔직히 말하세요.” “난 북한사람.” “안 받아요, 북한 사람!” 이런단 말이야. 그런 데를 못 들어 간단 말이에요. 산모 돌보고, 아이 돌보고, 그런 거 하는데 있어, 벼룩시장에 올려놓은 거. 내가 그래서 욕을 했어요. 나이 무관하고 그래서 했는데, 북한 사람들 안 받는다고 그래요. (Y1, 여성, 58세, 전직 노동자, 현재 무직, 1998년도 탈북)

새터민들은 비정규직, 불안전고용 상태에 처해있거나 정규직일 경우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저임금노동자로 남아있게 되기 쉽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취업한 새터민 중 정규직의 비중은 36.1%,⁴ 24.5%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들이 탈북과정과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구축하는 사회적 연결망과 같은 ‘사회적 자본’⁶은 남한에서의 직업선택과 취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같이 교육 받은 탈북자 밖에 없는”(C7) 처지이기 때문에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극히 제한적이다. 새터민의 사회적 연결망의 기본적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은 탈북과

³ 정확한 실업률 수치는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2005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새터민 실업률을 2003년 41.5%, 2004년 37.6%로 제시하였고, 2005년에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2005년도 새터민 실업률을 29.7%로 제시한 바 있다.

⁴ 이금순·임순희 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2003).

⁵ 윤여상 외, 『2005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북한인권정보센터, 2005).

⁶ Bourdieu는 자본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이라는 세 가지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P.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s.),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1986), p. 243). 그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상호 습득과 인정의 제도화된 관계의 지속적 연결망의 소유와 관련된 실제적 잠재적 자원”이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을 “행위자가 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으로 사회구조적 측면의 가치”라고 보았으며, Putnam은 “상호 편익을 위한 조정과 협동을 조장하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로 정의하였다. Ostrom은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 외에 가족 구조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정연택, “사회정책 연구의 분석틀로서 사회적 자본: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학연구』, 제14권 (2003), pp. 302~303.

정에서 만난 종교단체 및 NGO 관계자, 남한 내 가족, 하나원에서 만난 공무원이나 하나원 강사, 신변보호담당관 등이다. 대부분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들과의 만남은 새터민들이 직업적 측면을 비롯하여 남한 사회 생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신변보호담당관은 취업을 비롯하여 새터민의 사회 정착에 큰 도움을 주지만, 이러한 일이 신변보호담당관들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이 아닌 신변보호담당관 개인의 성향과 사회적 연결망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적응 초기에 몇몇 직장을 전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좀 더 나은 조건과 선호하는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 직업훈련이나 진학을 선택하거나, 생계보조비를 받으며 아르바이트하는 생활을 장기화하는 등의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구직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새터민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전략은 진학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에 필요한 직업기술을 갖추는 것, 즉 ‘미래를 위한 유보’를 선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좀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하고자 하는 것이다. 새터민들은 미취업이나 고용 불안정의 원인으로 사회적 자본의 부재 뿐만 아니라 직업 능력 부족을 꼽는다. 취업에 필요한 학력과 직업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이가 젊은 새터민들은 대학 진학을 선호한다. 그러나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한 경우에도 이들이 남한의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를 비롯한 직업능력 면에서 새터민들은 남한의 구직자들과 동등한 출발선상에 서있지 못하고, 설령 직업능력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출신이라는 이력은 구직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새터민들은 다음의 증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때로는 구직 과정에서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저는 (취업시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이력서에 기입) 안할 생각이예요, 일단은. 해서 만약에 그걸 해서 나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게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선 단체도 아닐 거고, 이윤을 첫째로 하는 것이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에서 과연 북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을 것 같아요. (C5, 남성, 31세, 전직 의사, 현재 학생, 2000년도 탈북)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관련 지원사업에서 새터민은 거주지 보호기간인 사회편입 후 5년간 지방노동사무소의 취업보호 전담인력의 지도 아래 총 3회 동안 직업훈련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고, 이때 직업훈련에 따르는 훈련비 및 각종 훈련수당이 지원된다. 훈련수당 유형에서는 일반 남한 신청자들에게 없는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졌던 직업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통해 전직에 성공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직업과 직장 선택이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희망에 의한 직업훈련과 전직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40대 초반의 남성노동자로 북한에서 18년간 제강소에서 근무했던 K9의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북한에서는 “마지못해 일을 했”지만 남한에서 용접 기술을 배워 자동차계열 대기업에 취업하고 나서는 “용접 기술이 많이 느는구나. 내가 여기서 1년 혹은 더 많이 숙련해서 어디를 가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당당히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난생 처음으로 일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새터민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비, 주거비로 지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일 자리를 잡기까지 새터민들은 정부의 지원금과 안보 통일 강연이나 교회에서의 간증 등의 간헐적인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새터민 지원제도에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을 안하는 것이 취업을 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기보다는 5년간 지원되는 지원금과 비정규적인 수입에 의존하여 ‘어영부영’ 지내기도 한다. 40대 초반의 5인가족의 가장인 한 새터민 C7은 “교통비에 식대를 떼고 나면 백사십인데, 나았아 놀며 백십만 원 타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으로 “회사를 때려치웠다”며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정규직에 취업하기보다 생계보조를 받으면서 소득원 파악이 어려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존 방식을 한 연구자는 ‘임시적 의존’, ‘생존전략적 의존’이라 명명한 바 있다.⁷ 새터민들은 노동시장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제도화된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받으려는 경향이 매우 높음을 일컫는 것이다.

⁷ 이기영, “소수자로서의 북한이주민의 문제와 사회복지의 과제,” 『통일연구』, 제9권 제2호 (2005), p. 180.

2. 직업경력 단절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취업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직업경력의 단절을 경험한다. 선 행연구⁸에 의하면 북한에서와 같은 직종을 남한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학생을 제외하면 최대한 13%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에서의 직종 중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회사원·노동자의 경우에도 남한에서 동일한 직종을 유지하는 경우는 10%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남북한의 산업구조와 산업기술의 차이 때문에 기능직의 경우에도 직장 선택이 제한적이고, 배정된 주거지를 떠나 자신의 직업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직업지위가 낮았던 새터민들 뿐만 아니라 전문직에 종사했던 새터민들도 직업 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정치와의 연관성이 비교적 큰 고위행정직이나 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의사, 약사와 같이 비정치적인 분야의 전문가 자격 역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이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대학에 입학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 의사, 약사,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했던 새터민들은 직업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강하게 토로한다.

북한에도 의과 대학이 7년이고요. 의사 경험이 10년, 15년 되는 사람들은 사람을 진료를 하려면 지금도 해요. 설비를 다루기는 좀 어려워도 그건 금방 설비는 몇 가지만 익히면 진료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 이제 면허가 인정이 안 되는 거는 둘째 문제이고, 전혀 관심이 없어.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라하는 거예요. 제가 통일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학 안 찾아다니던 데가 없어요. 완전히 빌어먹는 신세라고. 도와주십쇼, 도와 달라, 좀 내가 의사면허를 딸 수 있게끔 해달라. 2년 동안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하면 시험을 그림 보라. ... 의사다라고 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복무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복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최소한 할일이 많으리라고 생각했고, 적어도 의사로서 대우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예요, 안와요. 정말 안와요. (P1, 남성, 40세, 전직 의사, 현재 무직, 2003년도 탈북)

그래서 그 대학원(북한학 전공)에 들어가서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 내가 약사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까지 갔어요. 보건복지부 가니까, 좋다, 학력은 인정된다. 학력은 인정되지만 자격은 인정할 수 없다. 그 래가지고 자격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깐, 자격증을 가져오라고 하더라 구요. 그래서 자격을 다시 따지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깐 대학을 다시 다니라 그러더라

⁸ 이금순·임순희 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연구』.

구요. 이 나이에 대학을 어떻게 다니냐, 이 나이에 대학을 다시 들어가도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못하면 할 수 없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L3, 여성, 41세, 전직 약사, 현재 학생, 2001년도 탈북)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던 대다수의 새터민들은 자신의 직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대학에 진학이나 자격고시를 준비하거나(L3, P1), 아니면 북한에서의 직업경력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찾게 된다(C1, C5, H4). 이들은 이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갈등과 좌절을 경험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착지원 제도와 정부에 대한 분노를 터트리다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현실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천직’을 포기하기도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자신의 직업 경력을 인정받고 동일한 직종에 취업하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에서의 직업 경험을 부분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부문에 취업하여 일의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 7년간 중등학교 교원으로 일하다가 남한에 와서 식당일 등 용역직, 생산직 노동자, 통일교육원 강사, 보험판매 등의 일을 하다가 통일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새터민 정착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0대 여성 새터민 H1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H1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정확한 자리에” 취업했다고 느낀다. 학생들에게 원칙적이고 “칼날 같으면서”도 늘 마음을 쓰며 보살피는 북한의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새터민청소년의 생활을 지도하고 그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현재의 업무와 연속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북한에서 교직생활을 통해 체득한 교사의 감성과 태도를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직무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III. 직장생활의 갈등과 어려움

취업의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적응기간 일년 이내의 동일집단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2001년과 2004년까지 실시한 추적연구⁹에 의하면 새터민들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초기 적응기간에는

⁹ 윤덕룡, “경제적 적응상황분석과 대책,” 정병호·전우택·정진경 엮음, 『웰컴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pp. 487~488.

언어 문제와 편견 및 차별대우인 것으로 나타났고, 3년 이상의 적응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장래성 부재, 저임금, 해당분야 지식 부족 등이 나타났다. 즉 초기 적응 단계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문화의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직무관련 사항이나 근무 조건의 문제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직업과 직장의 장래성이나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습득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문화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직장생활에 ‘성공’하는가를 결정짓는 관건인 것이다. 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해나가지 못할 경우 이직이 반복되고, 결국은 직업적 정착도 어려워지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새터민들이 직장생활에서 부딪히는 갈등의 요소로 언어 장벽, 직무 수행의 어려움, 노동 강도와 노동 규율의 차이,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새터민에 대한 남한 사람의 인식과 태도 등을 살펴보았다.

1. 언어 장벽: ‘사오정’

새터민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는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이다.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의 음운학적인, 용어상의 차이뿐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체제·문화적 간격’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¹⁰ 새터민이 구사하는 ‘북한 사투리’는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와는 다르게 이들이 가난하고 촌스러운 동네인 ‘북쪽’에서 왔다는 것을 누구나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낙인’이 된다. 다음과 같은 구술은 정착초기에 새터민들에 사용하는 말이 이들을 대한민국의 국민과 구별시키는 표식이 됨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들은 말 들으니까 몇 번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기들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짝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린다는 친구들 만나봤는데, 지판에는 가리웠다는데 남들은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가리워져요?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 한번은 가리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손이 베니까 가서 밴드 가져오라 하는데, 밴드가 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밴드가 뭘데요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K8, 남성, 30세, 전직노동자, 현재 선교원 근무, 2002년 3월 입국)

언어 차이로 인해 새터민들은 직장 동료로부터 말이 안 통하는 ‘사오정’ 취급을 받

¹⁰ 김화순, 「북한 사람 남한에서 성공하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69.

고,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능력상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는 새터민들은 누구나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쏟는다. 노력의 결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일이년이 지난 후에는 어느 정도 ‘표준말’을 알아듣고 어색하지 않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된다. 이때부터는 취업이나 이직을 할 경우 북한사람임을 숨기거나 ‘강원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통하게 된다. 문제는 ‘언어적 낙인’이 제거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의사소통의 부자유스러움과 인간관계의 왜곡이다. 새터민들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 사투리 해 대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 하고, 경상도 사람이 “살”이라 하지 않겠는가. 일층인데 일청하고 하면, 그 사투리의 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전라도, 경상도 방언 다 있어요. 그 안에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안 맞아요. 이 사람 말에 적응할까 싶으면 저 사람은 “일청”해요, “일청”. “일청”이 머라지? 일층에 있는 나를 부르는데 “일청”하고 대화면, 도대체 뭐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머거리니까 말해 뭐해” 하니까. 짜증이 나버린거예요, 이 사람들이. (K2, 여성, 전직 노동자, 현재 직업훈련, 2000년 8월 입국)

처음에는 고객만나는 건 피했구요, 주로 전화상담을 했었어요. 용어가 많이 다르니까 처음에 전화 받다가도, “어? 이게 무슨말이지?”, 그래서 옆사람한테 돌려주고 돌려주고 그랬어요. 용어를 잘 몰라서. 그게 상당히 스트레스더라구요. ... (모르는 말은) 머릿속에 새기죠, 한번 듣고. 그게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용어나 모르다는게 그냥 일반 한국분들 같은 경우는 대수롭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용어 하나 모르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H4, 여성, 34세, 전직 교사, 현재 사무직, 2004년 1월 입국)

2. 직무 수행의 어려움: ‘킴맹’과 ‘영맹’ 탈출하기

직무와 관련된 문제 중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영어와 컴퓨터이다. 특히 사무직이나 전문기술직의 경우 영어와 컴퓨터 활용 능력은 크게 문제가 된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관련 전문기술직에 종사했던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지만, 저학력, 고령자, 생산직이나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의 경우에 컴퓨터와 영어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이는 새터민들이 희망직종과 거리가 먼 직장에 취업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새터민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컴퓨터 용어나 영어 사용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무실에, 많이 욱먹었죠, 몰라서. 업무가, 이제 컴퓨터로 자동차 제조공장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ID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차 ID를 모르니까. 내가 그

때는 컴퓨터 교육을 다 못 받았으니까, 탭을 눌러야 되는지 뭘 눌러야 되는지 그걸 몰랐지. 거기에 있어서 업무차이가 내가 제일 힘들었어, 욕도 많이 들었지만. (C1, 여성, 41세, 전직 교사, 현재 초빙강사, 2000년 10월 입국)

몽땅 영어로 써버리니까. 영어로 대화가 거의 80%가 영어예요. 회사가 모든 전자부품이 영어니까. 북에서 영어를 공부를 했다지만, 이렇게 글을 보면 읽어서 번역은 되는데 발음이 틀려요. 영어가 처음에 와서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익히니까, 5년 하니까 거의 적응되었습니다. (K7, 남성, 41세, 전직 도인민위원회 근무, 현재 전문기술직, 2000년 10월 입국)

3. 남북한의 노동 강도와 노동 규율 차이: ‘그럭저럭 시간 때우기’ 대 ‘죽기살기로’

새터민들이 직장 생활에서 겪는 갈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남북한 직장 문화의 차이와 관계 맺기 방식의 차이일 것이다. 우선 취업 후 며칠만 일해보아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남북한간 노동 강도의 차이이다. 북한에서는 편직공장, 방직공장도 같이 기계가 노동의 속도를 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잦은 휴식과 ‘느릿느릿 일하기’의 형태로 노동시간의 사적 점유가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노동의 강도와 생산성은 낮아진다. 남북한간 노동강도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제시할 수는 없으나, 남한에서 일하는 대로 하면 북한에서는 “로력영웅이 된다”는 한 새터민의 말은 이들이 체감하는 남북간 노동강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남북한간 노동강도의 체감온도 차이를 새터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한 야간 노동은 밤 12시에 가가지고 한 두 시간 동안 실적 올려놓고, 제일 졸음 올 때, 3시, 4시 그때는 깜빡 졸아요. 졸고 나서 한 4시부터 또 막 해가지고 인계시간까지 하면 계획을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간 작업이라고 해도 단 1분 1초도 눈을 못 붙이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여기는 단지 한 시간하고 5분, 커피마실 그 시간 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일하면서 졸거든요. 그러면 낮에 자지 않고, 돈 벌러 왔다는 게 무슨 잡생각에 지는가,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니까 낮에 감히 딴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서너달 하니까 살이 막 이렇게. 야, 이게 살러 왔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L3, 여성, 41세, 전직 약사, 현재 대학생, 2001년 7월 입국)

북한은 그렇게 일 안해요, 사회주의는. 도장만 찍고, 대가리하고 꼬리만 있어요. 몸뚱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사는 거지. 그런 것도 있어요, 체제적인 그런 거.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자기 개수에 따라서, 자기 질적인 것에 따라서 양과 질에 따라서 돈이 나가니까 피터지게 일하잖아요. (H1, 여성, 52세, 전직교사, 현재 정부 계약직, 2000년 4월 입국)

북한에 비해 상당히 높은 남한 직장의 노동강도는 새터민들의 이직이나 사직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노동강도의 세기는 근무 태도와 일에 대한 책임성, 노동 규율의 이완 정도와도 연결된다. 남한 직장의 노동강도가 세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 시간이나 시간당 생산량이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한의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도 많고, 창조성 있고, 자의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직장에서 노동자들은 주어진 업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활동을 함으로써 노동시간을 부분적으로 자신의 시간으로 점유한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과 휴가 등의 기본적인 근태관리도 작업반장과 노동자들 간의 목계에 의해 손쉽게 편의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공장 가동과 식량 배급이 어려워지면서 출퇴근을 비롯한 시간 규율 위반이 더욱 심화되었다. 새터민들은 남북한간 노동 규율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북한에서 살 때는 내가 만약에 조퇴하고 싶거나 하루를 쉬고, 혈한 일 하고 싶거나, 뇌물 같은 거, 뇌물 같은 거 고이는 거, 뇌물 쓰는 거. 반장이라든가, 예를 들어 공장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뇌물 쓰는 건, 내가 편한 의자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K2, 여성, 40세, 전직 노동자, 현재 직업훈련, 2000년 8월 입국)

여기(남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규율이 딱 부러져요. 체계가 칼날처럼 딱 딱 끊고 맺고 있어요. 이 라인을 끝내, 그러면 끝내야 돼요. 끝내고, 딱 거기. 일이 끊고 맺고 있는 데, 우리 북한에는 적당히 두루뭉술하든 되겠지, 그런 게 있어요. (남한에서는) 북한식으로 일하면 안돼요. 대충 넘어가려면 그건 안돼요. (K7, 남성, 41세, 전직 도인민위원회 근무, 현재 전문기술직, 2000년 10월 입국)

북한에서 일했던 태도와 일의 리듬을 가지고 남한의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직장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질책을 당하기 쉽다. 북한에서는 ‘열성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적당히’ 직장일을 하고 ‘적당히’ 자신의 일을 보거나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보기에 게을러보이는 새터민들의 태도에 대한 직장동료들의 질책은 새터민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담스러움으로 느껴지고, 이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색함과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에서 제가 공장에서 일을 했잖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북한사회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열심히 일하고 정직히 일하면 바보예요. 북에서는 바보예요. 너 그래봤자 굶어죽어. 어떻게든 피부려가지고 땡땡이 치고. ... 항상 일을 대충대충 걸보기에 꺾렁꺾렁한 것이 몸에 체질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과되리만큼 하는 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보면 말을 하잖아요, 너 일 똑바로 해라. 그러면 북한 같으면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노동자 처지에 내가 꺾렁꺾렁해도 도적질해도 먹고살면 되지 니가 뭇 때문에 말을 하며, 때려죽일 놈인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오는 것이예요. (K8, 남성, 30세, 전직 노동자, 현재 선교원 근무, 2002년 3월 입국)

북한의 노동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 남한 사람들에게 새터민들의 일하는 방식과 태도는 ‘나쁜 사회주의 근성’으로, 개인적 ‘게으름’과 ‘불평불만’으로 해석된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은 자신이 담당할 새터민이 업무능력이 모자라는데도 기업주에게 부탁하여 어렵사리 취직을 시켜주었는데, 취직 후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다고 지적하자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고 그만두어 버려 난감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한다. 남한 사람들이 보기에 “꼭 일을 시켜야만 하고”, “경쟁력이 없고 국가에 의지를 많이 하는” 새터민들의 사회주의적 노동 태도는 이들이 남한의 직장에 적응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4. 직장 문화의 차이: 공동체문화 대 무관심과 경쟁

직장 문화 측면에서 남북한간의 또 다른 차이는 공동체문화와 동료관계이다. 북한의 직장은 문화공동체적 성격을 지향하는 반면 남한의 직장에는 개인주의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공동체의식은 공동의 경제적 이익 도모라는 경제적 도구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데 반해, 북한의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동체는 문화 공동체의 성격을 보다 짙게 띠고 있다. 북한에서 작업반장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반 단위의 공동체적 관계는 종종 노동시간 이외의 시공간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함께 일하는 작업반원들은 일과 후까지 이어지는 공동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유대감을 다지고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해 나간다.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설이나 망년회, 명절 등 일년에 몇 차례 작업반원들이 쌀이나 식료품을 각 출하여 한 집에서 모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다고 한다. 작업반 동료의 관혼상제에 대한 공동의 참가와 ‘보장’도 작업반 단위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작업반장과 작업반원은 오랜 기간 노동과 공장생활을 함께하기 때문에 직무상의 상하관계만이 아닌 ‘가족’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내적 결속력이 높은 북한의 직장 문화에 익숙해있던 새터민들에게 남한의 직장 문화는 동료들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주의적이며 지나치게 경쟁적인 것으로 비친다. 새터민들은 직장에서 “서로 정말 힘들어 할 때 터놓고 얘기하면서 도움도 요

청”하고, “주판알 같이 눌러주고, 불러주고, 서로 한쪽씩 정 힘들면 막 같이 적어주고, 이러면서 같이 호흡을 하는” 동료 관계를 기대한다. 그러나 남한의 직장에서 동료 관계란 “늦게까지 일해도 “수고해라” 한 마디하고 그냥 가 버리고”(H2, 여성, 30세, 전직 사무원, 현재 사무원), “자기가 맡은 업무만 딱 하고” “동료들 집이 어딘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혀 무관심”한 관계(H4, 여성, 34세, 전직 교사, 현재 사무직, 2004년 1월 입국)라서 이들은 서운함을 금치 못한다.

이러한 이질감을 완화시키는 것은 동료들 간에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배려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아줌마”인 직장 동료들과 자식 자랑하고 며느리 흉을 보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한 새터민(H1, 여성, 52세, 전직교사, 현재 정부 계약직, 2000년 4월 입국)은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 생산직 노동자와 전직 인텔리라는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는 동질감을 강하게 느꼈고, 앉아서 일하는데 엉덩이가 아플까봐 방석을 챙겨주는 동료의 배려를 통해 삶의 원동력을 얻었다고 한다.

5.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솔직하게’ 대 ‘이중적인’

새터민들이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이다. 새터민들은 일반적으로 남한 사람들에 비하여 직설적으로 대화를 하는 편이다. 이는 유치원때부터 ‘상호비판’과 ‘자기비판’이라는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와 지적이 일상화되어 있는 북한식 생활방식의 소산이기도 하다. 직설적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의사소통방식은 남한 사람들에게는 생경하고 거북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새터민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남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데 대하여 당황하게 된다. 새터민들은 자신이 호의로 한 말을 동료들이 오해하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서 놀라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된다.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에서 생기는 오해는 일반적으로 새터민들이 직장 내 동료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때로는 이로 인해 어렵게 얻은 직장을 그만두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다음의 사례들은 의사소통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의 예와 그에 대한 새터민의 감정 표현들이다.

여기는 좀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어도, 참고 뒤에 가서 뭐라고 하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 있는 그대로. 조금 안 좋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씌워요, 그냥. 이걸 아니

다 말이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싫으면 싫은 대로 표현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나 싫다, 직접적으로 막 얘기한다구요. 남쪽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행동한대요, 나보고. 윗동네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안 굽혀요. 막 저두 뭘 좀 참자고 했다가도, 그걸 참으면 잠이 안와요. 참으면은 막 요기서(가슴에서) 화가 치밀고, 오히려 참으면 더 화가 나요. (K3, 남성, 39세, 전직노동자, 현재 건설노동자, 2000년 9월 입국)

더군다나 저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이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얼굴이 못쓰게 됐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저는 그거 얼굴이 축갔다는 말이거든요. 얼굴이, 아파서 살이 많이 빠졌다, 그 소리였는데. 얼굴이 못쓰게 됐네? ... 상당히 기분 나빴었나 봐요. (K2, 여성, 40세, 전직 노동자, 현재 직업훈련, 2000년 8월 입국)

이상의 증언에 의하면 남한 사람들은 새터민의 의사소통 방식을 지나치게 직선적이고,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으며, 터무니없이 자존심이 강하여 타협할 줄 모르고, 때로는 폭력적이라고 인식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진심은 무엇일까? 새터민들은 북한 사람들의 성격과 의사소통 방식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는 것이 나에 대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진짜로구나, 진국이구나, 진정이구나라고. 이렇게 친자식을 보고 나쁜 것도 다 좋다하든 애가 결함을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관계가 되는 것이 긍정적인데, 여기 분들은 잘못해도 잘하셨습니다 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P1, 남성, 40세, 전직 의사, 현재 무직, 2004년 1월 입국)

저기는 서로가 이제 뭐랄까, 서로가 성질나고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세던 부딪히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앉아서 담배 한대 마주 피우고 좋게 하고, 또 술이나 한잔 하고 그러면, 풀면 끝인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한번 수틀리면 등 돌리면 다더라고요. 등만 돌리면 다더라고요. (L2, 남성, 40세, 전직 노동자, 현재 공기업계약직, 1997년 10월 입국)

즉 남한 사람들에게 직선적이고 남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것은 새터민들에게는 순박하여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고, 남한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폭력적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새터민들에게는 남자답고 뒤끝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새터민들은 남한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새터민들은 남한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며’, 남한 사람들의 ‘세련된’ 의사소통 방식은 거짓적이고 허식이라고 본다. 자신들이 느끼는 남한 사람들의 의사소통방식에 대해 새터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 남한 사람들은 지내보면 뭔가 모르게 교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맡은 좋게 하고 웃으며 하고 자기 살점은 다 떼어 줄 것처럼 그래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사기인지 거짓말인지 느껴지거든요. 북한 사람은 진짜 진심은 진심이거든요. (H4, 여성, 34세, 전직 교사, 현재 사무직, 2004년 1월 입국)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까 웃음과 항상 앞에서 배려하는 척, 돌아서면 모르는 식, 그 양면성에 많이 걸려들죠. 북한 사람들이. 그런데 심리적으로 많이 타격을 입고. 첨에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아 뭐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도 일단 돌아서면 모르고 언제 뺏나는 식으로, 필요할 때만 뒀. (S1, 남성, 31세, 전직 군인, 현재 판매 서비스직, 2001년 3월 입국)

즉 남북한 사람들의 말과 의사소통의 도구들은 하나의 ‘기표(signifiant)’로 표현되지만 각자 서로 다른 ‘기의(signifie)’를 갖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사람들은 같은 또는 유사한 말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체계를 갖는 것이다. 새터민들의 개인적 발화 행위는 그들 자신의 ‘빠롤(parole)’이 터하고 있는 문화 규칙에 연결되지 못하고 남한 사회의 언어 체계와 문화 체계 속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그 ‘기의’는 뒤틀리고 변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남한 사람들의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새터민의 인식 역시 남북한 사회의 ‘랑그(langue)’가 불일치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서로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은 갈등을 불러오고, 이것이 적절한 시점에서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새터민 전체나 남한 주민 전체를 불신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한 새터민은 서로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오해로, 다시 거리감의 확대와 적대감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제가 주유소에서 일을 할 때요, 같이 일하는 파트너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친하다가, 야까 확 다가간다는 것, 저는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다 오픈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그것을 가지고 직장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믿고 나는 그랬는데, 거꾸로 나의, 그리고 나를, 믿고 다가가면서 더 가까이 서로 이해해주고 그러길 원했는데, 더 멀리하면서 뭐랄까 비웃는 거 있잖아요. 조금 멸시받고 자멸받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참았거든요.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참다가, 참는 것도 정도잖아요. 쌓이다가는 언젠가는 터지잖아요. 그래서 막 때릴려고 하니 거의 주위에 있는 남한사람 편인 거예요.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일단 자기 호기심이 만족되면 바로 떠나버리거든요. 그럼 굉장한 상처예요. 나는 굉장히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면 탁 지나가도 인사만 하는 정도로 무관심해버리고. 이러니까 외면당하고 배신당한 이런 거 막 느끼게 돼 버리고, 이게 아프지. (K8, 남성, 30세, 전직 노동자, 현재 선교원 근무, 2002년 3월 입국)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것일까? 아니면 새터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체계 대신 남한의 문화체계를 머릿속에 집어넣음으로써 해결되는 것일까? 새터민들은 소수자로서 남한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체계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전적으로 새터민의 책임으로 떠넘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새터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남한의 문화 체계를 배우는 것이라면 남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역시 새터민들의 처지와 문화와 생활방식과 관계맺기의 방식들에 대해 공감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일 것이다. 이는 어쩌면 다음과 같은 자원봉사자의 말처럼 새터민이라는 우리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집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과 현재의 삶의 방식에 대해 성찰하는 것일 수도 있다.

6. 새터민에 대한 남한 사람의 인식과 태도

선행연구에 의하면 새터민과의 접촉 경험이 전혀 없는 남한 사람들은 새터민에 대해 거친 성격, 의존성, 실리적 특성 등 높은 부정적인 정서와 낮은 긍정적 정서를 보이고, 동시에 매우 높은 연민의 정서를 가진다.¹¹ 이러한 사실은 새터민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갈등이 남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새터민들의 이해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부정적 태도의 영향이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새터민들은 자신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새터민들은 남한사람들 눈에 비친 자신들의 이미지가 “고향을 등지고 가족을 버리고 이렇게 떠도는” 배신자(H1), “북한에서 굶던 새끼”인 거지(Y1), “외국인 동남아에서 온 애들보다 오히려 더 저질스러운” 범죄자(K7)의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뉴스 보도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 나타난 북한의 이미지와 중첩되면서 새터민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굳어지고,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의 신뢰감을 얻는데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실제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 종류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우선 불신과 의심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인권 침해로 볼 수도 있는 근거없는 의심을 경험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한 여성 새터민(L1, 여성, 47세, 전직 노동자, 현재 용역직, 2001년 6월 입국)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슬리퍼를 찢었다는 의심을 받고 “오늘 신던 흰 신발이 찢어졌는데, 내일은 지갑이 없어지면

¹¹ 양계민·정진경,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특집호 (한국심리학회, 2004), pp. 104~110.

뭐라고 할 건가”하는 생각에서 일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새터민을 접해보지 않은 대다수의 남한 주민들에게도 작용하여, 새터민에 대한 막연한, 이유 없는 거부감을 갖게 만든다.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한 새터민은 병원 실습 과정에서 새터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거부감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위축되고 상처 받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병원가면 괜히 또 말은 사람 대상자들이랑 환자분들이랑 얘기하다보면 사투리가 많이 나가고 하니까. 여기 사람들은 거부감 굉장히 심한데요. 막 이렇게 학생간호사가 주사 놔 주겠다고 하면 싫다고 그래요. 그런 건 이해되는데, 그런데 아 이 사람들 북한사람이라면 더 싫어하지 않을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난 또 더 이렇게 나와서 생각해야하고 하니까. (C6, 여성, 30세, 전직 노동자, 현직 대학생, 2002년 2월 입국)

거부감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새터민에 대한 적대감과 거부감은 자신 혹은 부모 세대에 경험한 한국전쟁이나 분단의 상처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취약계층의 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제도적, 사회구조적 문제를 새터민들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새터민 지원단체의 한 상근자는 “자기들의 세금으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하는 것이 깡판이나 놓고 술이나 먹고 이렇더라”는 것이 새터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거부감과 적대감은 특히 북한과 관련된 사건과 같은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 강력하게 표출된다. 새터민들은 자신이 느낀 거부와 적대의 시선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희들 세금 받아먹고 산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빠가 회사 자체가 4대 보험 다 되니까, 여기 생계보조비 타먹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투로 얘기하는 사람 많지요. 또 지방에서나 살 것이지 여까지 왜 와가지고 저러나. (L1, 여성, 47세, 전직 노동자, 현재 용역직, 2001년 6월 입국)

북한에서 왔다는 것보다 중국 교포다, 이게 오히려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좀 없어요. 어떠한 경우가 있었나하면은, 내가 타일을 하면서 내 오야지가 나이가 나보다 세 살이 어린데, 뭐 술 먹고, 난 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북한에서 온 새끼들 다 때려죽이고 싶더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오야지가, 그 오야지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구요. (K3, 남성, 39세, 전직 노동자, 현재 건설노동자, 2000년 9월 입국)

새터민들을 대하는 남한 사람들의 태도 중에 새터민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그

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가장 잦은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무시와 경멸이다. 냉전시대에 남한 사람들이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감정의 핵심이 적대감이었다면, 1990년대 경제난 이후에는 남한의 상대적 우월감에 기초한 무시, 업신여김이라는 정서로 바뀌었다. 직장 내에서는 특히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근거없는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이 그러한 예이다.

내가 시킬 때도 애들이 이놈들이 어떤 때는 만만하게 보고, 막 희롱을 하려고 해요. 젊은 애들이 이상하게 야비한 말을 해요, 한국식으로. ... 북한 사람인데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박수도 안치고 이런 놈들이. 참엔 과장님이라고 부르지도 않더라구. 밑에서 일하다가, 같은 노동자들이 한 명 두 명 부르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K7, 남성, 41세, 전직 도인민위원회 근무, 현재 전문기술직, 2000년 10월 입국)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어떤 업무를 내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OO씨는 그 일을 하자면 6개월 정도 지나야 될꺼라고, 저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한은 잘 모르지 않냐고, 남한 헌법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고. 뭐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강렬하더라구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사실 헌법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룩하잖아요. 저보고 헌법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을 인터넷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뭐 처음엔 웃으면서 받아들이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강렬했는지. (H4, 여성, 34세, 전직 교사, 현재 사무직, 2004년 1월 입국)

새터민의 능력과 인격을 무시하는 직장 동료들의 태도는 특히 직장에서 새터민이 남한 사람의 상급자로 일하게 될 때 원만한 인간관계와 직장내 팀워크를 해치는 요소가 된다. 더군다나 북한에서는 남한에 비해 조직 내의 공식적인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급자인 새터민이 직장동료들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갈등은 대립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기 쉽다.

또한 새터민들은 직장에서 노골적인 무시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와 ‘그들’을 경계 짓고 따돌리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를 감지한다. 따돌림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는 큰 일이나 사건이라기보다는 휴식 시간에 커피를 같이 마신다든지 (H2), 간식을 나누어 먹는 것(L1)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일들이고, 이런 작은 분리와 소외의 경험이 누적되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된다.

임금차별을 비롯한 차별대우와 임금체불 등 노사관계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차별도 직장 내 주요 갈등 요소이다. 이는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속해있는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의 문제이기도 한데, 새터민의 경우 여기에 새터민이라는 또 다른 범주가 추가된다. L1은 건설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으나 근로계약 없이 구두로 임금을 합의했었기 때문에 결국

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해고는 그가 한국의 노동법과 관행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으나, 정작 그의 마음에 억울함으로 남아있는 것은 노동법을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북한 사람이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점이다.

내가 중국에서 숨어 살면서도 말 통하지 않는 중국사람들한테 가서 일했어도 월급에서도 내가 일 한 거만큼 더 주더라구요. 근데 이걸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당연한 국적 가지고 내가 내 일한 값도 못 받고. 돈보다도 그 소행이 막 억울해 죽겠더라고요. (L1, 여성, 47세, 전직 노동자, 현재 용역직, 2001년 6월 입국)

북한에서는 직종과 업무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있어도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 간에 기능 수준이나 숙련도에 따른 임금 차이는 크지 않다. 그래서 개인의 기능 수준과 숙련도, 노동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차등지급되는 남한의 임금 구조는 새터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새터민들은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남한 사람과 자신의 임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새터민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제도도 갈등의 소지가 된다. 고용지원금은 새터민을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이다. 그러나 새터민들은 이를 국가가 자신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일환으로 바라본다. 새터민들은 “취업지원금은 자신들에게 주는 것이니 자신들은 고용주에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며, 기업주가 자신들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¹² 서류 조작을 통해 새터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일부를 착복하는 일부 악덕기업주의 존재가 이러한 인식을 더욱 부채질한다. 반면 기업주가 받아야 할 고용지원금을 새터민에게 지급하는 온정적인 기업주도 있는데, 선한 의도를 가진 이러한 행위는 직장내 남한 노동자들과 새터민간의 갈등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자신이 새터민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한 사람들은 새터민들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는 감정이 남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일종의 ‘자격지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의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 새터민들은 ‘자기들이 차별을 만든다.’ 기업주나 직장 동료들의 입장에서 새터민을 보면 일숨씨는 없고, 쉬운 일만 찾고, 게으르고,

¹² 김화순, “북한 사람 남한에서 성공하기,” p. 84.

일일이 시켜야만 일을 하고, 성질 있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니 환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을 차별로 인식하는 새터민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부당한 대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새터민들은 구조적, 문화적, 일상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는 시각과, 새터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데 오히려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잘못된 편견이 오해와 갈등을 낳는다는 시각, 이 두 가지 관점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남한생활이 길어지고 남한의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새터민들 중에도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 변화가 오는 사람들이 많다. 남한 사회를 이해하게 된 새터민들은 자신들이 차별당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자본주의적 고용원리에서 찾고 있다. 사업에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면 같은 돈을 주고 더 일 잘 하는 노동자를 찾아야 하는데, 새터민들은 아직 남한 문화도 잘 모르고 노동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으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월급을 적게 주거나 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새터민에 대한 차별은 “인격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노동자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일 뿐이다(C1, 여성, 41세, 전직 교사, 현재 통일교육 강사, 2000년 10월 입국).

한편 남한 사람들에게도 새터민의 처지와 문화, 생활방식과 관계맺기의 방식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한 새터민 지원단체 상근자의 말처럼 새터민이라는 이질적인 집단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과 현재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고 이를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사실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다가 아니라 옛날에는 비슷한 문화인, 특히 가부장적이고 이런 거나, 자기만의 자존심이라면 자존심, 신념이라면 신념들,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면에 비하면 남한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변했고,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IV. 결 론

이상에서 새터민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과 직장생활에서 남한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새터민들이 북한에서 익힌 직무능력과 직업기술이 남한에서 취업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학력과 직업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하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사회에 정착한 후에도 특정 분야에 취업 가능한 수준의 직업훈련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터민들에게 다양한 직업분야의 정보 제공과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을 강화하여 직업전환 과정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직에 종사하였던 새터민들의 취업 갈등을 고려하여 약사, 의사, 엔지니어, 교사 등과 같은 전문기술직의 경력에 대한 제도적 인정 기준과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새터민 고용지원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새터민을 고용하는 직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새터민 고용할당제를 실시하여 취업 자격을 갖춘 새터민들을 채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취업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새터민 중의 일부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생계급여의 삭감이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을 꺼리거나 소득신고가 안 되는 일용직 근무를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새터민의 장기적인 직업경력 개발과 경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정기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비를 지급하거나, 취업으로 생계비 지급이 중단될 경우 별도의 취업장려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장 생활에서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새터민과 남한 주민들의 서로 다른 이해의 방식은 새터민이 직장 내에서 겪는 갈등이 이들의 일방적인 적응과 동화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새터민이 직장에서 겪는 갈등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적응 또한 필요하며, 이 점에서 새터민과 남한주민 간의 상호이해교육은 갈등의 예방책과 긍정적 해결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새터민 교육에서는 새터민들이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동화의 대상이 아닌 행위 주체로 보는 관점, 새터민과 남한 주민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내용 면에서는 새터민과 남한 주민 간의 갈등의 요소들을 상호이해교육의 핵심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이해교육을 통해 직장에서는 새터민과 남한의 직장 동료들이 남북한의 노동의식과 노동문화를 스스로 비교해 보고, 갈등 발생시 다른 각도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은 당면한 갈등의 쟁점에 대한 타협을 넘어서서 갈등 당사자들 간에 대등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평화는 단순히 일반적인 평온한 상태나 의견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가해지는 강압적 질서유지 행위가 아니라, 풍부한 잠재력과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는 ‘인간관계의 망’을 의미한다.¹³ 최근 들어 새터민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소수집단과 우리 사회의 주류문화집단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갈등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형태로 표출시켜 사회 발전의 에너지로 삼을 것인지 하는 점이며, 이 문제의 핵심은 남한 사회와 남한 사람들의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수용 태도와 관련된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

¹³ 히즈키아스 아세파, 이재영 역,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Korea Anabaptist Press, 2005), p. 17.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과 개입전략

조 영 아* · 유 시 은**

I. 서론

II. 새터민의 정신건강

III. 새터민의 정신건강 개입전략

IV. 결론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and Intervention Strategies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mental health services for NK defectors have not noticeable results, even though North Korean (NK) defectors who are settling in the society of South Korea are rapidly increasing and severely suffering from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depression, PTSD and adjustment disorder. For the effective mental health service, professional services should correspond to the needs of NK defectors. The guidelines for intervention and role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need to be

specified. Thus, this study suggests specific intervention strategies and role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for NK defectors. The intervention strategies are mental health education and consultation to NK defectors and community, resource mobilization and connectio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 addition, the intervention strategies include appropriate coordination between professionals and paraprofessionals and multi-disciplinary team organization.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mental health professional, role, intervention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통일학 박사과정

I. 서론

2006년 현재 만 명에 육박하는 새터민은 이제 남한 내 소수 집단으로 확실히 자리 매김 하고 있다. 수적인 변화와 더불어 새터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이들의 적응은 여전히 쉬운 문제는 아니다. 또한 이들의 사회 문화적 적응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정신건강의 문제도 몇 가지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단시일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새터민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적응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들의 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¹ 우울증²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³ 신체화 장애, 불안 및 행동화 장애⁴등의 여러 영역에서 심리적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 및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새터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⁵ 이에 앞서 새터민 적응 교육 기관인 하나원에서 심성 훈련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노력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지 여부

¹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유시은 외,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3년간 사회적응 추적 연구-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9권 1호(2005), pp. 73~106; 조영아·전우택,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1호 (2004), pp. 167~186.

² 김현아·전명남, “MMPI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제7권 2호 (2003), pp. 129~160; 조영아 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2호 (2005), pp. 467~484;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1집 (2001), pp. 78~94.

³ 홍창형 외,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5권 1호 (2006), pp. 49~56.

⁴ 노대균,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민성길·신의진, “탈북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의학행동과학』, 제3권 1호 (2004), pp. 46~55.

⁵ 박지영, 「사회사업적 관점에서 본 탈북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금명자 외,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III』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서장혁, 『탈북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강구섭, 『북한이탈주민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은경, 『평화통일에 대비한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장호, “북한출신주민(탈북자) 심리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상,” 『북한』, 제311호 (1997), pp. 174~189; 김연희 외, 『새터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서울: 아름다운 생명, 2006), pp. 177~361.

는 아직 확실치 않다.

2003년도에 통일연구원이 탈북주민 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응실태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4.5%가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의 중점사항으로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를 꼽아 심리 상담의 필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로 누구와 의논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가족 및 친척'(35.7%), '신변 보호 담당관'(24.5%), '없다'(14%), '탈북 동료'(11%), '기타'(6.8%), '거주지 보호담당관'(3.4%)의 순으로 응답하여, 새터민들의 상담 요구도에 비해 전문적인 상담기관으로의 실질적인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용률은 필요도를 훨씬 밑돌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⁶

이러한 낮은 이용률의 이유로는 상담기관의 홍보 부족, 접근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에 앞서 무엇보다도 새터민의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당면한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적이고 정신 내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문제와 관련이 깊은 새터민의 특성상 구체적인 심리 상담이나 관련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역시 새터민 적응과 정착을 폭넓게 담당하는 민간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개발되고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새터민의 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련기관에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없을 경우, 서비스의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문 인력이 있을지라도 내담자와 정신건강 전문가의 목표가 달라서 상담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외국의 난민 상담 연구에서도 연구자들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내담자인 난민들에 비하여 심리적 정서적 주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난민들은 언어능력의 부족, 가족과의 이별, 실업,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으면서 우울, 불안, 다른 심리적 문제는 없거나 드물다고 언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정서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치료자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단순히 정서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과업을 강조하는 것이 난민 상담에서의 효과적인 치료라고 한다.⁷

⁶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p. 224.

⁷ A. Moon and N. Tashima, "Help seeking behavior and attitudes of Southeast Asian

즉, 정신 건강 서비스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새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욕구와 기대는 새터민의 사회·정치적, 역사적 배경, 이주 전 경험, 심리 사회적 적응수준, 스트레스, 문화적 신념, 세계관 그리고 정착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새터민의 특성과 정착 단계별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별, 정착 단계별, 구체적인 개입전략과 주제, 정신 건강 전문가의 활동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신건강 조력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역할 혼돈에서 오는 전문가의 탈진감이나 무능감을 방지할 것이다. 또한 외부적으로 조력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담자 및 정책 제안자, 행정 담당자들의 기대를 조율해 나가는 틀을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탈북 주민의 심리적 조력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문성 수준과 분야에 따른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그동안 이루어진 새터민 정신건강 연구를 개관함으로써 이러한 연구들이 새터민의 정신건강 조력과정과 개입방법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새터민의 정신건강 개입전략을 전문가의 역할 및 주요 주제, 전문 인력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았다. 이러한 개입전략과 전문가 역할에 대한 모색은 통일 이후 과정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가능할 것이다.

II. 새터민의 정신건강

1. 정신건강과 적응 요인

남한에 거주하는 새터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게 되는 적응상의 어려움이 알려졌다. 실제로 새터민을 면담한 여러 연구들에서 새터민들은 부부 간의 갈등, 부모자녀 문제, 직업훈련 및 직장생활 문제, 질병, 심리적 외상의 후유증, 가족지원 및 남한입국 문제,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 심리적 위축감 등 생활의 전반적 영역에서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⁸

refugees,” (San Francisco: Pacific-Asian Mental Health Research Project, 1982).

⁸ 전우택·윤덕룡·엄진섭,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2001년도 553명의 탈북자

새터민 가족들은 이러한 적응상의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변화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새터민 가족의 경우 가족 내의 의사소통, 가족 결속력, 갈등이나 폭력, 가족 권력관계,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가 잠재적인 가족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며,⁹ 청소년 자녀들의 행동과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와의 단절감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10,11} 부모-자녀 사이의 문화적 괴리감, 공감대 부재, 경직된 의사소통 등이 새터민 가족의 심각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¹² 이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 자녀 교육의 어려움 등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¹³

새터민 중에서도 여성 새터민들은 정착과정에서의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남편과 갈등을 겪으며,¹⁴ 직업선택의 문제로 큰 곤란을 느낀다.¹⁵ 두고 온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정서적 어려움이 크고,¹⁶ 남한 입국 전에 중국이나,¹⁷ 제3국에서 수많은 인권유린과 외상 경험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¹⁸

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7권 1호 (2003), pp. 155~208; 김숙임,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욕구와 민간단체의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엘리, 「북한이탈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 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병설 한국 여성평화 연구원, 1999); 박희정, 「북한이탈 여성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⁹ 이기영 · 성향숙,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 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7호 겨울호 (2001), pp. 243~271.

¹⁰ 안연진,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문화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¹¹ 김영수, “북한 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사회과학연구』, 제9권 (2000), p. 102.

¹² 박미석 · 이종남,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응 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 『통일논총』, 제17권 (2000), pp. 3~74.

¹³ 장혜경 · 김영란,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여성연구』, 제60권 (2001), p. 175; 조영아 · 전우택,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여성』, 제10권 1호 (한국심리학회, 2005), p. 17.

¹⁴ 김엘리, “북한이탈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 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999).

¹⁵ 김석향 · 김병숙 · 박정란, “북한이탈여성의 직업의식의 현황과 제언” (대한YMCA, 2004).

¹⁶ 장혜경 · 김영란,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p. 175; 조영아 · 전우택,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p. 17.

¹⁷ 김태현 · 노지영, “북한이탈 여성들의 삶 이야기: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 체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8호 (2003), pp. 1~17; 문숙재 · 김지희 · 이명근,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 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2000), pp. 137~152.

한편, 새터민 청소년들은 새터민으로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습과 청소년기 발달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다. 주의 산만한 학습태도, 대인관계 부적응, 공격적인 행동, 분노감정 조절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¹⁹ 가족의 생사여부로 매우 예민하고, 좌절감, 죄책감, 슬픔의 감정을 호소하며,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애정결핍 행동 혹은 강한 증오심을 나타낸다고 한다.²⁰ 또한 공통적으로 불안, 극심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신감 등을 호소한다고 한다.²¹

2003년도에 실시된 새터민 780명의 적응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 새터민의 61.1%가 '대체로 남한사회 적응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만족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족들의 신변확인'(30.6%), '물질적 풍요'(27.1%), '자녀교육'(15.3%)을, 사회 부적응 원인으로는 '나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 '한국주민의 냉대와 편견'을 들었다. 같은 연구에서 새터민 스스로도 자신들의 남한사회 적응수준에 대해 긍정(26%)보다 부정적(45.5%)인 평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적응의 원인으로는 '자신의 노력 없이 기대가 크거나'(37.7%), '삶의 목표가 불확실한 것'(22.6%), '생활적응교육이 부족한 것'(15.1%)을 들었다.²²

새터민을 200명을 대상으로 의식 및 생활만족도를 추적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추적 연구기간 3년 동안 새터민들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한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남한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들이 자립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더 강해진 반면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줄어들었다. 한편, 남한 언어의 이해, 남한 사회는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보는 시각, 남한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보는 것, 터놓고 이야기 할 북한주민이 있는 것, 남한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움, 남한 사회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 여전히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남한에서의 전체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²³

¹⁸ 이새롭, "북한 이탈 여성의 남한 사회 조기 정착 방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회의자료, 2003).

¹⁹ 안연진,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문화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²⁰ 최성숙, 「탈북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 12~15.

²¹ 정병호, "탈북 학생 사회·학교 초기 적응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정책연구 2001-1-05』 (교육인적자원부, 2001), pp. 10~12.

²²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실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발전방향』 (하나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pp. 43~47.

2. 주요 심리적 증상

새터민들이 주로 호소하는 심리적 증상으로 크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신체화 장애, 불안 및 적응장애, 음주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새터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남한 내 새터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율은 27.2%에서 3년 뒤에 4.0%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25} 국경없는 의사회²⁶는 남한 내 133명의 새터민들을 상담한 결과 이중 18.2%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중국 내 보호기관에 머물고 있는 새터민 연구에서도 9.2%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이 보고된 바 있다.²⁷ 한편 외상 경험에 대한 남한의 저소득 주민과의 비교연구에서는 새터민의 외상 경험이 저소득 주민의 외상 경험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⁸

새터민의 우울증상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연구방법이나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많은 새터민들이 우울증상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나원에서 적응교육을 받고 있는 새터민의 우울증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29%이상이 임상적 우울 증상군에 해당했으며,²⁹ 남한 거주하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상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54.7%가 경도 우울 증상을 보였다.^{30,31} 새

²³ 전우택 외, “남한내 북한이탈주민들의 3년간 사회의식 변화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추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5권 3호 (2006), pp. 252~268.

²⁴ 홍창형,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4), pp. 19~20.

²⁵ 새터민 2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율을 조사한 홍창형 (200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적에 성공한 151명중 1차 조사에서 partial PTSD로 진단된 48명 중 43명이, full PTSD로 진단된 41명 중 36명이 더 이상 PTSD환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full PTSD와 partial PTSD의 88.8%가 3년 사이에 회복되었고 유병율은 27.2%에서 3년 뒤에 4.0%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PTSD 환자들의 회복률과는 유사한 정도이나 홀로코스트 생존자나 2차 대전 참전자들의 유병율 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²⁶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지부, “한국 내 북한인을 위한 심리지원,” 『2005년 연간보고서』 (2006), p. 4.

²⁷ 유정자,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보호기관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 48.

²⁸ 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에 대한 우울증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 100.

²⁹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1집 (2001), pp. 78~94.

³⁰ 조영아,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2호 (2005), pp. 467~484.

³¹ 조영아(2005)는 남한에 정착해 있는 새터민 151명의 우울 수준 변화를 추적 연구하였는데 3년

터민 우울증상을 연구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남한 거주 새터민의 15%가 임상적 우울증상을 보였고,^{32,33} 남한주민 및 남한 저소득주민과의 비교 연구에서는 새터민들의 우울수준이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³⁴ 하나원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은 연구에 따라 성별, 학력, 결혼 여부에 따라 우울 수준의 차이가 있었으며,^{35,36} 남한에 정착해 있는 새터민들은 연령이 높은 집단, 북한에서 결혼한 경험이 있는 집단, 건강이 나쁜 집단,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수준이 높았다. 북한 내에서의 심리적 외상이 많을수록 남한 사회에서 스트레스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고³⁷ 적응스트레스 중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차원이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사회적 지지의 양이 높고 문제해결능력이 클수록 우울수준이 낮았으며,³⁹ 사회적지지 중에서도 교회, 사회 탈북자 단체 등의 집단 참여와 정서적 지지가 많을수록, 직접 돈이나 물질을 제공받는 도구적 지지가 적을수록, 또한 한국에서 재교육을 받을수록 우울성향은 낮아졌다.⁴⁰ 또한 남한 문화지향성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갖는 것이 우울감을 낮추었다.⁴¹

새터민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 불편감도 많이 호소한다. 자신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비율이 높고⁴²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⁴³ 이

후에 탈북주민의 우울 수준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남성의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³² 김연희, 『A Study on North Korea Defectors' Mental Health』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 90.

³³ 남한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새터민 188명의 정신보건 예측요인을 연구한 김연희의 연구에서도 새터민의 15%가 임상적 우울증상을 보였는데 이는 남한인의 주요 정서장애 유병율의 7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한다.

³⁴ 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에 대한 우울증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pp. 76~77.

³⁵ 김현아·전명남, “MMPI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제7권 2호 (2003), pp. 129~160.

³⁶ 김현아 등(2003)의 우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가족 동반에 따른 차이는 없었던 반면 한인영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집단이 단독이주자들보다 더 높은 우울 점수를 보였다. 즉, 하나원에 거주하는 새터민의 경우 성별이나, 가족동반 여부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는 않다.

³⁷ 조영아,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p. 476.

³⁸ 김연희, “A Study on North Korea Defectors' Mental Health,” pp. 106~108.

³⁹ 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에 대한 우울증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p. 91.

⁴⁰ 김미령, “탈북자의 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1호 (2005), p. 193.

⁴¹ 채정민·이종한,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이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강』, 제9권 4호 (한국심리학회, 2004), pp. 793~814.

러한 신체적 고통은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재중 새터민의 경우 신체화 호소가 표본 집단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⁴⁴ 또한 하나원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의 심리검사 결과에서도 신체화 장애를 반영하는 척도의 점수가 표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되고 있다.⁴⁵

이외에도 새터민들의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남성 새터민의 55%, 여성 새터민의 27%가 음주의존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음주의존 수준은 남한인의 음주의존 유병율의 5~10 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⁶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새터민의 주요 증상들은 임상장면에서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다. 2003년 8월부터 2006년 3월까지 476회 전체 179명의 환자의 상담결과를 분석한 MSF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의 주요 내용으로 슬픔(25.7%), 두려움(14%), 육체적 어려움(10.1%), 통증(10.1%), 공격적 행동(0.5%), 야뇨증(1.1%), 자살 또는 위험한 행동(1.6%), 섭식장애(1.1%), 수면장애(15.7), 학습장애(1.1%) 등이 보고되었고, 주요 병명으로는 PTSD 18.2%, 기타불안장애 18.8%, 우울증 22.2%, 간단한 정신병적 장애 0.5%, 부모 자녀 관계문제 1.1%, 적응장애 10.5%, 기타주요병명 16.2% 등으로 나타났다.⁴⁷

⁴² 새터민 730명의 적응연구에서 응답자의 43.3%가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3); 새터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한 군은 23.83%, 긍정적으로 대답한 군이 46.34%이며 만성질환의 유병율은 43.05%로 보고했다. 김경철,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상태 및 의료 이용 만족도』(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⁴³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62명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 98.5%가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였다. 호소하는 신체적인 증상들 중 빈도가 30%를 넘는 대표적인 증상들은 허리통증(40.3%), 소화불량(37.1%), 가슴 및 심장 두근거림(35.5%), 치통과 잇몸 출혈(30.6%), 불면 및 불안(38.7%), 안구통 (32.3%) 등을 차지하였다. 전우택,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경제적 자생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2004), p. 93.

⁴⁴ 유정자,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보호기관 대상자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 36~37.

⁴⁵ 전우택,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경제적 자생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2004), p. 88.

⁴⁶ 김연희, “A Study on North Korea Defectors’ Mental Health,” p. 91.

⁴⁷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지부, “한국 내 북한인을 위한 심리지원,” 『2005년 연간보고서』(2006), p. 4.

3. 정신건강 연구와 개입방향

위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들의 결과들은 새터민의 정신건강 개입과 관련되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시사한다. 첫째, 새터민의 적응 문제는 이민자와 같은 문화이주자로서의 적응의 문제와 함께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난민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새터민의 적응상의 문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문화 이주자로서의 자연스런 적응과정으로 교육과 예방을 통해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하는 동시에 외상적 경험에 대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둘째, 새터민의 정신적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가족문제, 신체적 질병의 문제, 사회적 문제 나아가 영적 혹은 의식적인 문제와 관련된 생활 전반의 문제이다. 따라서 새터민의 정신건강 개입은 단순히 정신건강의 증진 혹은 심리적인 적응이 목표가 아니라 새터민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영적 혹은 의식적인 환경과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새터민의 심리적 문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정착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주요 개입 주제와 대상, 개입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차별화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넷째, 정신건강 개입에 신체적인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새터민에게 접근하고 심리적인 문제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신체화 증상으로 인한 두통, 불면증, 소화기 불편감, 심장통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심리적 개입이 거부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새터민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새터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회복율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는 새터민의 비율은 높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는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심리적 외상에 대한 개입 전략이 있어야 하며, 외상 경험 빈도와 강도, 유형과 증상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탈북 시기나 탈북 경로, 시기에 따라 외상 경험이 변화되므로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세우는데 이러한 변화들을 민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울감은 새터민의 적응 과정에서 빈번히 호소하는 심리적 장애이다. 또한 우울 수준은 연령과 성별, 결혼 유무, 정착기간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개입대상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지지 그 중에서도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 혹은 집단 활동에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사회 연계망을 갖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고 남한 문화에 대해 유능감을 높여 전체적인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새터민의 정신건강 개입전략

1. 개입방법과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 교육

새터민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지원방법으로 교육을 들 수 있다. 여러 내용이 교육의 주제가 될 수 있겠으나 남한의 정신건강 서비스의 특성 및 과정, 관련 기관에의 이용 및 접근방법에 대한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 주제이다. 이러한 교육의 대상은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새터민을 포함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모든 새터민이 된다. 남한 사람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새터민들은 정신과 혹은 심리상담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자신의 문제를 정신과 의원이나 심리 상담 치료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⁴⁸ 결과적으로 상담치료에 대한 기대도 높지 않다. 북한생활과 탈출과정에서 생존에 기능적으로 작용했던 불신감으로 인해 새터민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심리 치료 형태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담자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나 충고와 훈육을 기대하는 새터민들에게⁴⁹ 스스로 문제해결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 나가도록 조력하는 심리상담의 과정은 시간을 소모하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안내는 차후 생길 수 있는 치료적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새터민 정신건강 교육의 중요 주제가 된다. 이러한 교육은 새터민들의 공식적 모임이나 교육의 기회에 예방적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

⁴⁸ 조영아 · 전우택, “북한 출신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1호 (한국심리학회, 2004), pp. 167~186.

⁴⁹ 김성희 · 김현아, “새터민의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도움요청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6권 3호 (2005), p. 693.

다. 그러나 새터민과의 사교적 자리, 비공식적 자연스런 만남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일상적인 대화 중에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표현할 때, 정신건강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용하게 안내 할 수 있다. 새터민과 본격적인 심리 상담이 이루어질 때에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교육은 전체 상담과정의 효율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주제이다. 상담 과정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는 편견 없이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예민한 자세로 새터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명료화하면서 치료적 만남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 설명한다. 상담과정에서 다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주제와 한계, 상담자의 역할과 구체적인 상담과정, 비밀보장,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원기관의 실무자와의 차이점, 심리상담의 필요성과 유익함을 전달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는 새터민의 심리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개인적인 혹은 문화적인 기대가 솔직하게 표현되고 새터민 스스로가 가정하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 원인, 치료 결과에 대한 기대, 도움추구 행동에 대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적 관계를 막고 상담에 대한 저항을 가져오는 이전 생애 경험 특히 배신, 불신, 의심, 혼란감 등의 주제와 관련된 새터민의 생애사를 이해하여 이것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전달해야 한다. 정신건강 전문가 역시 이러한 행동특성이 생존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태도였음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새터민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좌절 경험으로부터 상담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두 번째, 교육의 주제는 본격적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이다. 대부분 이러한 활동은 예방 활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새터민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장애들 예를 들어,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신체화 장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일회성 강좌나 문서화된 자료, 시청각 자료로 소개할 수 있다. 혹은 문화가 바뀐 이민자나 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알려주어 내담자가 이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돕는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딪힐 차별, 부정적 대우, 세대 간 갈등과 같이 이주지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알려주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러한 예방활동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관뿐만 아니라 새터민들이 모이고 이용하는 다양한 지역 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단체, 교회, 새터민들의 여러 연합회 등 어떠한 새터민 모임과 조직이 그 대상이다. 물론 이러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초 교육이 새터민의 초기 도착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하나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심리적 불안정감을 경험하는 남한 정착 후 1년 내외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예방교육의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사회적 기능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터민들을 대상으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기술훈련, 부모역할 훈련, 분노조절 훈련, 스트레스관리 훈련,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진로결정 훈련, 분노조절 훈련, 자기표현 훈련 등의 2차적인 예방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새터민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가 여부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간결성, 실현가능성이다. 새터민들은 이러한 정신건강 교육에 필요성을 느낀다하더라도 현실적인 여건상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편이어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잘 운영되기란 쉽지 않으며 현실적인 여러 당면 문제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결하고 전문적인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새터민들이 이용하는 다른 서비스나 프로그램, 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를 이루어서 함께 전달될 수 있게 구성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 번째, 정신건강교육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질병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상담과 교육이다. 새터민들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호소를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한 치료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신체적 증상에 대한 정확한 검진과 처치를 위해서는 상담과정에서 의료기관 및 신체적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이용방법, 절차, 접근방법을 알려주고 의사의 진료를 따르도록 권고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한 오해나 불만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공인되지 않은 의료시술을 하는 곳에서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처방된 약물 복용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운동, 식이요법과 같은 건강증진 행동 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상담과정을 통해 새터민의 신체적 증상이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이 상담과정에서 분명해 졌을 때 이 사실을 내담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치료적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질병 및 건강 증진 교육 역시 정신건강 교육과 마찬가지로 예방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활용하여 전체 새터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새터민들의 주요 상담주제가 된다.

네 번째, 교육의 주요 주제는 새터민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사실 지향적 교육이다. 하나원에서 퇴원한 후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깊은 혼란감을 경험한다.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다소의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막막함과 실망감, 남한 사회에 대한 이질감과 두려움에 심히 위축된다. 이 시기에 정신건강 전문가는 새터민에게 환경에 대한 방향감을 제공하고 심리적 혼란감을 줄이도록 돕는다. 시장을 안내하는 것,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 생소한 물건

의 사용법을 익히거나 병원이나 교회, 은행과 같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사실 지향적 훈련이 중심이 된다. 이 시기에 새터민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상담자에게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역할은 준전문가나 이미 정착한 새터민들이 담당할 수 있다. 현재 정착도우미들이 많은 부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문가는 정착도우미에게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거나 질문에 대답해주며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주는 자원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교육의 주제는 새터민이 아닌 남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는 지역사회에 새터민이 처한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실태, 이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알리어 지역사회가 새터민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북한 문화 및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화간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문화와 사회적 차이를 넘어서 인간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돕는 성장 지향적 상담이며 통일 이후의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갈등과 이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 상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물론 전 지역주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새터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공동체, 학교, 직장 등이 될 것이다. 교육 내용은 자녀 교육 방법이나 학습방법,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 대처와 같이 새터민과 남한 주민이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시작한다. 그러나 참여자가 새터민과 남한 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그 교육 과정 내에 각 주제에 맞는 토론 시간을 마련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남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여러 영역에서 새터민들의 생활을 돕는 정부나 민간기관의 새터민 실무자나 정착 도우미, 학교 선생님,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새터민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 일상생활에서 이들을 돕는 정신건강 준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새터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 주민과 새터민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새터민에 남한 사람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새터민의 문화적 배경과 심리적 환경, 성격적 특성을 잘 이해하여 새터민과 원활한 소통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 새터민과 지역사회 자문

교육과 더불어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는 여러 형태의 자문 활동을 할 수 있다. 자문은 크게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새터민들은 특히 남한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자녀의 진학이나 학업, 양육,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다. 새터민 상담은 처음엔 개인을 대상으로 접근하더라도 대부분 그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가족 전체가 정신건강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담에 대한 선호가 낮고 상담에 참여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가족성원 전체가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 상담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새터민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문에 대해 상담자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러한 자문활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문제해결에 활용하도록 돕는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남한 주민 혹은 지역사회에서 새터민과 관련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새터민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의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서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기관 자문을 할 수 있다. 때로는 새터민을 고용하는 직장의 고용주를 직접 만나서 새터민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두 문화의 중재자로서 기능 할 수도 있고 새터민과 일할 때 생기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해줄 수 있다.

다. 자원 동원 및 연계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는 자원 동원가이며 의뢰자, 연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새터민들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오지 않는다. 경제적인 문제, 구직, 능력부족, 질병, 진학, 지역사회 정보 부재, 정신건강 등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안고 전문가를 만난다. 문제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삶 전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한편으로는 이런 무력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문가의 욕구는 새터민의 문제를 해결해줘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바뀌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새터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심리적 탈진과 정신 건강 전문가로서의 정체감

에 대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다. 새터민을 만나는 정신 건강 전문가의 직접적인 문제해결은 두 가지 점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첫째는 이러한 심리적 탈진과 정체성의 혼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터민을 문제를 해결해줘야만 하는 문제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점이다. 별 다른 도움 없이도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인간 존재로 새터민을 바라보는 시각에 타격을 입는 것이다. 이것보다는 새터민에 대해 여러 가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바람직하다. 지금도 잘 지낼 수 있지만 여러 자원에 더 잘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인생의 문제를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는 새터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러 자원을 알려주고 이에 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새터민 지원기관의 적응 프로그램, 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여행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여러 형태의 캠프, 남한 주민과의 만남 및 모임의 자리, 종교적 모임, 과외나 학원 정보, 학습 도우미, 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근로의욕프로그램에서 법률지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자원에 연결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원의 활용방법을 알 수 있게 도와주고 이용 중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잘 구성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라든지, 학습 도우미와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남한주민과의 만남에서 생겼던 갈등에 대한 해결, 의료기관의 이용방법 상의 불편 사항 등 자원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 심리 상담

마지막으로 심리 상담을 통해 새터민의 정신적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주된 개입방법으로서 알려져 있지만 새터민 상담에서는 기대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첫째로 새터민들이 겪는 심리적 장애로 상담의 주요 주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심한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발병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따라서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다룰 전문적 지식 기본적인 심리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신적 외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의미와 외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져 올 변화를 어려움을 겪는 새터민에게 설명한 후, 편안하고 안전하며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외상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여 외상 경험과 감정반응이 잘 연계되고 경험이 인지적으로 잘 조직화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치료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여러 증상 중 현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증상을 먼저 해결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움이 되는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 등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때로는 새터민이 겪은 외상적 사건의 잔혹성, 재앙의 치명적 성격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⁵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한 후 안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지만 과거의 괴로움을 상기시키는 촉발 사건에 의해 다시 재발하기도 하므로 가족의 북한 탈출, 중국이나 제3국에 있는 가족의 북한 송환, 경제적 어려움, 사기, 인간관계의 배신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발생할 때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새터민들의 다양한 가족 문제는 상담의 주요 주제가 된다. 새로운 문화에서의 성 역할 변화로 인한 갈등, 문화적응의 양상과 속도 차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이혼과 재혼 그리고 중혼문제, 탈출과정에서 생긴 복잡한 가족사에 얽힌 가족 간 갈등,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불안감, 죄책감의 등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 이러한 문제를 상담함에 있어서 가족 안의 갈등의 원인이 일부분 환경적이고 문화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새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혼란이 문화가 바뀐 가족들이 대부분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보다 잘 이해하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고 가족 성원의 것을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과 함께 이혼, 별거, 재혼, 중혼, 자녀 양육, 남한 입국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가족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자원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어쩔 수밖에 없었던 탈북과 그 탈북으로 인한 가족구조가 파괴된 것에 대한 슬픔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탈북의 의미와 생존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때론 북에 남은 가족의 탈북에 대한 결정과 시도가 모두 끝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게 된 정착 후 수년

⁵⁰ J. D. Kinzie and J. Fleck, "Psychotherapy with severely traumatized refugee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1 (1987), pp. 82~94.

이 지난 새터민들에게 뒤늦게 고향이나 가족의 상실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 시급했던 생존의 문제로 인해 의식 깊숙이 묻혀있었던 고통스러웠던 기억 등에 직면하고 우울해질 수 있으며 뒤늦은 상실감과 슬픔이 새터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정착 초기에 있는 새터민이나 주변의 일반 남한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는 이러한 슬픔과 상실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상담과정 중에 다루어 나가야 한다. 또한 가족 간의 문제가 북한에서 생활할 때 겪었던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개인사나 가족사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새터민들이 상담 중에 호소하는 중요한 주제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다. 직장을 어렵게 구하고도 직장에서의 직장 상사 혹은 동료와의 갈등으로 직장을 지속적으로 다니지 못하거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다른 새터민이나 남한 사람들과 지지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주제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사소한 오해로부터, 차별감이나 무시당하는 느낌, 갈등 상황에서의 분노 폭발 등의 주제를 담고 있다.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새터민의 인간관계 갈등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전문가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 여러 다른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담해야 한다. 북한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방식과 사회적 단서에 대한 이해, 사회적 행동의 의미와 남북한의 차이가 분명하게 자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새터민들이 차별 당했다든지 무시당했다고 할 때 정신 건강 전문가는 이것이 진정한 차별인지 아니면 내담자의 주관적 이해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기 어렵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이러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태도에 따라 판단하기 쉬우며 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객관적 사실을 밝히기 위한 시도는 자칫 비효율적인 질문으로 연결되기 쉽다. 이때 상담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새터민이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했다는 감정과,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에 대한 지각, 대처전략의 부재로 인한 좌절감,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이다. 차별과 무시로 인한 좌절감을 이해하여 문화적 체계 안에서 새로운 문화의 상호작용을 이해해 나가는 새로운 대처 전략, 보다 현실적인 대처전략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또한 차별감이나 무시에 대한 대응으로 인간관계에서 폭발적인 감정을 보일 수도 있다. 극단적인 정서적 표현은 북한 문화의 영향력 중 하나이며 동시에 현재 좌절과 탈북 과정에서의 겪은 수많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하고 지지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새터민들이 상담자에게 가장 많이, 비교적 손쉽게 개방하는 심리적 어려움은 구직에 대한 어려움, 진로나 직종을 찾는 것과 관련된 문의가 될 것이다. 새터민들의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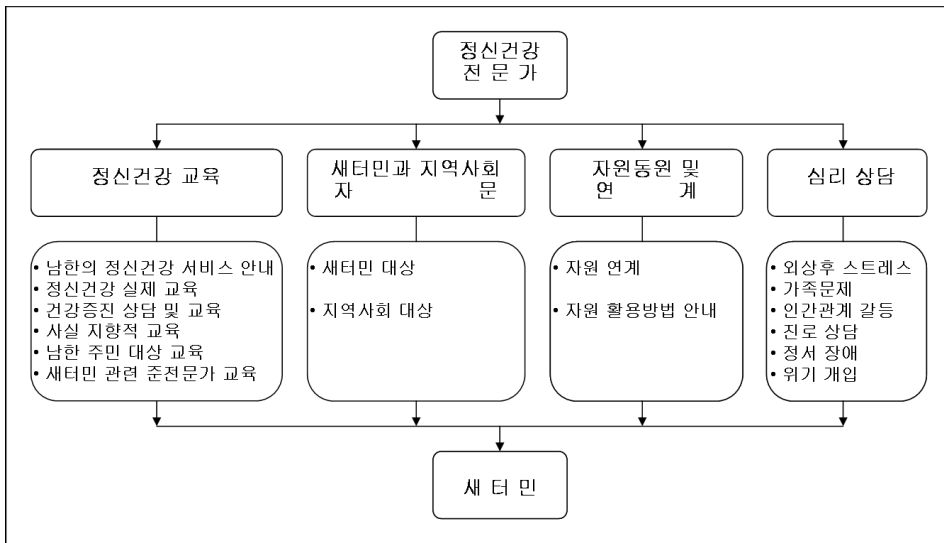
업적인 안정과 이를 통한 경제적인 적응은 단순히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이들의 정신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북한의 직장생활에서 요구됐던 기술, 능력, 자질 등은 남한에서 직업을 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결과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한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의 하락과 더불어 좌절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당장 생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직종을 개발하기보다는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간제 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 남은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 이동이 많은 새터민들은 정규직에 근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직장생활에서도 필요로 하는 능력부족, 직장 문화에 대한 이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보다는 생계지원급에 의존하는 경우들도 생긴다.⁵¹ 이렇게 새터민들의 진로와 구직의 문제는 단순히 진로 선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동기나 태도, 기술, 적성, 직업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 심리내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매우 복합적인 부분이다. 즉, 새터민들의 직업선택과 직장생활의 문제는 남한사회에서 새터민들의 현존재와 당면과제의 모든 역동이 드러나는 곳이다. 이에 정신건강 전문가는 적성탐색, 직종 탐색, 직업훈련, 근로 의욕고취, 직무 만족, 자원연계 등의 모든 논의가 이러한 다양한 변수와 한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새터민들은 북한에서의 능력과 지위에 걸맞은 직업을 발견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분노,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과 생활 전반의 깔려있는 모호함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극단적인 향수와 외로움, 극심한 불안감을 경험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탈북이나 생업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후 정착과정에서 미뤄두었던 상실감이나 정서적인 문제들을 표현할 수 있다. 처음에 기대했던 남한 생활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으로 조정되면서 한편으로는 좌절감과 우울함을 호소 할 수 있으며 남한 사회에서 느끼는 차별감과 무시감, 자존감 저하 등에 대한 감정으로 폭발적인 분노감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들에 대해 상담자는 매우 지지적으로 개입하면서 그동안 성공적이었던 문제해결전략과 변화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지역 사회의 새터민들과, 혹은 남한 사람들과 여러 형태의 관계망을 유지하면서 정체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자로서 작용해야 한다.

⁵¹ 김희순, 「북한사람 남한에서 성공하기: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 3년간의 직업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p. 86~87.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대처자원이 일시에 무너지는 경험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착에서 성공한다. 다만 그 중 작은 수는 정착과정에서 현실의 요구에 압도당하고 적응을 못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증 같은 정신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주로 인한 상실, 결혼 실패, 구직실패 등과 같은 이주과정에서 비롯된 심리적 환경적 문제가 기능 장애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가 주요 우울장애, 약물, 음주, 자살사고와 같은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정신증적 망상, 기질적 이상 없이 지속적이고 다면적인 신체적 증상호소, 주위의 사소한 요구도 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나 과도한 약물 사용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내담자에게는 입원치료와 약물 치료, 심리 사회적 자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위기개입과 장기적 치료 전략이 필요하며 동시에 내담자를 아픈 환자로서 낙인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 적응 실패, 가족 해체, 환경적인 격리, 실존적 위기와 같은 주제들이 지속적인 상담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림 1> 새터민 정신건강 개입 전략



2. 전문인력 구성과 역할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의 인력은 전문가와 준전문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심리학, 사회복지학, 의학, 간호학 등의 정신건강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정신건강 분야에서 수년간의 실무경험과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새터민들의 정신건강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다학제적 팀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들의 학문적 배경 및 훈련 영역과 가장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상 이러한 연계가 불가능할 때 상담자는 새터민 정신건강 지원 영역과 개입형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적절한 훈련과 전문적 연계를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학제적 팀은 심리학, 사회복지학, 의학, 간호학 등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 자문, 자원동원, 심리 상담에 주요 활동가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필요시 정착 도우미나 학교 선생님, 자원 봉사자, 새터민 담당 실무자와 같은 준전문가의 자문과 교육을 맡게 된다. 심리사는 상담과 심리평가, 정신 건강 교육에, 사회복지사는 자원동원과 연계, 지역사회 교육, 간호사와 의사는 질병 및 건강 교육과 약물치료 등의 자신의 학문 분야의 전통적 역할에 익숙하겠으나 현재 이러한 역할 분담이 현장에서 뚜렷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개입방법, 주요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전문성의 수준과 한계를 자각하고 가능한 다른 전문가들과 연계를 가지려는 개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다학제적 팀의 구성은 가장 능숙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개입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장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서 오는 역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활동보다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역할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하는 갈등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개입방법과 그에 따르는 역할에 따라 전문가에 대한 새터민들의 기대도 달라지며 전문가가 내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의 한계도 달라진다. 따라서 다학제적 팀의 구성은 전문가가 역할에 따른 한계 안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준전문가는 정신건강 분야 및 새터민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지거나 이를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조력관계 형성 및 분명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써 새터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진 남한 사람 혹은 이미 정착한 새터민들로 구성될 수 있다. 현재는 새터민 정착도우미나 보호 관찰관, 새터민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와 같은 지역사회 모임의 이웃, 청소년 새터민이 많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준전문가는 새터민들과 지역사회 내에서 교류하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새터민들을 전문가와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새터민을 지역 공동체나 모임에 연결하고, 새터민들의 정착 초기에 필요로 하는 사실 지향적 훈련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새터민들의 정서적인 지지자이며 따뜻한 이웃으로 활동하며 새터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때 반응하는 정서적 지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다학제적 팀의 운영과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협력은 여러 지원 모델에서 가능할 것이다. 일반 진료소와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모델, 탈북자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 중심모델, 학교 상담실이나 사회 사업실을 중심으로 한 학교모델,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모델 등 어떠한 모델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모델이 잘 운영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기존의 모델이 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충분히 잘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터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심리적인 부담이나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의료모델은 전문적이고 신체적, 심리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에 있어서는 이점이 있으나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고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학교모델은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예방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학교 상담실이나 사회 사업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⁵²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민간단체를 통한 서비스는 새터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무엇보다도 민간단체 담당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민간단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전문성과 접근성을 가장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은

⁵² 이상민·안성희, “학교 상담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담학 연구』, 제4권 2호 (2003), pp. 281~293.

지역사회 중심모델이다. 물론, 정신보건센터 역시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반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한다.⁵³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의료기관, 지역 학교와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복지관은 단점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새터민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개입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관은 새터민 지역협의회 및 관련 민간단체들의 활동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하나원과 연계하여 만성적 어려움이 있거나 정신건강에 취약한 새터민을 지역사회 정착 초기부터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학제적 팀의 구성 역시 지역중심의 기관연계로 가능해질 수 있다. 대체로 지역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활동하며, 정신보건센터와 의료기관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상담기관은 상담심리사, 학교는 상담심리사나 학교사회사업가들이 근무한다. 따라서 새터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연계모델을 구축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확립한 후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결 론

새터민들의 정신건강 지원의 기본적인 가정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새터민의 역사와 사회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현실에 민감하고 이해하며 깊이 뿌리내린 외상과 상실을 이해하는 독특한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새터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히 정신건강상의 취약성이나 성격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독특한 사회 안에서 교육받고 만들어진 인지적, 행동적 적응양식과 생존하기 위해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경험들이다. 따라서 새터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북한 사회와 새터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북한 사회와 새터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은 고정적이고 확립된 모델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는 개입방법과 개입방향을 창출해 나가는 만들어가는 모델이 될 것이다. 새터민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

⁵³ 임태완, “새터민의 재 적응 토대마련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모색,”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p. 315.

으로 한 조력과정은 서비스 전달 방법이나, 전문가 역할, 지원 구조들을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방향으로 융통성 있게 변화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조력 방법에 있어서도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된 전통적인 방법이나 이론적 틀을 강조하기 보다는 현장 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효율적인 개입방법을 발견해 나가는 개방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어떠한 지원과 치료적 개입이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고민 하에 매 순간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결과는 실험 과정을 통해 보다 민감하고 효과적인 개입전략, 나아가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조력 모델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새터민들의 정신건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양성과 이들 간의 연결망의 구축이다. 새터민들은 이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사회적으로 요구될 정도로 수적인 증가를 보였다. 물론 수년 전에 비해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의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또는 기존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새터민 조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교육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심리적 외상에 대한 대처방법, 자원연계와 자문, 심리 상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더불어 북한 사회와 문화, 새터민의 역사와 심리적 현실, 다학제간 팀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형태의 학술모임이나 연합회 활동과 함께 전문가들 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것이다.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연계는 새터민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여러 논의에서 반복되어 지적된 바 있다.⁵⁴ 그만큼 새터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며, 문화, 취업기회, 가족상황 등의 환경과 직업 훈련, 경제적 자활서비스, 신체건강 등의 다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이나 취업지원, 의료 지원과 같은 다른 지원체계와의 연계, 다양한 지역사회 새터민 모임이나 후원기관과의 연계, 전문가 집단 간의 연계와 균형은 정신건강 개입이 실효성을 거두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새터민의 정신건강 조력에 있어서 새터민을 병리적인 문제 있는 내담자가 아닌 긍정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인간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성장지향적인

⁵⁴ 전우택·윤덕룡,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경제적 자생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2004), pp. 111~112; 김선화, “지역복지관 중심의 새터민 건강지원 모형의 실제” (새터민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모형의 개발, 2006), p. 10; 김창오 “새터민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소개,” (새터민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모형의 개발, 2006), pp. 36~37.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내재적 힘을 발견하고 발휘하며 문제 상황이전보다 더 자신을 발전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새터민의 강점과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전문가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외적으로는 새터민들의 정신건강 지원에 동료 새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된다. 북한에서의 교육 및 생활에서 육성된 긍정적인 인성적 자질들과 탈북과정에서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가치와 영적인 자원들이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남한 사회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또한 새터민 자체가 동료 새터민의 정신건강 지원의 중요 역할이 되어야 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새터민 공동체의 리더나 중요 인물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활동에 새터민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새터민들은 조력 모델의 준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될 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새터민 정신건강 지원의 대상은 새터민만이 아니다. 새터민은 남한 사회에 들어와서 새터민 자신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새터민과 관계를 맺는 학교와 일터와 이웃의 사람들에게도 불편함과 긴장을 가져온다. 이러한 긴장이 남한 사람들에게 새터민으로 인해 받지 않아도 될 긴장을 받는 쓸데없고 짜증스런 긴장이 아니라, 차이를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개인적인 성장과 나아가 통일을 연습하는 적극적인 기회로 이해되는 창조적인 긴장이 되게 하는 것이 새터민 정신건강 개입의 또 하나의 목표이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

북핵 신 전략 구상: 한·미·중 연대 강압외교 전략

최 중 철*

I. 서론	구성
II. 북한 핵 위기 경과, 대응 전략 평가 및 쟁점 환경 변화	IV. 북한 핵 대응 “한·미·중 연대 강압외교 전략”
III. 북한 핵 대응 “강압외교 전략”의 이론적	V. 결론

Abstract

A New Strategic Initiative on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e ROK-US-China Coalitional Coercive Diplomacy

This study is a new proposal to break the standstill through “a strategy of ROK-US-China Coalitional Coercive Diplomacy.” As of the end of the 2006, the second round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come to a standstill. The Six-Party Talks, being led by the China since 2003, are not seemingly to bear fruits in a near future. It is not probable that China would abandon North Korea, even though it unexpectedly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sanctions by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of No. 1718. It is due to the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as a buffer state between China and the US. The US is not possible to drive power out its long lasting tough stance against North Korea by neither giving up counter nonproliferation policy nor withdrawing its

PSI and financial sanctions. The influence and leverage of South Korea over the North is not much significant in the process of resolution of the issue.

Against this background, the time has come to devise a new strategy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at is a strategy of ROK-US-China coalitional coercive diplomacy. To persuade North to do away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he three countries need to establish a coalition to coordinate their policies and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 The coalitional coercive diplomacy as an alternative to war is a device to conducive to the stability in the region, as well as a coordinated manag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Key Words: coercive diplomacy, Six-Party Talks, coalition of the will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ercion and counter coercion, dynamic contest

* 국방대학교 교수

I. 서론

1993~94년 1차 북한 핵 위기가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의 북한 방문 및 김 일성과의 회담으로 진정된 지 약 10년이 지난 2002년 10월 북한 당국이 HEU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북한 핵 위기는 다시 살아났다. 이는 북한이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 불참을 통보한 데 이어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한 데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10월 15일 유엔 결의안(1718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¹ 작금의 2차 북핵 위기는 핵실험을 통한 핵 보유국의 위상을 확보하여 체제 안정 등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북한과 이에 맞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업고 패권적 세계질서 유지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는 미국 사이에 강압-반강압 외교(Coercive-Counter Coercive Diplomacy)적 대치를 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² 만약 이 북·미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그 결과는 한반도의 파국이자 동북아 세력 균형의 와해이며 그리고 국제 핵 질서의 재편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북한 핵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위기는 1993~94년 1차 위기 이후 지금까지 완급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으며 최근 그 종점으로 치달는 듯하다. 따라서 북한 핵 위기를 최소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전략이 나와야 할 때가 되었다.³ 단속을 거듭한 6자회담도 기대할 해결 방안을 생산

¹ 가장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문제 분석은 최중철,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월간 U-안보리뷰』, Vol. 7 (2006.8.15); 이상근, “북한 핵 실험 파장과 우리의 대응,” 『월간 U-안보리뷰』, Vol. 9 (2006.10.15) 참조할 것.

²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인 강압 외교이론과 실제에 관한 최근 연구들 가운데 일부로서 Robert J. Art and Patrick M. Cronin, eds., *The United States and Coercive Diplomac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3); Daniel Byman and Matthew Waxman, *The Dynamics of Coerci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Military M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eter Viggot Jakobson, *Western Use of Coercive Diplomacy after the Cold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Lawrence Freedman, ed., *Strategic Coercion: Concepts and Cases* (Oxford: Oxford University, 1998); Robert A. Pape, “Coercion and Military Strategy: Why Denial Works and Punishment Doesn't,”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15, No. 4 (December 1992); Alexander L. George, *Forceful Persuasion: Coercive Diplomacy as an Alternative to War*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1);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2nd ed. (Boulder: Westview Press, 1994); Robert O. Keohane, “Multilateral Coercive Diplomacy: Not ‘Myths of Empire’,” November, <http://www.ciaonet.org/special_section/iraq/papers/ker02/ker02.html> (2002) 등이 있다.

³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견해를 같이하는 연구 및 기타로는 김태효, “북핵, 이제 승부를 걸어야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새 전략은 북한이 사실상의 9번째 핵무기 보유국의 위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장민주적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스스로 핵 무용론을 자인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진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비확산 세계 전략 차원의 접근과 비효율적인 강경책 일변도 전략이나 중국의 소극적인 유화 일변도 및 북한을 세력권 내의 완충국가로 간주하는 지정학적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역시 북한의 핵 보유를 단순히 남북공조의 관점에서 포용정책 혹은 화해협력정책 차원에서만 다루는 자세는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불어서 현 정부가 천명한 북핵 3원칙⁴ 중 하나인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 원칙이 구현되는 전략은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 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쟁점 환경은 눈에 띄게 변했으며 이는 북핵 해결 구도와 전략을 새로이 구상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시적으로 변화된 쟁점 환경(issue conditions)-관계 국가의 수와 전략, 쟁점의 성격과 특성, 시간/공간적 상황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북한 핵 대응전략으로 역내 핵심 관계국에 의한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전략이 바람직하다. 더 구체적으로는 새 전략은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을 바탕으로 하고 한국이 전략 수행의 촉진자인 동시에 제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3국간의 긴밀한 연대(collation) 속에서 평화적 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제한적 무력의 사용 및 사용 위협의 뒷받침을 받는 외교적 방법인 “한·미·중 연대 강압외교 전략(Strategy of Coalitional Coercive Diplomacy)”이라 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강압외교 전략은 설득과 타협 등 순수한 외교적 수단과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제한적 무력 사용과 사용 위협 등 다양한 외교 및 무력 수단을 동원하는 오케스트라식 전략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략 보다는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⁵ 다만 관계국의 참여 의지와 자원을 동원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이 참여국 사이에 적절히 배분되어 실행될 수만 있다면 그러할 것이다.

한다.” 『조선일보』, 2005년 5월 9일. 이 외에 북한 핵 문제의 긴박성에 대한 보도는 많다. 그 가운데 윤영찬, “한나라 ‘북핵’ 최악의 시나리오 마련하라,” 『동아일보』, 2005년 5월 5일; “북핵 증대 국면,” 『조선일보』 사설, 2005년 5월 5일; “북핵 ‘갈림길...과련국 행보 ‘긴박,’” 『중앙일보』, 2005년 5월 6일; “북핵 진상을 알고 싶다,” 『중앙일보』 사설, 2005년 5월 4일; 박신흥, “북핵 위급성 첫 공식화,” 『중앙일보』, 2005년 5월 5일 등이 있음.

⁴ 노무현 정부가 선언한 북핵 3원칙은 첫째, 북핵 불용, 둘째, 평화적 해결, 셋째, 한국의 적극적 역할 등이다.

⁵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의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평가도 있다. 조민호, “94년 여름과 올 여름,” 『세계일보』, 2005년 5월 18일.

이런 시각에서 이 연구는 재발한 압과 같은 북한 핵 문제 해결 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미·중 연대 강압외교 전략’은 6자회담과 병행 추진되는 가운데 삼국을 중심으로 일본, 러시아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 등이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현재의 분산적인 대북한 협상 전술을 통합적이고 구심점 있게 만들며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북한 핵 문제가 처한 현재의 환경과 지난 경과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주요 장애물을 찾아낼 것이다. 이어서 변화된 북한 핵 쟁점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 접근 시각과 강압외교 전략의 이론적 골간을 설명한 후 한·미·중 삼국간 “연대 강압외교 전략”의 주요 내용을 개념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II. 북한 핵 위기 경과, 대응 전략 평가 및 쟁점 환경 변화

1. 북한 핵 위기 경과

제 1차 북한 핵 위기를 마무리 지었던 1994년 10월에 체결된 북·미간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는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다. 미국은 물론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도 더 이상 제네바 합의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일차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 관련 거짓 행동을 했고 핵무기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비핵 합의를 어겼으며 국제사회의 비확산원칙에 도전했기 때문이다.⁶ 더불어서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도 북한 핵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행정부 교체에 따른 대북핵 정책 의지의 변화와 진전한 자세의 부족 그리고 정책자원이 중동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소홀함 등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가을 북한 당국이 농축우라늄 핵 계획을 공개할 때까지 제네바 기본합의는 여러 소규모 위기들을 견디며 명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야망은 현실화 되지 못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1992년의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핵비확산 조약(NPT), IAEA 등 몇 개의 국제적 협정들에 정면 도전을

⁶ William M. Drennan, “Nuclear Weapons and North Korea: Whs Coercing Whom,” Robert J. Art, and Patrick M. Cronin (eds.), *The United States and Coercive Diplomac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3), p. 198.

자제한 때문이었다.⁷

2002년의 HEU 공개로 시작되고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로 조성되기 시작한 제 2차 핵 위기를 관리,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한국 등 동북아 지역의 5개국들은 북한의 동의로 6자 회담을 북경에서 개최하기 시작했다. 북경 6자 회담은 중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 덕분에 2004년 초까지 3차례 개최되기는 했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다. 그 사이에 2차 핵 위기가 서서히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3월에는 스스로를 핵 국가로 자임하면서 6자 회담 대신에 핵군축 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2005년 9월 19일 6자 회담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나 북한과 미국의 조문 해석을 둘러싸고 다시 반목의 길로 들어서면서 북핵문제 협상은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동안 미국이 2005년 9월 BDA 계좌를 동결하는 등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에 돌입하고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 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으로 맞서는 등 대미 반강압(counter coercion)을 계속하자 미국 등 국제사회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하여 다시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더욱 엄격히 대응했다. 북한에 대한 더욱 엄격한 대응책이 이전과 달리 의미가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했다는 사실이며 동시에 PSI를 통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물질의 이전을 저지하고 금융제재로 김정일의 리더십에 타격을 가하며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화로 외교적 압박을 증대하고 나아가 군사적 제재를 하나의 옵션으로 배제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등 종합적인 압박책이 보다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2002년 HEU 계획 발표 이후 NPT 탈퇴, 핵무기 보유 선언 및 6자 회담 불참 선언 그리고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실험’을 통한 핵국가 위상 확보 등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한 게임 주도권 장악을 위한 “확전 우세(escalation dominance)”를 유지하려는 압박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지원의 단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강압과 반강압(coercion and counter-coercion)의 역동적 경합(dynamic contest) 과정에서 북한은 계속 주도권을 잡아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반강압 전략에 대해 미국과 중국 및 한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⁷ *Ibid.*, pp. 196~197.

2. 북한 핵 대응 평가

2002년 2차 핵 위기가 시작된 이래 미국 등 6자 회담 당사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는가? 최근 2차 핵 위기 동안 북한은 HEU 계획 발표, 핵 무기 보유 선언,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 등 확전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중단 없이 구사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치밀하게 계획된 소위 벼랑끝 전술식 위기 조장 전략에 대해 대응 국가들은 대체로 반응적이었다. 또한 미국이 대응 전략의 주도국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대테러 전쟁과 중동 사태에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에 몰두한 나머지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6자 회담의 5개 대응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통합되고 조율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03년 시작된 6자 회담은 춤추었으나 어떤 의미 있는 결실을 생산하는 데는 실패했다. 6자 회담의 결실로서 2005년의 9.19선언은 가뭄의 단비로 평가되나 그 후속 과정은 동 선언을 “안타까운 과실”에 그치게 하고 있다.

북핵 대응과정에서 한국은 북한 핵의 직접적 위협 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계 핵비확산 전략에 의존해 왔다. 동시에 한국은 북한 핵이 일본과 대만 등의 핵무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중국의 대응에 기대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대외 의존적 자세와 함께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개발 등 경제 지원 등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주력하였다. 또한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간자를 자임하며 북한에게 핵 포기를 설득하고 미국에게 협상 자세의 유연화를 주문함으로써 북·미간 타협을 유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⁸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북핵 원칙으로서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 및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내세우면서도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핵실험은 ‘핵불용’ 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원을 계속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원칙의 철저한 적용을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⁹

더불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문제점은 해결책 접근 시각이 확연히 양분되어 있는 것이다. 한 시각은 한·미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⁸ 김근식,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한국의 선택,” 『미래전략연구원 논단』 (2005.5.13).

⁹ 한국의 대북핵 협상 실패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문창극, “북핵 방향을 끝내라,” 『중앙일보』, 2005년 5월 2일.

주장하고, 다른 시각은 이러한 보수 진영의 주장과 달리 탈미 자주와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이 양분된 시각은 북한의 반강압 전략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를 초래시키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최근 중국의 대화 중심의 북핵 해결 노력이 강화되자 동맹국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중국의 대응책에 경사된 자세를 보임으로써 북한에 보다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한편 미국은 1차 핵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술적이고 임시변통적(ad hoc)인 접근을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핵 협상테이블에 중국의 부장관급 대표에 비해 차관보급 협상 대표를 내세우는 등 고위급 외교를 통한 해결 의지도 보여 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북핵 위기가 파국에 이르지 않았던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 즉 카터 대통령의 개입 덕분이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파국의 모면이었지 문제의 해결은 아니었다.¹¹ 이러한 미국의 북핵 정책은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차 핵 위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 도전에 대해 대응태세(posture)를 갖추고 있었지만 부시 대통령의 북한 불신, 북한 고립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협상 우선의 온건파 간의 갈등, 그리고 다자 접근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끌어낼 정책(policy)은 없었다.¹² 부시 행정부 출범 당시에는 이라크 사태에 몰두하여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기 어려웠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일관되게 패권적 강압책 일변도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대체로 미국의 대북핵 정책은 봉쇄와 제재의 플랜 B - 위기 해결을 위한 평화적 방책(A안)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봉쇄와 제재 등을 통한 김정일 정권 붕괴 시나리오 등 - 를 과장하는 미국 언론의 부풀리기와 네오콘의 음모적 시각도 문제를 야기했다.

미국의 대북한 핵전략은 수사적으로는 강경하나 수동적이고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PSI나 북한 인권법 등은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의 2기 취임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을 자유 민주주의 확산 대상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 쟁점과 관련하여 김정일을 “폭군”으로 부르고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부르는 등 ‘자유’를 강조하는 시각에서 북한을 언급하고 있다.¹³

¹⁰ 배명복, “북핵의 마지노선,” 『중앙일보』, 2005년 5월 1일.

¹¹ William M. Drennan, “Nuclear Weapons and North Korea: Who’s Coercing Whom,” p. 194.

¹² Larry A. Niksc, *Korea: US-Korean Relations-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Order Code RL 33567, July 21, 2006), p. 2.

이에 반해 중국은 북한 핵이 실질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경제 협력 확대라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록 미국의 입장이 강경한 압박으로 기울더라도 이러한 중국 자체의 기조는 허물지 않아 왔다.¹⁴ 즉 중국은 북핵은 “물지 않고 짓기만 하는 것(a louder bark than bite)”으로 간주하고 채찍보다는 당근 우선의 대북 핵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¹⁵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는 반대하나 완충국가로서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북한을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아가 중국은 북한 핵보다도 체제 와해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이 중국의 ‘소강사회’ 건설 전략에 더 위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더하여 중국은 미국이 이라크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었듯이 미국의 일방적 주도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6자 회담 5개국들간의 대응 전략의 보조가 맞지 않고 있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북핵 해결책으로 리비아 모델을 옹호하는 데 비해 중국과 한국은 우크라이나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¹⁶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강경 태세를 중심으로 설득보다는 압박 우선의 정책을 구사하고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지원과 협력적 자세를 앞세우고 있다. 즉 미·일과 한·중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선악(bad guy, good guy) 역할을 나누고 한 진영에서 강압책을 쓸 때 다른 진영은 유인책을 쓰는 등 서로 상반된 전략과 전술로 맞서는 양상을 보여 왔다.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1, 2기 북핵 위기를 거치면서 북핵 문제는 북한측의 문제점은 차치하고 대응국가들의 조율된 정책 부재와 이들이 만든 장애물들로 인해서 해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양국간 문제처럼 취급되는 것 같았고 해결 노력도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또한 미국의 강경책과 중국의 유화책이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기대하고 중국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중국은 미·북 불신이 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가 불충분하며 북한 편들기를 계속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북한이 대

¹³ Larry A. Niksch, “부시 취임사와 대북한 정책,” 『조선일보』, 2005년 1월 31일.

¹⁴ 최원기·유광중, “중국, 대북 식량수출 제한 검토,” 『중앙일보』, 2005년 5월 9일 <북중 무역 통계 그림>.

¹⁵ John S. Park, “Inside Multilateralism: the Six Party Talks,” *Washington Quarterly* (Autumn 2005), p. 83

¹⁶ *Ibid.*, p. 79. 리비아 모델은 핵무기 계획을 먼저 포기하고 국제체제로 복귀하는 것임.

남한 핵우산 논리¹⁷를 펴면서 한국의 북핵 대응체제에 틈새를 만들어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기까지 하고 있어 북핵 해결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다.

3. 쟁점 환경의 변화

북한의 핵 실험 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환경은 눈에 띄게 변했다. 여기서 논의될 북핵 쟁점 환경의 가시적 변화는 북핵 해결 구도와 전략을 새로이 구상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거시적이고 뚜렷한 변화는 미국, 중국, 한국 등 삼국의 북핵 해결 접근 시각이 점진적이거나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국 모두는 유엔 결의안 1695호(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대응)와 1718호(북한 핵 실험 대응)를 채택하면서 조율된 압박 조치를 취하는 데 과거에 비해 상호 접근하게 되었다. 먼저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제한적이며 핵 능력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공표해온 북한 문제 해결의 기초였던 ‘평화적 외교적 해결’ 기초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압이 필요하다는 데 더 무게를 두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한때 북핵 문제와 관련 ‘무시’태도를 취하다가 ‘개입’을 거쳐 북한 핵 실험 후 마침내 ‘압박’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일 자신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⁸ 이러한 미국의 태도와 전략 변화에 중국과 한국이 발을 끌며 따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핵 전략 목표가 북한 핵실험 이후 부분적으로 수정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즉 핵 폐기는 궁극적 목표이나 현재로서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핵의 제3자 이전 특히 테러집단 등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보다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⁹ 유엔의 결의안 1718호의 이행에 있어서 PSI를 통한 핵 물질의 이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미

¹⁷ 이영중, “한국, 북핵 덕 본다?” 『중앙일보』, 2005년 5월 9일. 북한 조평통은 2005년 5월 6일 “남조선은 우리의 선군정치와 핵우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족공조 논리로서 통일 되면 북한 핵은 우리 것이라는 남한 통일 지상주의자들의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¹⁸ David E. Sanger, “Few Good Choices in North Korean Standoff,” *New York Time*, July 6, 2006.

¹⁹ “라이스 핵무기, 핵 물질 제 3자 이전 방지에 합의,” 『중앙일보』, 2006년 10월 19일; “미, 북핵 보유 묵인하기로 했나,” 『조선일보』, 2006년 10월 20일.

국의 압박과 제재 일변도 전략에서 벗어나 다소 탄력적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핵 해결 전략에 있어서 부동의 기조는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 하며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는 반드시 동반자와 함께 앉는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 핵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을 동반자로는 중국과 한국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며 한국은 북한 사태에 가장 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한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서 중국과 한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공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재 쪽으로 좀 더 이동하고, 중국은 미국이 기대하는 바 대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 중국은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 1718호에 참여하기 전에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후 9월 한달 동안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금융거래의 일부를 중단했으며 그 효과는 북한이 핵실험 후 6자 회담 복귀 결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²¹ 이러한 중국의 제재 동참은 라이스 미국 무장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제재를 주권 침해로 여겨온 중국이 제재 결의안을 지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심장한 것”이다.²² 무엇보다도 이러한 중국의 대 북한 태도 변화가 근본적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나 삼국 연대를 통한 강압외교 전략이 유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대 북한 태도 변화를 군사공격 등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데 ‘푸른 신호등’으로 간주하고 있다.²³ 중국으로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내 안정을 위해 동북아의 안정과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구축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대국외교를 표방하기 시작한 중국으로서는 장차 세계 리더십을 행사하려면 북한 핵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외교 리더십은 치명상을

²⁰ Jane Morse, “Bush Says Multilateral Approach Best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Washington File*, July 7, 2006.

²¹ 후진타오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당자쉬안 국무위원은 10월 19일 김정일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반발은 절대적이다,” “우리도 같다, 어떤 이유로도 핵실험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재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를 야기할 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의 회담 복귀를 압박했다. “산케이, ‘김정일 당자쉬안 압박에 한동안 말 잃어,’” 『중앙일보』, 2006년 11월 4일.

²² “미 외교가, ‘중국식’ 북한 압박 방식 화제,” 『중앙일보』, 2006년 11월 3일.

²³ Bill Gertz, “US Speeds Attack Plans for North Korea,” *Washington Time*, November 3, 2006.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성장을 고대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세계적 대국으로서의 자격 시험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미 미국으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부여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²⁴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북한 핵실험 후 근본적 결정을 내렸다. 즉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 1718호 통과에 참여함으로써 더 이상 전통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국가이익을 최우선 하는 보통국가로서의 관계로 한 발짝 더 다가간 것이다.²⁵

한국 역시 북핵 문제 해결 전략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맥락에서만 접근하는 것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국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정치적 압박 행위’라고 보는 한편, 한국에 대한 무력시위이며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고조되고 있다.²⁶ 또한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PSI에도 참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당국의 입장이 개진되고 있으며 유엔의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등 경제지원 정책에서도 변화가 모색될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²⁷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초래할 여러 사태들, 예를 들면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나 북한 체제 붕괴, 그리고 안보 역학 구도의 변화가 한국의 장기적 안보 이익에 유리한지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이루어지면 대북 정책의 부분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 다른 쟁점 환경은 북핵 문제의 성격과 특성이다. 우선 북핵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물론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거나 체제를 전환하여 핵 보유가 전략적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결정한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렇지 않다면 수십 년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현재의 쟁점인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북한과 미국 등 주변국 또는 국제사회 사이에 지루한 줄 당기기가 될 핵군축 및 군비통제 문제

²⁴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상원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프 힐의 발언: “한반도에서 정치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미국이 어떤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득을 얻는다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태도를 보였다. “동북공정과 ‘전작권’의 환수,” 『뉴스위크』, 2006년 10월 9일.

²⁵ Stephen Kaufman, “US Welcome North Korean Decision to Return to Six-Party Talks,” *Washington File*, October 31, 2006.

²⁶ 채병건·김성탁, “북 ‘미사일 실험 계속’-합참, 무력시위 간주,” 『중앙일보』, 2006년 7월 7일.

²⁷ 박진우, “버시바우 대사 ‘한국, PSI 적절한 조지 기대,’” 『세계일보』, 2006년 10월 27일; 장인수, “유 외교차관 ‘한반도 주변서 PSI활동 못한다,’” 『세계일보』, 2006년 10월 28일; 문정인, “한국도 PSI 참여할 때 됐다,” 『세계일보』, 2006년 10월 10일.

로 발전할 수도 있다. 더불어서 북한 핵 문제를 관리 및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적 외교 수단에서부터 제한적 무력 사용 사이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

게다가 북한 체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북한 핵 문제의 진로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북한체제가 와해될 수도 있으며, 이것이 동북아 역학 구도를 완전히 비틀어 놓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은 북핵 관련 당사국들이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해결책 마련 의지를 왜곡시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는 관계 당사국들로 하여금 자국 이익을 우선하여 북핵 문제에 접근하게 만들고 결국 조율된 조치나 전략을 취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 전략 속에 북한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포함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²⁸

마지막 쟁점 환경으로서 고려되는 것은 북한 핵 쟁점이 살아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동북아 안보 역학 구도이다. 동북아 안보 역학 구도는 역동적 변화의 와중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역동적 변화의 주역은 중국의 성장이다. 중국의 성장은 가까운 장래 동북아 지역에 미·중 양두체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미·중 양두체제는 냉전시대 미·소 양극체제와 달리 비정치-군사 영역에서는 긴밀하고 복잡하게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양국이 극한적 대결로 빠져들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중 양두체제를 중심으로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미·일 동맹 체제가 위치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세계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시키려는 공동의 목표 하에 군사안보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보통국가화 전략이 완성될 때까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선을 추종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저위 정치(low-politics)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상호 경쟁하나 대결을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최근 미국으로부터의 독자노선을 강화하고 있어 한미동맹은 그 결속도가 묽어지고 있고 중국과의 통상 관계가 급격히 확대되는 데 발맞추어 북한 문제 해결 등 안보 영역에서도 중국에 경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일 관계는 한·미동맹의 소원과 한·중 관계의 발전 그리고 양국 현안들, 특히 과거사 문제와 총리의 신사참배 등에 영향을 받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²⁸ 국기연, “중국, 김정일 정권 붕괴 가능성 대비중,” 『세계일보』, 2006년 3월 1일.

한·미·일 안보 유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결국 동북아 안보 역학 구도는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와 북·중·러 삼각협력관계가 변형되어 미·일 진영과 중·러 진영의 대립 구도가 미·중 양두체제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도하에 한국과 북한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냉전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Ⅲ. 북한 핵 대응 강압외교 전략의 이론적 구성

1. 강압외교의 정의와 성격

탈냉전 시대의 다양한 분쟁에 대처하는 전략의 하나로 주목을 받는 강압외교는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처하면서 폭력을 위협하거나 제한적인 폭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국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세련된 외교의 형태”이다.²⁹ 또는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국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지에 영향을 주는 방법 또는 기술로도 정의된다.

이러한 강압외교는 “적(상대)으로 하여금 이미 시행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원상회복 하도록 설득하는 것”으로서 곧 ‘강요적 설득(forceful persuasion)’이다.³⁰ 강압외교의 초점은 위협이 아니라 설득에 있다. 즉 강압외교는 “적으로 하여금 침략을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³¹ 동시에 강압외교는 다양한 형태의 유인물(inducements)을 사용한다. 유인물로는 대상국에 제공하는 물질이거나 물질은 아니나 가시적 이득이 되는 제안도 될 수 있다. 더불어서 강압외교는 ‘값싸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서 강압자에게 적은 비용으로 큰 이득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매력적인 수단이 된다.³²

²⁹ Alexandre L. George, “Coercive Diplomacy: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Alexander L. George and William E. Simons (eds.),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2nd ed.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p. 7~11.

³⁰ 강압외교에 관한 구체적 설명에 대해서는 Alexander L. George, “Introduction: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and “Coercive Diplomacy: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Ibid.*, pp. 1~4, 7~11 참조할 것.

³¹ Alexander L. George, *Forceful Persuasion: Coercive Diplomacy as an Alternative to War*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1), p. 5.

³² Robert J. Art, “Introduction,” Robert J. Art and Patrick M. Cronin, (eds.), *The United*

<표 1> 강압외교의 3 유형

형 태	유형 A	유형 B	유형 C
내 용	진행중인 행동을 중지하도록 설득	완료된 행동을 원상회복 하도록 설득	체제 변환을 하도록 설득
설득 수단	응징의 위협/제한된 군사력의 사용, 의사전달, 협상, 교섭 등		
달성 가능성	쉬움 ←—————→ 어려움		

동시에 강압외교는 ‘무력 사용의 위협 또는 제한적 사용(the threat or limited use of force)’을 포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강압적 시도(coercive attempts)’와 구별된다. 그러나 무력의 제한적 사용도 외교적 및 과시적 사용(diplomatic and demonstrative use)에 한정하고 전쟁 직적 단계까지만 허용된다. 이런 관점에서 강압외교는 전쟁이나 군사전략의 대안인 것이다.³³ 결국 전면적 무력이 사용될 경우 강압외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최후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애초에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그러하다.

강압외교 전략은 강압자와 피강압자 사이의 일방 통행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경쟁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역동적 경합(dynamic contest)이다.³⁴ 또한 강압전략의 성공은 강압자가 피강압자의 대응 수단 선택과 쟁점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강압자의 의도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압외교 전략의 성공조건으로서 확전 우세(escalation dominance)와 압박점(pressure points)이라는 두 개념과 관련이 있다.

먼저 확전 우세란 강압국이 강압을 행사할 때(즉 위협할 때) 피강압국이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피강압국이 그 비용을 회피하거나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말하자면 확전 우세는 피강압국이 보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절대 능력 이상의 능력이다.³⁵

그리고 강압외교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강압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States and Coercive Diplomac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3), p. 7.

³³ *Ibid.*

³⁴ Daniel Byman and Matthew Waxman, *The Dynamics of Coerci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Military M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 37.

³⁵ *Ibid.*, p. 3.

즉 표적을 파악하여 위협해야 한다. 압박점은 피강압자에게는 가치있는 것이나 강압자에게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피강압자를 확실히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³⁶

2. 반강압(Counter Coercion)의 의미와 전략

반강압(counter coercion)은 피강압국이 군사력, 경제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강압국의 강압을 저지하는 것이다.³⁷ 즉 반강압은 강압국의 강압력을 약화시키거나 저지하고 확전우세를 회피하기 위해 피강압국이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강압국의 강압 정책에 반사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곧 강압국의 정책을 피강압국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반강압 전략에 따라 피강압국은 강압국의 압박점을 타격하여 강압력을 제한함으로써 강압국(또는 강압 연대)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다. 또한 피강압국은 반확전(counter-escalation)을 통해 피강압국의 저항비용은 줄이고 강압국의 정치적 비용을 증대하여 확전 우세를 무력화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피강압국은 강압국으로 하여금 전략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강압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피강압국의 반강압 전략의 유형으로 다음의 3가지가 있다. 첫째, 민간인 피해발생 전략(Civilian suffering-based strategies)은 자국 국민을 비극적 상황에 빠뜨려 강압국 및 국제여론으로 하여금 강압작전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강압 연대 분열 전략(Coalition-fracturing strategies)은 강압국의 강압력(군사력 등)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전략이다. 강압국은 강압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국간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압국은 강압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합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강압국은 강압국 또는 강압 연대의 군사력을 제한하거나 연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거나 와해시키려 한다. 셋째, 사상자 유발 전략(Casualty-generating strategies)은 강압국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군인이나 민간인 사상자를 유발시켜 강압국이나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강압을 저지하거나 강압력을 제한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최근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무사상자(No Casualty) 원칙이 중시되는 경향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³⁶ *Ibid.*, p. 44.

³⁷ David E. Johnson, Karl P. Mueller, William H. Taft, *Conventional Coercion Across the Spectrum of Operation* (Santa Monica, CA: Rand, 2002), p. 23.

3. 강압외교의 성공 조건

강압외교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다. 강압국의 능력과 피강압국의 대응 능력 그리고 양자의 전략 뿐만 아니라 상황변수 등에 따라 성공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조지(Alexander George)는 동기의 비대칭성, 즉 강압국의 위협 사용 동기가 피강압국의 반대의 동기보다 우세하다는 신념체제가 구성되어야 하고, 둘째, 긴박감의 조성 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을 상승시켜 공포를 조성하는 것, 셋째, 협상술과 의사소통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위협의 조작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군사적 수단의 직접적 위협과 흥정술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지의 성공조건을 보다 정치화하여 바이만과 왁스만(Daniel L. Byman & Matthew C. Waxman)은 강압을 역동적 경합으로 보고 2가지 조건과 강압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이들은 첫째, 성공적 강압의 관건은 확전우세, 즉 피강압국이 강압국의 위협에 저항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피강압국이 강압국의 위협을 방어하거나 반격할 수 없도록 하는 능력에 달려있다.³⁸ 둘째 조건은 강압국이 피강압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표적 즉 중요한 가치, 달리 말하면 압박점을 찾아내야 한다. 압박점은 정치체제에 따라 다르다. 통상 민주체제에 대한 압박점은 여론이나 경제상황에 있다. 그러나 전체주의 체제의 압박점은 지도층의 위상이나 권위 등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사/경제적 포괄적 제재나 국가 기반시설 공격이나 여타의 압력들은 그 충격이 지도층과 일반 국민에게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³⁹

이들 확전우세와 압박점만으로 강압이 성공할 수는 없다. 강압의 목적과 수단을 연결하는 강압 메커니즘의 적절한 활용이 강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먼저 피강압국과 가장 밀접한 지원 국가 간의 관계를 단절 또는 약화시킴으로써 피강압국의 권력기반을 침식하는 것이다. 피강압국의 집권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조장하여 사회를 동요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피강압국 지도층의 신변을 위태롭게 하는 참수(decapitation)와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성할 목적의 공격 그리고 군사적 침공을 통해 피강압국 지도부의 정치적 승리를 방해하는 작전도 강압에 굴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³⁸ Daniel Byman and Matthew Waxman, *The Dynamics of Coerci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Military Might*, pp. 38~44.

³⁹ *Ibid.*, pp. 44~47.

IV. 북한 핵 대응 “한·미·중 연대 강압외교 전략”

1. 연대 필요성과 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소수 핵심 주도 국가들이 연대를 형성하여 해결하는 전략이 이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 미·북 양자간 대화로 타협에 이르렀던 1차 북핵 위기가 재발한 상황에서 양자 대화는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이제 6자 회담이 그 바톤을 이어 받았으나 아직 실질적 효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6자 회담의 5개 당사국은 물론 유엔이나 여타의 국제기구 등을 포함하여 어느 국가도 독자적 또는 지배적으로 북핵 해결 역량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효과적인 새로운 다자간 대응체제의 출현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다자대응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동의하고 있는 최근의 쟁점 환경의 변화는 북핵 강압외교의 성공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⁰

그러면 다자대응 체제 가운데 왜 하필 한국, 미국 및 중국 삼국간 연대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이들 삼국의 정치 전략적 이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삼국은 북핵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북핵 해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를 직접 관리해야 할 책임과 부담도 함께 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결정적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 핵이 초래할 결과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국가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미·중 삼국 연대와 6자 회담 틀 내에서 실질적인 공조관계를 구축하지 않고는 엄중한 포괄적 방안(a stringent package deal)을 이행하기 어렵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대 북한 레버리지 행사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 무력 제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을 평화적으로 제거하는 효율적 다자 전략을 만들 수 없다. 한·미·중 삼국 각각의 대북한 제재, 보상, 영향, 전략 등의 역량을 총합하여 조율된 연합정책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북한의 핵무장 해제의 길이다.

북핵 해결을 위해 2003년 이래 가동되고 있는 6자 회담 당사국 일본과 러시아를 제외한 한국, 미국 및 중국의 삼국간 연대가 더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은 일본과 러시

⁴⁰ 미국은 반복하여 북·미 양자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책임을 다 떠맡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해 왔고 중국 역시 조화 세계론에 따라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각각의 주도적 역할에 비해 배후 참여자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가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는 것은 있으나 이들이 불참하더라도 회담장의 공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일본은 핵 비확산 목표와 다양한 제재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북핵 위기를 군사적 정상 국가화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인 납치사건 등 북한과의 결끄러운 관계 하에 있기 때문에 쟁점 해결 과정에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⁴¹ 따라서 일본은 미국에 의해 대표되는 것이 삼국 연대의 효율적 운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배제 역시 일본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러시아는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에 동의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쟁점 일반에 사활적 이익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사실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단이나 도구가 변변치 않으며 튼튼한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지도 못하다. 또한 러시아는 북핵 문제 관련 미국의 정책과 전략에 동조하지 않는 입장을 취할 위치에 있지도 못하다.

한·미·중 삼국 연대 강압외교 체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투자할 수 있는 각국의 능력과 전략을 종합하여 연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대북 협상 전술을 협의하는 정부간 협의체라 할 수 있다. 이 삼국 연대 협의체는 삼국의 협상 대표와 미·중의 서울 주재 대사를 중심으로 각국 2인의 대표로 구성한다. 각국 대표 1인은 6자 회담의 대표를 겸직한다. 6인의 각국 대표는 한국이 제공하는 서울의 특정장소에서 정례적으로 회합을 하고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협상 전술을 고안하며 조율된 합의를 북한에 전달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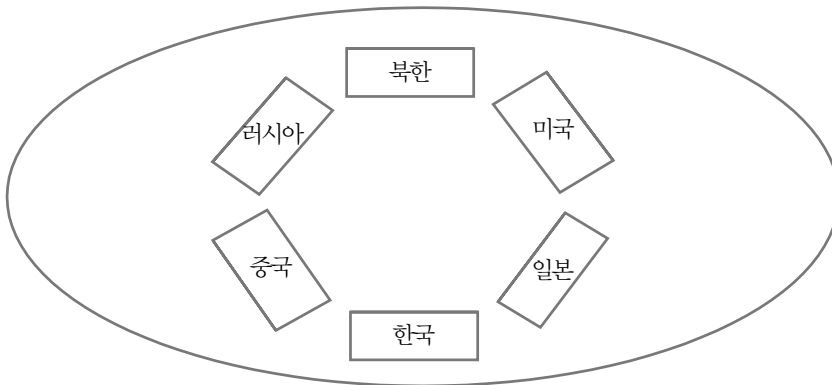
2. 연대 강압외교 전략

삼국 연대가 수립하는 연대 전략에는 그 목적, 방법, 이행 방안, 효과분석, 향후의 영향 등을 포함한다. 특히 북한 핵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제3자 이전 방지가 목적인가, 혹은 강압외교의 3유형 어느 하나를 목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3개 모두를 목적으로 할 것인가, 이 경우 이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북한이 삼국의 합의된 제안에 동의할 경우 북한에 제공할 보상은 무엇인가, 더불어서 강압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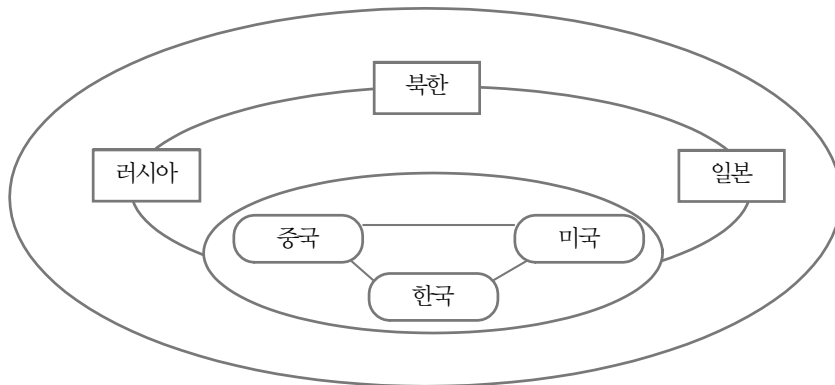
⁴¹ 사실 북한은 공개적으로 일본의 6자 회담 참여에 거부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북외무성 ‘일, 6자 회담 참가 않는 게 바람직,’” 『조선일보』, 2006년 11월 4일.

교에 불복할 경우 어떤 유형의 제재(경제, 군사, 및 정치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 북한 핵 문제를 관리 및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북한 긴급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연대 전략을 구상하고 나아가 예상되는 북한의 반강압 대응책을 개발하며 삼국 연대가 확산 우세를 지속할 전략과 대북 압박점을 발굴하는 것 등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1> 북핵 6자 회담 체제 구성도



<그림 2> 한·미·중 연대 강압외교 체제 구성도



위에서 논의한 삼국 연대 강압외교 전략은 북핵 관리 및 해결 주체로서 한·미·중 삼국이 6자 회담과 병행하면서 북한이 보유했거나 보유하려는 핵무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조율된 방책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연

대 강압외교전략의 주요 역할, 성격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미·중 삼국의 대북핵 강압외교는 순수한 외교적 수단으로부터 제한적 무력의 사용이나 사용 위협도 포함하는 광범위 전략이다. 그 목적은 강압외교의 3 유형, 즉 현재의 핵 활동 중단, 보유 핵의 폐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 전환을 통한 핵포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강압외교전략은 제한적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북한이 순응하도록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지 북한을 굴복시키는 군사전략이 아니다. 또한 대북 강압외교는 방어적이며 확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고 한국이 동의하는 제한적 무력 사용의 경우에도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그쳐야 한다. 그래서 한·미·중 삼국의 조율된 강압외교가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이 군사적 패배 없이 순응하는 경우이며 전쟁상태로의 돌입은 강압외교가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중 삼국은 북한이 순응과 저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고 북한이 설득되지 않으면 강압외교가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성격의 대 북핵 연대 강압외교 전략은 삼국 각각이 목적달성에 최적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가장 직접적 당사국이다 즉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로 인해 얻는 혜택이나 드는 비용 지불에서도 한국이 가장 큰 몫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미국의 비확산 세계전략에 맡기고 미국의 해결책에 의존하는 것은 효과적인 북핵 관리 및 해결 전략이 되지 못한다. 한국은 미국의 무력 수단과 중국의 경제 및 인도적 지원 수단을 연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자와 공동의 목표 설정과 추진을 지원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게 대 북한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을 하되 북한을 설득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무력 사용 위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무력 사용 위협 등 강압 전략을 지지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미국에게도 대 북한 압박 강도를 다원화하는 등 전략의 유연성을 높일 것을 주문함으로써 압박의 설득력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미·중 삼국 연대 강압외교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⁴² 중국은 최근 6자 회담장을 제공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또한 북한

⁴² 중국 역할론 등과 관련한 논평으로서 유광중, “북핵 문제와 중국 역할론,” 『중앙일보』, 2005년 5월 12일; “미전문가, 중, 북 핵무기 보다 체제 붕괴 더 우려,” 『조선일보』, 2005년 5월 1일 참조할 것.

에 대한 석유와 식량을 무상 지원하는 강력한 후견국이자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선봉에서 막아주는 방패국이며 북한의 의도를 미국 등에 전달해 주는 중재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분명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정치 외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대북 전략은 주변국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중국은 북한을 지정학적으로 완충국이자 미국의 대중국 봉쇄 탈출구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다. 동시에 중국 최대의 안보전략 목표는 안정적 경제 성장에 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안정은 절대적 필요 조건이다. 따라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여, 특히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을 과도하게 강압하는 전략은 구사하려 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개발보다는 체제 붕괴를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역할과 연계하여 미국의 역할은 미·중의 문제 접근 시각과 정책 수단 및 전략에 있어서 상당한 괴리가 있음에 유의하여 부여될 필요가 있다. 미·중 양국이 북핵의 확산 문제와 관련하여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중국은 북핵 해결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데 비해, 미국은 핵포기 선언이 최우선적 과제로 보고 있다.⁴³ 미국은 리비아 모델을 선호하고 중국은 우크라이나 모델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흔쾌하게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미·중 간 전략상의 괴리가 북핵 관리 및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미국은 북한과 일정 거리를 두고 외곽에서 위기의 확산을 예방하고 사후 보상(수교 등을 통한 체제 안정)을 제공하며 장기전략으로서 북한 체제의 정상화 또는 체제 변환 등에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삼국 사이에 대북 강압외교를 위한 수단별 역할 분담은 연대 강압외교 전략에 역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외교적 공격이나 경제 제재 등 강경책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고 중국은 석유와 식량 제공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은 인도적/경제 지원 등 교류 협력에 전념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 이는 연대 강압외교에 대한 북한의 저항 비용을 줄이거나 강압 삼국의 정치비용을 증대시키는 등 북한의 반확전(counter coercion)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도 공식 및 비공식 강압책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점(pressure points)은 경제제재이므로 한국과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관계를 활용하여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같은 맥락에서 미국도 강경 일변도 대북 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대화와

⁴³ John S. Park, "Inside Multilateralism: the Six-Party Talks," p. 89.

보상 제공 등 유연한 수단으로 북한을 유인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삼국간 연대 형성을 통한 대 북한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 북한 정책 우선순위의 수렴이 중요하다. 정책 우선순위 문제와 관련하여 삼국은 긴밀한 회합을 통해 대응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수렴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 핵 문제 관리 및 해결 과정에서 한·미·중 삼국이 공동으로 다루는 정책 대상은 1) 핵포기, 2) 북한 체제 유지 혹은 안정 3) 대북 인도/경제 지원 등이다.

미국이 최고 우선순위에 두는 압박과 제재를 통한 핵포기 쟁점과 중국이 우선적 과제로 보는 북한 체제 유지를 상호 조정하여 중국은 미국의 제재나 맞춤형 봉쇄에 참여하거나 또는 지지 내지는 묵인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대북 제재 공동전선 구축을 합의해 주는 상호 교환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 역시 화해와 협력 일변도 대북 정책은 항구적 한반도 안정과 위기 관리에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난 10여 년의 남북관계의 산물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게 핵은 생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국에게는 안보 위협과 남남 갈등의 근원이자 한·미동맹 약화의 뿌리임에 비추어 대화/지원과 압박/제재를 조화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한국이 선택할 조화 전략은 경제적 지원(개성공단 지속 등) 등을 제한적으로 계속하면서 유엔이 축이 된 대북 제재와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참여하고 남북 거래는 전략적 상호주의 원칙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강압외교 수단을 통시적으로 사용하고 그 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둬으로써 북한의 반강압 전략에 대응하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회귀하도록 강압과 설득을 하는 데 유용한 모든 평화 및 무력적 수단을 식별해 내고 그 효과를 분석해 둔다. 평화적 해결 수단 우선의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반드시 외교적 협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설득과 타협의 외교적 협상은 물론 인센티브 제공, 제재(경제봉쇄 및 인권 문제), 무력 사용 위협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매우 제한적이거나 무력 사용도 신중히 고려하는 등 전쟁의 방법 외에 모든 수단을 종합적으로 통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들 식별된 외교 및 무력 수단들 하나 하나의 효용성과 효과에 대해 한·미·중 삼국은 공통의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

여섯째, 강압외교의 3유형 모두를 대북 핵 문제 해결에 적용하되 비중과 실행 단계를 차별화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는 ‘비핵 북한’으로 회귀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

⁴⁴ 박진, “북한 핵문제와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일고,” 미래전략연구원 특별기고 ‘한미차세대 포럼’ (2005.6.2).

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북핵 문제는 장기간의 쟁점이다. 따라서 북한 핵 기지나 시설 등에 외교적 공격을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다한다면 북핵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비현실적일 수 있다. 북한에 의한 대남 전쟁 도발이나 북한 체제의 와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과제로서 북한의 정권 교체나 체제 변환을 통한 북핵의 제거 방안도 예비해 둘 필요가 있다.

V. 결 론

한국은 북핵 문제를 북·미간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직접적 당사국가’로서 최선의 전략을 선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달리 한국 정부는 “때론 남북관계에 쓴 소리도 해야 하고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는 대북 현실주의적 자세로 대북핵 태세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⁴⁵ 한마디로 너무 자비롭고 탄력적이며 이상주의적인 한국의 대북 핵 문제 인식과 접근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⁴⁶

긴박성이 높아지고 있는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새로운 접근 시각이 추가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이 중개자(broker)로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둘째, 최소한 한·미·중 삼국간에는 외교적 수단이든 무력적 수단이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연대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는 연합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북핵 문제를 한반도 차원이나 세계 차원보다는 동북아 지역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 인식과 접근 시각에 비추어 외교적 수단과 제한적 무력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강압외교 전략은 북핵 문제를 관리하고 중국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최적이라 할 수 있다. 강압외교 전략은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원상 복구시키는 데 유효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북한 핵을 중국적으로 포기하여 북한을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⁴⁷

⁴⁵ 2005년 4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 방문 시 동포 간담회 자리에서 언급한 말임.

⁴⁶ 장강명, “통일부의 아전인수,” 『동아일보』, 2005년 5월 20일.

⁴⁷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4년의 제 1차 북핵 위기 동안 북·미 양국의 치열한 강압외교는 성공하지 못했다. 북·미 제네바 합의는 강압외교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카터 대통령의 개입의 결과이었다. 한국과 중국 등 다른 동북아 지역 국가들 모두는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대북핵 연대 강압외교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을 포함한 6자 회담의 5개국과 여타 관련국 모두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제외하고는 수단의 선택에 어떤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한국, 미국, 중국 등의 대 북한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 그리고 수단 선택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대 북한 확전 우세와 효과적인 압박점 선택과 압박 행사가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한·미·중 삼국은 목표와 수단을 선택할 때나 기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연합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핵 문제 당사국으로서 한국은 미국의 강경 중심 대북 전략과 중국의 경제 지원과 북한의 지정학적 활용 목적에 치중한 대북 정책이 가능한 한 상호 수렴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선택지(영변 핵시설 폭격, 체제 전복, 설득 협상 및 핵 보유 묵인) 가운데 북한 핵 보유 묵인이라는 미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상황도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북한 핵 문제가 미·중의 소위 빅딜에 의해 처리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국은 북한의 핵이 직접적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며 동시에, 북핵을 폐기토록 할 수단이 많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북핵 처리에 있어서 중국을 핵심 행위자로 존중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북한 핵이 제거된 후 북한이 중국의 세력권에 들어가는 것을 용인하고 그 대신 핵 없는 북한을 통해 핵비확산의 과실을 얻는 데 만족하는 차선책을 선택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유럽의 강대국 협조 체제식(concert of power) 미·중간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1차 핵 위기 이래 북핵 제거를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미국과 미국 못지 않게 북핵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

북한은 벼랑끝 전술, 협상 데드라인 설정, 무력 사용 위협 등 강압외교 전략을 구사했으며 미국 역시 인센티브와 양보의 외교술과 함께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유엔 제재와 무력 사용의 위협 등으로 강압외교로 맞섰다. William M. Drennan, "Nuclear Weapons and North Korea: Who's Coercing Whom," pp. 158~159.

북한의 시장교환 질서와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홍 민**

- | | |
|----------------------|----------------------|
| I. 서론 | IV. 시장교환과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
| II. 교환의 형태와 북한체제의 동학 | V. 결론 |
| III. 가산제적 가족경제와 시장교환 | |

Abstract

The Market Exchange Order and Amoral Familism in North Korea

Since the 1990s, North Korea has been faced with social changes. In conjunction with these chang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market exchanges and social relations. In this study, I refer to Karl Polanyi's concept of 'reciprocity,' 'redistribution,' and 'market,' as three possible patterns of allocation.

In the socialist societies including North Korea, resources were allocated by the principles of redistribution and reciprocity. Also, these societies were organized on the basis of a hierarchical order integrated by the mechanism of a political appropriation and a redistribution, chains of personal dependencies (nomenklatura) and reciprocity relations based on the exchange of favors. The state apparatus was organized on the basis of a hierarchy of status. Status order was defined by the institution of the nomenklatura. Nomenklatura meant the list of available positions within the

bureaucratic system. The mechanism of political redistribution served the state employees who pursued for their own economic interests and thereby reproduced the centralist structure and hierarchy.

Since the 1990s, in North Korea, these niches and personal network have occupied more space, particularly in the economic terms, within the informal exchanges system and within the reciprocity relations. The characters of social relations can be described as a fragmented morality and an 'amoral familism.' The amoral familism does not mean that people are immoral, but refers to as a tribal mentality that perceives social relations as the only personal relations and the structures as the social world with a dichotomy of us and 'strangers.' In North Korea, the amoral familism is a mirror for understanding the appropriation of market exchange within the social exchange order.

Key Words: reciprocity, redistribution, market exchange, political capital, amoral familism, appropriation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선진연구장려금지급(2004-B00006)에 의해 작성되었음.

** 동국대학교 강사

I. 서론

북한사회의 통합메커니즘은 물질적 재분배 체계, 정치적 재분배 체계, 그리고 도덕담론이 맞물리는 속에서 이루어졌다. 계획을 ‘심장’으로 하는 계획-재분배 체계와 관료적 지위 배분의 체계가 물질적·정치적 재분배 체계라면, 도덕담론은 이러한 재분배 체계를 정치·경제적 통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체계였다. 이 재분배 체계와 도덕담론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국가, 관료, 인민의 행위 동기와 목표를 구성하며 순응하고 따라야 할 행위의 범주를 설정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은 국가 도덕담론의 물질적 기초가 되었던 계획-재분배 체계의 붕괴를 의미했다. 사회 각 층위에서 시장교환이 ‘생존’의 방편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 개설은 시장교환의 확대가 가져온 사회적 압력에 대한 국가의 반응이자 현실적 타협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시장교환을 적극적 개입을 통해 국가의 통제영역 안에서 관리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시장교환이 북한 변화를 이해하는데서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교환이 북한의 변화를 감지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의 물질적 재분배 체계, 정치적 재분배 체계, 그리고 도덕담론이 결합하여 형성하였던 통합메커니즘 속에서 시장교환이 갖는 위상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통합메커니즘에는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사회적 교환질서가 내장되어 있었다. 교환형태로 보면 호혜, 재분배, 시장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교환형태가 공존하는 교환질서에서 시장교환이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적극화된 시장교환이 기존의 교환질서와 사회적 관계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장교환이 기존의 지배적인 교환질서와 갈등·대립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공존·결합해 있는가 하는 물음에 해당한다. 이런 물음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시장교환은 ‘생존’의 방편으로서 물질적 공급과 순환의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행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시장교환이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사회와 분리된 채 돌아가는 추상의 실체가 아니라 현실에서 개인들의 사회적 동기를 통해 실천되는 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 조명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기존에

북한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고 구성해 왔던 지배적인 사회적 교환방식과 질서가 어떻게 시장교환과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한 사회의 지배적인 교환 방식에는 다양한 정치적 지배 논리와 도덕담론, 생존 논리, 그리고 물질적 재분배의 논리 등이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와 시장교환에 대한 이해 역시 이러한 기존의 지배적 교환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사회의 지배적인 교환형태였던 ‘호혜’ 및 ‘재분배’와 ‘은폐된’ 공간에서 존재해 왔던 ‘시장’ 교환이 199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해 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것은 시장교환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과 동기는 물론 수령, 관료, 인민들에게 전유되는 방식을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지배적인 사회적 교환형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라는 개념을 통해 1990년대 시장교환이 사회에 전유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II. 교환의 형태와 북한체제의 동학

‘사회’란 개인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진행되는 사회적 상호작용들과 그 형식들이다. 사회는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며 개인들 역시 사회의 유기적이고 기능적인 부분만으로 취급될 수 없다. 사회는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이며 실재하는 것은 사회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이다.¹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사회는 실재하는 고정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라 개인들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² 이 개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위해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식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통칭하여 ‘사회적 관계’라고 한다.

이와 같이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일정한 교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떠한 교환의 동기와 형식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 있다. 이처럼 “교환

¹ 게오르그 짐멜 저·김덕영 외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서울: 새물결, 2005), p. 282.

² Roy Bhaskar,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Harvester: Hemel Hempstead, 1989), p. 28, 41; Margaret Archer, Roy Bhaskar, Andrew Collier, Tony Lawson and Alan Norrie, *Critical Realism: Essential Reading II) Critical Naturalism and Social Scien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은 관계들 속에 종속되어 있는 것”³이며, 특정 집단과 공동체, 국가 등은 모두 지배적인 교환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응축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이런 교환의 내용물은 물질적인 것, 명예나 지위, 충성과 정치적 보상 등 다양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 관계는 일정한 교환 형태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의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 집단 및 공동체, 그리고 국가 등이 기반하고 있는 교환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크게 ‘호혜(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시장(market)’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호혜(reciprocity)’는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증여(gift)-답례(count-gift)라는 호혜적 교환을 일컫는다. 일종의 ‘선물의 정신’⁵ 또는 ‘선물의 경제(gift economy)’ 원리가 내장되어 있다. 상호성을 특징으로 하는 증여와 답례는 등가일 필요도 없고 또 비교할 수도 없지만, 답례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⁶ 선물을 주고 받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평화는 궁극적으로 이들 간의 호혜에 입각한 안정을 부여한다. 하지만 답례에 응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공동체의 구속이 강하고 배타적인 형태를 갖는다. 또 증여와 답례 사이에 존재하는 부등가 교환은 일종의 ‘선물의 정신’을 통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위장되며, 나아가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호혜적인 선물의 교환관계로 포장함으로써 지배논리를 은폐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둘째, ‘재분배(redistribution)’는 부족적 공동체보다 확장된 국가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교환의 관계이다. 국가는 많은 수취를 위해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하고 생산력

³ 베아트리스 데코사 저·신은영 역, 『노동·교환·기술』 (서울: 동문선, 1999), p. 80.

⁴ 국가조직, 경제조직, 군대조직, 노동조직 등과 같이 비교적 고정적인 대상, 즉 특정한 사회체들은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객관적 구조물로 응축되거나 결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역시 사회적 관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관철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⁵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는 ‘선물은 외관상으로는 자유롭고 무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강제적이며 타산적인 것’이라고 본다. 선의(善意)의 증여로 포장된 ‘선물의 정신’에는 선물 제공의 의무, 받아야 하는 의무, 답례해야 하는 의무 등이 내장되어 사람과 사람을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선물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때로는 결속력과 우정이 유지된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선물이 자신의 세 가지 경제 체계 모델, 즉 상호호혜, 재분배, 시장 중 첫 번째 모형의 주요 특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반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 폴라니는 호혜성을 의례적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무에 기초한 재화와 용역의 순환이라고 보았다. 마르셀 모스 저·이상률 역, 『증여론』 (서울: 한길사, 2002); 나탈리 지몬 데이비스 저·김복미 역, 『선물의 역사』 (서울: 서해문집, 2004); 칼 폴라니 저·박현수 역,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 (서울: 민음사, 1991).

⁶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권기돈 역, 『탐구2』 (서울: 새물결, 1998), p. 271.

을 높이는 것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을 중앙으로 이전하고 이것을 재분배한다. 재분배에는 이른바 수탈-재분배라는 교환의 과정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착취적 지배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호혜적인 관계로 가장된다. 이를 통해 국가는 도덕적 선(유교의 ‘治世者의 德’), 이성적인 실체, 보호자 등의 위치에 서게 되고 주민들은 선의와 보호의 대가로 ‘충성’과 ‘노동’으로 보답하는 교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재분배 교환관계 속에는 물질적 순환과 정치적 지배관계가 맞물려 있다.⁷

셋째, ‘시장(market)’은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행해지는 상호 합의에 따른 교환을 일컫는다. 서로 등가라고 생각했을 때 교환이 이루어지고 교환에는 잉여 가치, 즉 자본이 발생한다. 등가를 가장한 부등가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다.⁸ 시장교환 관계는 국가를 넘어 합리적 계산자인 개인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이 시장교환은 사유권을 보장하고 사유권 보장을 통해 과세(수탈)를 챙기는 국가를 전제하며, 시장교환은 순수한 계약적 관계에 입각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호혜와 재분배와 같은 교환의 원리들을 기반으로 이들 형태들과 공존 및 결합해서 작동한다.⁹ 어느 사회에도 순수한 시장교환의 형태만 존재하는 사회는 없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교환 형태들은 한 사회에서 갖는 상대적인 비중의 차이나 결합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서로 공존한다. 어느 하나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세 가지 교환 방식은 개인과 공동체,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교환의 실천들이 ‘제도적인 응축’을 통해 나타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도적 응축’이란 공식적인 제도나 법적 측면을 비롯해 비공식적인 정치적·경제적 관행과 전통적 유습, 사회문화적 정서 등이 교환의 형태 속에 총체적으로 개입해 있음을 뜻한다.

북한사회 역시 호혜, 재분배, 시장의 교환 원리들이 일정한 함수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역동적인 사회적 공간이다. 외부와 일정하게 고립된

⁷ 지속적인 수취를 위해 수취자는 피수취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의 원형이다. 국가는 계속해서 더욱 많이 수탈하기 위해서 재분배에 의해 토지와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증하고 관개 등의 공공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고 한다. 그 결과 국가는 수탈기관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농민이 영주의 보호에 대한 답례(의무)로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상인도 교환을 보호해준 답례로 세금을 낸다. 그 때문에 국가는 초계급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표상된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저·송태욱 역, 『트랜스크립트: 칸트와 마르크스 넘어서기』 (서울: 한길사, 2005), p. 43.

⁸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저·송태욱 역, 『일본 정신의 기원-언어, 국가, 대의제, 그리고 통화』 (서울: 이매진, 2003), p. 43.

⁹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저·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서울: 도서출판 b, 2006), pp. 119~120.

‘자립경제’ 속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수령의 은덕)과 인민이 노동이 교환되는 방식은 ‘호혜’로 가장되며, 국가에 의한 전체 생산물의 중앙이전과 독점적 재분배라는 계획경제 시스템은 수탈을 통한 ‘재분배’라는 교환을 대표한다. 이 호혜와 재분배의 교환 형식 속에는 물질적 교환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배와 통합의 원리들이 함께 작동한다. 수령의 은덕과 노동이 교환되는 속에는 정치적 지배를 호혜적 관계로 정당화하는 기제가 내장되어 있으며, 계획경제의 수탈-재분배 교환 방식 속에는 재분배를 관장하고 조절하는 권력 의지와 함께 거대한 관료체계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세 가지 교환방식(호혜-재분배-시장)으로 본 북한

호 혜	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된 공동체 단위(‘자립적 민족경제’) · 중여-답례의 교환방식 · 공동체 구속-배타적 형태 · 수령-인민의 사회보장-노동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개인, 공동체-공동체, 국가-국가 사이의 상호함에 따른 교환 · 등가교환의 외견 아래 부등가 교환-잉여, 자본의 발생 · 개인은 교환 기초단위, 국가는 제도화 단위 · 교환이 사회적 관계에 ‘묻혀’(embedded)있음.
재 분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단위 내 생산-재분배(수취-재분배) · 생산물 중앙이전-독점적 재분배(계획경제) · 국가: 도덕적 선, 이성적 실체, 보호자 · 정치적 재분배와 연동 	

북한에서 시장교환은 이 호혜와 재분배 교환방식이 물질적 보장과 재분배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부분을 대체·보완을 하는 형태로 은폐된 공간에서 존재해 왔다. 여기서 ‘대체’나 ‘보완’이란 시장교환이 나머지 교환 방식을 압도하거나 독자적인 교환체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와 재분배의 사회적 관계에 ‘묻혀’(embedded)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시장교환은 사회주의 제도화 이후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 계획경제의 불확실성을 봉합하고 억제된 인민 소비욕구의 틈새에서 은폐된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계획-재분배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시장교환이 생계공간으로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인 교환형태에 대한 이해는 교환질서를 전유해 내는 행위자 차원의 이해 역시 요구한다. 교환관계 내부에서 행위하고 그것을 전유해 내는 북한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담론, 전략, 실천 등이 그것이다. 가령 지도집단과 관료, 인민

등은 각각 그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서 다양한 의식과 전략 속에서 행위하며, 그것은 일정한 지배적 교환의 틀 속에서 사회적 관계의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실천들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교환의 형식과 함께 행위자들의 담론, 전략, 실천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위자 차원의 전유는 지배적 교환질서를 호혜의 도덕담론으로 포장해 내는 공식담론 이면에서 ‘도덕’을 그들 방식으로 해석하고 전유해 내는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공식담론 이면에는 개인들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현실을 해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담론과 실천들이 위장되어 있었다. 우선 국가는 물질적 재분배와 정치적 지위의 독점적 분배 권한을 기초로 인민에 대한 국가적 ‘돌봄’(kindness)을 강조해 왔다. 이 ‘돌봄’의 담론을 통해 인민들이 충성과 노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왔다. 국가-인민의 관계를 돌봄-답례의무의 관계로 규정하는 속에서 ‘지배’를 정당화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덕’은 관료들에게도 현실논리로 전유(appropriation)되었다. 계획경제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직면해야만 했던 ‘계획의 불확실성’¹⁰을 봉합하기 위한 관료적 담합·공모를 정당화하기 위한 현실논리들이다. 이들에게 ‘도덕’은 ‘사람과의 사업’, ‘도덕적 의리’의 외피 속에서 각종 ‘본위주의’와 연줄망을 구성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이들의 ‘도덕적 공모관계’는 계획과 비계획, 공식과 비공식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관료적 호혜관계의 변성을 의미했다.

인민들 역시 ‘도덕’을 그들의 노동일상 속에서 전유해 냈다. 이들에게 노동은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사회보장과 물질적 혜택에 대한 도덕적 근거였다. 한편으로 노동 이외에 어떠한 것도 허용되지 않는 삶의 조건 속에서 인민들은 소박한 일탈과 노동을 그들만의 제의(祭儀)로 재전유하는 ‘일상의 정치’를 펼쳐 왔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 반국가적 행위라기보다는 국가를 ‘보호와 예속’의 틀로 간주하는 속에서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만 하는 ‘보호’가 없을 때는 개인들 간의 ‘생계 윤리’(subsistence ethic)의 도덕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¹⁰ ‘계획의 불확실성’이란 계획화 과정에서의 정보수집과 소통에서의 왜곡, 계획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확장 현상, 자재부족, ‘몰아치기’ 생산, 생산의 파동성, 공장간 협동생산의 단절 등이 총체화되어 계획 자체가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점철되는 것을 뜻한다.

Ⅲ. 가산제적 가족경제와 시장교환

1. 호혜와 재분배: 가산제적 가족경제와 북한체제

북한체제를 정치경제적으로 통합하는 메커니즘과 사회적 관계의 성격을 규정해 온 호혜와 재분배라는 교환형태는 ‘가산제적 가족경제(patrimonial family economy)’의 원리를 통해 보다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가산제(家産制: patrimonialism)란 근대 이전의 지배형태의 하나로 군주의 가계경제가 국가경제와 분리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영토 안 재산과 생산물이 군주의 가계 소유로 되어 있어 그 점유·활용권을 신하에게 부여하거나 생산물을 재분배하는 권력을 통해 지배하는 체제를 말한다.¹¹

근대적 관료제와 가산제의 차이점은 관료제가 ‘공적인 헌신이나 추상적인 규범에 복종하는 비인격성에 기반하고 있다면, 가산제는 인격적인 충성’에 기반 한다는 점이다. 또 관료제가 추상적인 합법성, 비인격적인 정향, 특별한 관료적 훈련과 적법한 관할권의 한계를 통해 얻어진 합리적인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가산제는 전통과 인격적인 충성과 직접적인 종속에 기반 한 행위와 관계의 형태를 갖는다.¹² 이 둘은 제도적 틀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구조들(structures of everyday life) 속에서 구현된다.

가산제 권력의 기초는 가족 내 가장의 역할, 즉 주인의 권위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은 폭넓은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가산제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물질적 소유의 독점력만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가 강한 도덕적 원리로 결합해 있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충성과 엄격한 위계적 질서이다. 이것은 가산제적 관계가 상호 의무 윤리 혹은 관습적인 경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관계임을 뜻한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가족은 계약과 등가의 경제교환 원리들이 정지된 세계로서 시장교환에 대립되는 신뢰(trusting)와 증여(giving)의 장소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 필리아(philia)의 장소이다.¹³ 가족은 이해관계 또는 교환에서 등가성의 원칙

¹¹ 베버(Max Weber)는 그것을 ‘patriachal’ 혹은 ‘patrimonial’라고 정의한 바 있다. 막스 베버 저·박성환 역, 『경제와 사회1』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p. 435.

¹² Vadim Volkov, “Patrimonialism versus Rational Bureaucracy: On the Historical Relativity of Corruption,” Stephen Lovell, Alena V. Ledeneva & Andrei Rogachevskii (eds.), *Bribery and Blat in Russia: Negotiating Reciprocity from the Middle Ages to the 1990s* (London: Macmillan Press, 2000), p. 36.

이 정지되는 장소이다. 이러한 가족 특유의 가치와 정서가 사회라는 단위로 확대되어 사회가 하나의 가족질서를 원리로 돌아가는 경제를 ‘가족경제’(family economy)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의 질서가 사회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하나의 정서적 구조로 통합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일종의 ‘가족 정신’(family spirit)의 구현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⁴

따라서 사회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정신을 통해 어떻게 구성원들을 강렬한 정서적 끈으로 결합시키려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자 또는 권력집단이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헌신(devotion)·관용(generosity)·유대(solidarity)를 핵심으로 하는 ‘가족 정신’을 부여하고자 어떠한 상징적·실천적 작업을 해 왔는지 주목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지배자가 주민들의 일상적 삶에 지속적으로 선물(gift), 봉사(service), 도움(assistance), 관심(attention), 돌봄(kindness) 등을 실천하고 있다는 담론과 상징을 유포하는 것¹⁵과 국가적 의례나 축제들을 통해 엄숙한 정치적 상징을 교환하는 방법도 가족의 통합을 신성화하는 역할을 한다.¹⁶

이러한 가산제적 지배형태는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석적 해안을 제공한다.¹⁷ 북한은 이데올로기상에서 유기체적인 가족질서, 즉 사회주의 ‘대가

¹³ 이 필리아(philia)라는 용어는 ‘우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계산 정신의 거부’를 나타낸다.

¹⁴ Bruce Cumings는 북한체제를 ‘가족’의 형태로 설명한다. 그는 ‘전통적 조함주의’의 위계, 유기적 연계, 가족이라는 세 개의 커다란 주제와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부권(political fatherhood), 정치통일체(body politic), 거대한 연결망이라는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정치통일체는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를 위해 기능한다. 우두머리(왕)는 국민의 아버지였고, 통치자와 피통치자는 “완전한 사랑”으로 묶여 있었고, 지도자의 아버지 같은 지혜와 자비는 “의지할 수 있고 결코 의심될 수 없었다.” 브루스 커밍스 저·김동노 역, 『한국현대사』(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p. 578~579. 유사한 맥락에서 북한의 가족주의가 민족의 메타포로 상징화 되어 왔으며 정치종교로 확립되었다고 보는 견해로는, 찰스 암스트롱, “가족주의, 사회주의, 북한의 정치종교,” 임지현·김용우 역음, 『대중독재2: 정치종교와 헤게모니』(서울: 책세상, 2005), pp. 168~189.

¹⁵ Pierre Bourdieu, *Practice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68.

¹⁶ 구소련에서도 사회를 하나의 가족질서로, 지도자를 가장(家長)으로 묘사하는 다양한 담론과 상징을 사용해 왔다. 스탈린 시기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가부장적 이미지의 생산과 가족담론의 유포에 대해서는, Jeffrey Brooks, *Thank You, Comrade Stalin!: Soviet Public Culture from Revolution to Cold War* (Princeton·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pp. 69~72, 89, 102, 148, 199.

¹⁷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가산제적 지배형태와 유사하다고 보는 주장은 기존에도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박형중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그는 스테판(Stepan)과 린즈(Linz)의 개념을 빌려 북한 정치체제를 ‘왕조적 전체주의(Totalitarianism-cum-Sultanism)’라고 개념화 하면서 그것을 가산관료제(patrimonialism)의 극단적 형태를 보여주는 지배양태라고 정의한다. 박형중, 『북한의 변화 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44. 또 정광민은 북한의

정'을 주장해 왔다. 수령-관료-인민이 하나의 가족적 유대와 호혜의 정서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가정'으로 국가를 상정함으로써 '가족'의 혈연성을 일종의 사회적 '도덕'으로 승화시킨다. 일종의 '가족국가관'¹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사회가 상호호혜와 도덕적 의무, 물질적 연계 속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통합된 형태를 갖는 유기체적 가족질서를 상징화해 왔다.

또 수령은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고 가족유형의 확대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담론 차원을 넘어 물질적 자원의 생산 및 재분배 권한은 물론 정치적 지위의 재분배 권한을 독점해 왔다. 중앙집권적 제도와 계획-재분배 체계, 그리고 '도덕적 의무'의 결합을 통해 국가라는 가족단위의 재생산 질서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수령-관료-인민 사이의 교환을 타산적이거나 등가성이 아닌 '희생', '충성', '은덕' 등의 도덕적 의무-보답으로 이루어지는 비등가적이고 이타적인 교환으로 상징화함으로써 정당화되어 왔다.

이처럼 가산제적 가족경제는 수령의 정치적·물질적 재분배의 독점을 가족의 도덕담론으로 정당화하고 사회를 통합해내는 원리를 내장하고 있다. 가족이라는 유대성, 가족이기 때문에 행해야하는 호혜와 '희생', 가장(家長)과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자애로움과 공경심 등이 이 사회의 '도덕'으로 군림해 온 것이다.²⁰ 그것을 전통의 유산이나 재림으로 단순히 평가하기보다는 사회주의 이념과 근대적인 제도를 도입해 왔지만, 전통이 어떻게 사회주의체제가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 앞에서 재해석·재채용(ré-emploi)·재전유되어 행위 실천의 논리로 힘을 발휘

경제체제가 다중적 경제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수령경제'는 왕조적 전체주의의 '가산국가화'와 지극히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수령의 가산국가적 소유(사적 소유와 공사의 혼재)와 국가적 소유의 이중화, 즉 수령경제와 공식경제의 이중경제 체제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자력갱생·기근』(서울: 시대정신, 2005), p. 220.

¹⁸ '가족국가관'은 일본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천황가(天皇家)가 모든 일본국민의 본가(本家)가 되어 일본국민은 마치 분가(分家)가 본가에 복종하듯이 천황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에와 도조쿠(同族)관계가 일반적이던 시기에 천황제를 정당화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담론이다. 상세한 것은 伊藤幹治, 『家族國家觀の人類學』(京都: ミネブク書房, 1982); 한경구, "일본의 전통적 임의결사와 근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동아시아 문화전통과 한국사회: 한·중·일 문화비교를 위한 분석틀의 모색』(서울: 백산서당, 2001), p. 172.

¹⁹ "모든 단위에서 당비서는 결국 수령의 대리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수령이 당의 총비서로서 전국의 토지를 다 소유한 대지주라면 각급 당비서들은 해당 단위에서 수령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서울: 시대정신, 2006), pp. 94~95.

²⁰ 스킨 마사유키는 이러한 '도덕'을 수령과 인민 사이의 사랑과 의리와 충성, 온정과 효행, 즉 '은혜'와 '보답'의 교환관계로 설명한 바 있다. 스킨 마사유키 저·유영구 역, 『김정일의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p. 271.

해 왔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²¹

이런 맥락에서 ‘가족’의 논리가 북한을 비롯한 현존했던 사회주의체제에서 실천의 논리로 어떻게 전유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국가가 일체의 물질적 재화를 점유·활용·수취·재분배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나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는 이 모든 권한을 사실상 독점한다.²² 이런 독점 속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공적 지위와 권한을 통해 사적인 이해를 만들고 취할 수 있다는 점, 사적 영역을 통해 공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모호하다. 법적인 차원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자의성이 법적 제약을 압도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²³ 이런 공사의 모호함은 ‘가족’의 논리가 관료세계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본위주의’로 둔갑할 수 있는 배경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 사회를 아우르는 가족담론과 질서가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유사한 ‘가족’의 논리로 전유되는 것은 일종의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²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가족’의 규모, 환경, 유대의 정도, 유대의 목적 등은 달라도 ‘가족’의 논리가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과 집단 속에서 현실의 논리로 전유되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이 현실에서 갖는 이중적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이중적 의미는 사회를 유기체적인 ‘가족’으로 표상하는 공적 담론과 ‘가족’이 현실에서 각 개인과 집단에 대해 해석되고 실천되는 방식 사이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가족’ 논리는 담론과 실제, 도덕적 의무와 생존 일상 사이의 긴장을 담고 있었다. 국가를 가족으로

²¹ 김일성의 유일체제 확립과 유기체적 가족국가관의 상관성을 연구한 전상인은 북한의 가족정책에는 사회주의 원리와 유교적 가부장제가 이율배반적으로 공존·결합해 있다고 본다.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서울: 민중통일연구원, 1993), p. 42.

²² 보슬렌스키 저·차근호 외 역, 『노멘클라투라(상): 소비에트의 붉은 귀족』 (서울: 명문사, 1988), pp. 213~220.

²³ 구소련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공과 사의 모호함과 그 속에서 번성했던 연줄관계에 대해서는, Vladimir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Changing Values in Post-Stalin Russia*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참조.

²⁴ ‘가족유사성’은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이 그의 저서 『철학적 탐구』에서 언어 논리와 삶의 형식을 설명하며 사용한 개념이다. 가족유사성은 한 가족 구성원들이 완벽하게 공통된 특성을 갖기보다는 ‘겹치고’ ‘교차되는’ 유사성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 역시 단 하나의 공통된 본질은 없으며, 단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얽혀있는 관계들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북한에서 ‘가족’ 논리는 공통된 어떤 형태나 특성으로 설명되기보다는 동일한 삶의 조건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각 층위에서 현실적 논리로 전유되고 실천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유사성의 개념을 통해 구소련 사회의 블라트(blat)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로는, Alena V. Ledeneva, *Russia's Economy of Favou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34~38.

표상하는 이상적 공동체상이 공식담론상의 ‘가족’의 모습이라면, 사회 각 층위의 개인과 집단들은 일상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내밀한 협력과 담합의 코드로서 ‘가족’을 현실적 의미에서 해석하고 실천한다. 담론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가족’의 논리들은 크게 수령, 관료, 인민이라는 세 층위의 독특한 자기 생존의 논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시장교환: ‘은폐된’ 공간에서 ‘생계’ 공간으로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에서 시장교환은 ‘은폐된’ 공간 내에서 존재해 왔다. 과거 시장의 위상과 존재 형태는 크게 ① 국가 축적체계, ② 분배의 위계 구조, ③ 공급부족의 경제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시장’은 국가 축적을 위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중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국내 전체 생산을 국가가 통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민시장’으로의 양곡 유출을 막는 것은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자금 이전이란 측면에서 중요했다.²⁵ 또 인민 생필품과 같은 소비재에 부과되는 ‘거래수입금’은 공업화를 위한 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농민시장으로의 양곡 유출과 개인적인 소상품 제작·판매는 국가 축적을 위해 통제되어야 했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의 강화와 국가 상업망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현실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중공업 중심의 노선이 인민 소비품 관련 경공업의 상대적 희생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민들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 농업집단화, 국가수매의 강화, 배급제의 실시는 농민을 비롯한 도시민들의 농수산물 및 생필품에 대한 소비 욕구를 역시 억제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시장은 국가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상적인 물품에 접근할 수 있는 작은 통로 역할을 했다. 물론 극히 제한된 품목만이 거래되었지만, 농민시장이 살아남아 지속된 이유 중에는 이러한 일상적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있었다.

둘째, 위계적인 사회적 분배구조와 시장의 관계이다. 북한은 ‘출신성분’과 ‘사회성분’ 등에 따라 인민들을 계층화 했고, 이에 따라 분배 역시 차별적으로 위계화 했다. 물론 이런 ‘차별’에는 물질적인 것과 정치적, 사회적인 보상 및 분배의 차별이 함께

²⁵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1), pp. 159~162.

했다. 이런 ‘차별’은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의 위계화를 의미한다. 성분과 직업, 가계(家系)에 따라 분배가 차별적으로 제공되었고 위계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분배의 한계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농민시장은 사회적 불평등 구조, 차별적인 위계적 분배구조 속에서 인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은 창구 역할을 했다.

한편 197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인구 증가 추이에 비례한 식량 생산의 정체에 빠져 들게 되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1970년대 초반 노동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이에 비해 식량 생산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하게 늘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때부터 식량 생산이 인구 압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본격화된 것이다. 여기에다 그나마 제공되던 배급량 역시 1973년경부터 전쟁미 명목으로 공제되기 시작했다. 생필품 배급사정 역시 악화되기 시작했고 도시주민들의 소비생활도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소비생활의 압박은 대체로 위계적인 사회적 분배구조의 하층을 차지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농민시장 내의 교환을 소극적이거나 자극하는 배경이 됐다. 결국 농민시장이 1970년대를 거치며 미미한 형태이지만 교환의 장소로 생명력을 발휘한 것은 당시 국가의 생산력 정체와 사회의 위계적 분배구조가 갖는 경직성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²⁷ 이것은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에서 농민시장이 ‘생계의 교환 공간’으로 적극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공급부족의 경제와 시장의 관계이다. ‘부족’은 자원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개별자(공장 관리자들 또는 인민들)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또는 충분히 그것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²⁸ 부족은 (물적·인적) 자원의 완전고용, 급속한 성장에 대한 중앙의 강박적 정책, 가용 자원을 넘어서는 과도한 계획, 자신들의 다양

²⁶ 구갑우·최봉대, “‘농민시장’ 형성: 1950~1980년대,”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p. 171.

²⁷ 농민시장 이외에도 도시주민은 기업 수준의 후방공급활동 혹은 폐기발 경작 등을 통해서, 공장 일을 하면서 스스로 식량생산에 참가하여 부족한 식량을 획득하고 있었다. 또한 농민에게는 텃밭에서 곡물 이외의 부식물을 재배하여 농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농민의 ‘텃밭’, 도시주민의 ‘폐기발’, 기관·기업소의 ‘후방공급활동’, 도농 간의 농수산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농민시장’ 등 공식적인 식량매매체계 이외에 보조적인 식량체계가 제한적인 생산과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²⁸ 알렉 노브 저·대안체제연구회 역,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서울: 백의, 2001), p. 166.

한 목적으로 위해 자원을 획득하려는 부문들, 국들, 부들 그리고 지방들의 노력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전반적인 부족 현상은 계획경제의 작동을 더욱 정치화(政治化)했다. 위와 아래, 또 수평적 층위에서 부족을 해소하고 계획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과 연줄, 호혜 관계가 변성했다. 이들은 장소로서의 ‘시장(장터: marketplace)’보다는 부족을 메우기 위한 ‘교환(exchange)’으로서 자체의 은폐된 가격신호를 만들어 낸다. 생산수단 및 자재의 거래는 불법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 공공연한 흥정과 교섭의 대상이 됐고 ‘교환’을 위한 가격이 그들 사이에서 작동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1980년대까지 농민시장 내지 시장교환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시장의 공공연한 변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주민들이 상대적 빈곤의 격차를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회의 위계적 분배구조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주민 차원에서 차별성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 소소한 일상소비품 중 한 두 개의 공급품목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수준이 이들이 느끼는 차이였다. 주민들의 소비생활 자체가 평준화된 까닭에 상대적인 빈곤감을 서로가 덜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 이런 심성들이 ‘시장’이나 ‘상거래’에 대한 국가 통제와 이데올로기적 ‘금기’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생계윤리(subsistence ethic)’에 대한 심성의 변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가 통제하고 금기시하는 ‘시장교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급박한 생존에 직면해 취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생계윤리의 근저에는 더 많은 물질적 보장의 기대보다는 수탈 이후에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가 하는 ‘도덕적’ 기준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이 1990년대 전후 주민들이 시장교환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요인은 국가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이상으로 현재 이후의 미래가 계속 불안정할 것이라는 좌절이나 공포이다.²⁹

셋째, 정보유통과 물리적 이동의 제약이 시장교환의 가능성을 제한했다. 마을 공동체를 넘어선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리적 이동의 자유로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을 펴 왔다.³⁰ 마을 내 물물교환 및 상호부조 이상을 넘어서는 물적 교환이 이루어지

²⁹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다.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사는 게 낫다, 하루벌이 하는 것이 낫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농사가 안되고 분배뭉이 없으니 장사하는 게 낫다라고 한다.” 탈북자 인터뷰 내용(함북 무산군 강선로동자구 광산노동자).

³⁰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1967.4~1970.6), ‘주민 요해사업’(1972.2~

기 힘들었다. 또 시장교환은 초보적이거나 일정한 정보 교환을 필요로 하지만, 이동에 대한 정치-행정적 통제, 수송 문제,³¹ 거래의 장소 문제, ‘장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주민의 경제심성³²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공식적 거래와 교환에 필요한 정보가 통제되었다. 따라서 시장교환이라는 것은 도시와 농민시장, 소규모 마을 공동체 내부, 생산단위들 간의 필요한 것에 대한 유무상통의 비공식적 ‘거래’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에서의 시장교환은 일종의 생계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과거 농민시장은 주민들의 배급 의존적 삶에서 소비생활의 보충적 공간이었다. 또 비공식적 ‘교환’ 행위들은 계획경제 내부에 존재했지만, 어디까지나 불확실성을 봉합하기 위한 ‘은폐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계획-재분배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위계적 분배구조에서 최상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인민들이 생계의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교환이 배급을 대체하는 생계공간이 되었고, 계획부문의 대부분이 역시 ‘시장교환’ 없이는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주민이 시장교환에 ‘생계’를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관료들 역시 지위와 특권을 이용 시장공간을 자신과 자기단위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이용하기 시작했다. 또 자재공급이 없는 속에서 시장을 자신의 계획목표를 봉합하는데 필요한 물자 공급 경로로 이용하는가 하면, 노동자들에게 액상계획을 할당하고 노동자들은 시장 활동에서 번 수입의 일부를 자신이 속한 공장에 상납하는 형태로 시장교환에 의존하고 있다.³³ 국가 역시 공장 미기동으로 인해 기존의 공업부문 중심의 재정수입

1974), ‘주민증 검열사업’(1980.1~1980.12), ‘주민증 갱신사업’(1983.11~1984.3), ‘려행증법’ 제정 등을 통해 사실상 인구와 노동이동에 대한 전반적 통제기능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1960년대 중반까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노동유동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목적이었다.

³¹ 수송은 공식적인 계획을 현실화하는 물리적 이동을 담당한다. 특히 동-서간의 ‘유무상통’의 교환은 사실상 수송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식적인 계획물량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지역간 교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증언은,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서울: 중앙일보사, 1995), pp. 185~187. 또 인구유동의 통제와 지역간 교류를 불러온 도시화 정책에 대한 연구는, 고성호, “북한의 도시화 과정과 특징,” 『통일문제연구』 제8권 1호 (1996년 상반기호), pp. 147~148, 152~156.

³² 소비생활의 위기가 곧바로 농민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배급제의 유지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빈시장주의적 집합의식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구갑우·최봉대, “‘농민시장’ 형성: 1950~1980년대,” p. 176.

³³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형태의 변화: 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 (서울대학교원 경제학부 박사학위 논문), 2003, p. 161.

구조가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2002년 이후 각종 세금항목을 부활시켜 주민들로부터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시장을 공식 허용하는 것을 통해 장세를 거두어들임으로써 시장을 재정보호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지방도시의 경우 “재정의 60% 이상을 종합시장 사용료와 국가납부금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얽혀살고 있다”³⁴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IV. 시장교환과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1990년대 경제난은 가족경제의 원리가 각 단위와 개인에게 생존 차원에서 현실적 의미로 전유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계획경제가 더 이상 국가의 도덕담론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사회 전반에 시장교환이 생존 차원에서 확대되는 한편, 사회의 각 층위에서 가족담론이 현실의 ‘생존’ 논리로서 해석되고 실천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³⁵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도덕적 가족주의화’는 전 사회를 아우르고 있었던 가족경제의 담론과 질서가 국가이익보다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위의 이익을 우선하는 질서로 변화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최고지도자와 상층 권력집단은 인민경제보다는 정권 보존 차원에서 정치자본과 충성의 교환을 통해 ‘수령경제’의 자원 확보에만 비도덕적으로 몰두하는

³⁴ 탈북자 인터뷰 내용(회령시당 민방위부 지도원 출신).

³⁵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는 밴필드(Edward Banfield)가 남부 이탈리아 연구에서 개념화 했다. 자신이 속한 소집단(가족, 조직)의 이익과 가치를 국가나 사회 전반의 이익·가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밴필드는 후진사회의 저발전 원인을 소집단을 넘어선 관계와 결속, 사회공동체성의 부재로 보았다. 따라서 ‘가족주의’는 부도덕(immoral)이 아닌 비도덕 또는 무도덕(amoral)에 가깝다.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충성심과 가족적 친밀감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족’논리의 과잉이며 가족의 통합성은 제공하지만 사회의 연계성을 방해한다. 러시아에서 시장경제 이행, 동남아시아, 남부 이탈리아, 사하라 아프리카, 미국 내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등에 관한 연구에서 발견된다. Edward Banfiel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8); Christopher Colclough, “Structuralism versus Neo-Liberalism: An Introduction,” *States or Market? Neo-Liberalism and the Development Policy Debate* (Oxford: Clarendon Press, 1991); John Toye, *Dilemmas of Development* (Oxford: Basil Blackwell, 1987); Diego Gambetta, *Sicilian Mafia: The Business of Private Prote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무규범’ 현상을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본 연구로는, Bruce Cumings, 『한국현대사』, p. 479; 김동춘, “한국의 근대성과 도덕의 위기,” 『근대의 그늘: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서울: 당대, 2000), pp. 94~129 등이 있다.

한편, 중하층 관료들은 자신과 자기단위의 생존에 몰두하는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인민들은 집단적 정체성보다는 ‘생계’를 위해 자신의 가족 생계에 몰두한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세 층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서로 ‘생존’이라는 목적 속에서 연계된 채 작동하고 있다.

1. 수령경제의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수령경제’는 관료집단의 충성을 관리하는 선물비용을 비롯해 계획경제의 ‘걸린 고리’를 현지지도를 통해 돌파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수령 개인의 통치자금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령경제’는 공식·비공식적인 대외교역과 국내 생산으로부터 수령이 인민경제 예산 및 지출과 별도로 통치에 필요한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는 경로와 사용의 정치적 맥락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즉 외화벌이와 국내에서 생산된 자원과 자금을 당·정·군 기구와 관료적 과정을 통해 수령의 통치자금으로 흡혈하는 일정한 자금경로이다.³⁶

이 수령경제는 과거부터 수령과 관료 사이의 특수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어 왔다. 수령은 통치자금을 통해 관료들의 충성과 지지에 대한 보상으로 물질적 특혜와 함께 관료적 지위, 즉 ‘정치자본’³⁷을 배분함으로써 교환관계를 형성·유지해 왔다. 당·정·군 고위 관료층에게 부여된 정치자본은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국내 자원의 일정한 독점적 점유·활용권이나 외화벌이 사업에 대한 특권을 통해 경제자본화 되어 왔다.³⁸ 중하위 관료들 역시 수령 및 상층 관료들에게 충성 및 물질적

³⁶ 중앙당 재정경리부, 당중앙위원회 39호실, 중앙당 38호실, ‘충성의 외화벌이’, 자금채취, 군(軍) 및 기타 기관을 통한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홍 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pp. 294~306 참조.

³⁷ 정치자본(political capital)이란 관료적 지위와 함께 그것을 보유한 자들에게 ‘공공적 재화(관료들의 공공재화 점유·활용)와 서비스(주택, 자동차, 병원, 학교 등)의 사적 전유(appropriation)’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보장’이란 공식적인 전유의 허용도 있지만 비공식적 방식으로 전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원의 세습 재산화(patrimonialization of resources)’는 사회주의체제의 관료체계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이런 세습은 가족적 관계들의 망(network)을 통해서 전수되기 쉽다. 공산주의적이라기보다는 소련적(Soviet)이라 불러야 할 체계들이다. Pierre Bourdieu,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6.

³⁸ 북한에서 외화벌이는 ‘군중외화벌이’, ‘당외화벌이(5호관리부)’, ‘조선인민군 외화벌이’, ‘사회안전부 외화벌이’, ‘국가안전보위부 외화벌이’, ‘연락소 외화벌이’, ‘대성총국 외화벌이(당 39호실) 등으로 나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군(軍)이 자체의 예산확보를 위해 사회 곳곳에 권한

상납을 통해 정치자본과 지위 상승을 교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수령경제를 통한 공생관계에는 호혜와 재분배의 교환 원리를 축으로 하는 가족경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은 수령경제의 자금경로를 위협하는 상황변화였다.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외화벌이 사업 확장을 통해 수령경제의 물질적 기초를 유지하는 전략이 사활적인 문제가 되었다. 물론 1990년대 이전에도 외화벌이를 통한 수령경제의 자금 확보는 중요한 경로였지만,³⁹ 달라진 것은 외화벌이 창구를 좀 더 아래단위까지 확대·허용하고 일정한 상납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각 단위와 기관들은 외화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것을 일정 비율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단위의 운영경비로 충당하게 된 것이다.⁴⁰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수령경제로의 자금 및 자원의 흡수 폭을 확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화벌이 경로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 교역으로 팔 수 있는 국내 물자를 최대한 수령경제의 관리·통제 영역 안으로 끌어 들이고자 했다. 국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수령경제의 자금유입 체계에 끌어 들여 정권 유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자금 경로로 활용하는 것이다.⁴¹ 이것은 국내 생산이 열악하고 인민소비가 낙후된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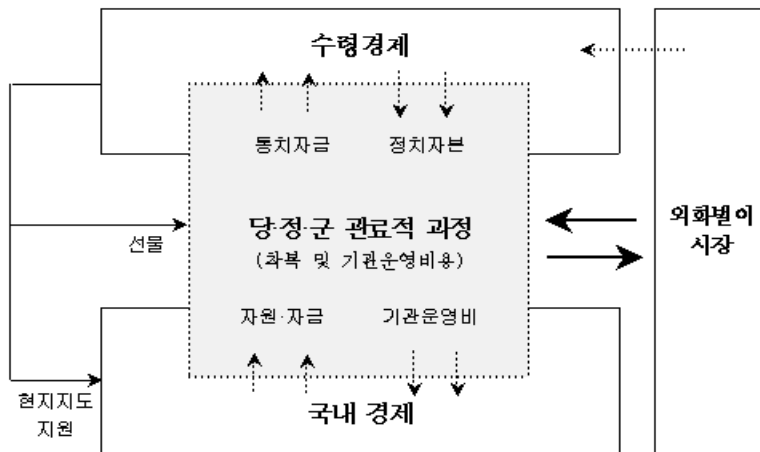
을 갖고 외화벌이 수출용 자원을 독점하고 무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왔다. 『통일한국』 탈북자 쟁점대담. 배인수(순천시 운산군 김정일의화벌이사업소 운전수).

³⁹ 통치자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외화벌이가 그것의 중요한 경로가 된 것은 1974년 중앙당에 39호실을 만들면서라는 견해가 있다.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p. 181. 특히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일이 사실상 후계자로 결정되면서 권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통치자금과 외화벌이 사업이 필요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1972년 당에 '제2경제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무기거래를 포함하는 군사물품의 교역을 당의 관리하에 두는 '당경제화'도 작용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까지 채무불이행으로 무역거래가 급감했지만, 1977~78년을 기점으로 무역거래액이 급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무라 미쓰히코는 이를 무기수출입액이 전체 수출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기무라 미쓰히코 저·정재정 역, 『북한의 경제: 기원·형성·붕괴』 (서울: 해안, 2001), pp. 68~69. 이밖에 1974년부터 본격화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대규모 상징물 건설과 1977년 김일성 65회 생일을 맞아 처음으로 전국의 어린이, 학생들에게 교복과 당과류를 '당자금'으로 선물해 주는 등 이런 사업에 상당한 경비의 통치자금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홍 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p. 365.

⁴⁰ 가령 1991년 '새로운 무역체계'가 등장하면서 각 시·군은 도(道)와 긴밀한 협력하에 수출 원천을 스스로 찾아 외화를 벌여 지역 주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 받았다. 도 무역관리국의 은행계좌도 독립되었다. 중앙은 각 도가 벌어들인 외화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을 수취해 갔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입각해서 네가 번 것은 너만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 먹고살고 남는 것이 좀 있으면 나라에 바쳐라"라는 식이다. 양문수, "1990년대 경제위기와 지방경제 운영체계의 변화,"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 79~82; 신무역체계 아래서 외화벌이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기구와 운영·개혁과 변화』 (서울: 해남, 2002) pp. 30~31.

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탈적인 성격을 갖는 수령경제로의 자원 집중을 의미했다. 계획경제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은 개별 단위의 자체해결로 전가하고 수령경제는 정권의 자기보존과 특권화 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상층 엘리트층을 위해 약탈적으로 국내 경제에 군림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림 2> 1990년대 수령경제의 자금경로



이와 같은 구도에서 최고지도자와 상층 관료들 사이에는 수령경제로 유입되는 자원과 자금을 집행·관리·통제 하는 속에서 특수한 교환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최

⁴¹ 북한은 해마다 주민들로부터 ‘충성의 외화벌이’ 명목으로 외화원천동원사업을 시켜왔다. 각 지방의 당 기관들에는 39호실이 있는 데, 그 아래에 군중외화벌이사업소와 5호관리부를 두고 자금채취, 짐승피, 송이버섯 수집을 한다. 5호관리부의 경우 소속은 시·군당 소속이지만 중앙당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계획량은 금액지표로 할당되는데, 가령 1년에 10만 달러가 계획목표량이면 이것을 채우면 나머지는 그 사업소가 갖게 된다. 계획량을 채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돈이 될 만한 것에 ‘덮친다’고 한다. “요령 좋은 사람들은 송이버섯을 한 배당(7kg)씩 따오는데 국가에 팔면 북한돈으로 7~8백원(1994년 기준)을 받는다. 거간꾼에게 비싸게 팔려는 주민들이 송이버섯을 소금에 절여 숨기기도 한다. 안전원들이 송이버섯을 국가재산이라며 은닉자를 잡으러 다니는 것은 흔한 풍경이다. 김일성이 송이버섯을 가로채는 행위는 내 호주머니를 터는 것과 같으며 송이버섯의 국가관리를 강조했다” <아~북녘동포> “외화벌이에 하루가 간다” (중앙일보 1995. 1. 24일자). 윤용씨(청진광산금속대학생 출신) 증언. “일단 일년치 10만 2천 달러 벌면, 10만 달러는 (계획량으로) 계산하고 2천 달러는 우리 사업소에서 먹는다. 그 돈으로 사업소에서 자동차를 사거나 나누어 줄 상품을 사기도 한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차에 대한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일의 평가는 몇 톨을 운반했느냐에 따라 양복지, 양복장, 이불장, 컬러TV 등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일한국』 탈북자 쟁점대담. 배인수(평남 순천시 운산군 외화벌이사업소 운전수) 인터뷰 내용.

고지도자는 이들에게 정치자본과 함께 외화별이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수취의 특권을 부여하고, 이들 관료들은 충성과 체제 보위라는 지지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하위 관료들 역시 물질적 상납과 정치자본 제공이라는 교환관계를 적극화했다. 이들에게 정치자본은 자기단위의 생존은 물론이고 시장교환의 중요 지점을 통제·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제자본을 창출 수 있는 특권을 의미했다. 수령을 비롯한 관료들 모두 자신의 정권 안위와 정치적 지위 보존, 물질적 이해를 위해 국내경제와 인민의 희생을 전제로 약탈적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²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장교환이 경제관계와 경제운용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세계의 정치적 관계 역시 시장교환이란 질서를 적극적으로 전유해내는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등가적인 호혜적 교환과 국가 독점적 재분배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수령경제 및 그 사회적 관계가 개인을 기초로 등가적 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교환과 친화적으로 결합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시장화 내지 시장교환 질서가 기존의 교환질서나 체제를 침식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의 자체 생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현재 북한경제를 관료적 조정과 시장 조정의 이분법 속에서 어느 한쪽의 조종기제가 우월하다거나 이중구조로 보는 시각을 다른 시각에서 재음미 해 볼 것을 요구한다. 관료적 조정은 시장 조정과의 대립적·갈등적 체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료적 조정이 특수한 이해관계를 담보하는 정치적 담합의 코드를 의미한다면, 시장적 조정은 그러한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공급의 원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장교환이 호혜와 재분배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에 문혀서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2. 관료세계의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가. 계획경제의 불확실성과 정치자본의 폐쇄적 분배구조

북한에서 관료들의 비도덕적 가족주의 현상은 1990년대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미

⁴² 과거 수령경제가 명목상이나마 인민을 포괄하는 ‘선물’의 증여체계 차원에서 수령과 관료들 간의 특수한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 수령경제는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령과 소수 특권화 된 관료집단만의 비도덕적 자기 생존 논리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과거부터 신분 상향이동의 원리, 관료들의 출세지향적 성향과 함께 계획경제의 문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1990년대에는 시장교환을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 깊숙이 개입시킴으로써 좀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적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과거에는 도덕적 포장(관료적 도덕담론) 속에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은밀한 공모의 형태를 띠었다면 지금은 생존 차원에서 시장교환과 적극적으로 결합한 양태를 띠고 있다.

우선 관료세계의 비도덕적 가족주의를 계획경제의 문제와 정치자본의 분배구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 관료들의 연출망은 경제적 관점에서 비공식적 교환관계와 상호호혜의 관료적 공모관계를 의미했다. 관료사회의 응집은 유사-가족(quasi-familial)의 대면관계와 같이 개인적 이해로 시작해 단위의 이해를 대변하는 속에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단위들 간의 파편화된 이해로 뭉쳐진 덩어리와 같았다. 이들의 상호호혜는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한 경제적 재분배의 적절한 메커니즘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기관본위주의’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당적, 국가적 입장을 떠나서 자기 기관, 기업소의 일시적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국가계획과제 수행에서 기관, 기업소 호상간의 연계와 협조를 거부하거나 등한히 하며 협동생산에 잘 응하려 하지 않으며 자재와 설비를 사장해 두고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관, 기업소에 넘겨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의 <공명>과 <명예>, <출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 다른 기관의 이익을 꺼리낌 없이 침범하는”⁴³ 것을 말한다. 즉 기관의 이해가 국가이익을 압도하는 것을 말한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계획의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관료들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비공식적 교환과 호혜적 연출에 연루되고 개입하게 된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계획과제에 급급해 하는 ‘본위주의’로 비춰지며 결과적으로 자기단위의 이해에만 맹목하는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나타난다.⁴⁴ 이런 의미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관료적 생존의 논리라고 할 수 있으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합법적 영역과 불법적 영역 양쪽에 묻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히는 개인화된 공식 관계와 개인화된 공적 역할 등을 기초로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식 조직과 개인적 관계 사이를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개인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 사

⁴³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119~120.

⁴⁴ 북한에서 통제와 폐쇄성으로 인해 가족주의가 왜곡되어 ‘비도덕적 가족주의’적 요소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으로는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4), p. 23.

적 이해과 공적 기능 사이의 차이를 제거한다는 데 있다.

여기엔 국가적 이익, 자기단위 이익, 개인적 이익 사이에서 관료적 도덕규율을 이해에 따라 편리하게 해석하며 줄타기 하는 사회주의 관료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관료들의 행동이 공적인 선, 공적인 윤리와 같은 보편적 관념의 사고를 부정하는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부재하며, 오직 위계화된 관료체계 내에서의 정치적 판단만이 그것을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비도덕적 가족주의가 번성할 수 있는 토양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역설적으로 사회주의사회의 ‘합리화된’ 사회적 관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체제를 ‘거스르는’ 행위라기보다는 강한 집단적 체제순응(conformism)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절화된 각 단위 내의 생존을 위한 비도덕적 관료행위가 결과적으로 체제순응의 집합적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것은 관료 자신의 가족, 친구, 협력자와 그것이 아닌 외부자와의 이분법을 따라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를 일상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그것이 사회를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개인을 심리학적으로 위안하고 체제에 대한 안정성을 보증하는 원천이 된다. 결국 체제가 유지되는 방식은 공식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의 관철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비도덕적 가족주의가 일상에서 하나의 실천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 1990년대 관료들의 정치자본 획득전략과 약탈적 기생

관료세계의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1990년대 변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더욱 적극화되었다. 과거의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적게나마 공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신이 속한 단위의 생산 목표량을 채우고 계획의 불확실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주로 ‘기관 본위주의’ 차원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자기단위의 살림살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서 시장교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속에서 적극화되었다. 1990년대 관료들의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관료들의 정치자본 획득전략과 활용방식, 그리고 주민 장터경제에서의 약탈적 기생 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존의 정치자본 획득에서는 수령과 상부에 대한 충성과 업무의 충실성, 출신성분 등이 중요했다. 1990년대부터는 충성 자체가 누더기가 된 계획의 틈새를 봉합하는 사업의 능력과 상납의 충실성으로 바뀌었다. 물론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정치자본이 관료세계에서는 다양한 자원을 흡수하고 전유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관료들은

경험적으로 학습했다. 그것은 정치자본을 중심으로 한 게임의 규칙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1990년대 변화된 현실에서도 정치자본을 이용해서 관료들이 쉽게 상황에 적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체제가 부여한 게임의 논리를 아는 만큼 누구보다도 그것에 성향화 되어 있어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하며, 그들이 체제를 거부하기보다는 적응하는 이유를 제공한다.⁴⁵

관료들의 정치자본 활용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주민들의 ‘장터경제’가 관료들이 정치자본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1996년 이후, 관료들의 정치자본은 국가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묵인과 함께 시장 통제정책에서 관리정책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관료적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약탈적으로 기생하는 방식이 다양화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과 자원은 정치자본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상납금과 자기 단위의 운영비로 활용되었다. 이런 관료들의 기생 방식은 ‘마피아 부족주의’(Mafia-tribalism)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마피아 기업 커넥션에서 발견되듯 관료들의 장터경제 기생은 지대추구(rent-seeking)뿐만 아니라 관료적 축적(accumulation)의 특정한 양식이 되었다.⁴⁶ 관료적 이익은 자신의 공적 권력을 통해 ‘보호된(protected)’ 시장이나 거래선들, 기업들, 사적 경제활동 등을 통해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자신의 정치자본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상납금이나 뇌물로 쓰여 지거나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사적 경제활동에 재투자된다. 다시 말해 시장교환을 부정적으로 전유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특히 이들은 이런 사업적 이익을 통해 행정을 매수하고 공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며, 이런 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기생하며 ‘보호’의 대가로 약탈을 정당화한다. 이들은 공적 지위의 이면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그림자 사업가들’(shadow businessmen)이다. 이런 관료들의 행위는 사적인 ‘지대추구’ 행위의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소위 법을 집행·감독하는 자들의 행위란 점에서 ‘법안의 도둑들(thieves of law)’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⁴⁵ Stephen Lovell, Alena V. Ledeneva & Andrei Rogachevskii (eds.), *Bribery and Blat in Russia Negotiating Reciprocity from the Middle Age to the 1990s* (London: Macmillan Press LTD, 2000), p. 8.

⁴⁶ 관료들의 업무 성격에 따라 약탈적 기생의 방식도 다르다. 첫 번째는 공장 및 농장의 간부들, 두 번째는 당기관 소속 관료들, 세 번째는 각종 민생 관련 활동을 통제하는 치안 및 보안 관련 관료들과 요원들, 마지막으로 각종 운수 및 수송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관료들과 요원들 등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차이에도 불구하고 약탈적 기생이 관료적 삶의 일상적 코드가 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⁴⁷ 간부들이 직권을 이용한 사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제』, pp. 38~40.

이러한 관료적 기생은 시장을 통한 물질적 재분배 역시 결과적으로 왜곡시킨다. 생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주민들의 시장교환에 관료들이 기생함으로써 생계 위협은 물론 빈부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빈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장터 교환에 몰두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반면, 관료들이나 정치자본을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물장사꾼’들은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갖는다. 결국 생계 이상의 이윤을 챙기고 소득을 재생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자금’과 정치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머지 장터를 ‘생계’의 최종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생계’선상에서 아사를 면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면 정확하다.

사실상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부도덕한 행위들을 의미한다 기보다는 개인적 이해에 몰두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개인화시키는 경향을 일컫는다. 관료들은 공적인 의무나 책임에 앞서 개인적 관계로만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고 ‘우리’와 ‘타인’의 이분법으로 사회세계의 구조를 인식하는 부족적인(tribal) 멘탈리티(mentality)를 갖는다. 따라서 현재 북한 관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도덕적 가족주의 현상과 주민경제에 약탈적으로 기생하는 방식은 윤리적인 부도덕(immoral)의 차원보다는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료적 삶의 방식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북한에서의 수령은 ‘도덕’을 상징하고 구현하는 주체였다. 수령의 혁명전통과 영도업적은 도덕적 행동과 사고의 준거가 되었다. 인민을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 국가가 인민에게 사회적 보장을 베풀고 인민이 노동으로 보답하는 동기는 ‘도덕’을 통해서였다. 은혜로운 베풀과 마땅한 노동의 보답이라는 호혜적 논리가 성립됨으로

⁴⁸ 이러한 ‘마피아 부족주의’와 시장교환이 갖는 관계를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설명하는 연구로는 밴필드(Edward Banfield)와 푸트남(Robert Putnam)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저발전의 도덕적 기초와 마피아나 마피아와 같은 권력관계의 도덕적 기초로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개인적 의존의 후견주의적 고리들(clientelistic chains)로 결합된 이들은 자신과 조직의 이익에 맹목적이라는 점에서 가족주의적이면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 모든 공적 규율과 법적 체계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도덕적이다. Edward C. Banfiel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8);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써 사회의 모든 관계는 이러한 논리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계획경제는 이러한 도덕적 관계를 물질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체계였다. 또 나아가 계획경제는 사회적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제가 되어 사회구조 속에서 작동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도덕의 실천 과정은 이면의 위장된 논리를 발전시켰다. 국가는 도덕을 관장하는 권위와 상징을 통해 권력이 되었다. 국가의 물질적 분배와 인민의 노동보답이라는 호혜적 담론 이면에 지배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배는 물질적·정치적 재분배의 권한을 통해 더욱 현실적 힘을 발휘했다. 관료들 역시 국가의 도덕을 집행하는 대리인이었지만, 도덕을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도덕을 관료적 생존의 논리로 변형시켰다. 인민들은 노동 이외의 어떠한 것도 허용되지 않는 삶의 조건 속에서 소박한 일탈과 노동을 그들만의 제의로 재전유하는 ‘일상의 정치’를 펼쳤다. 결국 사회주의체제는 공식적인 도덕담론을 통해 상징화 된 사회적 관계와 각 행위자들이 자기보존 차원에서 발달시킨 사회적 관계, 이 둘이 갖는 모순과 긴장 속에서 구성된 사회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총체적인 경제적 난관은 체제의 도덕적 지배를 정당화 하던 계획-재분배 체계의 붕괴를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도덕담론의 질서 속에서 위장된 순응의 형태로 존재하던 사회 각 층위의 ‘생계윤리’들이 경제난 속에서 현실적 생계논리로 적극화되면서 개인들의 생계활동을 정당화하는 도덕담론의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존과 자기보존이라는 생계윤리는 현실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과 자기 단위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령경제는 관료들에게 정치자본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충성과 지지, 통치자금을 확보해 왔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은 인민경제로 투여되기보다는 정권 안위 차원에서 수령과 상층관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전유되는 자금이란 점에서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관료들 역시 자신이 가진 정치자본을 바탕으로 자기 단위와 자신의 생존 및 자기보존을 위해 경제자본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속에서 인민들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생계를 위해 장터를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장터 행위는 관료들의 약탈적 기생에 노출된 채 기존의 억압적 사회적 관계에 ‘묻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시장교환은 아직까지는 생계차원에서 ‘장터’ 내에서만 발휘되는 ‘장터개인주의’의 성격이 강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사회에 호혜, 재분배, 시장이라는 교환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환 속에서 행위하는 국가, 관료, 인민의 담론, 전략, 실천 등이 1990년대 들어와 일정하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사회적 관계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던 호혜와 재분배의 교환 형태가 그 물질적 기초였던 계획-재분배 능력에 위기를 맞음에 따라 시장교환이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물질적 수급의 수단으로 부상했다. 시장교환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동기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에 맞춰 국가, 관료, 인민은 자신의 생존과 자기보존에 부합하는 일상에서의 도덕담론과 실천전략을 만들어냈다. 바로 북한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적 교환의 형태와 행위자들의 담론, 전략, 실천이 교직되는 지점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연구: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性) 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박 영 자**

- | | |
|------------------------------|--------------------------------|
| I. 서론 | IV. 근면·일몰·이악함 생존 전쟁의
전사(戰士) |
| II. 보은과 섬김 가부장 카리스마의 이행(移行) | |
| III. 돌봄과 헌신 여성에게 국민부양 전이(轉移) | V. 결 론: 지속과 변화 |

Abstract

The Sexuality of North Korean Women in ‘Songun’ Politics Period (1995-2006)

The paper studies the sexuality of North Korean women in the time of ‘Songun’ politics. This study points out how women construct their identities, how women and men think about the world, militarism policy by the power of Pyongyang, and then in the sexualities form of women and men, what the deepest effect is. It is powerful militarism about the society and people as well as army that the power of Pyongyang has taken military policy. The time of study is the period from 1995 to 2006.

In North Korea on ‘Songun’ politics the difference of sexualities, masculinity and femininity, are grounded in policy by military-power, rather than in alleged biological differences. In the military society the masculinity equals with army. So the sexualities of men are invariability, camaraderie, loyalty,

daring, cruelty, merciless, and so on. And the power confines the role of women such as military mother; sending to troops one’s children, caring for military personnel and wounded ex-soldiers, looking after military home round about. Also the power requires to women more active participants and more devoted life about army, society and home, having the military spirit, military life and military fashion.

In this process the power coerces women into the women sexualities hoping the military-power. Therefore the femininities are gratitude, serving, devotion, care, industry, thrifty, mercenary, and so on. The work is successfully progressed quite with a shortage of food and sending to troops one’s children including daughter.

Key Words: Songun politics, North Korean women, sexuality, militarism, national power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5-B00018).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연구교수

I. 서론

한국 군사정권 하 엄혹한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하다, 1986년 위장 취업한 혐의로 부천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경찰에 의해 성고문 당한 후 이 문제를 사회화하여 유명해진, 권인숙씨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여성에 대한 오랜 성찰과 연구 후 쓴 박사 학위논문이 ‘내 안의 군사주의(Militarism in Myself)’이다. 학생운동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그 후 남성사회의 뿌리 깊은 폭력적 우월성과 적대를 경험하고 깊게 고민한 그녀는, 2005년 출간한 저서에서 군사정권을 경유한 우리 사회에 ‘군사주의’와 ‘폭력성’이 얼마나 깊게 내면화되어, 양성(兩性)의 심리 저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¹

그렇다면 절대권력자의 지배와 전체 사회구성원에 대한 총동원, 그리고 6·25전쟁 이후 일상화된 군사문화 속에서 50년 이상을 살았으며,² 특히 1995년 국민 다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난 속에서 군대를 앞세워 사회전체를 군대식으로 재조직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김정일정권의 ‘선군정치’³와 병영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2,300여 만의 북한주민과 사회에 내면화된 주요 심성은 무엇일까? 상식적인 정보만 가지고도 한국의 군사주의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북한권력의 군사주의는 주민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006년 10월 9일 북핵실험을 기점으로 고조된 동북아 긴장고조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북한경제가 자체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현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주민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북한정권의 지배가 장기화되어 발생할 수 있는 내부군열을

¹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서울: 청년사, 2005). 그녀는 군사정권 종식과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와 개인의 심성(mentality) 및 행위에 ‘군사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게 영향 미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군정(軍政)과 군사문화 경험이 그 체제가 종식된 2006년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와 국민의 잦은 갈등과 대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사회적 평화와 평등, 그리고 민주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² 20세기 전쟁은 ‘전 국민 총력전(總力戰)’이었다. 1·2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의 파괴력과 영향력, 그리고 제노사이드로 드러난 인간에 대한 야만과 폭력을 극적으로 드러낸 전쟁사였다. 그리고 이 폭력적인 양차 대전을 직접 경험하고 냉전체제에 편입된 나라들은 ‘안보’라는 국가 목표에 따라,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총력전을 준비하기 위해 전 사회와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더욱이 전쟁과 함께 내전을 경험한 나라들은 동원체제 그 자체도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 남북한은 그 대표적 역사 사례이다.

³ 북한문헌은 선군정치를 “국방을 국사중의 국사, 국가정치의 중핵적인 중대사로 내세우고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투철한 관점에서 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틀어 쥐고 조성된 난국도 타개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독특한 정치리념, 령도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김현환, 『김정일장군 정치방식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p. 188.

고려할 때, 시기적 예측의 적실성을 떠나 만약 회자되는 ‘북한체제 비상사태’가 현실화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이겠는가? 그것은 북한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병영체제로 인한 남성부재 사회에서 시장사회화를 주도하며 일상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북한여성일 것이다.

2006년 현재 북한주민의 생존구조와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사회를 보았을 때 급변사태 발생이나 급작스런 통일이 추진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은 북한여성일 것이다. 구동독의 급변과 독일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그 후 10년 넘게 서독주민, 동독남성에 이은 3등 시민으로 그 지위가 격하되었을 뿐 아니라 생존과 정체성 문제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이에 저항하였던 동독지역 여성의 수난사와 독일여성계의 고난을 떠올려보자. 냉전질서에서도 동서독이 남북한에 비해 경제력이 높고 시민의식이 향상된 사회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 한반도에서 그 위험의 수위와 폭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주민의 심성과 특히 북한여성의 심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곧 닥칠지도 모를 통일사회 준비에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통일 전후 남북한 사회와 주민 갈등을 예비하고, 중장기적으로 평화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더 나은 통일사회’를 준비하는 구체적 과정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양성평등한 사회 구축에 대한 세계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이 시대,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21세기 통일 과정과 그 이후 사회에서 최대 다수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북한여성의 소외 및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양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중장기적 연구계획에 따라 먼저 북한여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⁴과 이를 위해 먼저 군사주의 국가권력이 북한주민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구성하였는가를 밝힐 필요에 의해 연구되었다. 섹슈얼리티는 우리가 흔히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즉 국가와 사회 권력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상이하게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 등 삶의 기준으로, 한 사회에서의 ‘성(性)적 정상상태’를 표현한 개념이다. 또한 국가가 성역할을 규범화하는 젠더(Gender)정책⁵의 일환이다.

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한 한국여성계의 현실인식과 구체적인 문제의식 및 고민들은 광복60주년,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으로 2005년 5월 10일 여성부의 후원으로 개최된 『여성평화통일 심포지엄』 자료집을 참조하기 바란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 통일을 말하다』 (서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5).

20세기 총력전 체제를 경험한 사회에서 전쟁과 군대는 남성성의 상징이다.⁶ 더욱이 10년 이상 지속된 북한의 선군정치 과정에서 대부분의 건장한 남성들은 군대 또는 군관련 사업과 무기·군수산업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권력의 집중과 폭력성은 사회적 위계의 원천이 되기에, 남성과 군대를 중시하는 병영체제에서 자원배분과 권위배분은 당연히 남성중심적 가치와 함께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많이 할당될 수밖에 없다.⁷ 사회적 권위배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선군시대 병영체제 하에서 북한 남성성의 근원이며, 북한권력과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규범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총대’ 정신이다. 북한문헌이 밝히는 ‘총대’의 성격은 바로 선군시대 북한권력이 규범으로 제시하는 남성성이다. 정리해보면 불변성, 무조건적 충성심, 동지애, 인내심, 용맹함, 비타협성, 단호함, 무자비함, 적에 대한 증오 등이다.⁸

이러한 남성성을 근간으로 하는 군사주의 체제에서 김정일정권은 북한여성에게

⁵ 젠더 개념은 성기(性器)의 다름으로 인한 자연적인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공동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경제적 구조를 주목하는 개념이다. Susan Hanson and Geraldine Prat, *Gender, Work, Space* (New York: Routledge, 1995).

⁶ 조지 L 모스, 이광조 옮김, 『남자의 이미지』 (서울: 문예출판사, 2004), p. 192.

⁷ 이 같은 사회에서 남성성은 민족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전사(戰士)로, 여성성은 이런 남성성을 높이 받들며 보호하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민족전사를 재생산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더욱이 식민지배 종결 후 위로부터의 민족국가 수립을 경험한 아시아지역 나라에서 이와 같은 종속적 젠더정책과 위계적 섹슈얼리티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George L. Mosse, *Nationalism and Sexuality* (Lond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Anthias Floya & Yuval David Nira, “Women-Nation-State,” J. Hutchinson & Anthony D. Smith eds., *Nationalism: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 4 (New York: Routledge, 2000); A. Basu, “The Many Faces of Asian Feminism,” *Asian Women* 5 (Seoul: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The Sookmyung Women’s Press, 1997), p. 7.

⁸ 그 핵심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총대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불변성에 있다. 총대는 오로지 주인이 겨누는 목표를 향해 곧바로 탄알을 날린다. 국제정세가 변했다고 하여, 모든 것이 어렵고 간고하다고 하여 결코 그 양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세추이를 보아 가며 갈 길을 선택하는 간신들의 기회주의적 작태는 총대의 변함없는 모습과는 상반되는 몰골이다. 총대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 어떤 약조건에서도 쏘면 탄알을 날리기 마련이며 예돌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는 총대의 생리는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혁명 앞에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 가는 혁명동지의 참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총대는 타협과 양보를 모른다. 혁명은 그 자체가 원칙이어서 단 한걸음의 후퇴와 양보가 열걸음, 백걸음의 후퇴와 양보를 가져오며 그것은 혁명의 순결성을 흐리게 하며 적에게 룡락 당하는 비극적 후과를 빚어낸다. 쏘면 목표판을 구멍내기 마련인 총대의 무한한 비타협성이야말로 혁명을 사소한 우여곡절이나 편차도 없이 곧바른 길로 전진하게 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다. 총대는 단호하고 무자비하다. 원수에 대한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력은 총대의 근본속성인 동시에 최대의 장점이라 하겠다. 총대 앞에서는 리유와 구실이 통하지 않는다.” 김현환, 『김정일장군 정치방식연구』, p. 204. 이와 같은 남성 섹슈얼리티는 20세기 초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던 이탈리아와 독일 파시스트들이 강조한 남성성과 군대정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지 L 모스, 『남자의 이미지』, pp. 271~274.

어떠한 성적 정체성을 요구 및 강제하고 있는지, 그 10여 년의 역사를 살펴보고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면 국가권력의 여성 섹슈얼리티 구성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것은 권력에 의해 여성의 삶에 주어진 도덕성·책임·윤리의 실체와 정체성 형성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 중 성규범으로 나타나는 성적 정체성을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도덕’이다. 도덕이란 국가권력 뿐 아니라 가족, 사회집단, 교육기관, 교회 등이 그렇듯이 각종 규율기제를 통해 개인이나 그룹들에게 제안 및 강제되는 행동 규칙과 가치들의 총체를 의미한다.⁹

섹슈얼리티 연구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어떻게 그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가를 중시한다.¹⁰ 앞서 보았듯 섹슈얼리티 구축공간과 권력은 다양하다. 그 중 본 연구는 군사주의 국가권력과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199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선군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에게 권력은 어떠한 성적 정체성을 요구하였는지, 특히 권력에 의한 내면화 작업을 연구한다. 여기서 내면화(internalization)는 한 사회의 보편적이거나 지배적인 가치가 개인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말한다.¹¹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으로 199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발간된 북한의 공간문헌 중 본 연구주제 관련 가장 신뢰할 만한 구체적 사료(史料)인 『김정일 선집』, 『로동신문』, 『조선녀성』을 활용한다. 활용방법은 먼저 1995년~2006년까지 발간된 세 문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 내용을 각각 따로 분석한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세 문헌 분석내용을 시기별로 교차 확인한다. 문헌별·시기별 특징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재분석한 후, 객관성이 입증된 내용을 자료화한다. 마지막으로 각 문헌의 대표성을 고려해 활용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태와 정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계열적으로 활용한다.

⁹ 그러나 이러한 도덕율이 전일적으로 정체성이 되지는 않는다. 그 수위와 양상은 권력에 지배양식에 의해 그리고 이를 자기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체화 과정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영 공역, 『성의 역사: 제2권 쾌락의 활용』(서울: 나남, 1997), pp. 39~41.

¹⁰ Gilligan, Carol,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¹¹ 전병재, 『사회심리학』(서울: 경문사, 1981), p. 268. 내면화는 수용자가 영향을 주는 권위나 외적 상황, 또는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순응이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를 상대에 동일화(identification)하는 것보다 더 심층적인 영향을 지칭한다. 전병재, 위의 책, pp. 341~343. 즉, 개인이 권력의 요구나 사회에 보편 가치를 수용하여 행위와 사고의 준거로 삼고 있는 상태를 내면화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므로 내면화는 권력에 의해 구성된 규범의 사회화를 수용자적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다.

II. 보은과 섬김: 가부장 카리스마의 이행(移行)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국가권력이 사회와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이 같은 공간과 언어, 그리고 풍습과 법을 공유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푸코(Michel Foucault)의 표현에 따르면, “단순히 개인들이 합쳐 구성된 집단이 아니라, 집단 구성원 각자가 살아있는 육체적 실체인 왕과 법률적이며 동시에 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구성원들 각자와 인격적·법률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절대지도자, 이것이 바로 “민족의 몸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지도자의 인격 안에 존재하게 된다.¹² 이렇듯 민족을 대표하는 절대지도자가 형성된다면, 그 사회는 절대지도자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수직적 위계사회’가 된다.¹³

이때 절대지도자는 국가권력과 하부 권력집단에 의해 조작되어 대중에게 부과된 하나의 신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화의 위력이 현실을 덮어버리는 수준이 된 사회가 바로 북한사회이다. 때문에 북한은 21세기에 보기 드문 인격화된 1인 절대권력 체제를 2006년 현재에도 유지하고 있다. 그 논리는 무엇이고 그 권력구조가 여성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바로 왕조적 인덕(仁德)정치¹⁴ 논리와 그 신화가 만들어 낸 은혜에 보답하라는 ‘보은(報恩)의 윤리’, 그리고 그 인덕을 높이 섬기라는 ‘섬김의 도덕’이다.

그렇다면 보은과 섬김이라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김정일정권은 어떻게 구성하였는가? 그것은 김일성시대 구축한 가부장적 카리스마를 김정일시대로 이행시키는 과정이었다. 그 역사와 과정을 살펴보자.

1. 유훈통치와 김정일정권 수립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유훈통치를 실시한 김정일정권은 수령인 김일성이 여

¹² 미셸 푸코, 박정자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서울: 동문선, 1997), p. 253.

¹³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서울: 한길사, 1997).

¹⁴ 북한문헌에 따르면 인덕정치는 김정일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은 김정일을 우러러 모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원리’로 21세기 태양인 김정일이 백성인 북한주민 뿐 아니라 천하를 껴안는 ‘무한대한의 사랑’이라고 한다. 김현환, 『김정일장군 정치방식연구』, p. 64.

성해방을 위해 베푼 은혜를 선전하며 여성에게 보은의 윤리를 강조한다. 김정일의 논리를 살펴보면, 북한 여성운동의 전통은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시기부터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해방과 자주성을 실현하도록 지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해방이후 남녀평등권 법령을 직접 작성하고 제도화하여, “여성들을 오랜 세기에 걸친 봉건적 억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였으며 새 사회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게” 돌보아 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¹⁵

그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성들의 마땅한 도덕이고, “혁명적 의리의 최고표현”이라고 선전된다. 또한 인민은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¹⁶ 김일성의 권위와 권력을 자신이 온전히 계승하려 한다. 그리고 김정일의 권력의지를 받아 안은 정권의 친위대들은 각종 사회화기제를 통해, 김일성에 대한 보은과 섬김의 심성을 김정일에게 이전(移轉)시키며 그 내용을 북한여성들에게 내면화시킨다. 그 역사와 과정, 그리고 논리를 살펴보자.

1995년 3월 8일 3·8 국제부녀절 85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국가권력의 여성에 대한 요구를 현실화시키는 여성동맹(이하 여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강판선은 ‘수령의 유훈’이라는 ‘김정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모든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 숭배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충신, 효녀”가 되어야 한다며, 어느 사회단체보다 가장 앞서 김정일에 대한 충심과 효심을 불러일으킨다.¹⁷

그리고 1996년 3월 3·8 국제부녀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 도 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를 충효일심으로 받들고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갈 수 있는 여성의 정신과 생활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조직한다.¹⁸ 이어 7월 30일 남녀평등권 법령발포 50돌 기념 중앙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정무원 부총리 김복신은

¹⁵ 김정일,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 있는 역량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3월 8일),” 『김정일 선집 14』, p. 26.

¹⁶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년 12월 25일),” 『김정일 선집 14』, p. 114.

¹⁷ 『로동신문』, 1995년 3월 8일.

¹⁸ 『로동신문』, 1996년 3월 8일.

<일편단심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자>는 가치를 선전하며, 이제 단순한 충신과 효녀가 아니라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최고사령관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진짜배기 충신, 지극한 효녀가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¹⁹

북한권력이 요구하는 절대권력자 김정일과 북한여성의 관계는 ‘왕과 충신’이며 동시에 ‘아버지와 효녀’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심성을 가진 효녀로서의 삶과 왕을 우러르고 따르는 섬김의 도덕을 실현하는 충신으로서의 삶이 강제된다. 이 과정은 효녀와 충신의 역할 수행여부를 떠나 ‘보은과 섬김이라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과정이고, 김일성의 가부장적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이행시키는 과정이다.

1997년부터는 김정일에 대한 보은과 섬김의 섹슈얼리티가 구체화됨과 동시에 각종 은유를 통해 형상화된다. 여맹 부위원장 한계옥은 “오늘 우리 여성들이 사회의 꽃, 나라의 꽃, 충성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 온 나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언제나 여성들을 아끼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내세워주시려고 온갖 은정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3·8국제부녀절을 맞아 “우리 인민의 삶의 태양이시고 행복의 전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표하였다.²⁰

그리고 김정일정권이 공식화된 1998년 3·8국제부녀절 88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는 <일편단심 김정일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충신이 되자!>, <혁명적 신념과 량심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자!> 라는 구호가 핵심 구호로 등장했다. 특히 모든 여성들이 김정일을 “투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가며 그 어떤 천지풍파 속에서도 어버이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제일충신, 제일효녀가 될 데 대하여 강조” 하였다. 충성과 섬김의 자세가 투철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어느 계층보다 충효의 모범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회부터 김정일은 “민족의 태양”이 되었다.²¹

국제 및 한국의 대북지원이 증대하면서 군대와 당 및 국가기관 간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배급이 평양지역에까지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이루어지게 되자, 1999년부

¹⁹ 『로동신문』, 1996년 7월 30일.

²⁰ 『로동신문』, 1997년 3월 8일.

²¹ 『로동신문』, 1998년 3월 8일.

터는 강성대국론이 등장하고 이와 함께 보은과 섬김의 정당화 논리가 좀 더 확장된다. 즉, 김일성의 명성과 권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업적과 전망에 대해 보은과 섬김의 심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김일성시대에도 보기 힘들었던 갖은 미사어구가 등장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보은과 섬김의 도덕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1999년 3월 천연옥 여맹위원장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녀성들을 포함하여 온 나라 전체인민이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며 이전보다는 근거있는 논리를 선전한다. 그러면서 섬김의 윤리는 더욱 강화한다. 여성들은 김정일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 7월에는 김정일을 상징하는 “태양의 빛발아래 만발하는 혁명의 꽃”으로 여성을 은유하며, 북한여성들이 “위대한 아버지의 품속에서 행복의 꽃, 나라의 꽃, 혁명의 꽃으로 피어나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선전하며, “위대한 아버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녀성들은 충효의 꽃, 혁명의 꽃으로 더욱 만발할 것”이라며 은유의 정도를 높이고 있다.²³

2000년에 들어서는 보은과 섬김의 윤리를 구체적인 생활세계에서 발휘하도록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3월 8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여맹위원장 천연옥은 <당의 위업에 충실한 조선녀성들의 혁명적 기개를 떨치자>라며 여성들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그리고 3·8국제부녀절 90돌 기념행사에서 “녀성들을 혁명의 꽃, 나라의 꽃, 생활의 꽃으로 내세워 주는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해 나가는 것이 오늘의 조선녀성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며, 보은과 섬김의 자세를 생활세계에 발휘하여 여성들이 사회적 모범을 창출하도록 독려한다.²⁴

2. 대적(對敵) 군인정신과 선군시대 여성미

2001년 미국 대선결과 공화당 내 신보수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부시정권이 들어서고 기독교적 정신세계에 기초한 비타협적이고 도덕적인 ‘종교적 근본주의’ 경향이 드러나게 되면서, 북한정권은 클린턴 정부시기 북미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

²² 『로동신문』, 1999년 3월 9일.

²³ 『로동신문』, 1999년 7월 30일.

²⁴ 『로동신문』, 2000년 3월 8일.

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미국에 의한 외적 위기를 선전하고 반미반제라는 대적논리 강화로 체제 내적 결속을 더욱 강고히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변화와 함께 북한권력에 의한 보은과 섬김의 여성 섹슈얼리티 구성 과정에서 미국으로 대표되는 ‘적에 대한 강렬한 증오’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강고한 내적 결속’, 그리고 군인과 동일한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이 여성에게 부가된다.

2002년에 들어 군대 내에서는 군정배합(軍政配合)을 강조하면서 군사와 정치일군의 합심 및 수령결사옹위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한다. 그리고 결사항전의 군인정신을 전 사회가 체화하도록 각종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한다. 2002년 3월 9일 3·8 국제부녀절 92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여맹위원장 박순희는 “모든 녀성들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태양조국에서 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자며,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결속력 강화를 강조하고, “절해고도에서도 수령에 대한 의리와 절개를 지키는 2000년대의 당의 참된 딸”이 되자며 불안감과 위기 체감도를 높인다.²⁵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 녀성들은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경애하는 장군님과 뜻도 마음도 운명도 함께 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며 순간을 살아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김정일 결사옹위투사가 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보은과 섬김의 맥락에서 ‘적에 대한 강렬한 증오’가 강조되어, 전체 북한여성들로 하여금 반미항전(反美抗戰)과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군대를 적극 원호하고 군대와 인민의 사상일치를 이루어내며, 특히 “모든 어머니들은 아들딸들을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2000년대 <<트.그>>²⁶ 열혈투사”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²⁷

나아가 보은과 섬김의 최고봉으로 여성군인을 선전하고 칭송하며 여성군인 조직화 작업을 본격화한다. 선군시대 북한여성들이 “정의의 총대 잡은 것은 조국과 인민의 큰 자랑”이고, 처녀시절 남성군인들과 똑같이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키는 여성군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며, 처녀들이 군인의 아내가 되는 것을 “아름다운 꿈으로 간직”하고 있다며, 이것을 “장군님은 자랑스러워하고 항상 내세워주며, 그들의 생활조건을 보장”해 준다고 선전한다.²⁸ 그러면서도 <수령님 품속에서 붉게 핏니다>, <장

²⁵ 『로동신문』, 2002년 3월 9일.

²⁶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시절 조직했다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약자.

²⁷ 『로동신문』, 2002년 3월 9일.

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라는 여성가요에서 나타나듯 여성은 여전히 절대권력 자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담론을 선전한다.²⁹

여성군인에 대한 칭송무드를 형성하면서 2003년 3월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병역을 의무화하는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복무기간을 남성은 13년에서 10년, 여성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전 국민 군사복무제를 채택하였다.³⁰ 전민 군사복무제를 채택한 2003년 3월 8일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선군시대 조선녀성의 혁명적 기개를 힘 있게 떨치자>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담론으로 섬김의 도덕과 내부결속을 강조한다.

“모든 녀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 위대한 선군 시대에 사는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 기개를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 녀성들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장군님을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고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데 조선녀성운동의 최대의 사명이 있다. 녀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장군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며 언제나 장군님을 깨끗한 량심과 순결한 도덕의리로 받들어 모셔야 한다…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는 정치이며 나라의 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은 선군시대 녀성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 주신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 녀성들의 오늘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이 있고 희망찬 미래가 있다.”³¹

그리고 3·8 국제부녀절 93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여맹위원장 박순희는 북한여성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피 주신 장군님”을 선전하고, “모든 녀성들은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수령 절대 숭배심,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을 걸음걸음 따르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장군님과 뜻도 마음도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한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선군혁명동지의 대오로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³²

이 같은 김정일에 대한 섬김의 도덕률은 각종 문학예술로 형상화되었는데 대표적

²⁸ 『로동신문』, 2002년 7월 30일.

²⁹ 『로동신문』, 2002년 7월 31일.

³⁰ 정영태·박형중, “북한의 병력감축설 및 전민복무제 채택의 의미와 대책(정책건의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³¹ 『로동신문』, 2003년 3월 8일.

³² 『로동신문』, 2003년 3월 9일.

으로 『금반지』라는 시의 한 대목을 살펴보면, “...우리 장군님 가시는 선군길을 아름다운 비단필로 펼쳐 드리고 싶은 이 나라 녀인의 그 마음이 비껴 내 마음에도 뜨거운 금반지”라는 마지막 구절이 눈에 띈다.³³ 이 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연상케 하는 애절하고 헌신적인 정서를 가득 담고 있다. 그러나 소월의 시에 나타난 ‘임에 대한 원망’의 서정은 보이지 않고, 오직 ‘순종의 미덕’ 만이 넘칠 뿐이다.

나아가 선군시대의 “새로운 여성미”가 부각되는 데, 그것은 “선군시대의 여성혁명가”로 “총대와 운명을 같이 하는 선군형의 여성”이다. 북한당국은 이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성장한 우리 여성들의 새로운 모습이며 인류 여성사가 알지 못하는 특출한 여성미도 다름 아닌 여기에 있다”고 한다. 《우리 집은 군인가정》이란 노래가 부각되고, 모든 여성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혁명의 길을 함께 걷는 선군혁명동지”로 “최고사령부의 여성부대이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 친근한 전우이고 한 식솔”이라며 내적 결속과 병영체제 강화를 위해 군사적 동지애를 가감한다. 또한 가족의 군대입문을 독려하는 상징담론으로 군인가정의 여성을 표현하는 <전호가의 붉은 ‘진달래’>와 김정일에 대한 섬김의 도덕을 극대화하는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들>이라는 은유가 등장한다.³⁴

3. 김정일 결사옹위의 신념과 의리

북미갈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던 2004년 3·8국제부녀절 94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자!>, <강성대국건설에서 조선녀성의 영웅적 기개를 떨치자!>라는 구호가 핵심구호가 되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백두산 3대장군으로 표현되는 김정숙에 대한 선전이 강화된다. 특히 북한 여성운동이 김정숙에 의해 개화기에 들어섰다면, 그 이유는 김정숙이 북한의 여성운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주체의 여성운동으로 강화 발전”시키었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³⁵

200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교화된 보은과 섬김의 여성 섹슈얼리티는 다양한

³³ 『로동신문』, 2003년 3월 8일.

³⁴ 『로동신문』, 2003년 3월 8일.

³⁵ 그러므로 “모든 여성들이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품모를 따라 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을 걸음걸음 따르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의 수뇌부와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선군혁명동지가 되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 강조되었다. 『로동신문』, 2004년 3월 8일.

방식으로 북한여성에게 작용하였는데 그 논리는 큰 차이가 없으나 첫째, ‘보은의 도덕’을 ‘섬김의 이유’로 더욱 강조하는 것, 둘째, ‘섬김의 정당성’을 ‘김정일의 위대성’으로 선전하는 것, 셋째, 유사용어들이 반복되면서 더 화려하고 절박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넷째, 보은과 섬김의 윤리를 잘 구현했다는 수많은 여성사례가 소개되고 교육되어 그 심성을 내면화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증산군의 한 모범 여맹원은 “자신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고 참된 삶을 안겨준 수령을 믿고 변함없이 따르는 한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는 혁명가의 신념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수령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된다”며, 해방 후 새 삶을 주어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해준 “수령님과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념이 심장깊이 자리 잡혀” 있고, 그 은덕에 보답하고자 일하고 또 일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념과 의리’의 전형이라고 한다.³⁶ 조선노동당 창당 60년을 맞이한 2005년 10월 북한의 여성잡지 『조선녀성』에 실린 <붉은 기를 높이 들고 당을 따라 60년>이란 기치의 사설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우리 녀성들은 조국광복의 은인, 녀성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은덕을 잊지 말고 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민족의 아버지로 대를 이어 높이 모시도록 해야 한다...우리 녀성들은 다음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녀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신념을 안고 그이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야 한다. 녀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생명도 서슴없이 내대는 결사옹위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녀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과 로선의 견결한 옹호자, 관철자가 되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선군시대의 요구대로 살며 일해 나가야 한다.”³⁷

2006년 들어서는 <<21세기의 태양 만세!>>라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를 연상케 하는 ‘절대적 위대성’을 표현한 극존칭이 담론화된다. 북한여성들이 북한체제 그 자체인 지도자 김정일을 목숨바쳐 섬겨야 하는 이유는 <사상리론의 독창성,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령군술, 한없이 넓은 도량, 세상만사에 막힘이 없는 다방면적인 지식, 빠르고 정확한 정치적 결단성, 강한 정치적 의지> 등이다. 그리하여 “오직 문무재덕을 완전무결하게 갖추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만을 령사는 후세불멸한 자랑으로 기록하였으니 우리 민족의 긍지 하늘에 닿았다”라는 식³⁸의 천지신명에게 바치는 축문

³⁶ 『조선녀성』, 2005년 8월호, p. 37. 이 시기 북한의 각종 행사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우리 수령님>>, <<조선의 장군>>이다.

³⁷ 『조선녀성』, 2005년 10월호, p. 30.

(祝文)을 연상케 하는 신비주의 채색이 두드러진다.

또한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힘은 선군정치와 자주국방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준 김정일의 위대한 은혜라며, 보은과 섬김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극대화하고 있다.

“그이를 모셔 민족의 생존조차 가능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엄혹한 시련의 시기 자위적 국방력의 핵심력량인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되었고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었으며 국방공업은 더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원수벌 찬란히 빛나는 최고사령관이 펴낼 휘날리는 오늘의 선군시대에 혁명적 군인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 혁명군가가 지심을 흔들었다. 조국은 또 한번 넓어지고 또 한번 높이도 뛰어 올랐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 국방의 힘이 낳는 위력은 이렇게 크고 강한 것이었다…우리 장군님 그 모진 시련과 난관을 무한한 혁명성과 헌신성, 숭고한 책임감으로 이겨내시며 숨을 조이는 제국주의 무리들의 끈질긴 압살공세도 막아내셨고 사탕알보다 총알을 더 귀중히 여기시며 동음이 멎은 공장들과 불빛이 꺼진 거리를 뒤에 두시고 전선으로, 국방강화의 길로 달리고 또 달리시었다.”³⁹

북한체제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나라, 내 인민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사생결단의 험난한 길’을 헤쳐 나온 아버지 김정일의 위대성이라며⁴⁰, 보은과 섬김의 도덕을 극대화하고 김일성의 가부장적 카리스마의 김정일로의 이행을 정당화한다.

Ⅲ. 돌봄과 헌신: 여성에게 국민부양 전이(轉移)

여성학자들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들보다 사람과 사건 간 상호작용 및 내적 관계를 더 중요시 한다. 여성들이 국가보다 공동체에 더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⁴¹ 인류의 문명발전과 함께 인간의 심성도 다양한 양태로 변화되었지만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역할분담과 남성주도 국가권력 및 군대가 강화되면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인간공동체 내부를 관리하고 돌보는 심성이 자

³⁸ 나아가 김정일은 비범한 한평생을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장군 가문의 군인이었고, 항일대전과 반미성전에서 60여 성상을 “보통 인간들이 상상 못할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신” 신적 존재라는 것이다. 『조선녀성』, 2006년 2월호, p. 5.

³⁹ 『조선녀성』, 2006년 4월호, pp. 11~12.

⁴⁰ 『조선녀성』, 2006년 4월호, p. 12.

⁴¹ Seager, Joni, *Earth Follies: Coming to Feminist Terms with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New York: Routledge, 1993).

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성적 위계의 본질’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⁴²

오히려 근대 국가권력이 국민을 조직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세계를 점차 이원화하고, 차별적 세계인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구획하여 위계적으로 구조화한 것이 性위계의 원인이다. 위계적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기술은 통치에 효과적인 사회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해 완성되었다. 남편에게는 집밖이 아내에게는 집안이 할당되어 전자는 남성의 구역이 되고 후자는 여성의 구역으로 제도화되었다.⁴³

이러한 공간배치의 이원화와 함께 근대 국가권력에 의해 구성된 여성 섹슈얼리티 중 대표적 것이 ‘돌봄의 윤리’이다. 가정을 기준으로 한 공간구조의 이원화와 자녀 및 가정을 돌보는 돌봄의 윤리, 그리고 성스러운 모성이 자녀와 가정을 위한 ‘여성의 헌신성’으로 정형화된 것은 서구의 경우 19세기 빅토리아시대 자리 잡아 20세기 근대 민족국가의 확장과 함께 보편화되어 21세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 여성 섹슈얼리티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에 한정되지 않았다. 국가권력이 감당하긴 번거롭고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되었던 고아와 부랑자,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도 여성의 심성으로 구성되었다.⁴⁴ 국가보다 인간공동체에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과 헌신’의 심성을 구성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여성 섹슈얼리티이다.

그렇다면 경제난이 10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체제생존을 위해 군대와 국방에 올인(all in)하고 있는, 북한권력은 ‘돌봄과 헌신’이라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⁴²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생산력 발전과 함께 정착 및 농경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남성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또는 부족 간 전쟁을 위해 여성에 비해 이동이 잦았으나, 여성은 양식재배와 출산에 힘쓰다 보니 경험세계가 좁아지고, 둘째, 직접민주주의 시초이며 모델인 그리스 도시생활을 통해 확인되듯이 부권제가 보편화된 고대 문명과 잦은 전쟁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주요 부분인 정치와 군대가 남성세계로 자리 잡았고, 셋째, 여성이 전쟁터에서 지친 남편의 안락을 위해 미용과 가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남성의 뒤를 이를 출산과 양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고, 더욱이 높은 남성 및 유아 사망률과 피임법의 미발달로 많은 시간을 출산과 몸조리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⁴³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영 공역, 『성의 역사: 제2권 쾌락의 활용』 (서울: 나남, 1997), p. 214.

⁴⁴ 이 활동은 서구 부르조아들의 ‘기부문화’와 연계되어 중산층 여성들의 정신적 충족감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였다. 그리고 부자가 자신의 부 중 아주 일부라도 사회에 베푸는 문화는 富者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국가의 공적 부담을 일부 상쇄시켜주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훌륭한 미덕’으로 칭송되어 부자들의 도덕율로 자리 잡았다. 그리하여 ‘자원봉사’ 형태로 다양한 빈민구제 활동이 자발적으로 행해지기도 하며, 국가 및 집단의 대중동원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구성하고 있는가? 가정 내적으로 보면 의식주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에게 가족구성원의 생계책임 역할을 맡기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보면 군대를 돌보는 원군활동과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국가가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꽃제비⁴⁵·장애자·노인·고아 등 선군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돌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가족법 제정과 고난의 행군

북한은 1990년 최초로 가족법을 제정하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난과 집단생활 이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시작했다. 1990년 처음 제정된 북한 가족법은 1993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결정 제35호》로 수정 및 보충되었는데, 그 주요 목적 및 내용은 국가의 인민부양 의무를 가족, 특히 여성 및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돌봄과 헌신의 여성 섹슈얼리티 구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데, 주요 조항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가족법의 기본 편 중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3조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4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⁴⁶

가정을 체제유지의 기본공간으로 인식하며 가정생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북한정권의 고유한 논리인 ‘국가=사회주의 대가정’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의 일차적 제정목적이다. 제4조에 국가의 후견제도가 실현되는 양상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여맹, 인민반, 그리고 주체로 보면 기혼여성의 역할로 작동한다.

제3장 가정과 제4장 후견 편을 보면 돌봄과 헌신의 여성 섹슈얼리티를 가정과 사

⁴⁵ 꽃제비는 1995년~97년 북한인구 약 200만 명이상이 기아로 사망 또는 실종됨에 따라 형성된 ‘거리를 헤매며 구걸하여 사는 아이들’이다. 북한사회에서 꽃제비의 수는 약 100만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주거지도 없고 연고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시장과 역 등을 돌아다니며 구걸도 하고 잔도독질 등을 하는 등 북한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무질서하고 궁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⁴⁶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1장.

회에서 어떻게 구성하려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30조 공민은 다른 사람의 미성인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양자녀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자, 그 밖에 양자녀를 보육 교양할 능력이 없는 자는 입양할 수 없다. 제37조 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 제31조~36조까지 부부, 부모·자식, 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가 경제 및 육체적으로 생존능력이 없을 시 혈연가족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한 후, 제37조에서 총괄적으로 부양책임을 명시한 것이다.⁴⁷

제4장 후견 편 중 제40조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제42조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 법 제41조에 지적된 후견인(4촌 내 혈족)이 없거나 후견인 선정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을 정한다.⁴⁸ 국가비용 부족으로 책임질 수 없는 고아·노인·장애인 부양을 4촌 내 혈족의 의무로 하고, 혈족 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책임을 북한사회에서 여성공간인 주민행정기관 중 최고말단기관인 인민반과 여성조직인 여맹 주도로 기혼여성이 돌보아 주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북한권력의 인식은 강력한 집단적 민족주의에 기초해 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인 자웅단위를 기반으로, 원초적 감정에 의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을 국가공동체의 기초로 인식하며, 국가도 가족과 같은 자연적이며 본래적인 조직이라고 믿게 한다.⁴⁹ 이러한 민족주의 전략은 가족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가족 구성원을 생산하고 보호하는 여성역할과 그 역할의 사회적 확장을 추진한 것이다.

이 역할의 주체인 여성은 가정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생존도 돌보는 주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돌봄과 헌신의 여성 섹슈얼리티는 북한의 가정과 사회 둘다에서 구성되고 재구성되고 있다. 이는 국가정책 및 지침 발표와 함께 여맹간부들의 선전과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내고 전파하면서 강화된다. 그 배경은 선군정치와 1995년 이후 기아로 인한 사상자 급증과 생존을 위한 가족해체 현상이 급증한 것 등

⁴⁷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3장.

⁴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4장.

⁴⁹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서울: 박종철출판사, 2000), pp. 23, 47.

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어머니가 가족생존을 위해 헌신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과 새롭게 등극한 절대권력자에게 대를 이은 충성, 그리고 선군정치를 사회화하기 위한 군사중시 문화형성 및 인민군대 지원이 여성의 핵심임무가 된다.

1996년 7월 30일 개최된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50돌 기념 중앙보고회 내용에 의하면, 여성들은 “아들딸을 장군님에게 충성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며 건전한 정신도덕적 품성을 지닌 혁명의 믿음직한 교대자로 키우는데 모든 정성 다 바쳐야”하며, 군사중시·인민군대 적극원호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⁰ 최고권력층에서는 <혁명가 유자녀 학교>로 김정일의 핵심 친위대 및 군간부를 양성하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최고권력자와 그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선전한다. 특히 최고권력자 가족구성원 중 여성, 어머니의 역할이 된다. 이에 대해 김정일의 언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언제나 만경대 혁명학원 원아들 속에 계시면서 친부모도 다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은정으로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을 세심히 돌보아 주시었습니다. 김정숙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수령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싶어 하는 원아들의 절절한 녀원을 헤아리시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경대혁명학원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건립하도록 하시었으며 혁명가 유자녀들의 마음속에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념의 기둥을 세워 주시었습니다.”⁵¹

2. 제2차 어머니대회: 헌신성 독려

본 연구와 관련해 주목할 점으로 1961년 말 김일성을 중심으로 온 사회와 국가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구성하려는 북한의 전체주의적 정책이 모색되면서 개최된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 이후 열리지 않았던, 북한의 어머니대회가 1998년과 2005년 이례적으로 제2차와 제3차로 연이어 개최된 것이다. ‘국가를 떠 바치는 성스러운 모성’과 ‘모성의 사회적 확장’을 추진하며 여성의 헌신성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선군시대 북한체제가 얼마나 주민생존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가?’, ‘국가책임을 어떻게 기혼여성에게 떠맡기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회들이다.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 개최전야인 1998년 9월 28일 『로동신문』 1면에 실린 <제2

⁵⁰ 『로동신문』, 1996년 7월 30일.

⁵¹ 김정일, “만경대혁명학원은 주체의 혈통을 이어 나갈 핵심공간 양성기지이다(만경대혁명학원창립 50돐에 즈음하여 학원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7(주체86)년 10월 12일,” 『김정일선집 14』, p. 380.

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란 제목의 사설에 나온 이 대회취지는 “장군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새로운 요구에 맞게 어머니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대회가 여성문제 해결과 후대 보육교양에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설에 실린 김정일시대 모든 여성과 어머니의 주요 역할은 첫째, 김일성 유훈관철, 둘째, 김정일 지도에 충실한 충신으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킬 본분, 셋째,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인 김정숙 따라배우기, 넷째, 아이를 많이 낳아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도록 충성동이·효자동이로 키울 것, 다섯째,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노력적 위훈 특히 농업과 경공업에 책임질 것, 여섯째, 부모없는 아이를 키우고 자식없는 노인들을 친부모와 같이 돌보는 ‘공산주의적 미풍’ 발휘 등이다.⁵²

이 대회에서는 먼저 95~97년 <고난의 행군> 시기 가족생존을 책임지기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들을 칭송하며, “조국의 미래는 그 시대 어머니들에게 크게 달려있다.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민족의 흥망, 조국의 운명, 혁명의 성패가 결정된다”며 어머니들의 헌신성을 강조한다.⁵³ 그리고 대회 개최당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대회축하와 함께 어머니들은 가정의 꽃·나라의 꽃이라 하며, 공산주의적 도덕품성과 집단주의 사상으로 가정의 화목과 집단의 단합을 이루어 “사회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여야”한다고 강조한다.⁵⁴ 대회는 천연옥 여맹위원장의 보고와 토론자소개로 시작되었는데, 대회장에는 <여성들은 김일성 조선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자!>, <후대들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참된 충신으로 키우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대회 목적을 알려주고 있다.⁵⁵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진행된 대회에서는 무엇보다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김정일정권을 수호하고 사회 이탈과 혼란을 막아내는 어머니들의 모범을 전파하기 위해 사전에 각 도·시·군에서 조직된 모범 어머니들의 토론이 주를 이루었다. 50여 명의 토론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가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의 핵심주제들은 첫째, 여성과 어머니들이 김

⁵² 『로동신문』, 1998년 9월 28일.

⁵³ 『로동신문』, 1998년 9월 28일.

⁵⁴ 『로동신문』, 1998년 9월 29일.

⁵⁵ 『로동신문』, 1998년 9월 29일.

정일의 충신·효녀로 살아가는 것, 둘째, 김정일의 총폭탄이 될 자식들을 많아 낳아 키우는 것, 셋째,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군대를 돌보는 것, 넷째, 고아를 맡아 충신으로 키우는 것, 다섯째, 농업과 경공업에서 생산수준을 높이는 것 등이다.⁵⁶ 가정과 사회를 돌보고 헌신하는 여성 섹슈얼리티 구성을 위해 당과 여맹, 그리고 최고권력자 김정일은 신중한 배려를 다하였다. 김정일은 대회 중 생일을 맞은 참석자들에게 일흔 돌상·환갑상·생일상을 보내주었으며, 폐막일에는 참가자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였다.⁵⁷

2000년에 들어서 특히 총대가정이 중심으로 강조되는 데, 선군정치 시대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2000년 3·8국제부녀절 대회에서 여맹위원장 천연옥은 사회세포인 가정을 혁명화하기 위한 여성역할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가정혁명화를 다그치고 자식들을 잘 키워 온 나라에 총대가정, 충신가정이 끊임없이 늘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⁵⁸ 또한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 발표기념일에는 북한여성의 헌신성을 《20세기의 기적》이라고 칭송하며, 다음과 같이 독려한다.

“낮에는 남자들과 똑같이 일하고 밤에는 남성들이 잠든 후 남몰래 동지들을 돌보는 여성건설자들…자기는 굶으면서도 남편과 자식의 끼니를 때우던 어머니들…그들이 바로 이 나라의 평범한 녀성들이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머니, 안해들이었고 정다운 누나, 누이동생들이었다. 우리는 사랑스럽고 정다운 이들이 것처럼 훌륭하고 것처럼 힘 있다는

⁵⁶ 1998년 9월 29일~30일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한 토론의 주요 발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은 새 세대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이다(몽문탄광 도서보급원 신송옥), 대를 이어가며 위대한 장군님을 총대로 받들어나가겠다(김시원동무가 일하는 공장 노동자 김광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남포시기관공급소 판매원 리옥분), 우리나라에는 부모 잃은 아이는 있어도 부모 없는 아이는 없다(함흥시 해안구역 룡성2동 정복녀), 녀성들과 어머니들을 참된 충신, 효녀로 준비시키겠다(개성시 관훈동 초급녀맹위원장 정현숙), 위대한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위해 충성의 한길에 한생을 바치겠다(위원군 룡연로동자구 우명옥), 당과 조국을 받드는 참된 삶의 길에서 어머니의 고귀한 이름을 끝까지 빛내여 나가겠다(덕천시 역전동 립매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 세워주신 총대가정의 자랑을 끝까지 빛내여 가겠다(동림군 읍 최일희), 혁명화된 군인가정의 본분을 다해 나가겠다(조선인민군 군관 엄복순), 김정일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따르는 재일조선어머니들이 있는 한 민족의 대, 애국의 대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흑가이드본부 부위원장 서정숙), 자식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닌 총폭탄 영웅으로 키우겠다(부령군 석막 로동자구 박영순), 모든 어린이들을 충성동, 효자동으로 키우겠다(안변군 신화고 등중학교 교원 권금복), 60명 자식들을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준비시키겠다(부모 잃은 아이 60명을 키우는 조선인민군 박희일동무소속부대 로동자 립동선), 아버지장군님의 충성동이로 자식들을 더 잘 키우겠다(조선인민군 김덕준동무소속부대 로동자 변영실), 주체의 강성대국건설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하겠다(평양종합방직공장 정방공 김봉례)” 등이다. 『로동신문』, 1998년 9월 29일; 『로동신문』, 1998년 9월 30일.

⁵⁷ 『로동신문』, 1998년 9월 30일; 『로동신문』, 1998년 10월 1일.

⁵⁸ 『로동신문』, 2000년 3월 8일.

것을 결코 짧게만 볼 수 없는 고난의 그 날과 날들에 더욱 똑똑히 절감하였다.”⁵⁹

선군정치가 전 사회적 행동이념으로 확장되면서 여성군인 칭송과 민족전통을 고수하는 여성성이 중시된다. 더불어 선군가정과 군대원호를 넘어서 군민일치(軍民一致) 사상과 생활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된다. 대표적으로 2003년 3·8국제부녀절에 맞춘 『로동신문』 1면에는 <선군시대 조선녀성의 혁명적 기개를 힘있게 떨치자>라는 사설이 실리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녀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고 선군정치를 구현하는데서 높은 혁명성을 발휘해야 한다. 녀성군인들은 선군시대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가 된 크나큰 긍지와 영예를 안고 전투정치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자신을 펴낼 나는 싸움군, 만능병사로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최고사령관동지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군인가족 녀성들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열렬한 옹호자, 철저한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가정혁명을 다그쳐 모든 가정을 총대가정, 혁명적 군인가정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군대 원호사업을 더욱 즐기차게 벌려 나가야 한다…사회주의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 생활기풍을 고수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살려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투철한 계급적 신념, 반미투쟁정신을 지니며 녀성들이 있는 곳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혁명찬가, 투쟁과 광만의 노래가 더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⁶⁰

그리고 이 대회 93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여맹위원장 박순희는 군민일치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통이라며, 전체 여성들이 군민일치 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 건설에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키고, “우리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 서서 우리의 것, 우리 식을 적극 내세우고 빛내여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자라나는 후대들을 주체혁명의 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는 것은 조국의 부강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우리 녀성들이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성스러운 의무이고 응당한 본분”이라고 한다.⁶¹

북한권력이 요구하는 여성 정체성 구성에 중요매체인 여맹기관지 『조선녀성』은 권력이 요구하는 여성역할의 모범사례를 발굴 및 선전하는 데, 선군시대 북한권력이 요구하는 돌봄과 헌신의 여성윤리를 제대로 구현했다는 사례를 보면, 첫째, 군민일

⁵⁹ 한편 “조선녀성의 힘이 그토록 강한 것”은 여성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김정일의 사랑이 낳은 힘”이라고 한다. 『로동신문』, 2000년 7월 30일.

⁶⁰ 더불어 “녀성들은 조국과 민족의 래일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안고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 영웅동이, 견결한 총대투사로 키워야 한다”고 한다. 『로동신문』, 2003년 3월 8일.

⁶¹ 『로동신문』, 2003년 3월 9일.

치를 실현하며 군대를 원호하는 데 한평생을 보냈다는 여성, 둘째, 김정일의 지침에 따라 아무도 모르게 헌신적으로 군인을 돌보았다는 여성, 셋째, 대를 이어 최고지도자 가족에 충성하고 자식을 충신으로 키워 애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여성, 넷째, 군인가정과 고아들을 가족보다 더 헌신적으로 돌보았다는 여성 등이다.⁶² 특히 어머니들에게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라는 논리와 함께 자식을 많이 낳아 앞장서서 군인이 되게 하는 것과 군대사랑 정신을 강조한다.⁶³

3. 제3차 어머니대회: 병영사회 · 군인가정

2005년 북한은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는 데 형식과 주요내용은 제2차 어머니대회와 동일하지만, 그 강도와 내용이 훨씬 강화되어 쏘사회를 병영체제로 쏘가정을 군인가정으로 제도화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온 사회를 선군시대 군대와 동일한 병영체제로 조직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압박이 심해지고 해외원조도 감소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면서 북미관계의 긴장도 훨씬 심해졌다. 더욱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제》와 함께 북한사회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 이탈현상과 가족 해체현상도 급증하였다. 북한권력층의 체제붕괴 위기감은 심화되었고, 체제존속을 위해 온 사회와 가정을 군대와 동일하게 작동되도록 강고한 <병영체제> 구축작업을

⁶² 주요 모범사례 주체와 내용을 기사제목 및 핵심내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산군 여맹원 모범사례 ‘철령의 어머니’(군민일치 원군길에 한평생), 룡천군 여맹원 모범사례 ‘남모르게 걷는 원군의 길’(김정일의 “사회적으로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여야”라는 지적에 따라 행동), 길주군 함포리 초급녀맹위원회 위원장 김송순 모범사례 ‘대를 이어 가는 애국의 길’(그녀는 언제나 자식들에게 “원군은 애국 중의 최대의 애국이다. 우리 가정의 기풍은 첫째도 둘째도 원군이다. 나도 하고 너희들도 대를 이어 원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길에서 이 나라 백성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신의주시 녀맹원 모범사례, ‘혈육의 정인들 이보다 더 뜨거우랴’(“인간생활에서 형제는 혈육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혁명의 한길에서 서로 받들어주고 도와줄 때는 다 형제이고 동지로 될 수 있다”는 신조로 살았다고 한다). 『조선녀성』, 2005년 8월호, pp. 32~36.

⁶³ 즉 “자식들을 많이 낳아 조국의 선군미래로 훌륭히 키워야 한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첫 교양자이다. 녀성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간직하고 장군님께 충성 다하는 충성동이들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충대를 사랑하고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자신을 바칠 줄 아는 고상한 품성의 소유자들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녀성』, 2005년 10월호, pp. 45~46.

추진한다.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사회전체를 병영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정을 군인인 구성원이 있는 <군인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가족을 군인으로 둔 가정 성원들은 체제안정과 군대에 관심 및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가족성원인 군인의 긴장감을 공유하기에 곧 발발할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극도로 긴장된 생활을 감내하고, 체제존속을 위해 김정일정권에 충성을 다할 가능성이 비할 수 없이 높아진다.

따라서 딸·아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가정의 성장기 자녀들은 軍으로 보내져야 했다. 이 방법은 북한정권이 원하는 《진정한 군민일치》와 《전 가정의 군인가정화》, 그리고 《전 사회적 군대보호》와 《장군님 결사옹위》가 가능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고등중학생 이상의 성장기 자녀가 딸만 있는 가정도 딸을 군대로 보내, 군인가정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어머니들에게 강제한 것이 제3차 어머니대회에 부가된 특징이다. 그 典型사례로 어머니가 나서서 딸딸을 인민군대에 입대시키고 여동생 7명 모두 군에 입대하도록, 어머니의 주도 하에 딸딸이 앞장서 편지로 지원하는 등 군인가정화의 모범이 되었다는 가정을 살펴보자.

이 가정에서 먼저 군인이 된 딸딸은 어머니의 말을 되새겨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8자루의 총대가 되고 8개의 폭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동생들에게 군인이 될 것을 촉구하였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 군입대를 독려했다. 그리하여 이 가정은 여덟째인 어린 막내아들만 빼고 딸자식 7명 모두가 군인이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인 김성희는 자식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수뇌부를 총대로 결사보위해야 한다…내가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었다. 그렇지만 그 목숨은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며, 가정 내에서 충성심교양을 잘하였다고 한다.⁶⁴

그녀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선전되면서 김정일은 선물을 보내주었고, 그녀는 2005년 진행된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 지역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 대회에서 그 어머니와 선전원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와 칭송으로 북한사회의 군인가정화를 독려했고, 그 가정은 《선군시대 총대가정》으로 평가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가정, 아니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보호자, 운명과 미래도 다 맡아주는 진정한 어버이입니다. 나는 이 진정한 어버이 품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식들

⁶⁴ 『조선녀성』, 2006년 2월호, pp. 26~27.

도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도록 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대를 이어 충대로 결사옹위 해나가겠습니다...선군령장 김정일동지 있기에 이 나라 평범한 여성들도 자기 가정의 행복보다 군사를 첫 자리에 놓고 애국의 한길, 충성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⁶⁵

또한 김정일을 김일성보다 높게 평가하고 <우리러 모시는 심성>을 절대화하는데,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발표된 자녀교육 관련 대표적 모범사례는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은 18세 처녀대학생 류경화의 어머니이다. 여군 류경화는 2004년 군부대 사고 때 목숨바쳐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초상화를 불길에서 꺼내고, 사경에 처한 동료를 구한 후 사망하여 사후(死後)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았다. 북한당국은 그녀의 어머니가 <평양의 꽃>이란 뜻의 ‘경화’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충성심이 높아서 딸을 “수령결사옹위의 꽃으로” 키웠다며 그 삶을 높이 평가하였다.⁶⁶

북한권력이 체제생존을 위해 군사도발 및 병영체제를 극대화하며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2006년 현재, 북한여성에게는 “선군정치와 자주국방의 힘의 강화, 이것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이 살 길이며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를 대를 이어 영원히 받들어나가는 길”이 강조되고, 먹고 사는 문제와 사회경제적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성들의 <돌봄과 헌신의 윤리>가 강화되고 있다.⁶⁷

이와 같은 여성 섹슈얼리티 신화의 주인공은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이다. 김정숙은 북한체제 건국시기 “군사정치 간부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데 가장 큰 힘”을 돌려, 건군사에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고 한다. 그리하여 반미(反美) 결사항전시기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따라 배우자>>라는 운동이 북한여성에게 강제되고 있다.⁶⁸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갈수록 증대되는 가족해체 현상과 고아 및 생활능력이 없는 무연고자 증대로 사회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권력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책임이다. 2006년 북한당국은 전국에 <<꽃제비, 장애자, 노인, 고아를 돌볼 데 대하여>>

⁶⁵ 『조선여성』, 2006년 2월호, p. 27.

⁶⁶ 이 어머니는 경화가 소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대학입학 때까지 매번, “이 나라 어머니들이 자기 한가정도 지켜내기 어려웠던 그 준엄한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는 너를 이렇게 키워 대학생으로 내세워주셨구나. 어렵하겠지만 아버지 장군님의 이 은덕을 잊지 말고 공부를 잘해서 장군님의 훌륭한 교육자가 되거라”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조선여성』, 2006년 2월호, pp. 29~31.

⁶⁷ 『조선여성』, 2006년 4월호, p. 12.

⁶⁸ 『조선여성』, 2006년 4월호, p. 15.

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고 강연회를 실시하고 있다. 강연 주요내용은 전 사회적으로 장애자, 꽃제비, 의지할 데 없는 노인, 엄마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돌보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인민반과 법 기관들에서 구역 내 빈민노인과 고아들을 주민들이 맡아서 돌보게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그 책임 주체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들이다. 또한 이혼과 재혼이 증대함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 내 불화에 대해 '계모가 전처의 자녀들을 천대하지 말고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보라'는 내용의 강연도 병행되고 있다.⁶⁹

나아가 《사회에서 노약자, 꽃제비, 영예군인들을 도와주며 가정들에서 이혼으로 아이들이 방랑하거나 계모가 싫어 집을 뛰쳐나가는 현상을 당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대책할 데에 대한 지시》가 각 지역에 하달되었다.⁷⁰ 이처럼 북한당국은 전 사회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며 병영체제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주민들이 돌보도록 강제하는데, 구체적으로 북한여성에게 이 역할을 전가시키고 있다. 가정=사회=군대=국가의 병영일체화 정책은 가정을 돌보는 여성과 어머니에게 체제 보루의 핵심인 군대 또한 돌보게 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만 국방에 주력해야 하는 先君시대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의 노동과 헌신을 여성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IV. 근면 · 알뜰 · 이악함: 생존 전쟁의 전사(戰士)

한 사회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군사 및 군수공업 중심일 때, 일상생활 세계를 꾸려나가는 여성은 인간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근면하고 알뜰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기초생활 유지를 책임지는 주체로 구성되기에, 경제가 어렵고 국가정책적 우선순위가 군대 및 중공업 일 때, 내뿜과 출혈노동을 감내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특히 200만 명 이상이 기아로 죽거나 실종되는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북한여성들은 근면과 알뜰한 수준을 넘어서, 생존을 위해 이악한 심성을 강화하게 된다. 이것은 북한여성들이 생존 전쟁의 戰士가 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⁶⁹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9호, 2006년 9월 27일.

⁷⁰ 이 지침에 대해 주민들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지 않느냐며 당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기도 한다고 한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41호, 2006년 10월 11일.

특히 ‘이악함’은 북한여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다. 많은 북한연구자들이 탈북여성을 만나면서 느끼는 아이러니는 북한여성들이 상당히 가부장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회에서 어머니 또는 여성으로 살면서 형성된 일반적인 ‘헌신적인 모성’ 또는 ‘강한 생활력’ 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억척스러움을 넘어선 특유의 승부욕과 이익에 대한 민감함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북한여성의 고유한 특성이 바로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악함’과 긴밀히 연계되어있다.⁷¹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여성들의 근면하고 알뜰하며 이악하기까지 한 특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된 주민생존 문제와 국가정책적으로 여성에게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젠더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선군정치로 남성은 체제를 지키는 군대와 군수산업에 투입되고 여성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농업과 경공업에 배치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자원부족으로 거의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여성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근면하고 알뜰하며 이악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리고 생존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은 스스로 이악함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일상적인 대적의식과 생존 및 체제유지 불안감에 시달리는 북한사회에서 이악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저발전국 여성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라기보다는 경제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군사주의 노선을 관철하는 국가권력이 주민생존의 책임을 여성에게 부가하면서 요구하는 여성 섹슈얼리티이다. 특히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일수록 여성은 생존을 중심으로 한 사적 질서의 수호자로 이상화된다. 민족주의가 강한 국가에서 개인적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되며, 개인적 열망은 민족적 이상을 향하게 한다.⁷² 따라서 남성성은 조국을 위해 어떻게 죽을지라는 <전방의 전사>로 구성되며, 여성은 남성부재 사회에서 인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생존세계를 책임지는 <후방의 전사>로 구성된다.

⁷¹ 현대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이악하다’라는 용어는 순수 한국어인데, 그 사전적 의미는 첫째, 자기이익에만 마음이 있다. 둘째, 달라붙는 기세가 굳세고 끈덕지다. 셋째, 이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아득바득하는 태도가 있다 등이다. 비슷한 의미로는 ‘악착스럽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용어보다 훨씬 강한 의미이다.

⁷² Anthias Floya & Yuval Davis Nira, “Women-Nation-State,” J. Hutchinson & Anthony D. Smith (eds.), *Nationalism: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 4 (New York: Routledge 2000), pp. 1480~1483.

1. 인민경제 생활책임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정치경제적 고립,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제와 생산구조, 급기야 1995년부터 시작된 災殃적 자연재해는 1994년 김일성 사망과 함께 북한체제의 최대 위기를 초래했다. 더욱이 최고권력자가 된 김정일은 경제적 마인드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상·문예출판·군사·당 등 정치사상 분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경제와 생산영역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도 주요인이었다.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공장가동이 멈춘 상태임에도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활동노선에 대해 1996년 4월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나는 당사업도 보고 군대사업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관리사업에서 제기 되는 문제를 일일이 다 보아 줄 수 없습니다. 경제사업은 경제일군들이 맡아 하여야 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인식에 경제와 생산 관련 마인드는 부재하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물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이 강화되고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 조건에서 나라의 경제사업에 난관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조직과 인민동원 사업을 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군대와 관련된 군수공업 부문만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그의 인식과 지도노선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군수공업이 제일 실속”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⁷³

배급제 기능마비로 북한사회에서 시장이 공급기능을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 생존할 수 없음에도, 북한남성들이 장사에 나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이 같은 김정일의 인식과 연결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생존 책임은 온전히 여성의 몫이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1996년 7월 30일 개최된 북한의 남녀평등권법령 발표 5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여맹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여성역할을 강조한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투철한 인생관을 지니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본받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조선녀성의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 근면성, 알뜰한 일습씨를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녀성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당이 제시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 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해야 하겠습니다.”⁷⁴

⁷³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한 담화 1996년 4월 22일),” 『김정일 선집』, pp. 160, 171.

⁷⁴ 『로동신문』, 1996년 7월 30일

국가권력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가족생존을 위해 북한여성들은 목숨 건 생존투쟁을 전개했고, 95~97년에 걸친 《고난의 행군》을 견디어 냈다. 1998년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하며 북한당국이 <조선의 어머니들을 자랑한다>며, “총포성 없는 전쟁으로 세상에 공인된 90년대의 우리의 고난의 행군의 나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은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부각되었다”고 칭송할 정도였다.⁷⁵

그리고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김일성민족이 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역세계 싸워 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⁷⁶ 또한 김정일 정권과 선군정치가 공식화된 1998년 개최된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 대회장에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함께 <여성들은 김일성조선을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게 된다.⁷⁷

2. 제2천리마운동의 기수

자력갱생에 기초한 제2의 천리마운동이 전개되면서 이악하게 생활세계를 꾸려나 가야 할 여성 섹슈얼리티는 구체화된다. 2000년 3월 8일 『로동신문』 1면에는 <당의 위업에 충실한 조선여성들의 혁명적 기개를 떨치자>라는 사설이 실리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우리 여성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당을 따라 준엄한 시련을 헤치며 역세계 싸워 왔다”며, 21세기 더욱 강화되어야 할 여성 섹슈얼리티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모든 여성들은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해 온 것처럼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우리 시대의 영웅들을 따라 배워 당의 혁명적 경제정책 관철에서 누구나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생산과 건설에서 **이악하고 근면하며 알뜰한 조선여성의 훌륭한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모든 여성들이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대들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 자강도의 여성들처럼 가정과 마을, 공장과 일터를 사회주의의 맛이 나게 알뜰한 꾸리며 어려울수록 살림살이를 **이악하고 깐지게** 해나가야 한다.”(강조 인용자)⁷⁸

⁷⁵ 『로동신문』, 1998년 9월 28일.

⁷⁶ 『로동신문』, 1998년 3월 8일.

⁷⁷ 『로동신문』, 1998년 9월 29일.

⁷⁸ 『로동신문』, 2000년 3월 8일.

근면성, 알뜰함, 이악함, 역셈 등 국가권력이 책임지지 못하는 생활세계를 책임지우기 위한 억척스러운 여성 섹슈얼리티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녀성의 힘은 강하다》는 정신을 강조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 역세여진 조선녀성의 힘은 백배, 천배로 강해졌다. 20세기의 령마루에서 세계를 놀래운 조선녀성의 힘은 우리 조국이 강성대국으로 빛을 뿌리게 될 21세기에 더더욱 온 세상의 경탄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라는 독려들이 2000년대 이후 더욱 자주 등장한다.⁷⁹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후방의 전사인 북한여성은 전방의 남성을 돌보면서 다음과 같은 역할과 정신을 가져야 했던 것이다.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고 선군정치를 구현하는데서 높은 혁명성을 발휘…선군 시대는 우리 녀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녀성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과 거리와 일터들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데서 앞장에 서야 하며 어려울 때 일수록 살림살이를 더욱 알심 있게 짜고 들어야 한다…레질 밝고 문명하며 근면하고 강인한 것은 조선녀성 고유의 아름다움…그 아름다움은 오늘 우리 녀성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사회적 역할로 하여 보다 빛을 뿌리고 있다. 새로운 녀성미가 선군시대와 더불어 이 땅에 활짝 꽃 피어…우리 녀성들은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선군정치의 견결한 옹호자, 관철자이다.”⁸⁰

이 인용문은 북한권력이 요구하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총집결하여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절은 보은과 섬김, 강인은 돌봄과 헌신, 근면은 알뜰과 이악함이다. 이 같은 특징은 조선여성 고유의 아름다움이라며 민족성 및 전통성, 그의 계승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신봉자는 섬김, 옹호자는 돌봄, 관철자는 이악함이라는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역할로 표현하고 있는 데, 생존문제를 자력갱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2천리운동의 기수가 북한여성일 수밖에 없었다는 북한체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3. 강성대국을 향한 경제주체

2000년 이후 모든 여성대회에서는 <강성대국건설에서 조선녀성의 영웅적 기개를 떨치자!>라는 구호가 나붙고, 여맹위원장이 앞장서서 “위대한 선군령장이시며 자애

⁷⁹ 『로동신문』, 2000년 7월 30일.

⁸⁰ 『로동신문』, 2003년 3월 8일.

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의 현명한 령도 밑에 오늘 우리 녀성들이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총대와 마치, 낫과 붓을 역세게 틀어잡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⁸¹

해방이후부터 김일성의 지시로 지속되던 <여성들은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라는 논리는 선군시대 견고한 군대식 역할분담론이 되어, 남성은 군대 및 군수공업, 여성은 경제 및 일상생활이라는 戰時역할론으로 발전하였다. 조선노동당 창당 60년을 맞이한 2005년 10월 『조선녀성』 사설 제목이 상징적으로 밝히듯이, <녀성들은 선군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계속 힘있게 떠밀고 나가자>라는 구호 하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⁸² 그러나 체제규범을 벗어난 개인주의적 이악함은 용납되지 않는다. 오로지 “선군 혁명령도 따라 고난의 행군을 헤쳐 왔으므로 오늘은 강성대국건설을 향해 나가자”는 것이다.⁸³ 이에 대해 『조선녀성』은 <장군님과 녀성들>이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선군혁명 총진군 길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생활의 꽃, 혁명의 꽃으로 온 나라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조선녀성들, 불수록 미더운 그 모습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가슴 뜨거이 받아 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녀성들을 삶의 최절정에 올려 세워주시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며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 격조 높은 웨침이다.”⁸⁴

<사생결단의 험난한 길>에서 북한체제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를 중시한 김정일의 선군정치 때문이므로, 여성들은 후방을 지키기 위해 이악스럽게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⁸⁵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군대를 앞세우고 국방을 강화하기만 하면 공장을 살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 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라를 지키고 봐야 한다고 하며,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인다. 따라서 여성들은 “불패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⁸⁶ 무엇보다 “그 어떤 보수나 평가를 바람 없이 누가 보건말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 것이다.⁸⁷

⁸¹ 『로동신문』, 2004년 3월 8일.

⁸² 『조선녀성』, 2005년 10월호.

⁸³ 『조선녀성』, 2006년 3월호, p. 5.

⁸⁴ 『조선녀성』, 2006년 3월호, p. 9.

⁸⁵ 『조선녀성』, 2006년 4월호, p. 12.

⁸⁶ 『조선녀성』, 2005년 10월호, p. 45.

이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생존을 책임지며 시장사회화를 주도하는 여성들은, 강성대국 건설의 생활경제 주체로 활동하고 독려 받는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발사 이후 북한의 준(準)전시태세가 보다 강화되었고,⁸⁸ 10월 9일 핵실험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은 주민생존을 위한 여성의 이악함을 더욱 독려할 것이고, 북한의 시장사회화 과정과 연계되어 생존을 위한 북한여성의 ‘이악함’은 더욱 내면화 될 것이다.

V. 결 론: 지속과 변화

‘양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고민하며 연구된 본 연구결과, 선군정치를 10년 이상 일관되게 강화한 김정일정권은 북한체제 존속을 위해 북한주민의 섹슈얼리티를 상이한 양상으로 구성하였다. 북한의 남성성은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규범과 동일한 맥락에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불변성·무조건적 충성심·동지애·인내심·용맹함·비타협성·단호함·무자비함·적에 대한 증오 등 군인정신을 정교화한 《총대정신》을 그 특성으로 한다. 반면 여성성은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報恩)의 도덕, 우러러 받드는 섬김의 자세, 가정·군대·사회 취약계층까지 돌보는 돌봄의 윤리, 공동체를 돌보는 헌신성, 어려운 생존조건에서 자신과 인간공동체 생존을 책임지는 근면·알뜰·이악함 등이다.

북한권력에 의한 여성 섹슈얼리티 구성작업은 경제위기의 지속과 배급의 불안정성, 선군정치로 인한 사회와 주민생존의 여성책임, 딸을 포함한 자식을 군대로 보내 군인가정이 되게 한 정책, 강력한 대적(對敵)의식 조장, 시장사회화와 경쟁 및 물질중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상당히 성공하였다. 그렇다면 선군시대 이전과는 어떠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해방 후 김일성정권은 당과 국가기관 건설, 토지개혁·노동법·남녀평등법 등 각종 제도개선, 선거사업을 경유하며 북한여성을 정치의 주대상으로 구성하고 6·25

⁸⁷ 『조선녀성』, 2006년 4월호, p. 40.

⁸⁸ 국경연선 지역에서는 군인들에게 수류탄을 포함해 전투정량, 탄약 등 휴대 가능한 무기를 발급했다.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에서는 아예 국경봉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경연선에 잠복초소와 함께 함정을 파고 그 안에 창과 날카로운 꼬챙이를 박아 넣어 빠지면 부상으로 빠져나오기 힘들게 만들었다. 한국의 예비군 또는 민방위에 해당하는 노동적위대까지 군복을 지급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훈련에 임하게 하고 있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5호, 2006년 9월 6일.

전쟁 이전까지 위로부터 법제도적 여성지위 향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前) 시대의 불평등한 성역할 분담과 가족 내 위계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각종 제도형식을 갖추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제 및 독려하였으나, 사회집단 내 성별 위계성을 담지한 여맹을 제도화하고 여성에게 권력에 헌신하는 규율을 강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 노동자性과 헌신적 母性’을 여성에게 동시에 독려하였고, 이 정책은 전쟁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고착되었다.

헌신적 어머니역할에 경제건설을 위한 전후 노동력 증대요구에 따라 노동자역할을 부가한 것이다. 여성노동 증대는 노동력 배치정책과 맞물려 진행되었는데, 북한 당국은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산업부문의 우위에 있는 중공업에 남성노동력을 우선 배치하고, 하위에 있는 농업과 경공업 및 지방공업에 여성을 배치하였다. 즉 산업부문의 위계와 성별분업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 정책은 노동자 간 성별위계에 반영되어, 높은 비율의 생산활동에도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직장 내에서 낮은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 김일성정권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요구한 섹슈얼리티가 ‘어머니 노동자性’이다. 공장과 직장에서도 가정과 동일한 돌봄의 도덕과 알뜰한 심성을 발휘하라는 헌신성 독려이다. 이에 비해 남성노동자들에게는 계획달성과 당정책 관철을 위한 불면 불휴의 투철함 및 전투성과 인내심 등이 독려되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여성의 가사·양육·생활관리 노동이 온존한데다, 1960년대부터 가정혁명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혼여성들은 생활경제 책임자, 혁명하는 남편보조, 혁명의 후비대 및 체제수호의 전사 양성, 사회주의 생활양식 구현 주체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아버지는 혁명과 권위의 상징이었으나, 가정의 혁명화를 위한 독특한 역할이 강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부부간 위계는 兩性자녀 간 위계와 가사 노동에도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

더욱이 수령제와 세습체제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절대권력을 중심으로 전(全)사회를 위계적으로 구성한 북한체제의 가부장성은 전체 주민에 대한 권력의 위계성을 극도로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지배성과 주민의 복종의무는 양성 간 性別위계를 더욱 구조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권력은 생산현장과 가정에서 성역할을 위계적으로 구조화했다. 이러한 성역할의 위계구조화는 전통적인 양성 불평등성과 연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으로 선군정치 이전 북한권력이 여성에게 요구한 성적 정체성은 보은과 섬김, 헌신, 근면·알뜰이라는 여성 도덕률에 집중되었다. 이 특성들은 선군시대 10

년을 경과하며 2006년 현재까지 북한여성에게 강제되고 있는 중요한 여성성이다. 한편 경제난과 선군시대 前시대와 달리 핵심적으로 강조된 여성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공급과 자원부족 상황에서 일차적 자원분배를 군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선군시대, 국가의 국민부양 의무를 여성에게 전가시키면서 강화된 여성성이다. 둘째, 이악함이다. 주민생존을 국가권력과 남성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물질 및 실리에 민감함과 경쟁적인 市場性을 체화한 '생존 전쟁의 전사'로 살아가며 강화된 여성성이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이 규 창*

- | | |
|--------------------------------------|------------------------|
| I. 머리말 | IV. 우리나라 국내법체계상의 법적 효력 |
| II.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
남북합의서 관련 규정 분석 | V. 규범통제 가능여부 및 그 기관 |
| III. 국제법상의 법적 성격 | VI. 맺음말 |

Abstract

A Study on Legal Characters and Forces of Inter-Korean Agreem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legal characteristics and forces of Inter-Korean Agreements. Firstly, we review the articles concerned with conclusion, ratification and promulgation stipulated in act on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Secondly, we analyze legal characters of Inter-Korean Agreement in the international law system. Inter-Korean Agreements can be regarded as treaty with legal binding effects or

gentlemen's agreement without legal binding effects. Criteria and subject that distinguish between treaty and gentlemen's agreement are to be examined. Thirdly, legal binding effects of Inter-Korean Agreements are to be analyzed in perspective of South Korea's domestic legal system. Finally, we review legal problems concerned with the judicial control over Inter-Korean Agreements.

Key Words: Inter-Korean Agreements, treaty, gentlemen's agreement, non-binding agreement, judicial control

*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I. 머리말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3호로 제정되어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은 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제정의의를 가지고 있다.¹ 이 글의 연구 대상인 남북합의서와 관련하여서는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절차,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시 국회동의 여부, 남북합의서의 효력 정지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종래 관행 내지는 통치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에 관한 제문제를 법규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²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한 문제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해서는 훌륭한 연구성과물들이 발표되어 있다.³ 그러나 시기적으로 기존의 연구성과물들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표되었다. 또한 남북합의서의 국제법상의 성격, 다시 말해 남북합의서가 조약과 신사협정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되며 그 구별기준은 무엇인가의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남북합의서의 법적인 성격 및 효력에 관한 문제에는 앞에서 언급한 국제법상의 성격 외에도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체계상의 효력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남북합의서가 조약에 해당된다면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헌법과 법률, 명령 및 규칙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어디에 해당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체계상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남북합의서와 법률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의 문제, 남북합의서의 사법심사 내지 규범통제가 가

¹ 동 법의 제정경과, 제정의의, 헌법적 근거 및 법적 성격, 주요 규정의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줄고,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 분석과 평가,” 『법조』, 통권 제599호(2006. 8), pp. 159~195; 지봉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향후 과제,” 『극동문제』, 통권 제309호(2004.11), pp. 12~36 참조.

² 배종인, “남북합의서의 처리절차 및 국내법적 지위,”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14호(2006), p. 25.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앞두고도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성호,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실태 및 문제점,” 제성호 편, 『통일시대와 법』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2003), p. 179.

³ 대표적인 문헌은 다음과 같다. 배종인, “남북합의서의 처리절차 및 국내법적 지위,” pp. 19~28; 이효원,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북한법연구』, 제7호(2004), pp. 297~324; 제성호,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부여문제,” 『법조』, 통권 제571호(2004. 4), pp. 44~88.

능한지, 가능하다면 담당기관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남북관계발전예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들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약관련 조항들과 비교해 가면서 간단히 살펴본다(Ⅱ). 그리고 나서 기존의 연구성과물들을 중심으로 남북합의서의 국제법상의 성격 문제를 살펴본다(Ⅲ). 이후 조약의 성질을 갖는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체계상 어떤 효력을 갖는지의 문제(Ⅳ)와 남북합의서의 규범통제 가능여부 및 그 기관(Ⅴ)에 대해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한편, 이 글에서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합의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남북한 정부 당국 간의 합의라고 하더라도 구두합의는 이 글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 당국 간의 합의가 아닌 민간차원의 합의도 제외된다. 남북관계발전예관한법률 제4조 제3호는 남북합의서를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Ⅱ. 「남북관계발전예관한법률」의 남북합의서 관련 규정 분석

1.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국회동의

남북관계발전예관한법률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규정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약의 그것에 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제21조 제1항)은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3조를,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제21조 제2항)은 조약안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9조 제3호를, 남북합의서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있는 조항(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조약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4조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제처장은 심사를 요청받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헌법 제60조 제1항은 일정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3항).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는 동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간주된다(부칙 제2항).⁴

한편, 우리나라의 조약체결관행상 소위 ‘고시류조약(告示類條約)’⁵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지 않은 채 외교통상부 장관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체결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도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에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 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4항).

2. 남북합의서의 공포

남북합의서의 공포절차도 조약의 공포절차에 준하고 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약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해야 하고, 동 법률 제6조에 따라 조약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도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

⁴ 현재까지 국회동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모두 13개로 이른바 4대 경험합의서로 알려지고 있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사상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이상 2003년 6월 30일 국회동의)와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이상 2004년 9월 23일 국회동의),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이상 2004년 12월 9일 국회동의)가 있다. 이들 합의서의 국무회의심의일, 대통령재가일, 국회동의일, 발효일 및 공포일은 배종인, “남북합의서의 처리절차 및 국내법적 지위,” pp. 27~28의 <표> 참조.

⁵ 우리나라의 조약체결절차에 있어 조약에 대한 지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국내절차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나 모(母)조약의 실시·집행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체결되는 시행약정이나 모조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각서교환에 대해서는 복잡한 국내절차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교통상부 장관이 체결절차를 취하고 그 중 특정한 것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체결된 조약을 실무편의상 고시류조약이라고 한다. 외교통상부, 『알기쉬운 조약업무』 (서울: 외교통상부, 2006), p. 39.

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의 공포를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결·비준된 남북합의서 공포문의 전문에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시행령 제21조 제1항). 남북합의서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서명일자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통일부장관은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남북합의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시행령 제22조).

3. 남북합의서의 장소적 효력범위 및 효력의 정지

우리나라 헌법 및 조약관련 법률은 조약의 장소적 효력과 효력의 정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은 장소적 효력범위 및 효력의 정지 여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하여 적용된다(제23조 제1항).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동조 제2항). 다만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조 제3항). 대통령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합의서의 효력 정지 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

4. 소결

이상에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절차, 체결·비준 시 국회동의 여부, 효력정지 여부 및 효력정지 시 국회동의 여부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결·비준 및 공포절차는 조약의 그것에 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효력의 정지에 관한 규정들을 명시함으로써 효력 정지 가능 여부 및 효력 정지 시 국회 동의 여부 등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방지하고 있다. 남북합의서와 조약의 체결·비준 및 공포 절차와 효력 정지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북합의서와 조약의 체결·비준 및 공포 절차와 효력 정지 비교

구분	조약	남북합의서
체결·비준권자	대통령(헌법 제73조)	대통령(법 제21조 제1항)
국무회의 심의	조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헌법 제89조 제3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법 제21조 제2항).
법제처 심사	조약안은 법제처 심사를 받음(정부조직법 제24조).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심사요청(시행령 제20조 제1항)
체결 비준 시 국회 동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국회 동의 필요(헌법 제60조 제1항)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국회의 필요(법 제21조 제3항)
대통령의 재가 필요 여부	조약체결관행상 고시류조약은 대통령의 재가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이 체결절차를 취할 수 있음.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 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음(법 제21조 제4항).
조약의 공포	관보에 게재(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조약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리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6조)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따름(법 제22조). 남북합의서 공포문의 전문에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리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시행령 제21조 제1항)
장소적 효력범위	명시적인 규정 없음.	남북한 사이에서만 적용(법 제23조 제1항)
효력의 정지 여부	명시적인 규정 없음.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음(법 제23조 제2항).
효력 정지 시 국회 동의 여부	명시적인 규정 없음.	체결·비준 시 국회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는 효력 정지 시 국회 동의 필요(법 제23조 제3항)

여기서 한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절차가 조약의 그것들에 준한다고 해서 남북합의서를 곧 조약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혹자는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을 규율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관한법률 제21조는 남북합의서가 조약이라는 점에 관한 입법적인 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⁶ 그러나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절차가 조약의 그것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남북합의서가 곧 조약이라고 보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남북합의서가 조약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절차가 조약의 그것을 따르고 있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남북합의서는 적절히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조약이 아닌 신사협정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⁷ 그렇다면 어떤 남북합의서를 조약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장을 바꾸어 살펴본다.

Ⅲ. 국제법상의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국제법 주체, 특히 국가 간의 합의는 크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남북합의서를 조약과 신사협정으로 구분하는 이유 내지는 필요성은 무엇이며, 그와 같은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한 남북합의서를 조약과 신사협정으로 구분할 때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본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논의의 전제가 되는 국제법상의 국가승인과 관련된 문제들을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합의서가 조약에 해당된다고 할 때 북한

⁶ 유욱의 토론문, 『남북관계 법·제도, 그 현황과 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토론문 자료집, 2004.10.20), p. 42.

⁷ 이효원,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p. 297.

⁸ 국가 사이의 비구속적 합의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s) 외에도 非法的 約定(non-legal arrangements), 非法的 規範(non-legal norms), 비조약적 합의(non-treaty agreements), 비구속적 약속(non-binding commitments), 비구속적 약정(non-binding arrangements), 비공식적 합의(informal agreements), 사실상의 합의(*de facto* agreements), 정치적 또는 도덕적으로 구속적인 합의(politically or morally binding agreements), 순수하게 정치적인 약속(engagements purement politiques), 국제적 양해(international understanding) 등이 있다. 박배근, “국제법상의 ‘비구속적 합의’,” 『국제법평론』, 통권 제22호 (2005), p. 9.

은 우리나라의 국내법상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정의되어 있는데,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우리나라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의 법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법리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반란단체(또는 반도단체)도 국제법상 제한된 조약체결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어떤 정치실체와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묵시적 승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⁹ 둘째, 남북합의서가 신사협정에 해당된다고 할 때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우리나라의 국내법상 반국가단체로 정의되고 있는데,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우리나라가 신사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신사협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체결하지만 체결주체가 반드시 국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물론 국제기구와 이른바 국제법의 능동적인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자들도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상대와 합의를 할 수 있다.¹⁰

1.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분 필요성

국제법 주체 사이의 합의를 조약과 신사협정으로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약은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반면 신사협정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유효한 모든 조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당사자는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¹¹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상 국가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신사협정은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¹² 엄밀히 말해 국제법 주체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이 아니라 단지 여러 나라 정부 수반 기타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이 상대방의 신의에 기초하여 서로 약속하는 정책수행상의 약속에 불과하다.¹³ 신사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의무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사협정 위반에 대해

⁹ 자세한 내용은 제성호,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부여문제,” pp. 64~68 참조.

¹⁰ 박배근, “국제법상의 ‘비구속적 합의,’” pp. 3~4.

¹¹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6조.

¹² 다수의 국내외 학자들은 신사협정이라고 하더라도 신의와 성실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도덕적·정치적 약속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규율을 받으며 이 경우 신사협정은 금반언(*estoppel*)의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 박배근, “국제법상의 ‘비구속적 합의,’” pp. 21~22; 제성호,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부여문제,” p. 57 참조.

¹³ 외교통상부, 『알기쉬운 조약업무』, p. 13.

제재를 가할 수 없다.¹⁴ 또한 신사협정은 법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당사국이 신사협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또는 사법적 구제(judicial remedy)를 청구할 수 없다.¹⁵ 또한 신사협정의 위반은 비 호적인 행위로서 국제법상 보복¹⁶(報復, retortion 또는 retorsion)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복구(復仇, reprisal) 또는 대응조치¹⁷(또는 대항조치, counter-measures)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사협정의 위반은 권리 침해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위한 국제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¹⁸

2.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분 기준

국제법 주체 사이의 합의를 조약과 신사협정으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그 구별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① 당사자의 의도, ② 권리·의무관계의 구체성, ③ 내용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외에도 ④ 강제적인 국제사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규정 포함여부, ⑤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규정 포함여부 및 ⑥ 유엔에의 등록여부도 조약인지 신사협정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고 있다.¹⁹ 일부 학자들도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Oscar Schachter는 ① 법적인 권리·의무를 창설하거나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를 창설하려는 의도, ② 합의내용의 명확성, ③ 합의에 의

¹⁴ Wilfred Fiedler, "Gentlemen's Agreement" in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lment 7 (1984), pp. 105~106.

¹⁵ O. Schachter, "The Twilight Existence of Non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1(1977), p. 300.

¹⁶ 보복이란 타국의 합법적이지만 비우호적인 유해한 행위에 대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한 성격의 합법적이지만 비우호적인 유해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김정건, 『국제법』 (서울: 박영사, 2004), p. 1113.

¹⁷ 복구 또는 대응조치란 "선행된 국제의무 위반에 있어서 그 위반국을 상대로 책임의 이행을 강요하기 위해 취해지는 피해국의 외관상 의무위반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김석현, "국제법상 대세적 권리·의무의 확립,"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3호 (2002.12), p. 65에서는 대응조치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는 국가의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복구보다는 대응조치가 선호되고 있다. J. Crawford,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Cambridge, U. 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 168; A. Cassese,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234; C. Tomuschat, *International Law: Ensuring the Survival of Mankind on the Eve of a New Millenium* (2001), p. 369.

¹⁸ 박배근, "국제법상의 '비구속적 합의,'" pp. 8~9.

¹⁹ 외교통상부, 『알기쉬운 조약업무』, pp. 13~14.

해 명시된 원칙의 일반성, ④ 합의문건 채택 후의 추후 국가관행, ⑤ 사용되는 언어, ⑥ 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합의를 서명하는 정부 대표의 위상 및 권한 등을 들고 있다.²⁰ 국내 학자 가운데는 첫째, 남북 당국이 국제법상 법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조약성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그러한 의도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둘째,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합의서의 체결절차와 양식 및 셋째, 합의서 체결 이후의 후속조치 여부와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²¹

이상에서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기준에 관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의 입장과 대표적인 국내외 학자의 견해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도를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약과 신사협정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²²

3.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분 주제

남북합의서가 조약인지 아니면 신사협정에 해당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로 다음의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남한에서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 주체가 된다고 생각된다. 한 예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일명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 판시한 바 있다.²³ 그런데 남한 내에서 어느 특정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즉 조약과 신사협정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되

²⁰ O. Schachter, “The Twilight Existence of Non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pp. 296~304. 그는 첫째, 당해 국가의 조약집에 수록되어 있는가의 여부, 둘째, 유엔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되었는가의 여부 및 셋째, 국내에서 의회나 법원에 당해 문서를 송부함에 있어 법적 성격을 가진 조약 또는 협정으로 기술되고 있는가의 여부도 부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Ibid.*, p. 298.

²¹ 이효원,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p. 310.

²² 신사협정과 조약의 구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도 참조. 박배근, “국제법상의 ‘비구속적 합의,’” pp. 10~16; 제성호, “6·15 남북공동선언과 후속문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저스티스』, 통권 제60호 (2001.4), pp. 190~193.

²³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판결, 헌법재판소 1997. 1. 16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는가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었을 때 조약과 신사협정의 명확한 구별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코 바람직스럽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북한의 경우에도 재판소가 있기는 하지만²⁴ 북한의 재판소가 독립적으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²⁵ 남북합의서가 북한에서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느냐의 문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국내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남한 당국은 어느 특정한 남북합의서에 대해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의 상반된 태도는 남북합의서의 위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남북관계발전의 견지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둘째, 남북합의서에 분쟁해결절차를 명시한 경우에는 분쟁해결담당기관이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에 관해서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²⁶ 남북한 쌍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²⁷

셋째, 남북한 당국 간에 아닌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특정한 남북합의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 남북한은 국제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므로²⁸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거나²⁹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

²⁴ 북한의 재판소에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로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으며,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상응하는 재판소는 없다.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3조 및 재판소구성법 제3조. 북한의 재판소제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1996), pp. 121~397 참조.

²⁵ 남한의 학자 가운데 어떤 이는 북한의 재판소제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도 한다. “북한은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모든 권한을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 통합시켜 입법권을 직접 행사하고, ... 중앙재판소 등 사법기관은 그 상급기관, 최고(지방)인민회의의 관리·감독을 받는 제한적 수임기관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중앙재판소 등 사법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의 정책에 따라 사법적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적 집행기관에 불과하며, ...” 이상철, “북한 형사법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 제61집 제1권 (2005.2), p. 194.

²⁶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조 및 제10조.

²⁷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7조.

²⁸ 모든 유엔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다(유엔헌장 제93조 제1항).

²⁹ 남한과 북한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제2항의 이른바 선택조항을 아직까지 수락하고 있지 않다. 강제관할권 수락현황에 대해서는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 guide to the history, composition, jurisdiction, procedure and decisions of the Court,” <<http://www.icj.org>>

다.³⁰ 또한 남북한이 해양문제와 관련된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또는 유엔해양법협약 제8부속서에 따른 특별중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³¹ 단 이것은 북한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³²

4. 소결

남북합의서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신사협정에 해당되는지의 문제는 법적 구속력, 국가책임의 추궁여부, 복구 또는 대응조치의 가능여부 및 국제재판의 가능여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구별기준은 상대적이어서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이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주체는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판단 주체에 따라 특정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달리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를 수 있고 남북한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특정한 남북합의서의 조약성을 내세워 북한에 대해 그 위반 및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북한은 남북합의서의 조약성을 부인하며 신사협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국제중재나 국제재판에 사건에 회부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나 국제재판소의 입장과 국내 재판소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상반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³³ 필자는 그

<www.icj-cij.org/icjwww/igeneralinformation.htm>, pp. 44~46 참조 (검색일: 2006년 10월 20일).

³⁰ 북한을 상대로, 또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국제법상 묵시적 승인의 법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국제소송제기행위는 묵시적 승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묵시적 승인의 예로는 독립을 획득한 신국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정식의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들 수 있으나 승인하지 않은 국가와 동일한 다자조약에 공동당사자가 되는 것, 교역임무를 띤 사절단의 파견행위, 국제소송제기행위, 통상대표부의 설치, 신국가의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 등은 묵시적 승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삼영사, 2005), p. 270.

³¹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 제1항 참조.

³² 북한은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하였으나 2006년 10월 23일 현재 아직까지 동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³³ 필자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효원은 “남북한간 상호주의에 따라 남북합의서가 실질적으로 법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북한측의 법적 효력질차에 대하여도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하나의 방법으로 남북한 당국이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에 1975년 유럽안전보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의 헬싱키 최종 의정서처럼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거나³⁴ 그 반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IV. 우리나라의 국내법체계상 법적 효력

남북합의서가 조약에 해당되는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상 남북합의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 남북합의서는 헌법, 법률, 명령·규칙의 체계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어떤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가? 결국 이 문제는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준하여 조약의 성질을 갖는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체계상 어떤 효력을 갖는가의 문제를 생각해본다.

조약은 우리나라 국내법상의 체결절차에 따라 크게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과 그렇지 않은 조약,³⁵ 조약체결관행상 오랜 동안 인정되어온 고시류조약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교과서와 국제법교과서 및 상당수의 연구성과물³⁶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판례와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는 동의조약과 비동의조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시

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효원,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p. 321.

³⁴ 특정한 합의를 비구속적인 것으로 의도하였음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합의의 본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방법, 문서의 제목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는 방법, 합의가 정치적 약속임을 명시하는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박배근, “국제법상의 ‘비구속적 합의,’” pp. 11~12.

³⁵ 이하 이 글에서는 간략한 표현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은 동의조약, 그렇지 않은 조약은 비동의조약이라 한다.

³⁶ 대표적인 문헌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조약의 국내적 수용 비교연구』(서울: 법무부, 1996); 한국법제연구원, 『조약의 체결절차와 시행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4); 김민서, “조약의 유형에 따른 국내법적 지위의 구분,”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1호(2001. 6), pp. 27~45; 백진현, “조약의 국내적 효력,” 『국제법학회논총』, 제45권 제1호(2000. 6), pp. 101~117; 성재호,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실태적 고찰,” 『국제법 평론』, 제21호(2005), pp. 31~48; 이상철,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법제연구』, 제16호(1999), pp. 175~208; 이상훈,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규범통제에 대한 고찰,”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7호(2004), pp. 145~159.

류조약이 국내법체계상 어떤 효력을 갖는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기존 학설과 판례의 태도 및 행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어 고시류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를 검다.

1.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기존의 입장

가.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1986년 판결에서 1929년 10월 12일 채택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³⁷(이하 “바르샤바협약”)을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판시하였다.³⁸ 하급심판례 가운데서도 조약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판결을 찾아 볼 수 있다. 서울민사지법은 1984년 4월 12일 내린 선고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³⁹(일명 “뉴욕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국내법인 우리나라 중재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⁴⁰ 한편 대법원은 2005년 9월 9일 선고한 전라북도학교습식조례제의결무효확인에 관한 판결⁴¹에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⁴²(이하 “1994년 GATT”)과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⁴³(이하 “정부조달협정”)이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지만 법률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명령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⁴⁴(이하 “신한일어업협

³⁷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

³⁸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해당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따라서 바르샤바협약은 ...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대법원은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과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에서도 바르샤바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³⁹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체결일: 1958. 6. 10, 발효일: 1959. 6. 7, 대한민국 발효일: 1973. 5. 9(조약 제471호).

⁴⁰ 서울민사지법 1984. 4. 12 선고 83가합7051; 법원행정처, 『하급심판결집 1984』, 제2권 (1984), p. 111.

⁴¹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⁴²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⁴³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체결일: 1994. 4. 15, 발효일: 1997. 1. 1, 대한민국 발효일: 1997. 1. 1(조약 제1363호).

⁴⁴ 서명일: 1998. 11. 28, 발효일: 1999. 1. 22(조약 제1477호).

정”) 비준등위헌확인에 대한 판결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은 국내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⁴⁵ 또한 헌법재판소는 또 다른 사건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⁴⁶(이하 “WTO협정”)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해 판시하기는 하였지만 WTO협정이 단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을 뿐이다.⁴⁷

이상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았는데 바르샤바조약을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본 대법원 판례들, 서울민사지법의 하급심판례,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공통된 입장은 조약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판시한 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상의 판례를 가지고 우리 사법부가 모든 조약에 대해 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쉽게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판례들의 대상 협약 중 뉴욕협약, WTO협정, 1994년 GATT는 모두 동의조약이며,⁴⁸ 비동의조약은 정부조달협정 하나뿐인데 대법원은 동 협정이 단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만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바르샤바협약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 없기 때문에⁴⁹ 동의조약인지 비동의조약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헤이그의정서가 동의조약인 점에 비추어 볼 때⁵⁰ 의정서보다 격식이 높은 협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르샤바협약도 동의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신한일어업협정의 경우에는 국회동의를 거쳤지만⁵² 필자의 판단으로는 동 협정이 동의조약인지 아니면 비동의조약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단 동 협정이 국회동의를 거쳤다는 점에서는 동의조약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헌법 제60조 제1항

⁴⁵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⁴⁶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협정 체결일: 1994. 4. 15, 발효일: 1995. 1. 1, 대한민국 발효일: 1995. 1. 1(조약 제1265호).

⁴⁷ 헌법재판소 1998. 11. 26 97헌마65.

⁴⁸ 뉴욕협약 국회비준동의일: 1973. 1. 30, WTO협정 국회비준동의일: 1994. 12. 16. 1994년 GATT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으로 WTO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WTO협정 제2조 제2항).

⁴⁹ 우리나라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바르샤바협약 개정의정서(이하 “헤이그의정서”)에 1967년 7월 13일 가입한 바 있는데(발효일: 1967. 10. 11, 조약 제259호), 헤이그의정서 제23조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바르샤바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헤이그의정서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바르샤바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한 헤이그의정서 가입은 헤이그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에의 가입의 효력을 가진다.

⁵⁰ 헤이그의정서 국회비준동의일: 1967. 1. 28.

⁵¹ 조약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정서”(Protocol)는 “협약”(Convention)보다 격식이 낮거나 부수적인 조약으로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조항의 해석, 분쟁해결방법 등 부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정서를 두는 경우가 많다. 유병화·박노형·박기갑, 『국제법 I』(서울: 법문사, 1999), p. 79.

⁵² 신한일어업협정 국회비준동의일: 1999. 1. 6.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대상에 어업협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비동의조약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더구나 구헌법에는 어업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⁵³ 현행 헌법에는 빠져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한일어업협정은 비동의조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결국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동의조약에 대해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둘째, 비동의조약은 정부조달협정 하나뿐인데 정부조달협정은 국내법적 지위를 갖는다고만 되어 있어 법률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명령의 지위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셋째, 신한일어업협정의 경우에는 동의조약인지 아니면 비동의조약인지의 구분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나. 행정부의 입장

1965년 2월 1일 당시 주한미대사관이 외무부에 대하여 국내법인 「신문·통신등의 등록에관한법률」(이하 “신문통신등록법”) 제5조 및 제7조와 국제조약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우호·통상및항해조약」⁵⁴(이하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 제7조 및 제8조 사이에 저촉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률개정을 요청하자, 당시 외무부는 신문통신등록법과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 중 어느 쪽이 우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이 신문통신등록법에 대해 특별법관계에 있으며,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이 우선한다고 회신하였다.⁵⁵

또한 외무부는 1965년 7월 24일 주한미대사관으로부터 보험면허신청을 하고자 하는 미국법인에 대하여 면허를 내주지 아니하는 것은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 제7조의 내국민대우조항 위반이라는 견해를 듣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법제처는 “내국민대우”란 외국인에 대하여 법령의 집행·적용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등·무차별의 처우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관련 미국법인의 한국내에서의 보험면허신청은 관계법령인 「보험업법및외국보험업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여건 하에서 한국인의 보험면허신청의 경우와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⁵⁶

⁵³ 1962년 헌법 제56조 제1항 참조.

⁵⁴ 서명일: 1956. 11. 28, 국회비준동의: 거치지 않음, 발효일: 1957. 11. 7(조약 제40호).

⁵⁵ 이상철,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pp. 198~199; 법무부, 『조약의 국내적 수용 비교연구』, pp. 149~150.

법제처는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⁵⁷ (일명 “헤이그 송달협약”)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 협약안 제6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등과 관련하여 국회동의여부에 대한 부처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부처간 의견의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는데 결국 입법사항을 포함하는 조약안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고, 입법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조약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나, 일단 체결·공포되면 국제민사사법 공조법 제3조에 의하여 조약안이 동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의하였다고 한다.⁵⁸

생각컨대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처가 동 조약이 신문통신등록법에 우선하고 보험업법 및 외국보험업자에관한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한 것은 비록 비동의조약이라고 하더라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지적이 가능하다.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헌법인 1954년 헌법에 의하면 통상조약의 경우 국회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⁵⁹ 한미우호통상항해협약은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한미우호통상조약을 동의조약으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비동의조약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헤이그송달협약안에 대한 법제처 검토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제처는 국회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말해 동의조약이든 비동의조약이든 조약이 일단 체결·공포되면 법률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학자들 견해

먼저 조약과 헌법과의 관계에 대해 조약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는 조약우위설과 조약은 헌법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는 헌법조약동위설이 있지만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는 헌법이 조약의 상위에 있다고 보는 헌법우위설을 취하고 있다.⁶⁰

⁵⁶ 이상철,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p. 199.

⁵⁷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체결일: 1965. 11. 15, 발효일: 1969. 2. 10, 대한민국 국회비준동의: 1999. 12. 3, 대한민국 발효일: 2000. 8. 1(조약 제1528호).

⁵⁸ 이상철,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p. 199.

⁵⁹ 1954년 헌법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밑줄은 강조한 것임).

⁶⁰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서울: 일조각, 2003), p. 26 참조.

헌법우위설은 ① 조약체결권은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국가기관의 권능인 점, ② 헌법의 수권(授權)에 의하여 성립된 조약이 헌법에 우월하다는 것은 법이론상 불가능한 점, ③ 헌법은 최고규범성을 지니고 있는 점, ④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헌조약까지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조약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는 헌법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헌법보다 우월한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를 용인(容認)할 수 없는 점, ⑦ 헌법 부칙 제5조에서는 조약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고 규정한 점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⁶¹ 필자도 다수의 헌법학자 및 국제법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우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조약과 법률 및 명령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조약은 동의조약/비동의조약의 구별없이 헌법의 하위에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법률과 조약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들이 있다.⁶²

둘째, 조약을 동의조약과 비동의조약으로 구분하여 동의조약은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비동의조약은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들이 있다.⁶³

셋째, 입법적 다자조약과 강행규범(*jus cogens*)인 조약은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이 입장은 국제사회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종래의 헌법학이론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규범이 국제적으로 표준화·통일화되는 추세에 있는 점과 일반국제법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특히 입법적 다자조약과 강행규범인 조약은 법률보다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여야 타당하다고 한다.⁶⁴

⁶¹ 이상철,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p. 179.

⁶² 김정건, 『국제법』 (서울: 박영사, 2005), pp. 115~116; 김한택, 『현대국제법』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4), p. 65; 배재식, 『국제법 I』 (서울: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7), p. 38;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9), p. 144.

⁶³ 이상철,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p. 181 참조.

⁶⁴ 위의 글, p. 182 참조.

2. 고시류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지금까지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된 기존의 학설, 판례의 태도, 행정부(법제처)의 입장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지금까지의 판례만 가지고는 사법부의 명확한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행정부(법제처)는 동의조약/비동의조약에 관계없이 모두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하나의 유권해석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신한일어업협정의 경우처럼 헌법에는 국회동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를 거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의 경우에는 헌법에 국회동의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동의조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비동의조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필자의 판단으로는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는 결국에는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학설에 따라 때 고시류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는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고시류조약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거나 또는 헌법과 동등하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조약은 헌법보다 하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를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은 거의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 입법적 다자조약이나 강행규범인 조약은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이해하는 견해들에 대해 보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일의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조약에 따라 국내법적 지위에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는 일단 이해가 가지만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조약을 성격에 따라 입법적 다자조약(또는 입법조약, law-making treaties)과 계약적 양자조약(또는 계약조약, contractual treaties)으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어떤 조약 속에 입법적 성격을 가지는 조항과 계약적 성격을 가지는 조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⁶⁵ 또한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존재는 의심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강행규범에 속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⁶⁶ 결국 입법적 다자조약과 강행규범인 조약에 대해 법률보다

⁶⁵ P. Reuter, *Introduction to the Law of Treaties* (London: Pinter Pub., 1989), pp. 20, 27; 유병화·박노형·박기갑, 『국제법 I』, p. 84. 이 같은 점에서 P. Reuter 교수는 입법조약(법규조약)과 계약조약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법규적) 조항과 계약적 조항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⁶⁶ 1968년부터 1969년에 개최되었던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강행규범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주장이 있었지만 유엔 국제법위원회(ILC)는 실정 강행규범의 구체적

상위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비판의 소지가 상당하다. 설령 이러한 입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시류조약의 경우는 입법조약이나 강행규범인 조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시류조약이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동의조약과 비동의조약을 구분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 체결·비준 및 공포된 모든 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고시류조약도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넷째, 동의조약과 비동의조약을 구분하여 동의조약은 법률적 효력, 비동의조약은 명령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고시류조약은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명령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명령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때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가운데 어떤 지위를 차지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동의조약과 비동의조약을 구분하는 태도를 감안하면 비동의조약과 고시류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도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비동의조약이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할 때의 명령은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비동의조약은 조약 체결권자가 대통령이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다수의 입장이다.⁶⁷ 이러한 입장을 충실히 따른다면 고시류조약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체결절차를 취한다는 점에서 부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동의조약과 비동의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를 구별하는 입장을 따르게 될 때 조약은 국내법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동의조약과 대통령령의 효력을 갖는 비동의조약, 부령의 효력을 갖는 고시류조약의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⁶⁸

그러면 동의조약과 비동의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를 구별하는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국회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모든 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를 취할 것인가? 필자는 동의조약/비동의조약의 구분없이

나열을 반대하였다. 유병화·박노형·박기갑, 『국제법 I』, pp. 216~217. 참고로 영국의 James Crawford 교수는 침략·집단살해·노예매매·인종차별·인도에 반하는 범죄 및 고문의 금지와 자결권이 명백하게 강행규범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J. Crawford,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Article on State Responsibility*, p. 188.

⁶⁷ 이상철,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p. 181 참조.

⁶⁸ 명령은 그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통령령은 국무총리령과 부령보다 상위에 있고 국무총리령과 부령의 효력은 동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구병석(편), 『신법학원론』 (서울: 박영사, 1999), p. 56; 김병목·이영준, 『생활과 법률』 (서울: 법문사, 1994), p. 57; 손주찬, 『신법학통론』 (서울: 박영사, 2005), p. 31; 양수산·최완진, 『법학통론』 (서울: 세창출판사, 1998), p. 73; 원영철, 『이론과 사례연구 법과 생활』 (서울: 삼영사, 2000), p. 83; 정승재, 『법학통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3), p. 50.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모든 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이유는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대한 헌법규정의 변천에 있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대해 현행 헌법과 비교할 때 제헌헌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및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열거되어 있지 않았고, 1962년 헌법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업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명기되어 있었다. 한편 구 헌법들에서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도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행헌법은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에 대하여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고, 또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했었으나 현행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등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대상에 일부 변천이 있었다. 그렇다면 과거 국회동의를 얻어 비준된 조약이 이제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을 때, 반대로 과거 국회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던 조약이 현행 헌법에 의해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되었을 때 해당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문제가 제기된다.⁶⁹

둘째, 현행 헌법 제60조 제1항의 추상성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동 조항은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에 따라 동의 조약/비동의조약을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자의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셋째, 동의조약과 비동의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를 구분하는 다수의 헌법학자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비동의조약은 국민의 간접적 관여나 민주적 통제를 결하게 되어 법률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명령적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⁷⁰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국회동의를 거쳐야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국회동의를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국회동의를 입법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작용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를 통한 비준행위에 대한 합법성·정당성의 부여 내지는 국내법적 효력발생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⁷¹

⁶⁹ 법무부, 『조약의 국내적 수용 비교연구』, pp. 147~148.

⁷⁰ 성재호,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실태적 고찰,” p. 47.

넷째, 국가책임과 관련하여서도 동의조약/비동의조약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시 말해 비동의조약을 명령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면 비동의조약은 국내 법률의 하위에 놓이게 되는데 만일 비동의조약과 국내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비동의조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조약규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법위반이 초래되고 따라서 국가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의조약, 비동의조약, 고시류조약을 구분하지 모두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필자는 조약은 동의조약이든 비동의조약이든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모든 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되지만 고시류조약까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필자는 고시류조약은 집행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명령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이 고시류조약의 체결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명령은 부령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필자는 동의조약과 비동의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반면 고시류조약은 명령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3. 소결

이상에서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련된 기존의 판례, 행정부(법제처)의 입장 및 학설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고시류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아직 판례의 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행정부의 입장도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게다가 고시류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가 보다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판례의 축적과 보다 다양하고 일관된 행정부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학설을 고려할 때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가능하나 첫째) 동의조약과 비동의조약 및 고시류조약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 둘째) 동의조약은 법률적 효력, 비동의조약은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 고시류조약은 부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이 가능할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에 따를 때 조약의 성질을 갖는 모든 남북합의서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입장에 따를 때는 조약의 성질을 갖는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도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북관

⁷¹ 이상훈, “헌법상 조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p. 8.

계발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체결·비준 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남북합의서(제21조 제3항)는 법률적 효력,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남북합의서는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남북합의서(제21조 제4항)는 부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동의조약과 비동의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를 구분하는 입장은 ①국회동의를 요하는 헌법규정의 변천, ② 현행 헌법 제60조 제1항의 추상성, ③ 국회동의를 법적 성격, ④ 국가책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동의조약과 비동의조약 모두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고시류조약은 집행적 성격을 갖으므로 명령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이해할 때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상의 법적 효력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조약의 성질을 갖는 남북합의서는 국회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체결·비준하였으면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대통령이 체결·비준하지 않고 남북회담대표나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남북합의서는 부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V. 규범통제 가능여부 및 그 기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는 조약의 성질을 갖는 남북합의서의 규범통제 내지는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기관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문제도 조약에 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헌법과 조약관련 법률에는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의 가능여부 및 규범통제의 담당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남북합의서의 규범통제 가능여부 및 그 기관의 문제는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1. 규범통제 가능여부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가능여부에 대해 보면 학설상으로 고도의 정치성, 통치행위적 성질 등을 근거로 조약의 규범통제를 부정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⁷² 학설

⁷² 이 입장에 따르면 조약은 일반적 국내법과는 달리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국가간의 약속으로서 조약의 체결은 일종의 통치행위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의 되지 않으며, 또한

의 일반적인 입장이나 헌법재판소 판례는 조약의 규범통제를 긍정하고 있다.⁷³ 기존의 학설이 고시류조약의 규범통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으나 고시류조약이 고도의 정치성이나 통치행위적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시류조약에 대한 규범통제도 가능하다고 이해된다. 조약의 성질을 갖는 남북합의서의 규범통제 가능여부도 조약에 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조약의 성질을 갖는 남북합의서는 체결·비준 시 국회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대통령이 체결·비준하였든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표시켰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규범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규범통제기관

현행 헌법의 규정상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다.⁷⁴ 이에 비해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⁷⁵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견해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필자는 동의조약과 비동의조약은 법률적 효력, 고시류조약은 명령적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동의조약과 비동의조약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야 하지만 명령적 효력을 갖는 고시류조약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기관은 대법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조약의 성질을 갖는 남북합의서의 규범통제 담당기관을 조약에 준하여 생각하면,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는 국회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이들 남북합의서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체결·비준하지 않고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표한 남북합의서는 명령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합의서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약은 국내법과는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며 조약 내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약전체 또는 그 일부규정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 계희열, 『헌법학 上』 (서울: 박영사, 2004), p. 187; 이상훈, “헌법상 조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p. 13.

⁷³ 이상훈, “헌법상 조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pp. 12~13 참조.

⁷⁴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

⁷⁵ 헌법 제107조 제2항.

VI.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에 관한 규정과 남북합의서의 장소적 효력범위 및 효력정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과 조약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약의 체결·비준 및 공포에 관한 규정에 준하고 있어 남북합의서가 곧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남북합의서의 조약인정여부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절차가 조약의 그것에 준하고 있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법상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남북합의서를 조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사협정에 해당되는 볼 것인가의 문제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남북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남북합의서의 위반시 법적인 책임 추궁, 국가책임문제, 복구 또는 대응조치의 가능여부, 국제재판의 회부 가능여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셋째,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은 간단하지만은 않다. 결국 법적 구속력, 즉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합의서의 국제법상의 법적인 성격은 남북한의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될 수도 있고 남북한 사이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합의한 분쟁해결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으며 국제중재나 국제재판에서 문제될 수도 있다. 신사협정과 조약의 명확한 구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느 특정한 남북합의서의 법적성격에 대해 판단하는 주체마다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다섯째, 조약의 성질을 갖는 남북합의서가 우리나라의 국내법체계상 어떤 효력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는 국회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대통령이 체결·비준하지 않고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한 남북합의서는 명령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섯째,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내지 사법심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조약의 성질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에 대한 규범통제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는 국회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이들 남북합의서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대통령이 체결·비준하지 않고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한 남북합의서는 명령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합의서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합의서의 조약인정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합의서의 조약인정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방법론에 있어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현재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 법률에 이를 명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인 남북합의서에 조약인정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법이다. 생각컨대, 전자의 방법은 첫째, 조약과 신사협정의 명확한 구별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둘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남북합의서가 조약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명시한 경우 상호주의 입장에서 북한의 국내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후자의 방법이 타당해 보인다. 특정한 남북합의서에 조약인정여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경우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두고 남한 내에서, 남북한 간에 또는 제3자와 우리나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입장의 차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약의 성질을 갖는 남북합의서가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어떤 효력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필자의 입장과는 다른 견해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기존의 판례, 행정부의 입장, 학설들을 고려하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약문제만을 다루는 독립된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⁷⁶ 그러나 조약과 관련된 여러 문제, 예를 들어 동의조약·비동의조약·고시류조약의 체결절차 및 체결권자,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고시류조약의 헌법적 근거 및 고시류조약에 있어서의 고시의 법적 효력, 동의조약·비동의조약·고시류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및 이들 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여부 및 그 기관, 조약 종료시 국회동의 여부,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경우 사후동의 가능여부 등을 학설과 판례,

⁷⁶ 후자는 가칭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각수, “조약체결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7호 (2004), pp. 87~96.

관행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남북합의서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비록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공포가 명시되어 있고 조약과는 달리 효력범위, 효력정지 가능여부 및 효력정지 시 국회동의여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합의서의 국내 법체계상의 효력이라든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에 있어 사후동의가 가능한지의 문제 등 조약법에 있어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이 조약의 성질을 갖는 남북합의서의 경우에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필자는 조약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독립된 형태의 법률로서 가칭 「조약체결절차 및 조약심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앞에서 언급한 조약법상의 제문제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남북합의서의 경우에는 세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현재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남북합의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방안이다. 둘째는 조약과 마찬가지로 가칭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및 심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북합의서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가능한 명시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본문에서도 자세히 본 바와 같이 남북합의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조약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관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가칭 「조약체결절차 및 조약심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이다. 앞으로 남북한 간에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여러 내용의 남북합의서가 체결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적잖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두 번째 방안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

북중 변경무역의 실태분석 및 향후 전망

홍 익 표*

- | | |
|-------------------------|----------------------|
| I. 문제제기 | IV. 북·중 변경무역의 과제와 전망 |
| II. 중국의 변경무역 현황 및 관련 정책 | V. 결 론 |
| III. 북·중 변경무역 현황 및 특징 | |

Abstract

A Study on Cross-border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North Korea has remarkably increased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particularly the amount of the foreign trade in 2000s because Soviet Union was broken down and Western countries have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It means that North Korea has become much closer with China in the area of economic relationship.

Cross-border trade with China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North Korean trade. The Chinese government granted the special border area for its cross-border trade needs. China exempts 50 percent of the import tariff and the value-added tax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conomically lagging borderline area.

The cross-border trade's volum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reached 441 million dollars in 2005, and this amount become 27.9 percent of total trade volume. Cross-border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ostly takes the form of the small-scale border trade. North Korea's export dependency on border trade with China is sharply increasing. This reflects that North Korea does not have competitive export items and prefers the tax-favored cross-border trade. In North Korea, there are about ten national trade areas for cross-border trade. Among these areas, Dandong-Shinyiju is the most active border trade area.

Key Words: cross-border trade, trade dependence, small-scale border trade, trade in the cross-border peoples's market, Dandong-Shinyiju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I. 문제제기

북·중 양국관계는 사회주의 이념의 공통성과 양국이 차지하고 있는 군사전략적 인 중요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상호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중국의 실용주의적 인 대외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양국관계에도 다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만성적인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와 채무증가 등은 중국의 실용주의적 대외경제정책 하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였다. 1992년 중국측이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한 경화결제를 요구한 이후 1993년과 1994년에 북·중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중 경제관계는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국지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 전략의 한계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1990년대 후반, 특히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3성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중점개발전략이 발표된 이후 북·중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¹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되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체제가 출범한 2002년에 중국공산당은 제16차 당대회를 통해 동북지역의 노후된 공업기지를 새롭게 정비·발전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동북지역경제의 체제개혁 및 산업발전계획을 국가의 주요 발전전략으로 설정하였다.² 또한 2003년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3차에 걸쳐 동북지역을 시찰한 이후, 같은 해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16기 3중전회에서 동북지역의 노후화된 중공업기지를 현대화하고 개혁하는 것이 중국경제 발전의 전략적 과제를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동북진흥’정책으로 요녕성, 길림성 및 흑룡강성 등 소위 동북3성 지역은 중국경제발전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지역의

¹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와 대중 의존도 심화 등으로 인해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국경제 예측화, 나아가 ‘동북4성’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² 중국공산당 제16차 당 대회에서 당 지도부는 “동북지역에 대한 조정과 개조를 통하여 자원개발을 위주로 한 도시를 건설과 지속적인 산업발전, 그리고 식량생산 지역으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발전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동 지역과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실시해 온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동북지역의 개발프로젝트가 발표, 추진된 이후 북한과의 접경지역 연계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공급에 따른 교역확대 및 중국 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북지역의 시장경제화가 확산되고 경제발전의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경우, 북한체제의 개혁과 대외개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에 있어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 최근 더욱 확대 발전하고 있는 변경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변경무역을 중국 정부가 인접국과의 무역에서 여타 지역과는 달리 특혜조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인접국과의 외교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무역방식이다. 북한과 중국도 1950년대부터 변경무역을 실시해 왔으며, 이는 2000년대 들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변경무역을 최근 북한의 핵실험(2006. 10)으로 유엔의 대북제재가 결정된 이후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즉,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변경무역을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공하는 유력한 무역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당국의 부분적 제재조치나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 등으로 북·중 변경무역을 받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북·중 변경무역의 경우 결제가 은행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대부분 현물거래나 현금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들의 외환거래 중단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경무역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은 유엔 결의안에서 금지품목으로 규정한 대량살상무기나 전략물자로 전용 가능한 물자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물자가 일반 주민들의 생필품이나 곡물류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소규모의 거래나 생필품 및 식량 등의 유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변경무역을 북·중 교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양국간 교역에서 변경무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변경무역 현황 및 관련 정책과 현재 북·중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변경무역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중간 변경무역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전망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중국의 변경무역 현황 및 관련 정책

1. 중국의 변경무역 현황

변경무역이란 일반적으로 한 국가와 인접국 간의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로부터 변경무역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승인된 기업 또는 개인들이 수행하는 무역을 지칭한다. 중국의 법률규정에 의하면 변경무역은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변경소액무역’, ‘변경호시무역’ 및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선, 변경소액무역은 변경소액무역경영권을 갖고 있는 국경지역의 기업이 국가가 지정한 육상국경통상구를 경유해서 인접국의 국경지역 기업, 또는 그 밖의 무역기관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활동이다. 변경호시무역은 국경지역의 주민이 국경선에서 20km 이내의 지역에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개방지역’ 또는 ‘지정시장’에서 정해진 범위내의 금액, 수량의 상품교역 활동을 의미한다.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대외경제기술협력경영권을 보유한 국경지역의 기업이 인접국의 국경지역에서 전개하는 청부공사와 노무협력프로젝트 등을 의미한다.³

중국과 주변국 간의 변경무역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며,⁴ 특히 1980년대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중앙 정부가 내륙국경지역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변경무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변경무역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변경무역 방식도 다양화되었다.⁵

그 결과, 최근 중국과 국경지역 인접국 간의 무역은 급속히 발전하여, 매년 3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해관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중국과 주변 13개 국가 간의 변경무역액은 94.7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대비 21.8%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수출은 44.3억 달러로 27.3% 증가했으며, 수입은 50.4억 달러로 17.2% 증가하였다.

³ KOTRA, 『중국 광시성-베트남 변경지역 무역투자환경 조사』 (2005), pp. 8~9.

⁴ 중국에서는 중국 국외의 동일민족에 인접해서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수가 30여개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변경무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간에 호시무역이 이루어져왔는데, 이와 같은 전통도 변경무역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⁵ 중국은 국경선이 길고, 중국과 인접해 있는 주변국가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가들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변경무역을 촉진하는 것이 중국 변경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변경무역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 국경지역의 지방정부와 인접국 간의 무역에서 변경무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주변 13개국 간의 무역에서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전체 무역에서 변경무역의 비중이 70%를, 네팔 및 몽골의 경우는 약 5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⁶

한편, 변경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상품무역 외에도 서비스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무역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경지역의 여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무청부프로젝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호투자에 의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경무역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중국과 주변국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토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 중국 국경지역 성·자치구의 무역 및 변경무역 현황(2004년)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입			수출			수입		
	총교역 (A)	변경무역 (B)	비중 (B/A)	수출액 (A)	변경무역 (B)	비중 (B/A)	수입액 (A)	변경무역 (B)	비중 (B/A)
내몽골	43.7	17.0	38.9	18.9	-	-	24.9	-	-
요녕	399.3	0.1	0.03	195.9	0.1	0.03	203.5	0.0	0.02
길림	74.9	2.5	3.4	19.2	1.4	7.1	55.7	1.2	2.1
흑룡강	71.8	25.4	35.4	37.2	12.6	33.8	34.6	12.8	37.1
광서	48.3	5.5	11.5	23.1	2.7	11.7	25.2	2.8	11.2
운남	37.3	5.2	14.0	20.2	3.1	15.3	17.1	2.2	12.6
티벳	2.1	0.1	4.3	1.7	0.1	5.2	0.5	0.0	1.1
신강	60.2	37.1	61.6	29.2	22.4	76.6	31.0	14.7	47.4

자료: 『中國海關統計』.

또한 변경무역은 중국의 변경지역 성·자치구 및 국경인근 지역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대외무역연감과 해관통계 등에 의하면, 2004년 각 성 및 자치구의 수출입 총액에서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흑룡강성이 35.4%, 신강

⁶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2006), p. 98.

이 61.6%, 내몽고가 38.8%를 각각 차지였다. 이 밖에 운남 및 광서의 경우에도 변경 무역은 성 및 자치구 수출입 총액의 약 11~14%를 차지하고 있다.

2. 중국의 변경무역 관련정책

최근 중국 정부는 서부지역과 동북3성 등 동남부 연해개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개방 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의 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⁷ 따라서 국경지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무역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확립한 ‘대서부개발’ 및 ‘동북진흥전략’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등에서 발표한 서부대개발 및 동북진흥전략에 관한 많은 문서에는 변경무역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중발2000년 2호문서』는 서부지구의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변경무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국무원 국발2000년33호 서부대개발 실시를 둘러싼 약간의 정책조치에 관한 통달』 역시 한층 분명하게 “우대를 강화한 변경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중국 서부지구와 인접국들 상호간의 시장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발2003년 1호문서』에서도 “개방영역을 한층 확대해야 한다”며 “동북지역은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등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발휘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⁸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변경무역의 발전

⁷ 중국 정부는 기존의 ‘선부론(先富論)’ 또는 불균형 지역발전전략에서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노선 하에서 부존자원, 인력 및 조건을 갖춘 일부 지역의 우선적 발전을 용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선부론’을 채택했으며, 이로 인해 광둥성을 비롯한 동남부 연해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과 소득증가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점-선-면(點-線-面)’으로 이어지는 연해개방의 결과는 동남부 연해지역의 경제를 급성장시켰지만, 중서부 내륙 및 동북지역 등과의 심각한 격차현상을 야기시켰고, 이는 최근 수년간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자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은 1996년부터 지역간 격차의 존재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서부와 중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이들 지역 간의 상호보완을 강조하는 ‘비균형협조(非均衡協調) 발전전략’을 천명하였다. 이후 2002년에 등장한 제4세대 지도자 후진타오 주석은 “농촌과 도시의 발전, 지역의 발전, 경제와 사회의 발전, 국내발전과 대외개방 요구의 통합적인 규칙”이라는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을 제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교정하는 ‘지역균형(統籌協調)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전경련 차이나포럼 정치외교분과위원회, 『진흥동북 정책과 지역발전: 헤이룽장(黑龍江)과 랴오닝(遼寧)성의 비교』 (2006), pp. 11~12).

⁸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 pp. 99~100.

을 촉진하는 것이 중국 국내의 발전과 대외개방을 통일적으로 실행하는 데 유리하며, 또한 2개의 시장(국내시장과 국제시장)과 2개의 자원(국내자원과 해외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인접국들과 서로의 경제적 이점을 활용한 상호보완적 발전전략을 형성하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 들어 변경무역에 관한 법제 정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1984년 12월에 「변경소액무역 잠정관리방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4월에는 「국무원 변경무역 관련문제에 대한 공고」를, 1996년 3월에는 「국경지역 주민 호시무역 관리방법」을, 그리고 1999년 1월에 「변경무역의 발전에 관한 보충규정 공고」 등을 발표하였다.

이상의 규정들을 통해 제시된 중국 정부의 변경무역에 관한 주요관리방침과 특혜 조치들을 살펴보면,⁹ 우선, 변경호시무역은 1인당 하루에 3,000위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세하고, 3,000위안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둘째, 기업이 매수한 물품을 내지로 운송할 경우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고 관련 매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관은 변경주민 호시무역 정책에 따라 세금 및 서류를 면제해 주고 있다.

셋째, 변경소액무역기업이 지정된 경우 통상구를 통해 원산지가 인접국가인 상품을 수입할 경우(국가에서 지정한 일부 상품 제외)¹⁰ 수입관세 및 수입증치세는 법정세율에 따라 50%만 부과하고 있다.

넷째, 변경소액무역기업이 현지에서 자체 생산한 곡물 등 국가중점관리 상품을 수출할 경우, 상무부가 매년 전년도 변경소액무역 수출상황, 생활현황 및 수급관계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따로 변경지역 성, 자치구에 일정 수량의 수출쿼터를 배정하고, 이러한 권한은 부여받은 변경지역 성, 자치구의 대외경제 관련 부서에서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한편, 국가에서 쿼터 및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기타 제품을 수출할 경우, 일률적으로 쿼터허가증을 면제한다.

다섯째, 변경소액무역기업이 수입하는 이웃국가 원산지인 상품이 수입쿼터 및 제한등기 관리상품일 경우, 상무부는 매년 연도별 수입계획 총량 가운데 일부에 대해

⁹ KOTRA, 『중국 광시성-베트남 변경지역 무역투자환경 조사』 (2005), pp. 9~11.

¹⁰ 변경무역에서 세제감면 혜택 제외품목으로는 담배, 술, 화장품, 텔레비전, 촬영기, 비디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공제시스템교환기, 마이크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화기, 무선호출시스템기,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기 및 문자처리기, 가구, 주방용구, 음향설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다.

수입쿼터 혹은 제한등기한도를 정해 변경지역 성, 자치구 대외경제 관련 부서가 수입허가증 및 수입상품등기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변경소액무역을 영위하는 것은 무역방식 및 경영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변경소액무역을 일반무역 수출 시 환급정책 혜택을 누리며, 일반무역 환급방법에 따라 수출 시 세금환급 절차를 밟는다.

일곱째, 대외경제기술합작권을 보유한 변경소액무역기업 및 변경지역의 변경소액무역권을 가진 대외경제기술합작기업은 모두 인접국가 변경지역과 공사수주 및 노무합작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여덟째, 변경소액무역기업이 인접국 변경지역과 경제기술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대가로 받은 해당국 원산지의 물자는 프로젝트에 따라 임의로 반입할 수 있으며, 경영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Ⅲ. 북·중 변경무역 현황 및 특징

1. 북·중 전체교역 현황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의 심화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교역, 투자를 통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7.1조치 이후에는 종합시장에서 중국산 소비재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원조를 통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 중국 화폐(위안화)의 선호가 증대되고 있으며 생산부문 정상화를 위한 북한 기업의 중국산 원자재 수입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최근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북·일 관계 악화로 대일 수출물량이 상당 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어들자 북한이 부족한 에너지, 생산원자재, 소비재 등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¹¹ 아울러 중국 제품의 시장가격이 싸고 거래조건이 양호하며, 물류 등 교역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1990년 초반이후 북한 전체

¹¹ KOTRA, 『200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 5)을 참조.

교역량의 25~30% 수준을 매년 유지하였으나, 2002년의 이후부터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는 7억 3,817만 달러로 북한 전체무역의 32.7%를 차지하였으며, 2003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38.6% 증가한 10억 2,293만 달러를, 2004년에는 13억 8,520만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량의 48.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5년에도 계속되어 양국간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14.1% 늘어난 15억 8,034만 달러에 달해 북한 총교역의 52.6%를¹² 차지할 정도로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가 한층 심화되었다.¹³

<표 2> 북한의 대중국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수출입계		무역수지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990	124,580	-	358,160	-	482,740	-	-233,580
1991	85,670	-31.2	524,780	46.5	610,450	26.5	-439,110
1992	155,463	81.5	541,107	3.1	696,570	14.1	-385,644
1993	297,290	91.2	602,350	11.3	899,640	29.2	-305,060
1994	199,217	-33.0	424,523	-29.5	623,740	-30.7	-225,306
1995	63,606	-68.1	486,187	14.5	549,793	-11.9	-422,581
1996	68,638	7.9	497,029	2.2	565,667	2.9	-428,391
1997	121,610	77.2	534,680	7.6	656,290	16.0	-413,070
1998	57,313	-52.9	355,705	-33.5	413,018	-37.1	-298,392
1999	41,709	-27.2	328,660	-7.6	370,369	-10.3	-286,951
2000	37,214	-10.8	450,824	37.2	488,038	31.8	-413,610
2001	166,797	348	570,660	26.6	737,457	51.1	-403,863
2002	270,685	62.3	467,309	-18.1	737,994	0.1	-196,624
2003	395,344	46.1	627,583	34.3	1,022,927	38.6	-232,239
2004	585,703	48.2	799,503	27.4	1,385,206	35.4	-213,800
2005	499,157	-14.8	1,081,184	35.2	1,580,341	14.1	-582,027

자료: 『中國海關叢書』.

¹² 이는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남북교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이며, 만약 남북경협을 포함시킬 경우, 북한 총교역에서 대중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9%이다. 남북교역은 26.0%를 차지하였다.

¹³ KOTRA,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조.

전체 교역에서 수출은 전년에 비해 14.8% 감소한 4억 9,916만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수입은 10억 8,118만 달러로 35.2%나 증가하였다. 1990년 초반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해 왔는데, 2004년에는 2억 1,380만 달러로 줄어든 적자폭이 2005년에는 5억 8,202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어패류, 철강, 광과 슬래그 및 회, 의류, 광물성 연료, 아연 등이다.¹⁴ 최근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 특히 동북3성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원부자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수출품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비증가도 북한산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는 광물성 연료와 에너지, 식용육류, 전기기기, 기계류, 철강, 플라스틱 등이다. 이 외에도 차량 및 부속품, 인조 필라멘트 섬유, 곡물, 제분공업 생산물, 철강 가공품, 채유용 종자 및 과일류 등이 주요 수입품목들에 속한다. 최근 10년간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입비중은 1997~99년과 2002년 두 차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02년 이후부터는 대중국 수입규모가 매년 30% 내외로 급증하고 있다. 2005년에도 대중 수입은 전년대비 35.2%나 증가하여 북한 전체 수입의 54%를 차지하였는데,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로 기계류 등이 북한으로 대량 유입되었고 중국 식량가격의 하락으로 대중 식량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은 주로 요녕성 단둥과 길림성 연변지역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신의주-단둥 경로가 북·중간 교역의 약 80% 가량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당국의 대외무역 허가를 받은 130여개의 무역회사 가운데 100여개 업체가 단둥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위원회 소속의 삼천리총회사, 평양시당 위원회 소속의 룡라도무역총회사, 39호실 소속의 광명성총회사 등 북한의 대표적 무역회사들이 상당수

¹⁴ 이와 같은 수산물 등의 1차산품 위주의 대중국 수출은 북한의 공업기반이 1990년대에 붕괴되어 여전히 생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상업성 있는 북한 상품의 부재로 우호 교역국인 중국에서조차 경쟁력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획량에 따라 수출물량의 변동이 심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 어패류가 북한의 주력수출 상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현실은 북한 수출산업의 중장기적 발전가능성에 부정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또한 단둥에는 중국정부로부터 변경무역 허가권을 받은 무역회사들이 126개가 있으며, 상당수의 조선족 기업과 북한거주 중국화교들이 북·중 간의 교역에 참여하고 있다.¹⁵

특히 2002년 하반기 이후부터 북핵문제로 인해 북한의 대외경제환경이 악화됨으로서 변경도시를 거쳐 거래되는 북·중간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 생필품뿐만 아니라 기업소 및 생산현장에서 요구되는 기계, 전기기기, 철강, 화학제품, 농업용 자재의 대부분을 변경도시를 통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약 50%의 세금 감면혜택이 있는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북한산 제품의 대부분은 변경무역의 형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어패류, 섬유·의류제품, 광물성 원료 등의 대중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

2. 북·중 변경무역 현황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변경무역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요녕성과 길림성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이루어는 변경무역은 양측의 교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⁶ 북·중 간의 변경무역은 대부분 변경소액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간 변경무역은 지난 2000년부터 점차 활성화되어 2005년에 4억 4,141만 달러(북·중 무역총액의 27.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변경무역은 중국 국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변경무역에 참여하려 한다. 현재 변경무역은 증치세(부가가치세)와 관세를 각각 50%씩 감면해 주는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물품이 변경무역을 통해 중국에 수출될 경우, 일반무역보다 가격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변경무역을 통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¹⁷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경지역 외에 거주하는 기업도 대거 변경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¹⁵ 린진수, 『북·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KIEP, 2004), p. 7.

¹⁶ 북·중 간의 국경선은 약 1,309km이며, 랴오닝성은 단둥시를 비롯한 3개의 시와 현이, 지린성은 훈춘시를 비롯한 10개의 시와 현이 북한과 인접해 있다.

¹⁷ 현재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12%, 평균 증치세율은 17%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변경무역을 통한 경우, 일반무역을 통한 것보다 14% 가량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 들어 북·중간 변경무역에 주어지던 세제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되고 있다. 중국의 요녕성과 길림성 정부는 2003년에 이미 변경무역 관련 세제감면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했다(KOTRA, 『경제속보』, 2004.10.29).

<표 3> 북·중 변경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연 도	북한 총 무역액	북·중 무역액	변경무역액	변경무역의 대중 수입액	변경무역의 대중 수출액
1997	21.7	6.5	2.1	1.5	0.6
1998	14.4	4.1	1.3	0.9	0.4
1999	14.8	3.7	1.0	0.7	0.3
2000	19.7	4.8	1.3	1.0	0.3
2001	22.7	7.37	1.56	1.16	0.4
2002	22.6	7.33	1.53	0.99	0.54
2003	23.91	10.23	1.96	1.15	0.81
2004	28.57	13.85	3.00	1.44	1.56
2005	30.02	15.80	4.41	2.59	1.82

한편, 양국간 변경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 북한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변경무역에 대한 대중 수출의존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에도 북한은 전체 대중 수출이 전년대비 14.3% 줄어들었지만 변경무역을 통한 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으며, 전체 대중 수출에서 변경무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수출경쟁력을 갖춘 품목이 별로 없는 북한의 현실과 일반무역에 비해 세제우대가 되는 변경무역을 선호하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수입의 경우에도 변경무역은 2005년에 전년대비 80.6%나 급증하였으며, 비중에서도 일반무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4%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북·중 교역에서 변경무역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양국간 변경무역 규모는 통계상의 수치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무역기업 또는 기관에 의한 변경소액무역과는 달리 변경지역 주민들이 생활용품을 거래하는 변민호시무역은 통계에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해관규정에 따르면, 변경지역주민들은 국경 출입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1인당 하루에 ▲3,000위안의 현금 ▲1,000위안 이내의 일반생활용품 및 식품 ▲담배 400개피 ▲술 2병 ▲재봉틀, 녹음기, 선풍기, 카메라, 세탁기, 냉장고, 자전거, TV 중 1개 등을 휴대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모두 활용한다면 개인이 하루에 약 5,000위안(약 600달러) 내외의 호시무역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중국인들이 휴대해서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는 품목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내 시장으로 유입되어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변경무역을 통한 물자유입과 거래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¹⁸

<표 4> 북·중 거래형태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비중
일반무역	9,717	8,842	20,880	75,000	147,845	97.3	29.6
변경무역	40,025	54,960	81,319	156,384	181,932	16.3	36.4
가공무역	21,175	10,990	10,333	21,684	20,941	-3.4	4.2
보세무역	94,861	191,903	278,268	321,119	145,444	-54.7	29.1
무상원조	-	-	-	26	-	-	0.0
기 타	1,019	4,168	4,544	11,446	2,991	-62.5	0.6
합 계	166,797	270,863	395,344	585,703	499,157	-14.3	100.0

주: 증가율 및 비중은 2005년 기준

자료: 『中國海關統計』;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호.

<표 5> 북·중 거래형태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비중
일반무역	347,038	300,314	431,269	566,243	678,466	19.8	62.8
변경무역	116,686	99,333	114,657	143,656	259,479	80.6	24.0
가공무역	26,293	22,481	44,892	35,165	51,633	46.8	4.8
보세무역	8,727	19,038	20,439	20,844	43,565	109.0	4.0
무상원조	69,129	15,968	10,888	14,556	38,123	161.9	3.5
기 타	2,787	10,175	5,438	4,601	9,912	115.4	0.9
합 계	570,660	467,309	627,583	799,503	1,081,184	35.2	100.0

주: 증가율 및 비중은 2005년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¹⁸ 이영훈,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특징과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2006.3), p. 10.

북·중 변경무역의 교역품목도 최근 들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1990년대에 변경무역을 통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자는 주로 식량, 코크스 및 경공업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북한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상업·유통부문과 시장의 기능이 중시되면서 주요 수입물자들은 기존의 식량과 경공업 제품을 비롯하여 각종 기계류, 중고 엔진, 알루미늄 합금 건축자재, 도로 및 건축 장식재료 등으로 매우 다양해졌다.

중국 해관통계에 의하면, 북한이 국가간 일반무역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1,400종류 이상인데, 변경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물자의 종류도 900여종에 달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도 북한이 국가간 일반교역으로 수출하는 물자가 70여종인데, 변경무역을 통해 수출하는 물자가 120종에 달하여 수출부문의 경우, 일반무역보다 변경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물자가 훨씬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경무역을 통한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은 광물, 철강, 목재 및 수산물 등으로서 대부분 천연자원이거나 1차 가공품들이다. 최근 주요 수출대상 품목들 중에서 철강 및 석탄 등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동북3성 지역의 개발과 맞물려 북한내 원부자재에 대한 이 지역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경무역을 통한 대중 수입품목으로서 2004년에 들어서 곡물 도입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의 북·중 변경무역을 보면, 북한은 광물 및 금속을 수출하고 곡물 및 코크스를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부터 정미의 수입이 급감한 대신에,¹⁹ 쌀과 대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밀가루 및 대두 추출물 등의 수입은 늘어났다. 또한, 곡물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대신에 광물성 에너지, 철강제품 및 건축자재 등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²⁰

¹⁹ 한국은행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최근 곡물 수급불균형은 국제곡물가격 급등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한국은행, 『중국의 곡물부족이 세계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2004.7.9).

²⁰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KIEP, 2005), pp. 106~108.

<표 6> 북한 대중국 변경무역 수출품 추이

(단위: 천 달러)

HS	종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204	재용해용 폐철	3,412.00	6,748.00	12,659.00	22,750.00	33,324.00
2601	철광과 그 정광	725.00	711.00	1,907.00	21,066.00	29,773.00
2701	석탄(무연탄)	207.00	1,490.00	3,645.00	6,551.00	20,468.00
7201	선철	6,916.00	9,405.00	12,115.00	28,299.00	19,464.00
7207	철, 비합금강 반제품	6,052.00	8,047.00	11,830.00	11,272.00	13,287.00
0307	어패류(오징어, 조개)	833.00	5,098.00	3,013.00	16,174.00	9,139.00
2616	귀금속과 그 정광	696.00	2,259.00	2,710.00	5,114.00	6,792.00
4403	원목	1,931.00	3,655.00	6,698.00	10,829.00	6,095.00
1211	약초 및 인삼	162.00	41.00	207.00	739.00	2,504.00
2716	전기에너지	582.00	132.00	769.00	2,014.00	2,365.00

자료: 『中國海關叢書』.

<표 7> 북한 대중국 변경무역 수입품 추이

(단위: 천 달러)

HS	종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01	밀가루	7,166.00	5,378.00	5,542.00	10,656.00	21,573.00
1006	정미	6,639.00	14,187.00	21,274.00	7,090.00	11,320.00
5407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1,675.00	2,055.00	3,150.00	4,260.00	9,831.00
2701	석탄(유연탄)	10,062.00	7,078.00	12,171.00	7,588.00	7,658.00
3918	플라스틱제 바닥재	2,759.00	1,046.00	750.00	791.00	7,514.00
8704	화물자동차	602.00	999.00	1,170.00	3,651.00	7,143.00
1507	대두유	501.00	197.00	339.00	873.00	5,994.00
1005	옥수수	582.00	361.00	717.00	954.00	4,043.00
2710	석유제품	4,039.00	2,354.00	3,140.00	3,134.00	3,645.00
6908	타일류	787.00	669.00	1,229.00	2,919.00	3,127.00

자료: 『中國海關叢書』.

<표 8> 북·중 국경지역의 주요 세관 현황

소속지명	중 국 세관명	유형	북 한 세관명	통관능력		실적		거리 (km)	분류	
				화물 만톤	인/일	화물 톤	인			
吉林省	琿春市	圈河	도로	라진	60	60	162,393	162,089	42	국가1급
	琿春市	沙坨子	도로	새별	10	10	5,863	11,242	11	지방2급
	琿春市		도로	함북 훈계						폐기
	圖門市	圖門	도로	남양(청진)	20	10	481,689	21,161		국가1급
			철도		275		565,474			국가1급
	龍井市	開山屯	도로	삼봉	10	2	930	2,554	37	국가2급
	龍井市	三合	도로	회령	40	8	13,120	16,755	47	국가1급
	和龍市	南坪口	도로	무산	60	100			50	국가1급
	和龍市	古城里	도로	삼장	10		6,936	4,899	80	지방2급
	安圖縣	雙目峰	도로	삼지연군					50	공무용
	長白縣	長白	도로	혜산			36,075	31,846		지방2급
	白山市	臨江	도로	자강도 중강			10,777	10,926	80	국가2급
	集安市	老虎哨	배	양강도 위원			11,400	4,071	67	지방2급
	集安市	集安	철도	포구	100		44,237	15,086		국가2급
遼寧省	丹東		도로	신의주	100	1,755				국가1급
			철도		400	200				국가1급
	丹東	啞巴溝	배	삭주항	10		40,000		90	지방2급
	丹東	長甸河口	배	평북 삭주군	50		82		55	지방2급
	丹東	太平灣口	도로	평북 삭주군				1,737	50	지방2급
	丹東	丹紙碼頭	배	신의주			30,000		20	지방2급
	丹東	大鹿島	배		1		1,000			지방2급
丹東	大臺子	배	평북 신도군	10		4,560		26	지방2급	

자료: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 p. 126

현재 북·중 변경무역은 단둥, 집안, 장백, 도문 등 10여개의 세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단둥세관은 북·중 무역을 담당하는 가장 큰 세관이다. 특히 단둥세관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공업 기반과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신의주, 남포 등 북한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지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북·중 무역의 최대 창구가 되고 있다. 단둥세관은 1943년 건립되어 1973년 한 차레 보수작업

을 한 후, 급증하는 북·중 무역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2003년에 2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대규모 증설 및 개·보수 공사를 하였다. 북·중 무역의 대부분의 물자가 이동하는 압록강 철교는 과거에는 10톤 이하 화물차량만 통과할 수 있었지만, 개·보수 이후 20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²¹

한편, 두만강유역 및 길림성 인접 지역에서도 국경지역 세관들을 통한 변경무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길림성 및 연변과 접해 있는 북한의 함경북도 지역은 석탄, 철강 등 흑색금속공업 생산기지이며 양강도는 중요한 목재의 산지다. 이러한 자원은 변경무역의 주요 거래품목이다. 길림성지역의 주요 세관 중 훈춘시 권하세관은 1998년 12월 17일 중국 국무원의 정식비준을 받아 국가1급 세관으로 승격되었다. 권하세관이 담당하고 있는 통과 화물량은 연간 60만 톤 이상이며, 통과 인원수도 6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권하는 길림성에서 북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연길~나진~부산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 화물선의 주요 운송통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점들로 권하세관은 연변과 북한간 변경무역을 위한 주요 창구가 되고 있으며, 국경지역 관광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²

3. 북한-단동간 변경무역

단동시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국경도시이며, 단동세관은 북·중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창구라고 할 수 있다. 단동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비롯하여 공업기반과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북한 서부지역과 가까이 있고, 육상교통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북·중 무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다. 변경지역 무역에서는 운송 인프라로서 압록강 철교뿐만 아니라 해상운송도 점차 중요한 교역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동지역을 경유하는 일일 통관이용차량은 500대 정도이며, 물량이 많을 때는 700여대에 이르기도 한다. 통행인원은 1일 1,755명, 화물수송량은 1일 400톤에 이르고 있다.²³ 또한 2003년 압록강에서 변경무역 운송을 담당하는 북한측 화물선은 2002년의 18배에 달하는 56척에 달하며, 이 중에서 500톤급의 대형선박도 상당수 운행중에 있다.²⁴ 현재 단동세관은 국가무역을 중심으로

²¹ 현재 단동세관을 통과하는 80%의 화물은 주로 압록강 철교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한편 단동세관에서는 2004년 1월 20일부터 단동~신의주 및 단동~평양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개설하여 매주 5회(월~금) 운행하고 있다(『黑龍江新聞』, 2004. 1. 20).

²² 린진슈, 『북·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p. 9.

²³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 p. 129.

변경무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다른 세관들은 변경무역을 위주로 하고 있다.

단동은 북·중 변경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창구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단동-북한 간의 변경무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²⁵ 첫째, 무역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경무역의 증가는 단동시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1990년 단동시의 총생산액은 9.9억 달러 수준에서 2004년 현재 35.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경제규모가 3.5배 이상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생산총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에는 2.0%에 불과했지만, 2004년 현재 37.4%에 달하여, 대외무역의존도가 1990년의 3.0%에서 2004년 현재 58.7%로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2004년의 단동시 세관을 통한 북한 수출액은 5.8억 달러로, 전년대비 33.5%나 증가하였다. 단동시를 통한 중국의 대북 수출규모는 중국 동북지역의 대북 수출규모의 74%에 달하는 것이다. 2004년도 단동시에 있는 기업들의 대북 변경무역액은 3억 1,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²⁶ 이는 단동시의 대북 교역액의 54.2%에 달하는 것이다.²⁷

둘째, 무역품목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변경무역의 거래품목이 다양화되고 수출상품 구성도 합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단동시의 대북 수출상품으로는 일용잡화, 의류, 식량, 전기제품, 기계설비, 석유제품, 농약 및 화학비료, 화학공업제품 등 많은 종류의 물자가 거래되고 있다. 이 중 50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품도 20여종 정도 있고, 수출상품 내에서 원자재 또는 가공도가 낮은 제품이 감소하는 대신 가공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04년 현재 공업제품이 총수출금액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변경무역의 대북 수입상품은 원료 및 원자재, 철강, 목재, 석탄, 액화가스, 수산물, 광산물, 비철금속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²⁴ 단동의 압록강 맞은편에 위치한 신의주에는 8,000여명에 달하는 화교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북·중 변경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²⁵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 pp. 131~133.

²⁶ 이 중에서 수출은 전년대비 14.3% 증가한 2억 3,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²⁷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 p. 131.

<표 9> 단동시 무역총액과 단동기업의 대북한 무역액

연 도	단동시 무역총액(억 달러)			단동기업의 대북 무역액
	총액	수출	수입	
1990	0.3	0.2	0.1	0.2
1991	0.3	0.3	0.1	0.3
1992	0.4	0.4	0.1	0.4
1993	0.7	0.5	0.2	0.6
1994	1.3	1.1	0.2	0.8
1995	2.0	1.8	0.2	1.0
1996	4.0	2.6	1.4	1.1
1997	6.1	3.6	2.5	1.5
1998	6.6	4.0	2.6	1.7
1999	6.9	4.1	2.8	1.8
2000	9.7	6.1	3.6	1.8
2001	12.1	7.8	4.3	2.0
2002	14.3	9.0	5.3	2.2
2003	16.6	10.6	6.0	2.7
2004	20.6	13.1	7.5	3.1

자료: 단동시 상무국의 정보;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 p. 132에서 재인용.

셋째, 무역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무역방식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바터무역에서 현금결제무역,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으로 방식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는 무역품목이 다양화되고 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역품목이 다양화되면서 일부품목의 경우, 가공무역 방식이나 중계무역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전히 변경무역의 경우, 바터형식이나 소액현금결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넷째, 변경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나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이전에는 요녕성의 변경무역회사가 변경무역을 독점했었다. 그러나 현재 단동지역에는 무역회사와 민간기업, 국경소액무역기업 등 다양한 무역경영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160개 사에 이르고 있다. 중국계 기업 이외에도 100여개에 달하는 외자기업과 단동주재 단체 등이 있다.

다섯째, 국제적인 경제기술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북한경제는 여전히 회복이 느리고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제기술협력 추진과 북한내 합작기업 설립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재 단동에는 북한과의 합작기업이 8개 시²⁸가 있고, 이에 대한 중국측의 투자 규모는 약 500만 달러 수준이다.²⁹

여섯째, 변경무역에서 북·중 간의 관광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988년부터 중국과 북한 간의 관광부문 협력이 시작되어, 단동과 평양, 묘향산, 개성 등을 연결하는 국제관광상품이 개설되어 있다. 현재 여행객은 연평균 3~5만 명에 달하며, 매출이 5,000만 위안에 달하고 있다. 단동지역에서 국제관광업무를 개설한 기업은 30개 사로 늘어났으며, 현재 대북한 관광사업은 단동시의 중요 산업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³⁰

4. 북한-연변간 변경무역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북·중 무역을 포함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심이 대부분 단동으로 집중되었지만, 1990년 초반까지는 북한-연변 간의 변경무역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92년 11월 국무원에서 실시한 새로운 변경무역관리정책으로 각종 규제나 제한들이 완화·폐지면서 연변지역을 통한 북·중 변경무역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1992년과 1993년 2년에 걸쳐 연변의 무역회사들은 북한과의 무역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1993년도 북한-연변간 변경무역은 3억 2,337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³¹

그러나 1994년 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중국의 대북 경제정책의 변화 및 북한의 경제사정 등으로 연변지역의 변경무역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1998년의 경우 북한-연변간 변경무역은 3,163만 달러로 같은 해 북·중간 전체 변경무역의 21%에 불과했다.³² 반면 단동을 통한 변경무역은 1990년대 말부터 크게 증가하여 연변지역의 변경무역액을 초과하였다. 2001년부터 단동의 대북한 무역액은 2억

²⁸ 상점이 2개, 식당이 3개, 가공공장이 2개, 수산양식회사가 1개이다.

²⁹ 國際經濟交流財團, 『中國東北部と北朝鮮の經濟交流の實態調査』, p. 133.

³⁰ 위의 책, p. 133.

³¹ 황덕남, “북한·연변 변경무역의 활성화에 관하여,” 『통일문제연구』 (2000년 하반기호), p. 47.

³² 린진슈, 『북·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p. 10.

달러를 넘어섰으나, 같은 해 연변지역의 대북한 무역액은 6,833만 달러에 그쳐 단동의 30% 수준에 머물렀으며,³³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³⁴ 북한-연변 간 교역상품구조를 보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철광석,³⁵ 폐철, 해산물 등이며, 수입 품은 식량을 비롯하여 비료, 연료, 가공기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10> 북한-연변 변경무역 현황

(단위: 만 달러)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변경무역액	14,529	32,337	22,615	5,511	2,941	3,535	3,163	5,073	4,872	6,833	9,459	11,656

자료: 『중국해관통계』; 황덕남, “북한·연변 변경무역의 활성화에 관하여,” p. 48; 린진수, 『북·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p. 11.

연변지역과 북한 간의 국경 통상구는 모두 7곳이 있다.³⁶ 우선 가장 대표적인 곳이 권하통상구이다. 길림성 훈춘시 권하촌에 설치된 이 통상구는 북한의 함경북도 은덕군 원정리해관과 마주하고 있으며, 연변과 북한간 무역의 가장 중요한 통상구이다. 1937년에 설치된 후 1982년에 문을 닫았다가 1995년에 다시 개통되었으며, 2001년 10월에 중국 해관에 의해 국가1급 통상구로 승격되었다. 권하는 길림성에서 나진·선봉지역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상구로서 훈춘~나진~부산항을 통하는 해륙콘테이너 국제수송선이 개통되어 있다.³⁷ 권하통상구의 연간 여객통행능력은 60만명이며, 연간 화물통과능력도 60만 톤에 달한다.

둘째, 도문통상구이다. 도문시는 길림성 연변자치주의 현급 도시로, 길림성에서 가장 큰 변경도시이다.³⁸ 북한의 함경북도 남양과 마주하고 있는 도문통상구는 1924년

³³ 위의 책.

³⁴ 최근 북한-연변간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단동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계속 뒤쳐지고 있다. 2005년도 연변자치주의 무역총액은 7.2억 달러로 전년대비 25.8% 증가하였다. 연변자치주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북한, 한국, 러시아인데, 2005년도 북한과의 무역은 2.6억 달러(전년대비 20.6% 증가)로 전체 교역의 36%를 차지하였다.

³⁵ 2005년 상반기에만 북한이 연변에 수출한 철광석은 42만 톤, 금액으로는 2,166만 달러에 달하였다.

³⁶ 황덕남, “북한·연변 변경무역의 활성화에 관하여,” pp. 51~53.

³⁷ 연변의 현통집단은 권하 통상구를 이용하여 연결-나진-부산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정기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³⁸ 도문시는 2004년 현재 인구가 13.5만 명이며, 이 중 57.4%가 조선족이다. 시의 GDP는 14.7억 위안이며, 이 중 1차산업이 0.7억 위안, 2차산업이 8.0억 위안, 3차산업이 6.0억 위안을 각각 차지하였다(『吉林統計年鑑 2005年』을 참조).

에 설립되었으며, 철도와 도로가 모두 구비된 현대식 1급 통상구이다. 북·중간 통상구 중에서 통관화물량에 있어 단동에 이어 제2의 통상구이다. 철도를 이용한 연간 화물통관능력이 270만 톤, 인력수송은 12만 명이다.

셋째, 사타자통상구이다. 훈춘시 삼가자향에 설치된 이 통상구는 훈춘시로부터 11 km 거리에 있는 지방 2급통상구이다. 북한의 함경북도 새별군통상구(북한의 1급 통상구)와 마주하고 있다. 사타자통상구는 전통적인 민간무역통상구인데, 화물통과능력은 연간 10만 톤이며, 여객수송수도 10만 명 수준이다. 1995년 권하해관이 개통되기 전까지 화물량이 많았으나 현재는 화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향후 사타자통상구의 통관능력 확장과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국가2급 통상구로 승격시키는 것이 길림성 대외개방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넷째, 개산둔 통상구 연변자치주 용정시 개산춘진에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통상구와 마주하고 있으며, 국가2급 통상구이다. 화물통과능력은 연간 2만 톤이고 여객통관 수는 연간 2만 명이며, 차량통과능력은 5천대이다. 이 통상구는 1923년도에 설치된 후 ‘문화대혁명’ 기간에 폐관되었다가, 1992년에 다시 개관되었다.

다섯째, 삼합해관이다. 용정시 삼합진에 설치된 이 통상구는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통상구와 마주하고 있다. 이 통상구의 화물통과능력은 연간 40만 톤이며, 여객통관수도 8만 명에 달하고 있다. 차량통과는 연간 1만 5천대가 가능하다. 삼합통상구는 국가2급 통상구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통상구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한방약재가 대부분 반입되고 있다. 한편, 지리적으로 북한의 청진시와 가깝기 때문에 관련 화물 통과량이 많다.

여섯째, 남평통상구는 화룡시 덕화향 남평촌에 설치되어 있으며, 북한의 함경북도 무산군 칠성리통상구와 마주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길림성 내에서 북한과의 무역에 있어서 남평통상구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통상구는 중국이 최근 철광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으로는 유력한 대중 수출품목인 철광석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 정비를 통해 2003년 10월부터 통상구를 재개하였다.³⁹ 중국측은 철광석, 파찰, 목재 등을 수입하고, 북한은 중국에서 식량과 방직품, 전기제품, 공작기계 등을 수입하고 있다.

³⁹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공사는 2003년부터 북한의 무산철광과의 공동개발을 추진해 왔다. 2004년 초에는 중앙 정부로부터 대외무역 경영권과 변경무역 경영권을 획득하였다. 중국 내에서는 유일한 철광석 무역분야의 대북 무역회사이다.

일곱째, 고성리통상구는 화룡시 송선진에 설치되어 있으며, 북한의 양강도 대흥단군 삼장통상구와 마주하고 있다. 1933년에 설립되어 1985년에 지방2급 통상구로 승인을 받았다. 1994년에 ‘중조국경교’를 건설하여 화물이 원활하게 통과되고 있으며, 주로 북한의 목재를 수입하고 있다.

한편, 1997년 6월에 변경무역활성화의 조치의 일환으로 라선시 원정리에 북·중 공동으로 무역시장을 개설하였다. 원정리 변민호시무역시장은 초기에는 북·중 양측이 각각 50명 규모로 하였으나 후에는 각각 150명으로 증가하였고 가장 많을 때에는 중국측 500명, 북한측 300명까지 증가하였다. 원정리 변민호시무역의 거래 상품은 생활용품으로 국한되어 있고 1일 1인당 인민폐 3,000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하였다. 이 시장에 들어오는 상인들은 주로 나진·선봉지역의 주민들과 훈춘시 시민들이었는데, 북한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주요한 물품은 해산물과 토산품이었고 연변상인들이 가지고 가는 주요한 물품은 복장, 신발, 일상생활용품과 식량, 부식품들이었다.⁴⁰ 그러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상품이 점점 줄어들면서 호시무역시장에서 북한상인들은 달러와 엔화를 주고 연변상품들을 사들였다. 북한측에서는 달러와 엔화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호시무역시장에서 달러와 엔화의 유통을 엄금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이 원정리 시장에 들어오는 상품과 교환화폐에 대해 제한을 강화하자 북한상인들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99년 5월에 원정리 호시무역시장은 자동 폐장되었다.⁴¹

IV. 북·중 변경무역의 과제와 전망

1. 북·중 변경무역의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중 변경무역은 양측의 필요성(중국은 국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대외개방, 북한은 필요한 물자의 수입 및 유리한 수출환경 활용)에 의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 북한경제의 회생과 중국 동북진

⁴⁰ 원정리 시장은 경기가 좋아 훈춘시에는 한 때 ‘호시무역시장’ 장사까지도 나타났고 평균 일일 교역액은 40~60만 위안에 달하였다. 1997년 말 호시무역시장에 다녀온 중국측 변경주민은 8,400명에 달하였고 무역액도 약 1,600만 위안에 달하였다.

⁴¹ 황덕남, “북한·연변 변경무역의 활성화에 관하여,” p. 54.

흥전략 등이 맞물리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변경무역은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과 개발을 촉진하고 ▲북한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중국인(조선족 포함)들과의 접촉을 통해 중국 개혁·개방의 성과를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⁴²

그러나 북·중 변경무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우선, 변경무역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이다.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간의 변경무역 통계를 보면, 최근 수년간 무역총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길림성의 대외무역 총액은 65.3억 달러이지만, 이 중 대북 변경무역액은 2억 5,408만 달러로 성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불과하다. 요녕성의 경우도 2004년 교역총액이 410.1억 달러인데, 이 중 북한과의 변경무역액이 1% 수준인 2.7억 달러에 불과하다. 북·중 변경무역이 이처럼 규모의 제약을 받고 있는 주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전력부족과 생산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현재 공장 가동률이 30~4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1980년대 말에 비하면, 85% 수준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1989년 48억 달러, 2005년 41억 달러).⁴³

또한 북한의 산업생산 활동이 정상화되지 못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이 거의 없고, 외화부족도 심각하여 수입을 확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수년간 북·중 변경무역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전체적인 무역규모는 여전히 소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체제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국제관례에 따른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관리체제는 미비한 부분이 많고, 많은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따라오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례로 북한의 대외무역 기업과 조직단체는 지휘계통이 복잡하며 실제 무역에 종사하는 기관들의 대다수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낭비도 크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국제관례에 따른 거래를 어렵게 하며, 북한과의 기업 제휴 및 거래 등을 고려하는 중국측 기업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중국측 기업들의 대북 협력사업추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⁴² 린진슈, 『북·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pp. 13~15.

⁴³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에 남북교역을 포함한 것이다.

있고, 양국간 경제협력에도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북한경제 및 무역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대외무역에 대해 엄격한 중앙집권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경제무역 정보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중국측 관계자가 북한에 들어가 사업활동을 하는 것에는 상당히 엄격한 통제가 따른다. 따라서 중국기업이 북한측의 무역수요, 관련회사의 신용정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북한측 무역담당자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는 거의 아무런 제약도 없고, 북한은 중국측 무역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자원의 불완전성과 불균형이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무역 및 경제활동에서의 거래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북·중 변경무역의 전망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과 북한간 경제협력의 주요 통로로 기능해 왔고, 앞으로도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 2,000km에 달하는 국경선과 10개의 항구, 200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이 모여살고 있는 등의 객관적 조건들은 북·중 변경무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필요로 하고 있고, 북한에 풍부한 철광석, 석탄 및 각종 비철금속 자원 등을 중국측은 원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은 산지가 많고 경지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매년 대량의 식량을 수입하거나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길림성은 중국 내 식량생산지이며, 매년 대량의 잉여농산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길림성의 농산물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잉여농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국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의 자원에 힘입어 북한경제는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대외무역의 증가에 따라 북·중 일반무역과 변경무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북·중 변경무역은 15억 8천만 달러에 달하여 2004년에 비해 14.1%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북·중 변경무역은 2000년대 들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변경무역

의 거래품목도 이전의 일용품과 식량 등의 단순물자에서 이제는 기계제품, 화학공업 제품, 방적품 등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⁴⁴ 거래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⁴⁵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간의 변경무역은 향후 수년 내에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북·중간 변경무역의 현상분석과 전망에 기초해서, 향후 양국간 변경무역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중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 동북지역의 변경지역 개방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 및 무역 확대는 북한은 물론 중국의 국익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문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북한과의 무역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북한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은 과거 공업기지의 조정과 개조의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변경지역의 개방과 한반도(남북한을 포함)와의 경제협력을 구 공업기지 개조와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변경지역의 개방은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중요한 요소이고, 동북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동북의 변경지역에는 200만 명이 달하는 조선족이 모여살고 있고, 본격적인 대북 경제협력 실현은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변경무역에 대한 북한과 중국 양측의 입장과 인식을 충분히 고려할 때, 현재의 변경무역 규모를 보다 큰 규모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조체계 하에서 관련 인프라의 정비, 제도의 정비 및 보완, 지방법규의 확립 등에 중점을 둔 정책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북·중 무역 및 경제협력의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현재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 및 무역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무역에서는 소액변경무역이 변경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직접투자와 중계무역 등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유희화되어 있는 가공설비와 생산라인을 북한으로 이전하거나,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설비 및 기술투자를 확

⁴⁴ 향후에도 중국은 북한에게 있어 식량, 원유, 코크스, 기계 등의 주요 전략물자의 최대 공급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경무역을 포함한 북·중교역의 주요 교역품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식량, 원유, 코크스, 각종기계 및 원자재 등이 중심이 될 것이다.

⁴⁵ 최근 들어 북·중 변경무역에서 대북한 투자리스크의 분산을 위해 보상무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변의 기업과 북한 무산철광 간의 제휴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투자의 형식과 무역의 형식을 동시에 갖고 진행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보상무역 방식이 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력과 원자재를 이용한 사업들을 장려해 나가야 한다. 이는 동북지역의 구 공업기지 개조에도 유리하고 북한과의 무역에서 누적된 대량의 무역흑자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 변경지역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제품을 북한에서 가공하고 북한산 원산지 증명을 받아 한국에 수출하는 중계무역도 상당한 실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북·중 양측의 무역질서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북한 무역기업의 활동상황에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측 정부는 무역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통일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에서 질서 있는 무역과 경제협력 관행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경지역에서의 통관수속을 간소화하고 무질서한 비용징수를 방지하여 기업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 동북의 변경지역에 양국 정부 간 연락조정기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접경지역의 인프라 건설, 통관수속, 무역분쟁 등의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밖에 무역관련 기업, 조직단체 및 중개조직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서 무역 및 경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간 교류와 의견교환 등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기업 간 협력과 건전한 경쟁 및 거래비용 인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프라 건설을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인프라의 정비는 쌍방의 경제협력 및 무역 등을 확대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이며, 그 중에서도 철도·도로 등의 물류·교통관련 인프라의 정비 및 건설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수출제품의 품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낮은 가격의 상품을 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업자들은 상품의 가격만을 중시하고 제품의 질을 경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출상품의 품질관리 문제는 대북한 무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기업은 장기적 이익에 착안하고 국제관례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여 북한과의 무역에 좋은 이미지와 신용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3성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중점개발전략의 발표와 경제발전은 북·중 경제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북·중 변경무역은 국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대외개방이라는 중국측의 필요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 및 대중 수출 확대라는 북한측의 필요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북한경제의 회생과 중국 동북진흥전략 등이 맞물리면서 변경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북·중간 경제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변경무역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요녕성과 길림성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이루어는 변경무역은 양측의 교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중 간의 변경무역은 대부분 변경소액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변경무역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변경무역을 통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출경쟁력을 갖춘 품목이 별로 없는 북한의 현실과 일반무역에 비해 세제우대가 되는 변경무역을 선호하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간 변경무역의 확대는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과 개발을 촉진하고, 북한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중국 경제발전의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개혁·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중 간의 변경무역은 기존의 교역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점차 노무협력이나 투자협력 및 지역연계 개발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변경무역을 통한 북·중 접경지역 간의 상호의존성이 계속 확대되어 나간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접경지역간 경제협력을 통해 자원의 공동이용과 외국인 투자의 촉진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의주-단동, 함경북도 나선-연변은 상호보완성 향상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향상시키고, 한반도와 중국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신의주-단동지역과 같은 북·중 접경도시들의 경제교류는 변경무역의 중계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산업구조나 외자유치, 도시기능의 상호보완성 등을 확대하고 연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신의주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대외개방의 움직임이 보이고 중국이 동북3성의 개발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신의주-단동, 나선·청진-연변 등의 접경 지역들 간의 경제협력과 연계개발은 북한진출과 중국 동북지역 진출을 고려하는 남한 및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북·중 간의 변경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북·중 변경무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별다른 제약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유력한 무역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참여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북 경제제재를 엄격하게 취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경무역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은 대부분 경제제재의 대상과 무관한 일반주민들의 생필품이나 곡물류라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범법행위 중앙기록보존소의 의미: 탈북자 인권침해기록보존소의 한 모델로서*

윤 여 상** · 이 건 호***

- | | |
|------------------|------------------------------|
| I. 머리말 | IV.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 설립의
의미 |
| II.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능 | V. 결 론 |
| III. 중앙기록보존소의 효과 | |

Abstract

The Meaning of “the Central Archiving Center against Illegal Activities” at the Sociality Unity Party in Germany at Viewpoint of North Korea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Model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Archiving Center for Refugees from North Korea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faced with the limitation to carry forward a positive scheme agains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for refugees from North Korea. This is caused by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which should consider both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rough “the Peace & Prosperity Policy (Sunshine Policy),” and current situation of mutual assistance among the surrounding countries connected with the interests.

The Central Archiving Center against Illegal Activities in Germany, which had per-

formed the mission of record preservations again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for refugees from East Germany until the unification, is a valuable model to deal with the matte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refugees from Nor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Archiving Center for Refugees from North Korea would be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disciplinary punishment afte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North Korean refugees as well as for the prevention of this kind of violations thereafter.

Key Words: Peace & Prosperity Policy, Refugees from North Korea, Human Rights Violation, Human rights Violation Archiving Center, Zentrale Erfassungsstelle in Salzgitter

* 이 논문은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9-BS0015).

** 북한인권센터 소장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원

I. 머리말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조선 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10월 17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대북 경제적 제재의 강화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고,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되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북한주민의 탈북사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상황에서 우리에게 통독이전 동독난민의 엑소더스 문제와 유사한 고민이 놓여있다.

이미 북한에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주민의 이탈행렬은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중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국가를 거쳐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다.¹ 그리고 그 만큼 그들은 여러 형태에서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북한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반 인권적인 취급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² 따라서 심각한 탈북자의 문제, 특히 그들의 인권침해적 고통사례는 미확정적인 통일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지 않다. 당연히 사법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상황에서 형사소추의 현실적 불가능은 우리로

¹ 주섭일, “베를린장벽 붕괴 15주년, 휴전장벽에 주는 교훈: 동독 엑소더스 대담한 수용과 길도는 탈북자 문제,” 『자유공론』 (2004.11), p. 50. 참조

²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북한의 가난과 기아 등에 의한 단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탈북자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가혹한 형벌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김부찬·김하룡,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방안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 -재중 탈북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6권 제2호 (2006.2), p. 28)참조. 더욱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재외탈북자에 대한 인권문제도 진작부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윤여상, “탈북자의 인권<토론>,” 『인권과정의』, Vol. 317, 2003.1, pp. 51~55). 특히 중국 정부는 김정일 공산독재 정권으로부터 생존적 인권마저 박탈당하고 살길을 찾아 탈북한 수십만의 북한 주민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정부와 협력하여 탈북자들을 잡아들이는 것과 같은, 대국의 체통에 맞지 않는 비 인도주의적 수치스러운 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다(김덕홍, “탈북자와 북한 인권문제,” 『대륙전략』 제2호 (2004.9), pp. 220~221). 실제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였으나 북한요원들에 의한 체포나 강제송환을 피해 숨어살고 있다. 또한 탈북여성들은 납치되거나 속아서 강제결혼을 하거나 매춘 혹은 성노예상태로 빠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생존을 위해 혹은 돈을 벌기위해 몸을 파는 경우도 있다. 중국당국은 이들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구금·고문은 물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김영신, “탈북자를 통해 본 ‘나락같은’ 북한 인권상황<HRW 2005 인권보고서>,” 『통일한국』 (2005.2), p. 36).

하여금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관된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에 따른 남북관계개선과 국제적 협력의 틀 속에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될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과의 공조, 특히 한미공조라는 대립적 구조는 참여정부의 인권문제에 명쾌한 입장표명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 딜레마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탈북자의 인권침해를 손 놓고 볼 수는 더더욱 없다.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적이고 능동으로 강구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면 (어느 정도는)수동적일지라도 의미 있는 해결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적어도 통독되기까지 동독탈주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보존을 임무로 한 독일의 중앙문서보관소의 존재는 탈북자의 인권침해문제의 적절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통독과정에서 독일의 중앙문서보관소의 존재의미를 살펴보면 동 보존소가 인권침해의 개선·방지에 가지는 역할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범법행위에 대한 중앙기록보존소(Zentrale Erfassungsstelle, 이하 중앙기록보존소)³의 설립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1990년 독일의 재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준비를 하였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통일과정에서 중앙기록보존소가 담당한 주요임무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이 서독으로 향한 동독탈주자에게 저지른 인권침해행위를 기록·문서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동독탈주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가능한 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록보존을 통하여 탈주과정에서 발생한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에 가로놓인 철조망에서의 총격, 지뢰, 자동발사장치로 인한 동독탈주자의 죽음이 사장되지 않도록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중앙문서보관소의 존재가치는 단순히 동보존소의 업무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중앙문서보관소의 설립은 동독의 체제집권자에게 그들의 인권

³ Zentrale Erfassungsstelle는 ‘중앙범무기록보존소’(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1995), p. 155) 또는 ‘중앙범죄기록소’, ‘잘츠기터기록소(김문수,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해 북한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자,” 『월간조선』, 26권 9호 통권 306호 (2005.9), p. 189)라고 번역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논문의 성격에 적절하게 이 기관의 이름을 그 특성에 대한 고려에 따라 좀 더 상세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범법행위에 대한 중앙기록보존소’라고 번역하고서 이하에서는 편의상 단지 ‘중앙기록보존소’라고 한다.

침해행위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동보존소의 존재는 아울러 인권침해행위당시는 아니지만 나중에라도(통독 후) 그들의 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책임을 물리겠다는 독일국민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써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독일국민의 확고한 통일여지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중앙기록보존소는 통독이전에도 인권침해행위를 개선·방지케 하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독 후 보관된 문서들은 동독탈북자의 인권침해사안과 더불어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범법행위를 묻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비록 중앙기록보존소가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지수단을 찾는 경우는 적절한 대처방안으로 보기 힘들겠지만, 수동적이거나 적극적인 인권침해의 개선과 중지압박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렇게 보면 현재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적극적이고 명확한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참여정부에게 인권침해방지의 일환으로 인권침해사례를 문서화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존재는 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기록보존소가 탈북자 인권침해기록보존소의 모델로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평화번영정책”에 주는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앙기록보존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설립배경, 업무내용과 업무방식을 설명함으로써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당위성과 어떻게 기능을 하였는지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통일과정에서 중앙기록보존소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동보존소의 인권보호적 의미와 통독과정에서 어떠한 기여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는 중앙기록보존소가 왜 참여정권의 대북정책 ‘평화번영정책’에 탈북자 인권침해기록보존소의 모델로서 고려될 수 있는지를 밝혀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탈북자의 인권침해행위 기록보존소의 설립된다면, 이에 따른 탈북자의 인권침해 방지·개선 효과와 이에 따른 기대가능한 통일추진효과를 생각해 본다.

II.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능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능이 인권보호적 측면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것은 동보존소가 설립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동보존소의 업무내용을 분석해보고 또한 업무방식을 검토했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다.

1. 설립배경

중앙기록보존소의 인권보호적 성격은 그 설립배경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왜냐하면 잘츠기터에 위치한 중앙기록보존소의 역사는 탈동독행렬을 막기 위하여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 이하 동독)에서 ‘반파시스트 보호벽’이라고 불렀던 베를린 장벽의 건설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49년 10월에 동독정부가 진정한 인민국가임을 자처하면서 건국되었다. 하지만 많은 동독주민들은 신생 사회주의 국가에 등을 돌리고 서독으로 향하였는데, 1950년부터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때까지 이탈자 수는 최소 256만 명에 달하였다.⁴ 따라서 탈동독 행렬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였고, 동독정부는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을 축조하였다. 그리고 동독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향하는 동독주민에게 비할 수 없는 잔인한 반응을 보였다. 1961년 8월 13일에서 1989년 11월까지 186명의 동독인이 목숨을 걸고 동독탈출을 시도하였는데, 그중 많은 수가 병사들에게 사살 당하였거나 또는 자동발사장치와 지뢰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동독에서 탈주를 시도한 주민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정부가 동독의 붕괴와 주민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인권침해요소가 포함될 지라도)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베를린 장벽과 관련된 동독정부에 의해 자행된 폭력행위는 곧바로 (언젠가는) 소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공론화 되었다. 베를린 장벽의 축조이후 사살명령의 첫 희생자가 나온 뒤에, 서독 정치인들은 반드시 (또다른 이러한 사건의 방지를 위하여)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 서베를린 시장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나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와 인식을 같이하는 서독정치인들에 의하여 그러한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의 설립을 검토되었다.⁵ 결국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불법행위를 기록·보존하기 위한 독자적인 기구로서 중앙기록보존소가 당시 동서독의 경계 지역인 잘츠기터에 설립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명백히 인권침해적이고 형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행위는 기록·문서화되게 되었다.

⁴ 최승완, “탈동독 행렬과 동독 사회주의의 붕괴,” 『역사비평』, 통권 65호, 2003 겨울, p. 251.

⁵ Sauer, Heiner·Plumeter, Hans-Otto,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Esslingen·Muenchen, 1991), p. 20.

2. 업무내용

가. 업무영역

중앙기록보존소의 명칭은 동보존소 역할에 비추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동독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문서화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법무행정기관이었다. 그런 만큼 중앙기록보존소의 임무는 차후에 형사소추에 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가치가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중앙기록보존소의 업무영역은 처음에는 단지 베를린장벽과 동서독 국경지대에서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었다. 이후 1963년에 국내형법적용 규정상 기본원칙(die Grundsätze des interlokalen Strafrechts)에 근거해서 중앙기록보존소에 기록되어야만 하는 폭력행위의 개념은 형사소추가 가능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행위로 확대되었다가, 1968년에 이르러 폭력행위의 개념은 형사소추의 기준으로 인권침해행위여부가 문제됨으로써 더욱 확대되었다.

중앙기록보존소의 핵심적인 주요한 임무는 인권침해적 경우가 만연했던 동서독 국경에서 자행된 또는 시도된 살인행위, 정치적 이유에서의 부당한 판결, 수형자 집행과정에서 자행된 가혹행위, 동독에서 강제납치(Verschleppung)와 정치적 박해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앙기록보존소는 통일이후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⁶

첫째, 동독지역에서 부활하게 된 5개주의 사법체제를 다시 구축함에 있어서 과거의 전력이나 행적여부에 따라 재임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판·검사들의 선발기준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동독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복권 또는 피해보상을 받거나, 부당한 법원판결을 재심하는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셋째, 정치적 폭력행위에 관여하였던 혐의자들에 대한 형사소추상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나. 살인행위

중앙기록보존소는 1963년 임무의 확장과 함께 동독공산체제의 정책집행을 위하

⁶ 김규현, “독일의 ERFASSUNGSSTELLE,” 『법조』, 제40권 제3호 (1991.3), pp. 189~191.

여 정치적 이유로 법적인 절차 없이 자행된 인권유린적 살인·신체상해 및 자유박탈의 경우를 수집·기록하였고,⁷ 1968년 이 임무영역에 이주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또는 공산체제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살인 또는 살인기도행위를 포함시켰다.⁸

특히 동서독 국경에서 국경수비대에 의한 살인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그 행위의 문서화·보존은 중앙기록보존소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업무의 하나였다.

국경수비대의 사실행위가 벌어지는 이유로, 실제로 통독이전에 동서독 국경에서는 수많은 동독 시민들이 동독탈주과정에서 국경수비대에 의하여 총기와 지뢰에 의해서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이러한 탈주자를 사살하는 행위는 동독 정권차원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이었다. 그런 만큼 국경경비대의 총기사용은 항상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탈주자를 사살한 초병에 대한 형사소추는 통일될 때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탈주를 저지한 초병은 오히려 표창을 받거나 상금을 받기까지 하였다.⁹

한편 국경수비대의 사실행위에 대한 법적 정당화 근거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동독형법은 군인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제9장에서 언급하였다. 제9장에서 규정되고 있는 개별조항을 살펴보면 동독형법 제257조에서는 명령불복종과 명령불이행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동법 제258조에서는 명령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 면책을 원칙으로 하였다.¹⁰ 그리고 동독형법 제262조에 의하면 국경안전에 관한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였는데, 특히 제262조 1항에 의하면 국경경비대원이 국경안전에 대한 복무규정 또는 다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집행유예부 유죄판결이나 구금형에 처해졌다.

국경수비대의 사실행위가 인권침해행위임에 대한 근거로, 차후 판례의 확고한 입

⁷ Sauer ·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p. 26.

⁸ *Ibid.*, p. 28.

⁹ 김성천, “통일전 동독의 범죄행위에 대한 통일이후의 형사법적 처리,” 『법정논총』, 제33권 통권 제47집 (1998.2), p. 54.

¹⁰ 제258조 (명령에 의한 행위) ① 명령의 수행이 승인된 국제법 규범 또는 형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군인은 상급자의 명령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② 승인된 국제법 규범이나 형법이 하급자의 명령수행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명령을 하달한 상급자도 형사책임을 진다.
③ 명령수행이 승인된 국제법 규범이나 형법에 위배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장에서처럼 초실정법 또는 국제적 인권협약에서 도출되는 정의의 기본원칙과 인강성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동독법에 의한 정당화는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¹¹ 이는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해준 주요한 사안이 되었다.

동독정부는 1973년 11월 8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정(Internationalen Pakt über bü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국제인권협정)을 비준하였고 1974년 2월 26일 법률공보에 공포하였다.¹² 특히 국제인권협정 제6조에 의하면 “어느 누구의 생명도 자의로(Willkuerlich) 침해될 수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을 근거했을 때 국경수비대의 총기사용을 정당화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안의 경우는 총기사용을 의무로 하고 있는 동독정권담당자의 비밀총기사용지침(geheime Schußwaffengebrauchsbestimmungen)은 이미 상당성의 원칙(Grundsatz der Verhältnißmäßigkeit) 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비밀총기사용지침에 따른 국경수비대의 사격행위는 동독정부가 인정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한 모든 경우를 소추가능한 범법행위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는 것을 정당하게 한다.¹³

다. 정치적 부당한 판결

중앙기록보존소는 1963년에 기록·보존할 범법행위로서 정치적 이유에서 인격존중과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반하게 적법하지 않게 과도한 형을 선고한 판결만을 포함시켰다.¹⁴ 그러나 1968년부터는 정치적 동기에서 말미암아, 기본적인 인격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 할 정도로 형이 과도한 불법판결 역시도 기록·보존하였다.¹⁵

중앙기록보존소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판결에 있어서 과도한 형벌선고에 그 불법

¹¹ 법무부, 『독일통일 10년의 법적고찰』, 법무자료, 제234집 (2000), pp. 68~69.

¹² 국제인권협정은 연방법원에 의하여 어떤 경우에 한 국가가 인류공통의 법적 확신에 비추어 볼 때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지목되었다. 그 결과 국제인권협정은 국경수비대의 사살행위에 대한 법적 재검토에 있어서 동독국경법과 동독 실무상의 위법성조각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국제인권협정은 구 동독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던 법규범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위한 기준으로서 더욱 적합하다고 하겠다. 김성천, “행위시범주의의 원칙과 예외-동독 국경경비대 발포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법조』 (1995.7), pp. 92~93.

¹³ Sauer ·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p. 84.

¹⁴ *Ibid.*, p. 26.

¹⁵ *Ibid.*, p. 28.

성을 의심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검토되는 것은 재판에 있어서 판사의 독립성 문제에 따른 판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었다. 형식상 동독헌법 제86조에 의하면 정의, 평등, 동지에 그리고 인간적 삶의 정신의 실현은 동독헌법의 기본정신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동독헌법 제96조에서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사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키기란 쉽지 않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동독헌법은 판사에게 제한되지 않는 제도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즉 동독헌법 제94조에 의하면 판사는 국민과 사회주의 국가에 충실해야만 했고, 아울러 높은 정도의 학식과 삶의 경험 그리고 인간적 성숙도와 도덕적 엄격함을 가져야만 했다.¹⁶ 여기서 동독헌법 제95조에 의하면 판사는 선출되었어나, 이러한 판사의 의무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시와 마찬가지로 해임사유가 되었다.¹⁷

그리고 동독헌법은 특정한 사안의 판결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가평의회에서 결정하였다. 즉 동독헌법 제74조에 의하면 국가평의회는 인민회의의 위임에 따라 최고재판소와 검찰청의 행위의 합헌성과 적법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였다. 그리고 동독헌법 제93조에 의하면 단일한 법적용이 모든 법정에게 가능하게끔 하는 것을 동독의 최고재판소의 의무로 하였고, 제88조에 명시되었던 해명무제도가 규정되었다. 그리고 그 책임기관을 인민회의 내지 국가평의회로 하였다.

동독의 재판관의 물적 독립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동독의 1400명의 직업 재판관의 인적 독립성 역시 보장되지 않았다.¹⁸

판사, 검사 그리고 선출된 변호사는 공공사용을 위하여 특정된, 즉 비밀유지가 필요한 동독 최고재판소의 정보를 단지 사회주의적 권리측면에서만 해석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정보는 두 달마다 출간되었고 모든 견본에는 예를 들어 ‘문서 14와 15’와 같은 특정한 보관번호가 붙어졌다.

동독 재판관의 독립성의 약화에 해임가능성외에 이중적인 급료지불형태도 한 몫을 하였다. 판사에게 매달 기본급료가 1975년에 1000에서 1200마르크(Mark)이었고 1989년에는 1300에서 1600마르크 사이에서 지불되었다. 더불어 그들에게 당과 국가의 시책에 올바르게 따랐는지에 대한 성과급이 보장되었다. 판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성과급은 1989년에 한달에 40에서 50마르크에 달했다.¹⁹

¹⁶ *Ibid.*, p. 111.

¹⁷ *Ibid.*, p. 111.

¹⁸ *Ibid.*, p. 112.

다음으로 중앙기록보존소에 기록된 정치적으로 부당한 판결의 범위를 살펴보면, 중앙기록보존소는 매년, 매일 직면하고 있는 이념이 문제가 되는 판결 중에서 정의와 불일치가 지나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상당성의 원칙에도 반하게 중한 처벌을 결정을 하는 부당한 판결로서 무효인 판결로 제한하였다. 중앙기록보존소에 기록된 정치적 부당한 판결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 정치적 판결로서, 주로 동서독간의 석방거래(Freigekauft werden)의 대상이 되었던 정치범²⁰에 의하여 관련 진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석방대상은 주로 반체제운동을 하거나 동독을 불법으로 탈출하려다가 투옥된 사람 등 분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치적 피박해자들에 국한하였으며, 그 관련자들은 형사처벌대상자였으므로 명단은 동독의 변호사난 검찰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입수될 수가 있었는데 1989년 11월의 베를린장벽의 붕괴 이전까지 연 33000건에 달하였다.²¹

한편 구류처분으로 끝난 정치적 부당한 판결은 대다수가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록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²² 약 200000건의 동독정권의 정치적 판결이 중앙기록보존소에 기록되지는 않았다.²³

1990년 6월 30일까지 중앙기록보존소에 기록된 정치적 부당한 판결은 30752건이었다. 하지만 이 건수는 중앙기록보존소가 여러 사람에게 대한, 예를 들어 부부, 친인척 또는 대모단체에 대한 판결을 하나의 사건기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수이다. 만약 단순히 하나의 형사사범의 사건을 하나의 건수로 계산하지 않고 부당한 판결의 숫자로 계산했다면, 실질적인 부당한 판결의 숫자는 기록된 수의 3분의 1 정도가 더 많을 것이었다.

라. 가혹행위

중앙기록보존소는 1963년에 이리러 소련점령지역의 정치적 억압체제에서의 가혹행위가 수사과정에서 자행되거나 또는 형사사법절차를 빙자하여 자행되고 그리고 수형자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자행되는 것을 수집·기록하였다.²⁴ 그 후 1968년

¹⁹ *Ibid.*, 112.

²⁰ 이들은 서독정부에서 비밀거래를 통하여 대가 지불하고 신병을 인수받은 정치적 수감자이다. 김규현, “독일의 ERFASSUNGSSTELLE,” p. 181.

²¹ 위의 글, p. 181.

²² Sauer ·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p. 113.

²³ *Ibid.*, p. 114.

에 중앙기록보존소 의미의 가혹행위를 ‘수사과정에서(im Ermittlungsverfahren)’ 자행되는 가혹행위에서 ‘수사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während des Laufs von Ermittlungsverfahren)’ 자행되는 가혹행위로 그 개념을 확장시켰다.²⁵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중앙기록보존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었다.

하나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에 따른 인권침해이었다. 동독정부는 정치범 역시 하나의 범법자로 평가하였고, 그래서 형집행시 일반범법자와 정치범을 구분하지 않았다. 중앙기록보존소의 통계에 따르면 1961년이래로 동독 정부의 폭력정권의 상징처럼 된 신체상해가 625건 있었다. 게다가 어떠한 정치적 동기와 상관없이 정치범에 2000건의 가혹행위가 자행된 것이 기록되었다. 기록은 모든 형집행기관에 관련사실사항을 기록한 서류철이 비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혹행위는 비치된 서류철에 이 기록되었다. 이때 (가혹)행위자로 고려된 사람은 인명카드에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었다. 가혹행위의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해서 동독감옥 내에서 매일같이 자행된 교도관의 수형인에 대한 구타가 정당화될 지는 의문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기록보존소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졌을 가혹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는 아니지만 무형의 가혹행위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민감한 관심을 두었다. 정치범의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적 가혹행위로서, 경찰에 또는 형집행시에 감금(유치) 상태에서 무법적인 무방비상태에 놓여져 있고, 전혀 법적 수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종종 하루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독방에 수용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서서 잠을 자게 한다거나 불을 끄지 못하게 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비인간적인 조건과 전횡상태에 있는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 학대를 당하는 것이다.

마. 정치적 무고

중앙기록보존소는 형법 제220조 a의 민족모살(Völkermord), 제234조 a의 납치(verschleppung), 형법 제241조 a의 정치적 무고(politische Verdächtigung)의 범

²⁴ *Ibid.*, p. 26.

²⁵ *Ibid.*, p. 28

죄행위 혐의가 있는 행위를 1968년부터 기록·보존하였다.

굳이 말한다면 중앙기록보존소는 그 존재성격을 두고 동서독 내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특수한 형태의 첩보기관이 아닐뿐더러 조사기관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독안전부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지도 기록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구는 무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기록보존소 정치적 무고사안에 대한 기록은 기관자신의 필요적 임무라고 보았고, 실제로 행하였다.²⁶

그 이유로 동독정부의 동독주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재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이었다. 동독정부의 주민감시체제를 살펴보면, 동독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중의 하나가 체제에 불만을 가진 동독주민에 대한 감시시설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독의 국가안전부는 동독체제에 불만을 가질만한 공무원, 기업종사자, 대학과 학교에 있는 사람, 운동선수들에서 소정원소유자까지 감시하기 위하여 10,500명을 고용하였다.

감시방법으로 서신을 조사하고 전화를 도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감시하고 탈주계획을 적발하기 위하여 기관을 창설하였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밀리 활동하고 어떠한 민주적인 통제도 받지 않았던 동독의 국가안전부(MFS)였다. 동독의 국가안전부는 40년간 존속해 오면서 9만여명의 정규직원과 방대한 조직을 가진 기관으로 발전하였다.²⁷ 그리고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보조종사자를 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정보제공자 및 자발적으로 자신들에게 동조하였던 밀고자를 포섭해나갔는데, 그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였다.

감시체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검토하면, 유감스럽게도 시민에 대한 시민의 고발은 정치적으로도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동독형법 제225조는 법적의무를 부과하였다.²⁸ 그런데 동독형법 제225조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확장된 해석

²⁶ *Ibid.*, p. 205.

²⁷ 김성천, “통일전 동독의 범죄행위에 대한 통일이후의 형사법적 처리,” p. 57.

²⁸ 형법 제225조<고발의 부작위>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계획, 준비 및 실행에 관하여 그 행위의 종료 이전에 이를 인지한 자가 이를 지체없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또는 공개비판에 처한다.

1. 평화와 인간성에 대한 중죄(제85조 내지 제89조, 제19조 내지 제93조)
2.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한 중죄(제96조 내지 제105조, 제106조 2항,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3. 생명에 대한 중죄(제112조, 제113조)
4. 공공안전과 국가질서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8조, 제213조 2항 1호 내지 4호)
5. 무기 또는 폭약의 오용에 의한 중죄 또는 경죄(제106조, 제207조)

을 예상했을 경우, 사실상 그런 범죄행위의 계획을 들은 사람 역시 통지의무를 가졌다. 그리고 통지의무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었다. 따라서 가족, 가까운 친인척 역시 마찬가지로 통지의무를 가졌다. 이러한 상황은 나치시대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는 가족간에 친구사이에 인간적인 유대가 깨지고 사상의 자유의 황폐화에 이르게 하는 가혹행위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여기서 파생되는 무고는 수많은 동독주민을 비참한 구금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유를 빼앗았고 심지어 일부에게는 자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중앙기록보존소 의미의 정치적 무고를 정리하면, 연방형법 제241조 a에 의하면²⁹ 고의적 밀고는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유발된 구속을 가져오는 경우에 특히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기록보존소에 기록된 약 3000개의 정치적 무고사안은 연방형법 제241조의 구성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한 경우로 무고로 구속 상태에 이른 경우이다.³⁰

중앙기록보존소에 기록된 정치적 무고사안은 세밀한 조사를 통한 완벽한 증거와 함께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정치적 무고의 기록은 밀고의 희생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건 한건의 증명은 아주 어렵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록된 정치적 무고의 수는 정확한 통계치수를 위하여 기록보존소의 종사자가 국가안전부의 불법행위를 세밀히 조사하여 완벽한 증거를 통한 기록을 하려는 결과이다.

6. 탈영의 중죄 또는 경죄(제254조)

- (2) 또 무기은닉처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은 자가 이를 지체없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 (3) 특히 중한 사안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4) 이러한 고발은 공안기구인 독일민주공화국 검찰의 사무소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²⁹ 연방형법 제241조 a <정치적 박해를 위한 제보>

- (1) 타인에 대한 고발이나 제보를 통하여, 그 타인이 정치적 박해를 받음으로써 법치국가 원칙에 반하는 폭력적 또는 자의적 처분에 의하여 신체나 생명에 대한 손해를 입거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직업적 또는 경제적 지위를 현저히 침해당할 위험에 처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2) 타인에 관한 사실을 통지 또는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한 정치적 박해의 위험에 처하게 한자도 전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3) 미수범은 처벌한다.
- (4) 타인에 관한 고발, 제보 또는 통지의 과정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그 행위가 제1항에서 기술한 결과를 야기할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기타 특히 중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상 10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³⁰ Sauer ·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p. 206.

3. 업무방식

중앙기록보존소는 인권침해의 발견과 그 자료화 그리고 보존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였다.

설립당시 중앙기록보존소는 소장과 2명의 업무담당직원으로 조직되었다. 하지만 1962년 말 생소한 업무에 대한 익숙하지 못함과 예상치 못한 업무의 과다는 인원보충이 필수적이게 하였다. 그래서 중앙기록보존소의 근무직원은 7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중앙기록보존소의 임무의 심각함에 비하여 근무직원수가 7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중앙기록보존소는 형사소송법상 의미의 검찰청은 아니어서 독자적인 조사권한이 없는 한편, 각주의 검찰들을 광범위하게 지도할 수 있어, 근무직원의 업무는 주로 자료의 기록과 보존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³¹

증거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발견과 그의 자료화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필요하다면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증거자료의 수집가능성과 신빙성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하면서 약화되었기 때문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접하자마자 즉각적인 기록의 확보는 무엇보다 필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³²

증거자료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서독으로 탈주한 동독주민의 증언에 의지하였으나, 동서독국경선에서 일어난 피난민의 추적사안 경우는 서독인의 진술도 기록하였다. 또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사건장소의 확보 등을 위해서는 사진촬영도 하였다.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대개 중앙기록보존소의 위임에 따른 주수사경찰의 신문과정에서 동독 정치적 수감자의 입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었다. 증거자료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획득되었다.

첫째, 연방국경수비대의 상황보고서(Lagerberichte des Bundesgrenzschutzes)를 통해서도 동서독국경지대에서 발생함으로써 초소근무자들에 의해 인지된 동독탈주자에 대한 동독국경수비대의 사살행위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둘째, 언론의 보고를 통해서, 즉 1973년부터 서독의 언론인은 동독 내에서 상주하며 특파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주특파원이나 그 외에 동독 내에서

³¹ *Ibid.*, p. 180.

³² Sauer ·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p. 26.

활동한 언론인들을 통해서 인권침해사례의 수집이 가능했고,³³

셋째, 피해자나 증인에 의한 개인적 진술, 즉 중앙기록보존소를 방문한 동독주민에게서 직접적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서독에 거주한 피해자의 친지나 친척 등을 통하여 동독 내에서 자행된 인권침해행위를 우회적으로 수집하였으며,

넷째, 주 또는 연방기관에의 조회 또는 연방기관의 통지를 함으로써, 즉 내독간 형사사법 및 기관공조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innerdeutsche Rechts und Amtshilfe in Strafsachen, RHG) 제15조에 따른 동독탈주자의 동독 법률에 따른 형 집행의 불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적 신청과 심리철차를 위한 관련 자료를 중앙기록보존소에 조회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 중앙기록보존소가 주 최고검찰청과 관할행정청에의 동독 내 선고된 불법판결에 대한 사전 조회함을 통하여 수집하였고,

다섯째, 기센의 목록(Gießen Listen)을 통하여, 즉 동독탈주자와 추방자를 위한 기센 중앙긴급수용소(Zentrale Notaufnahmelager für DDR-Flüchtlinge und Übersiedler)에 수용된 동독탈주자와 추방자를 신문과정에서 언급된 인권침해행위를 수집하였고,³⁴

여섯째, 탈출근인의 신문과정에서 증언된 사격명령과 실패한 탈출기도 및 총격사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자료의 기록방식으로는 처음부터 인명카드가 활용되었는바, 인명카드는 사건관련자의 역할에 따라, 예를 들어 형사책임이 있는 자, 증언자 등은 다른 색으로 구분된 카드함에 따로 보관되었다. 설립당시에는 인명카드의 작성에 종이카드가 사용되었고, 1977년부터는 전기를 이용하는 저장방식을 택하였으며, 1990년 초부터는 컴퓨터가 이용되고 있다.³⁵

³³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 p. 164.

³⁴ 신문은 특정한 설문양식에 따라 실시되었는데 그 설문지에 피해자의 설명, 밀고자, 재판참가자, 교도소 등에서의 재판집행에 관여된 사람 등이 기재되어 중앙기록보존소로 넘어가 카드에 기록되었고, 동독에서 함께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은 조사하여 이들의 진술을 서로 비교하여 증인들의 신빙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Sauer ·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pp. 38~39,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 p. 166.

³⁵ Sauer ·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pp. 25~26.

Ⅲ. 중앙기록보존소의 효과

중앙기록보존소의 존재는 동보존소가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탈북자의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모델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권침해해자에게 수동적이나 강력한 인권침해행위의 중지압박수단으로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통일의지의 상징이 되었다.

1. 인권침해해자에 대한 행위중지압박수단

잘쓰기타의 중앙기록보존소는 동독정권의 국가적 범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의 보존을 상징함으로써 단순한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범법행위에 대한 문서보존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통일 당시 연방법무부 장관이었던 킨켈(Kinkel, Klaus)은 “피해자가 있는 곳에는 가해자가 있다. 국가로서의 독일민주공화국은 소멸하지만 사람들은 남아있다. 과거 동독의 불법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로 직간접적으로 과거 동독의 체제불법이 과거청산의 대상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는데,³⁶ 중앙기록보존소의 존재는 이미 통독이전에 사실상 이러한 동독의 정권담당자에게 인권침해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³⁷

실상 동독의 정권담당자는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이 문제가 되면서 이미 동독의 정권담당자들은 동 보존소가 자신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로 느껴졌고, 그들에게 가장 불편한 적대지중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왜냐하면 묻어두기를 원하는 자신들의 인권침해적 불법행위가 중앙기록보존소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동 보존소에 의하여 기록되어 문서화하여 보존되는 경우, 동 행위는 인권침해적 불법적인 처벌행위임을 확인시켜주게 되어 상당한 부담을 가졌다. 따라서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앙기록보존소를 보복주의에 따른 기구로 보았고, 동보존소의 활동을 동독주권침해의 측면에서 동독내부사안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당연히 중앙기록보존소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동시에 중앙기록보존소의 종사자에 대하여 자기를 나름대로 응

³⁶ 법무부, 『독일통일 10년의 법적고찰』, p. 68.

³⁷ 동일한 견해. 윤여상·제성호,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태와 한국의 원용방안: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8집 제1호 (2006.4), p. 301.

징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 한 예로서 1962년에 이미 동독정부의 각료회의 의장은 베를린에 중앙기록보존소의 설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대조치를 취했었다.

1. 동독의 총검사(청)(Generalstaatsanwalt)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즉, 유엔헌장에 기초해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독일전범자 군사재판소의 위상과 판결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동독정부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행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응징을 필요한 전제조건을 만드는 것을 임무로 하는 전담부서를 설립한다.

2. 이 부서는 그들 활동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중앙기록보존소의 존재에 대한 동독정권담당자의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동보존소의 동독주민들을 위한 인권보호적 기능³⁸은 연방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동독정권담당자의 인권침해행위에 직접적 강제적 재제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던 연방정부에게는 동보존소의 존재에서 잠재적 범죄행위자인 동독정권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는 것이³⁹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중앙기록보존소의 존재는 인권침해가해자들로 하여금 폭력을 자제토록 하여,⁴⁰ 동독의 인권침해환경의 심각성을 좀 더 완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⁴¹ 이 때문에 연방정부에게 있어서는 동독정권담당자의 동독주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자행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중앙기록보존소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게 되었다.

2. 강력한 통일여의의 표현

중앙기록보존소가 설치됨으로써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커다란 의미는 연방정부가 분단국가에 대한 현실을 수동적으로 용인하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지와 함께 차후에 ‘반드시’ 있게 될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지를 내적으로는 동독정부와 동독인에게 그리고 외적으로는 다른 (독일이 분단국가로 존재함을 인정하는데 고개를 끄떡이는) 국가에게 천명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한몫을

³⁸ 위의 글, p. 181.

³⁹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 p. 167.

⁴⁰ 윤여상 · 제성호,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의 원용방안: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 운영을 중심으로,” p. 181.

⁴¹ 위의 글, p. 167.

담당함으로써 일조를 하였다는 것이다.⁴²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이 통독이후 동독정부의 인권침해행위에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증거자료를 수집·보관함으로써 독일이 재통일이 될 경우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는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독일의 (재)통일을 전제로 한 목적에서 동보관소가 독일주민의 강력한 통일의지를 밝히는 간접적 징표로 사용되었음을 충분히 고려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독일국민의 통일의지는 독일국민이 분단국가에 안주하게끔 하지 않았다. 때문에 동독정권에 의한 동서독의 분리정책은 인용되지 않았고, 동독정권담당자의 동독주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는 독일국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었다. 이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있었던 마지막 동독의 수상인 드 메지에르 견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통독의 당연성의 하나로 “동독정부는 동독을 독일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독일과는 다른 외국국가임을 강조하였지만, 이 주장은 동독주민에게조차도 (거의)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현실은 통일되기 전에도 독일인사이에서는 비록 나라는 갈라져 있으나 문화적 유산은 하나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강했다”⁴³고 밝혔다. 즉 동독은 독일의 일부이고, 두개의 독일국민은 있을 수 없고, 하나의 독일민족만 존재한다는 것이 독일국민에게 있어서는 참혹한 현실조차도 깨트릴 수 없는 엄연한 대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독일국민의 정서는 그대로 서독의 정치인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의 필연성을 제공하였다.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은 독일국민의 통일의지표현에 대한 정치적·법적 뒷받침으로 이해가능하다. 통일 전 연방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당시의 동독정권의 독일국민인 동독주민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직접적·강제적 방지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서독 형사소송절차와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역적 관할권의 결여 때문에 조사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연방정부가 통일 이전에도 불법월경자에 대한 동독 국경경비대의 사살행위를 반법치국가적·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수집과 기록보

⁴² 참조, 김규현, “독일의 ERFASSUNGSSTELLE,” p. 175; 윤여상·제성호에 의하면 중앙기록보존소의 존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로 인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동독주민의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자유주의체제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로 분단 극복의 당위성 및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윤여상·제성호,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의 원용방안: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p. 229.

⁴³ 박중화·드메지에르, “분단전 재산권 인정, 동독인을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대담>,” 『월간중앙』 (1994.3), p. 336.

존을 위하여 1961년 11월 24일 잘츠기터에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등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왔다는 것에서 잘 알 수가 있다. 또한 통일 이전에도 불법일경자에 대하여 충기를 사용한 바 있는 전 동독 국경경비대원 한케(Hanke)에게 살인미수의 유죄를 선고한 바도 있었다.⁴⁴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기록보존소가 설정한 처벌되어야 할 불법행위의 기준은 통일 후 과거청산의 기준과도 차이를 가지지 아니함으로써 통일독일의 과거청산이 통일 후의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정치적 필요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일 전부터의 법치국가에의 신념과 법치국가원칙에 어긋난 불법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법의식의 발로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⁴⁵

IV.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 설립의 의미

중앙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가 설립될 경우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효과는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에서도 기대가능하다. 따라서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존재에서 탈북자의 인권보호와 개선 더 나아가 보나온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강력한 통일의지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1. 인권침해 대처기관

가. 탈북자의 인권침해 중지압력수단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는 그 명칭에서 알 수가 있듯이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의미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기록·보존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모델인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효과를 검토했을 때, 북한정권담당자의 반인권적 행위를 고발하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수동적 그러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중지압박효과수단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때문에 탈북자 인권침해기록보존소는 참여정부가 대북정책에 “평화변영정

⁴⁴ 법무부, 『독일통일 10년의 법적고찰』, pp. 95~96.

⁴⁵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 pp. 155~156.

책”을 기조로 함으로써 특히 탈북자의 인권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는 입장⁴⁶에서 탈북자의 인권보호라는 당위성 강조에 일조하는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 참여정부에게 탈북자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공론화되면서 세계적인 주목도 받고 있는 만큼 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공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말이다. UN인권위원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대북한인권압력을 강화하면서 2003년, 2004년 및 2005년 등 3년에 걸쳐 ‘북한인권상황결의안’을 채택하였다.⁴⁷ 아울러 2004년 제60차 UN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하여 UN인권위원회와 UN총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였고, 2005년 제61차 UN인권위원회의 결의안에서는 임기를 1년 연장하였다.⁴⁸ 특히 UN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보고관인 위트 문타본 태국 출라롱콘대학 교수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첫 보고서를 작성, 북한 인접국들에 대한 탈북자 보호를 촉구했다.⁴⁹ 미국의 경우는 의회의 청문회, 국무부가 발간하는 ‘연례각국인권보고서’를 통하여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였고, 2004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⁵⁰

그 이유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으로 대변될 수 있는 대북정책을 기조로 하여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참여정부는

⁴⁶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15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에서 인권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참여정부의 탈북자 인권문제해결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중앙일보』, 2006년 9월 13일.

⁴⁷ EU(유럽연합)는 대북한 인권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바, EU는 대북 인권압력을 강화하고 북한당국이 UN인권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UN총회에 북한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2005년 12월 16일 이를 채택하는 데 성공하였다. 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2006』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11~13.

⁴⁸ 위의 책, p. 11.

⁴⁹ 김영신, “탈북자를 통해 본 ‘나락같은’ 북한 인권상황<HRW 2005 인권보고서>,” p. 37; 문타본은 “인권6개안”을 발표하면서, ①북한당국의 인권조약 이행, ②특별보고관이 UN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권고안 수용과 인권개선, ③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④남북한 당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 ⑤대북구호물자의 분배실태에 대한 접근권 보장, ⑥북한당국이 경제개발 계획에 인권적 요소를 포함시킬 것 등을 촉구하였다. 『조선일보』, 2005년 11월 11일.

⁵⁰ 북한인권법에서는 미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 조치를 담고있다. 첫째는 북한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이탈한 북한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 혹은 개인을 지원하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만달러까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할 경우 법률상의 문제를 정비하고 있다. 김수암,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 『21세기 동북아 정세와 북한 인권』, 최의철 박사정년 기념논총 (2006.3), pp. 497~498.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기보다는 다른 대북정책과제와 연관하여 더불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사실 2006년 9월 13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⁵¹ 탈북자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성에 동참해야 한다는(어쨌든) 당위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권 문제를 이유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실하게 국제 사회에서 합의된 보편적 원칙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⁵² 요컨대 이는 노대통령은 분단의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타 국과는 어느 정도 문제해결에서 다각적인 고려와 함께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무엇보다도 인권의 내용과 그 실현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진지한 고민을 담아 각자가 놓인 처지에 따라 그때그때 최선의 해답을 찾아내기를 요구해야 옳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북한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 지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북한문제의 경우도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분단체제 전체에 귀속하는 측면과 이 체제의 작동에 가담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각각의 책임에 해당하는 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같은 견해를 보인다.⁵³ 이러한 인식은 노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그대로 나타난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하나의) 민족, 국가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참여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이미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발효하자 당시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표출되었다. 그에 의하면 “공산국가의 인권문제는 압박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고 전제, 북한과 화해와 접촉을 통한 ‘작은 발걸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북한인권 문제 4원칙을 제시하였는바,

첫째, 인권은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다.

둘째,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른 특수성 인정,

⁵¹ 『중앙일보』, 2006년 9월 13일.

⁵² 『중앙일보』, 2006년 9월 13일.

⁵³ 백낙청, “어디가 중도이며 어째서 변혁인가 남남갈등에서 한반도 선진사회로, 한반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2006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학술회의』 (2006.9), p. 52.

셋째, 평화변영정책을 통한 긴장완화에 따른 북한인권의 점진적·실질적 개선도모, 넷째, 남북관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를 강조하였다.⁵⁴ 이 4원칙은 구체적으로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들어 대북 제재에 나서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작정 이런 흐름에 동참할 수는 없다는 참여정부의 의지 표출과 아울러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만의 특수한 접근법 시도로 이어졌다.⁵⁵ 그 예로서 참여정부는 2004년의 제60차 UN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 채택시(고심한 끝에) 불참하거나 기권하였다가 최근 북핵사태가 야기된 이후 2006년 11월 18일에서야 비로서 찬성표를 던졌다.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하여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딜레마 속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탈북자의 인권침해사례의 경우, 참여정부는 난민 협약 등 국제법적 관점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다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체류 묵인 및 강제송환 중단 등 탈북자에 대한 특별배려와 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에서 그칠 뿐이다.⁵⁶

그런데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 능동적이지 못한 우리정부의 입장에 많은 비난이 따랐다. 이 비난에 무엇보다도 참여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평화변영정책”의 기초 하에 남북관계개선의 기본적 틀 내에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를 고려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 따라 북한의 인권문제에 있어서 명백하고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대처방안을 추진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⁵⁷ 하지만 “평화변영정책”에서 탈북자에 자행되는 반 인권적 사안을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의 한

⁵⁴ 위의 글, p. 57.

⁵⁵ 『중앙일보』, 2006년 9월 13일.

⁵⁶ 백낙청, “어디가 중도이며 어찌서 변혁인가 남남갈등에서 한반도 선진사회로, 한반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p. 39.

⁵⁷ 특히 참여정부의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기권은 대외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당시 김문수 국회의원은 “북한인권문제는 자국민 보호의 문제이며, 통일의 문제이다. 당연히 우리가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 인권개선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정작 동포인 우리는 조용하다. 아니 오히려 북한정권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청와대와 여권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특정국가의 정략적 목적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김문수,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해 북한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자,” pp. 189~191). 그리고 기권표의 행사가 유감스러운 것으로, 타 국민도 아닌 바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된 후 도래할 통일 국가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같은 동족국가인 한국만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김덕홍, “탈북자와 북한 인권문제,” p. 221). 그 외에 조선일보 2006년 10월 4일자에 보면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기권한 것을 이유로 참여정부의 외무부 장관에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기사로 쓰고 있다.

계성은, 그 만큼이나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설립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즉 중앙기록보존소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탈북자 인권침해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수동적이지만 탈북자의 인권침해에 적극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참여정부의 입장에서는 “평화변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수동적이나 적극적인 북한정권의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변영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서도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를 통하여 독일의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침해사안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숨겨지지 않고 기록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공개되거나 공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권침해행위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무척이나 두려운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인권침해행위의 자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다.

나.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기여

흔히 북한인권을 제기하는 경우 협의와 광의의 2가지 개념⁵⁸으로 나누어서 그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 먼저 북한인권을 협의의 개념에서 이해했을 경우에 탈북자의 인권침해가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광의의 개념에서 생각해 볼 때,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파급효과는 북한 내 주민에 대한 북한정권의 다른 형태의 인권유린행위에 게 까지도 경종을 울릴 수가 있는 또 하나의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 내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형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기준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⁵⁹ 실제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

⁵⁸ 김수암은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에서 북한인권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북한인권을 북한 내 주민의 인권을 지칭할 경우에는 협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북한인권을 북한 내 주민의 인권상황을 포함하여 해외 체류 탈북자의 인권,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남북간의 인도주의사안을 포함하는 개념을 광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김수암, 위의 글, pp. 473~474). 하지만 여기서는 논문의 성격상 협의의 개념으로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집중하고, 그 외 탈북자와 상호 연계된 모든 형태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상황을 광의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북한 내 주민의 인권상황,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등의 인권상황은 협의의 개념과 대비되는 광의의 개념에 속한다.

⁵⁹ 위의 글, p. 474.

는 인권침해의 유형은 전 북한 여광무역 사장인 김덕홍씨의 직간접적 경험에 의하면 대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로서 경제생활에서의 인권유린 행위, 정치생활에서의 인권유린, 사상문화 생활에서의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⁶⁰

이에 따라 탈북자의 탈북동기에 있어서 이미 북한 내 주민의 인권문제와 연계를 시키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임무영역에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사안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광의의 개념의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보존소의 주목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만큼 북한정권담당자의 인권침해행위에 압박을 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2. 통일준비 기관

남북을 아우르는 하나의 분단체제가 한반도에 작동하고 있는 현재 통일과정에서 대두되는 남한사회의 문제든 북한사회의 문제든 분단체제를 떠나서 규명할 수 없다.⁶¹ 그런 만큼 탈북자의 인권유린상황이 남북이 분단됨으로서 나타난 우리민족의 고통이라면 탈북자의 인권침해 기록보존소는 남북이 다시금 재통일이 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모델로 고려되고 있는 독일의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효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을 담당하는 기관의 설립 주장하는 분들의 견해에서도 왜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가 통일준비 기관으로 각인될 수가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⁶² 북한인권보존소를 설립하자고 주장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의하면, 북한인권보존소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의 법률과 인도주의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으며 그리고 통일 후에도 반인권적 범죄행위자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북한의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하여는 강한 경고가 될 것이다”⁶³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인권보존소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통일을 대비한 준비 기관임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 제성호교수는 “북한인권개선정책이 통일정책의 중요한 일부이며, 국가는

⁶⁰ 김덕홍, “탈북자와 북한 인권문제,” pp. 205~218에서 요약.

⁶¹ 백낙청, “어디가 중도이며 어찌서 변혁인가 남남갈등에서 한반도를 선진사회로,” p. 52.

⁶² 윤여상·제성호, “서독의 동독 인권 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의 원용방안,” p. 229.

⁶³ 김문수, “탈북자 문제와 북한인권,” p. 191.

남한과 북한사이의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및 인도적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⁶⁴ 통일정책과 북한인권개선정책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가 탈북자 인권개선방안으로서 인식되는 한 당연히 통일의지의 상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V. 결 론

이미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앙기록보존소가 동서독의 분단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가 현재 남북한의 분단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지구상에 우리와 같이 또 하나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던 독일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던 동독주민의 동독탈주에 이어서 분단의 상징인 베르린장벽이 무너지고 난 뒤에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통일독일은 현실로 나타났었던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은 적지 않다. 그 중에서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고 난 후 16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의 비참한 운명은 동독 공산정권시절에 여행의 자유 억압과 가난 때문에 일어난 동독의 게르만 엑스터스와 본질이 같다는데 많은 공감을 가져다준다.⁶⁵ 그런 만큼 독일연방정부가 동서독 분단 이후 재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취하였던 적절한 대처와 방안은 남북의 통일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 본다.

그 중에서 중앙기록보존소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독정권의 범법행위를 수집·기록·보존함으로써 통독 전에는 (단순히) 문서보존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정권담당자의 인권침해행위의 수축에 대한 수동적이지만 적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통일 후에는 범법행위의 형사소추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독일의 통일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관이라는 평가도 내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기록보존소가 동서독의 재결합에서 보여주는 위치를 고려해 볼

⁶⁴ 제성호, “북한 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입법방향,” 『북한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토론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2005.5), p. 23.

⁶⁵ 주섭일, 위의 글, p. 51.

때, 그와 같은 역할을 남북통일과정에서도 해주는 것이 기대가능한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가 있는 중요한 기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로 “평화번영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남북관계개선의 기본적 틀 내에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를 고려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에 있어서 명백하고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대처방안을 추진하기를 자제하고 있는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는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

한국전쟁기 북한에 대한 소련의 문화적 개입: 러시아측 자료를 중심으로*

강 인 구** · 조 한 범***

- | | |
|-----------------|----------------|
| I. 서론 | IV. 소비에트신보의 활동 |
| II. 소련문화원의 활동 | V. 결론 |
| III. 조소문화협회의 활동 | |

Abstract

Cultural Intervention by the Soviet Union toward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Focus on Russian Data

Since withdrawal of troops, Soviet Union's direct intervention through its military command was reduced but its cultural intervention toward North Korea was expanded, which continued during the Korean War. Since the Korea Liberation, Soviet Union's ideology and culture have made great influence over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regime. To that end, the Soviet Union utilized the Culture Center, Chosun-Soviet Union Cultural Association, and the Soviet Shinbo in North Korea, thus exercising diverse cultural influence over the country.

Soviet Union's influence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culture over North Korea continued

despite the Korean War. Even during the Korean War, a variety of projects to spread Soviet Union's culture and propaganda for its ideology done through the Culture Center, Chosun-Soviet Union Cultural Association, as well as the Soviet Shinbo was developed in North Korea. These projects continued and expanded in a prompt manner in line with the North Korean invasion to South Korea.

These mean Soviet Union's dominant influence toward the North through its cultural apparatus, as well as for the purpose of spreading its socialist culture duri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n regime.

Key Words: Chosun-Soviet Union Cultural Association, cultural influence, cultural intervention, culture center, Korean War, Soviet Shinbo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9-BM1021).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한국전쟁기 소련과 스탈린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설과 결부되어 주로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스탈린이 세계전략적 차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반도 내부의 문제를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남침설과 스탈린의 의도를 동시에 설명하는 주장에 해당한다. 또한 북한군은 소련의 지원에 의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쟁을 준비했으며, 훈련받았고 통제를 받았다는 점, 따라서 김일성은 소련의 보호와 은밀한 원조아래 남한을 장악하고, 그 결과로 소련은 한국에 있어서의 안정적 지배권을 확보하려 했다는 주장 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왔다.¹

비밀이 해제되어 수집된 러시아 문서보관소 문서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에 대한 스탈린의 직접적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소련과 스탈린의 역할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49년 스탈린을 수반으로 한 소련 지도부는 한국전쟁의 발발을 허용치 않기 위해 일련의 가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비밀이 해제된 문서보관소 문서들로는 소련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남한공산화를 꾀하려 했다는 식의 논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련은 북한의 통일정책에 조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소련은 북한의 군사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모두는 스탈린의 승낙과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전쟁 발발이후 스탈린은 사태의 경과를 주의깊게 파악했으며, 주요 군사정치적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이후 한국에서의 군사행동 및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조정 기능이 북경으로 이전되었을 때에도, 스탈린이 최종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스탈린은 지속적으로 북한과 중국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하였고, 중요한 결정들을 채택할 때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였으며, 그들의 요청과 제안에 호의적으로 응했다는 사실들이 러시아의 문서보관소 문서들에 나타나 있다.²

미국이나 중국의 대규모 참전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소련의 참전사실도 소련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이 있다. 한국전쟁기 소련 조종사와 고사포병들은 미 공군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러시아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쟁 3년 동안 1,300기가

¹ 라종일 편,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예진, 1991), pp. 72~73.

² 유리 바실예비치 바닌, “역사의 가혹한 교훈-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역사와 현실』 40 (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01), pp. 270~271.

넘는 미국과 그 동맹국 항공기들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소련 항공대도 동일 기간의 전투에서 항공기 335기와 조종사 120명을 잃었다. 한국전쟁 전 기간에 걸쳐 총 299명의 소련 군인이 사망하였다. 소련 항공대와 그 예하 지대들은 비교적 협소한 구역에서 방어적 임무를 수행했다.³

이와 같은 논의들은 소련의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을 논증하는 논의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지금까지 정치군사적 측면 이외의 문화적 측면을 통한 소련의 북한에 대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미미한 실정이다. 소련은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체제를 구축하고, 친소적인 문화적 기반이 북한 내에 자리잡기를 원했다. 따라서 소련은 소련군의 철수상황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문화사업을 북한 내에서 전개했으며, 이는 비밀이 해제된 러시아측 자료에 의해서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소련의 노력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민군의 남한지역 점령상황에서 신속하게 자신들의 문화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할 경우 북한체제형성 초기에 소련은 북한에 대해 지배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구 소련측 자료⁴를 토대로 본 논문은 한국전쟁기 소련외무성 산하기관인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북한내 활동실태와 그 의미 및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소련문화원의 활동

1. 소련문화원의 설립

1946년 1월 27일 소련정부의 결정에 따라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지역내 평양, 함흥, 원산에 소련문화원의 개관을 계획했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소연방외무성 산하의 대외선전기구로서 소련과 관계를 맺고 있던 외국의 '문화협회'나 '친선협회'를 통해 대외 문화교류의 촉진과 소비에트 문화의 선전사업을 수행했다.⁵

³ 위의 책, p. 273.

⁴ 본 논문에서 인용된 구 소련의 자료는 주로 러시아연방국립문서보관소(ГАРФ)와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 소장자료를 활용했다.

소련정부는 북한 내 소련문화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와 아울러 북한 내 소련군사령부로 하여금 역할을 분담하도록 계획하였다.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문화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과 요원편성계획 및 활동에 필요한 선전자료의 준비와 수송을 담당했으며, 북한내 소련군사령부는 문화원 건물의 시설과 장비 등 필요한 물자의 공급 및 근무원 중 문화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요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1946년 말 이미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의해 소련문화원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안과 요원편성계획이 작성되었지만,⁶ 재정문제로 인가되지 않았으나 1947년 7월 21일에 문화원 설립에 관한 예산지출이, 1947년 10월 18일에 요원편성 계획안이 승인되었다.⁷

1947년 여름 소련정부에 의해 문화원 설립을 위한 예산 지출이 책정됨에 따라,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에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실상, 소련문화원의 설립을 위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소련정부의 설립 결정이 있는 이후 1년반 이상 지난 1947년 말에야 시작될 수 있었으며, 1948년 7월 25일 시급한 대로 건물보수작업을 마친 평양 소련문화원이 최초로 개관되었다.⁸ 소련정부는 북한과의 문화교류를 촉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소련문화원을 이데올로기문화센터로써 활용하였다. 개관된 평양 소련문화원에서는 강연회, 보고회, 야회, 영화감상 등의 사업수단을 통하여 소련의 국가와 사회제도,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를 선전하였다.

소련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 내 소재한 소련문화원을 통해 일반주민들에게 소련 문화와 과학발전을 선전하였다. 예를 들어 1949년 8월 말에 개관된 원산문화원에서 진행된 강연프로그램 가운데는 원자에너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1950년 3월초 원산에 소재한 소련문화원장 빼로프에 의해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보고된 1949년도 4/4분기 원산문화원 사업결산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은 당시 강연이 원산교원대학 이태현에 의해 이루어졌고, 강연노트의 제목은 「원자에너지」였다.⁹

소련문화원은 강연회, 보고회 등의 형태로 북한에서 정치교양문화사업을 전개했

⁵ РГАСПИ. Ф.17 оп.128 д.463 л.31.

⁶ ГАРФ. Ф.5283 оп.18 д.209 л.5~10.

⁷ 강인구, “1948년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련의 조소문화교류 활동,” 『한국사연구』 90 (서울: 한국사연구회, 1995), p. 405.

⁸ 위의 책, p. 414.

⁹ ГАРФ. Ф.5283 оп.18 д.229 л.99~117.

다. 평양 소련문화원에서는 소련인의 생활, 그 문화, 정치와 경제 등에 관해 ‘목요일 강연회’를 매주 실시하였다. 1948년 3/4분기에만도 25회에 걸쳐 다양한 강좌가 실시되었는데, 300여명의 북한인테리들이 참석하여 청강하였다.¹⁰ 소련문화원에서는 소련의 정치나 과학에 관한 인식확대를 위한 강의록, 보고서, 자료, 소논문, 사진, 그 밖의 정보자료 등을 조소문화협회에 보급하였다.¹¹ 당시에 소련문화원에서는 특정한 주제와 관련한 기념일을 경축하기 위한 축하야회 등을 보고회와 겸해 실시하였다.

평양 소련문화원은 도시의 기업소나 농촌의 부락 등지에서 설명회를 포함한 영화 상영을 통해 선전사업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소련문화원의 영화상영은 대중문화 선전사업의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실제로 소련문화원의 영화상영은 북한주민들에게 소련의 문화, 과학, 예술 등과 접촉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상영의도가 이데올로기 전파목적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북한주민들의 지적 경향을 자극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특히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련영화수출공사는 영화필름을 상업적으로 임대하기 전에, 문화원에 제공하여 조소문화협회의 간부들에게 무료로 시사회를 가지도록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하였다.

2. 한국전쟁 초기의 소련문화원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북한 내 소련문화원의 활동은 그 이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전시상황 하에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혼돈된 상황적 조건 때문에 소련문화원의 일상적 활동이 영향을 받았으며, 북한 문화활동가들과 소련문화원 간의 연락도 두절상태에 빠졌다. 전시라는 정세변화는 소련문화원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적 조건에 따라 소련문화원도 곧 새로운 활동방향을 설정,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발발이라는 상황적 변화에 따라 소련문화원의 활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전환을 요구받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을 수행하는 북한군에 대한 지원이 주요한 사업목표가 되었으며, 특히 인민군이 장악한 남한지역은 소련문화원으로서의 사업대상지역의 새로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개전초기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한 인민군의 빠른 남하과정과 발 맞추어, 소련문

¹⁰ ГАРФ. Ф.5283 оп.18 д.217 л.2.

¹¹ ГАРФ. Ф.5283 оп.18 д.223 л.55.

회원은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간 남한지역에서도 소련의 노동자 생활, 문화, 과학 등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고 선전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개하고자 노력했다. 전쟁발발 1개월 후인 1950년 7월에 이미 평양의 소련문화원은 남한 각 지방에서의 조소문화협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선전자료들을 조소문화협회측에 제공했다.¹² 남한지역에 대한 문화사업의 참여에 있어 소련문화원의 활동은 이와 같은 물자지원이라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 조소문화협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당시 소련문화원이 수립한 사업계획의 실례를 살펴보면, 소련에 대한 강연과 좌담회자료의 인쇄 발송, “소련-전세계 평화와 안전의 보루”와 “소련인민의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 등 소련선전과 관련된 전시회의 서울 개최, 서적·플래카드·복사물 발송, 당시 소련에 의해 ‘해방지역’으로 인식된 용진지역 등에 대한 약단 파견(11명으로 구성) 등이었다.¹³

1950년 7월 평양소련문화원의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소련문화원은 자체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사업역량의 강화라는 방침과 아울러 조소문화협회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라는 두 가지 사업방침을 견지하고 있었다. 당시 소련문화원 주도로 조소문화협회는 소련에 대한 선전용 플래카드 3만점을 제작하여 남한지역으로 우송하였다. 또한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의 협조하에 소련문화원은 인민군 동원령을 지원하기 위해 몇 편의 군영화를 상영했을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 고취에 관한 좌담회들을 개최했다.¹⁴ 이 외에도 북한에 대한 사상·문화사업 지원을 위한 소련문화원의 활동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소련문화원은 월간지 『조선여성』에 2차대전 당시에 소련여성의 영웅적인 투쟁에 관한 기사를 집중 게재하였다.¹⁵ 물론 이는 북한여성의 동원령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소련문화원은 북한내무성 예술공연단의 전선파견활동에도 관여했으며, 특히 조선인민군 병사와 장교들을 위해 소련군가 활용방법과 연주악보 등을 지원했다.

따라서 한국전쟁에도 불구하고 소련문화원의 활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전쟁직후 소련문화원 건물이 일부 파손된 상황 속에서도 “고리끼의 삶과 업적”, “소련어린이의 휴가”, “소련작가 갤러리” 등 전시회를 통해 이전처럼 문화행사

¹² 당시 제공된 자료들은 “레닌의 삶과 업적”, “스탈린”, “소련최고회의 선거제도”, “고리끼의 삶과 업적” 등의 전시회 자료와 “레닌의 삶과 업적”, “스탈린의 삶과 업적”, “소련포병”, “스탈린헌법-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헌법”, “소련에서 사회주의적 소유”, “조국전쟁과 청년동맹” 등 강연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36).

¹³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37.

¹⁴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38.

¹⁵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39.

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소련문화원의 활동은 “소련문화원의 영향력이 당시 수행된 북한내 문화사업과 대중사업에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자체 활동보고서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⁶

전쟁발발이후 남한에서 인민군 점령지역이 빠르게 확대되자 평양 소련문화원은 남한에서 새로운 활동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또한 모스크바에 소재한 소련방대의 문화교류협회 지도부도 새로운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당시 북한내 소련문화원 활동의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은 현저하게 증대되었고, 전시 상황에서도 인민군 동원령, 정치이데올로기 전파, 순수 문화활동 등 다각적인 역할이 부여되었다. 특히 소련방대의문화교류협회 지도부는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남한지역 즉,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 소련문화원의 건립을 계획하였다. 당시 평양 소련문화원은 남한주민의 반소 인식이 미군정의 선전선동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도시 에 소련문화원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Ⅲ. 조소문화협회의 활동

1. 한국전쟁 이전의 조소문화협회

해방국면에서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사령부의 중요과제 중 하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대중정치사업의 수행이었다. 1945년 9월 한 달만해도 12편의 영화와 8회의 음악회가 개최되었다.¹⁸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으로 인한 상황에서 소련군과 북한주민들 사이 친선·우호관계의 강화는 북한내 정치사업과 대중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조건이었다.

해방직후 평양에서 ‘붉은군대 환영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학자, 교사, 예술가, 법률가, 종교인 등이었다. 이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일반인들의 정서에서 일제의 청산, 새로운 선진문화의 확립, 소련인들 생활의 이해, 북한과 소련의 친선강화 등이었으며, 얼마 뒤 이 위원회는 ‘붉은군대 친선협회’로 명칭을 바꾸었다.¹⁹

¹⁶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40.

¹⁷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41.

¹⁸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на Востоке(극동의 해방사절단) М. 1976, р. 200.

이후 1945년 11월 12일 평양에서 ‘朝蘇文化協會’가 발족되었다. 당시 조소문화협회의 발기총회가 열려 위원 25명, 감사 3명 참여 13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황갑영, 부위원장에 김봉철이 추대되었다. 조소문화협회의 활동목표는 “우리의 문화로부터 일본제국주의 잔재를 일소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문화를 창건하며, 조선문화와 전 세계 각국 특히 소련문화를 연구하여 상호교류함을 일대기치로 표방”하는 것이었다.²⁰

사실상, 북한 내에 소련문화원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활동은 조소문화협회를 통해 수행되었다. 조소문화협회의 기본적인 활동방향은 그 협회 기관지인 ‘조소문화’의 창간사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소련 문화의 수용에 있었다.²¹ 이 같은 소련문화 수용은 1948년에 들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조소문화협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공연단이 구성되어 38선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조소문화협회 문화선전부는 소련문화원과 공동으로 이 문화공연단의 순회공연을 준비, 조직하였다.

조소문화협회는 소련과의 친선강화에도 주력했다. 예를 들어 조소문화협회는 소련군 철수와 관련, 다양한 친선행사를 주관했다.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은 소련병사들을 위한 선물준비, 소련군부대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 야회활동, 소련군과 소련에 관한 주제로 북한주민들과의 좌담회, 소련에 관한 전람회 개최, 소련의 가요 암송 등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1948년 말에 조소문화협회는 소련에 관한 강연회와 좌담회를 60여 차례 개최하였으며, 이 중 16차례의 강연회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의해 발송된 자료를 그대로 번역하여 이용되었다. 이 강연회의 주제는 “스타하노브 운동과 사회주의적 경쟁”, “10월 사회주의 대혁명 31주년”, “소련—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루” 등이었으며, 17,0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참석하여 청강하였다. 라디오방송을 통해서도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자료를 이용한 22회에 걸친 강연회와 좌담회가 방송되었고, 그 주제는 “10월 사회주의 대혁명 31주년”, “스탈린 헌법—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헌법”,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 등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선전뿐만 아니라, 러시아 고전을 보급하기 위한 방송도 있었다.²²

¹⁹ 강인구,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실태 일연구,”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서울: 통일원, 1997), p. 163.

²⁰ 『정로』, 1945. 11. 14.

²¹ 『조소문화』, No. 1 (1946), p. 3.

²² 강인구, “1948년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련의 조소문화교류 활동,” p. 424.

소련 문화원의 개관 이전까지 조소문화협회는 모든 선전활동을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와 협력하여 전개하였다. 소련문화원이 설립된 후에 주로 조소문화협회는 북한내 소련문화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활동을 추진하였다. 당시 소련 연주자의 순회공연, 소련문화원의 영사기들을 이용한 영화상영, 소련문화원 주도 하의 경축기념일 행사사업 등이 진행되었으며, 소련문화원은 직접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조소문화협회는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를 선전하기 위한 대중조직으로써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2. 한국전쟁기의 조소문화협회

전시 상황 하에서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은 변화된 상황에 상응해 재조직될 필요성이 있었다.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정치선동의 확대·강화가 조소문화협회의 주요한 활동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한국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 후방지역에서 대중사업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정치선동의 기본방향은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을 수호하기 위해 소련인민이 보여준 영웅주의, 용맹, 자기희생 등에 대한 본보기를 제시하고 한국인에게 미국을 침략자로 각인, 증오와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애국주의를 고무시키는 것이었다.²³ 1950년 8월중 조소문화협회 활동은 특히 개전이 후 2개월 간의 정세보고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조소문화협회는 강연회나 전시회, 영화상영, 러시아어강습, 조소반 활동 등의 방식을 통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인민군이 점령한 남한지역에서는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연회들이 개최되었다. 강연회의 주된 내용은 소련의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으며, 소련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전내용을 담고 있었다. 강연회의 주제들을 나열해 보면, 소련-세계평화의 전사, 소련문화-세계최고 진보문화, 소련인민의 사회주의문화, 소련 콜호즈농민의 생활과 노동, 소비에트나라의 여성, 소련청소년의 애국주의, 세계대전 이후 소련경제와 문화의 복구와 발전 등에 주목할 수 있다. 당시 이 강연사업은 경기도당위원장 허정숙을 책임자로 추진되었다.²⁴

서울지역에서는 박길룡의 책임하에 소련사회 발전을 남한주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전시회 및 사진컬렉션이 열렸다. 전시회의 주제들은 이전에 북한 각 지방에서 반복적으로 개최되었던 것과 같은 내용들이었다. ‘레닌의 생애와 업적’, ‘스탈린의 생

²³ ГАРФ. ф.5283 оп.18 д.228 л.47.

²⁴ ГАРФ. ф.5283 оп.18 д.228 л.42.

애와 업적’, ‘소련의 건축’, ‘소련의 경제’, ‘소비에트나라의 여성’, ‘소련의 스포츠’, ‘소련 어린이의 휴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전쟁기에 남한주민들에게 소련영화예술의 우월성을 알릴 목적으로 ‘레닌’, ‘레닌과 10월혁명’, ‘봄’, ‘석화’, ‘무지개’ 등이 극장과 이동식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 서울과 지방도시에서는 러시아어강습회가 조직되었고, 우선 관공서 관료와 문화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러시아어학습이 실시되었다. 개전 이후 점령된 남한지역에서 소련문화의 전파를 목적으로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었으며, 서울에는 소련도서를 장서로 하는 도서관의 설립과 소련 사회주의 제도, 문화, 생활 등을 선전하기 위한 라디오방송국의 개국 등도 계획되었다.²⁵

북한문화계 지도자들은 전쟁시 파괴된 제반시설 복구를 위해 소련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물자지원을 요청하였다. 주로 조소문화협회는 남한주민 교양을 위해 소련에서 제공된 선전물자와 기구들을 이용하였다.

조소문화협회 회원들은 스스로를 ‘홍군’이라고 불렀으며, 전쟁과정에서 상당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평안남도 조소문화협회의 경우 지부직원 97명 가운데 13명이 전사했고, 21명이 실종되었다. 1950년 12월말 평양으로 후퇴이후, 조소문화협회는 도·군단위 하부조직을 복구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기존의 협회 직원 60%가 부재한 상태였으며, 1951년 초에 7개 도단위 협회와 98개 시군단위 하위지부가 재조직되었다.²⁶

연합군 폭격과 연합군의 북한지역 점령이 이루어지면서 북한내 조소문화협회 각 지부의 시설물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따라서 조소문화협회의 각 지부 복구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1951년 1월 22일 조소문화협회 중앙상임위원회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각 도·군·읍 단위지부장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전쟁발발이후 6개월 동안에 조소문화협회의 사업에 대해 분석·평가되었다. 또한 하부단위지부의 조직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방안 등도 협의되었으며, 중앙상임위원회가 각 지방으로 실무책임자들을 파견하기로 결정되었다.

1951년 1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각 도의 읍단위지부에서는 열성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기간에 북한내 5개 도지부장과 53개 시·읍지부장 등이 새로이 임명되었다. 예를 들자면, 황해도 경우에 각 단위지부장 19명 가운데 18명이 새롭게 임명되었다.²⁷

²⁵ ГАРФ. ф.5283 оп.18 д.228 л.45~46.

²⁶ ГАРФ. ф.5283 оп.18 д.230 л.53~55.

1951년 3월말경에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7군데와 시·군 87개의 협회지부가 조직을 완료하게 되었다. 그 외 38선에 접경하고 있는 2개 군 단위 지부는 계속되는 전투 때문에 조직을 복구하기 불가능하였다. 각 단위별 하부 조직의 복구가 시도되기는 했지만, 그 회원수를 전쟁 이전과 비교한다면 왜소하기 짝이 없을 지경이었다. 해주지부 경우에 개전 이전에는 12,000명이던 것이 단지 2,075명 정도였고, 원산지부 경우에 28,000명이던 것이 5,000명, 평양지부는 67,000명에 이르던 회원수가 4,368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립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주민들의 반미경향과 아울러 친소성향이 확대되었다.²⁸

조소문화협회 대중사업은 전시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사업방식은 강좌, 좌담회, 전시회, 라디오강좌, 영화 등이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협회측에서는 소련인민의 투쟁, 전쟁 등에서 영웅적인 경험을 선전함으로써 북한인민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려고 하였다. 따라서 강좌 토론의 주제들도 “소련문학과 평화를 위한 투쟁”, “내전시기에 새로운 지도자와 영웅들”, “평화 감시자로서 소련군”, “왜 제2차세계대전에서 소련은 승리하였는가?”, “평화 호위병으로써 소련공군”, “평화 호위병으로써 소련탱크부대” 등이 주종이었다.²⁹ 1951년 개최된 강좌는 총 56,615회, 좌담회 284,508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강좌 또는 좌담회에 연간 동원된 주민 수는 400~500만 명에 달했다. 1952년에도 개최된 강좌 횟수는 96,275회, 좌담회는 248,693회에 달했다.³⁰ 조소문화협회에 의해 개최된 전람회 경우, 1951년 602건에 불과했으나 1952년에는 56,338건으로 급증하였다. 조소문화협회는 소련의 다큐멘터리, 과학 및 예술영화 등을 활용하여 1951년에 총 2,780회, 1952년에 5,457회의 영화상영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한국전쟁기간에 북한에서 약 30여 편의 소련영화가 상영되었다. 당시 북한에서 영화제작의 형편은 시작단계이었지만, 다큐멘터리 “북한”, 예술영화 “남쪽의 빨치산”은 이미 소련에서도 상영된 바 있었다.³¹

1952년 2월초 개최된 조소문화협회 확대간부회의에서 1951년 사업결과보고와 향후과제에 관해 논의되었으며, 특히 이 간부회의에서는 1952년 협회사업 가운데 중공업, 광업, 운수업, 분야에서 협회활동을 강화시키는 과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

²⁷ ГАРФ. ф.5283 оп.18 д.234 л.2.

²⁸ ГАРФ. ф.5283 оп.18 д.234 л.203.

²⁹ ГАРФ. ф.5283 оп.18 д.234 л.4.

³⁰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2.

³¹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2~3.

되었다. 또한 조소문화협회는 소련의 전후복구 성공사례를 북한주민들에게 선전하는 데 주력하였다.³² 이와 같은 점들은 한국전쟁후 복구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조소문화협회의 전람회 개최활동도 한국전쟁중 계속되었다. 조소문화협회 도지부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로부터 지원된 물자를 토대로 정기전람회와 순회전시회 등 29,000여 회를 개최하였다. 조소문화협회 자체의 준비로 개최된 전시회는 15,000여 회에 달했다. 당시 “소련에서 평화건설의 성공”에 관한 사진 4,186장이 이용되었고, “소련에서 운하와 발전소 건설”에 관한 사진전시회가 8회 개최되었다. “모스크바 지하철정거장”에 관한 사진전시회 7회, “소련인민들의 생활”에 관한 포스터 6,780장, 러시아와 소련의 화가들의 복제작품 3,180개 등이 전시되었다. 시·군 단위부에서는 사진전시회 742회를 주최하였으며, 550,360여명이 관람했다. 조소문화협회는 사업전개과정에서 소련의 역사적 기념일 등을 계기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레닌서거 2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지역에서 5,600여 개소 대 소 군중집회를 조직하여 687,380여명이 동원되었다. 또한 소련군 창설 34주년 기념 일에도 북한 내 각 시, 부락, 또는 군부대 등지에서 7,850여 회 걸쳐 집회를 조직하여 760,380여 명을 동원시켰다.³³

조소문화협회는 라디오방송도 선전수단으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조소문화협회 주관으로 1952년 1월~3월 기간중 12회에 걸쳐 라디오좌담회가 방송되었으며, 주제는 “불멸의 지도자 레닌”, “위대한 공산주의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련의 경제문화협정체결 3주년기념” 등이었다.³⁴

조소문화협회는 러시아어 교육강좌와 학습반 조직에도 주력했다. 1952년 1/4분기의 경우 협회주관으로 66개 학습반이 새로이 구성되었으며, 당시 거의 모든 중요 민간업체와 기구에는 러시아어 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있을 정도였다. 당시 조소문화협회를 중심으로 280여 개 러시아어 교육을 위한 강좌와 클럽이 조직되어 있었으며, 1952년 상반기 동안에만 4,300여 명이 러시아어 교육강좌를 수강하였다. 조소문화협회는 러시아어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어 학습교재 10,000권을 간행하였으며, 이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의해서 제공된 것이었다.³⁵ 북한측으로

³² ГАРФ. ф.5283 оп.18 д.235 л.2.

³³ ГАРФ. ф.5283 оп.18 д.235 л.4.

³⁴ ГАРФ. ф.5283 оп.18 д.235 л.3.

³⁵ ГАРФ. ф.5283 оп.18 д.235 л.6.

서도 러시아어 교육은 경제, 과학,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소련의 선진경험을 습득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점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시상황 하에서도 조소문화협회는 기관지의 출간을 중단하지 않았다. 일간지 『조소문화』와 월간지 『조소친선』은 당시 임화가 편집주간으로 있었고, 각각 1만 부씩이 인쇄되었다. 기관지 출간의 주된 목적은 인쇄매체를 통한 조소 양국민간 우호친선의 선전이었고, 당시 선진국인 소련사회의 발전된 문물을 소개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동유럽국가의 선진경험을 전달하는 데 있었다. 조소문화와 조소친선에 게재된 내용물의 90% 이상은 소련의 정기간행물에 이미 실렸던 논문기사들을 번역한 것들이었다.³⁶

1951~1953년 동안에 소련국제서적협회는 북한에 서적 6,483,100권과 정기간행물 147,700질을 제공하였다. 동 기간에 소련 내에서도 40여종의 북한작가들의 작품들이 출간되기도 하였다.³⁷

IV. 소비에트신보의 활동

1. 소비에트신보의 창간과 성격

소비에트신보는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가 북한지역에서의 문화선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949년부터 평양에서 발행한 한국어 신문이었다. 1949년 1월 6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북한지역에서 한국어 신문인 『쏘베트신보』를 발행하도록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49년 2월 2일부터 평양에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에 의해서 1주일에 2회 50,000부의 소비에트신보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³⁸ 당시 소비에트신보 편집장 카두린의 견해는 이 신문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카두린에 의하면, 이 신문은 “한국인들이 북한에서 실행되는 ‘민주개혁’ 과정을 이데올로기적,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소련의 예를 통해 이와 같은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 수준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³⁹ 이는 소련사회주의 선진문화의 북한 내 선전과 북한사회주의 체제형성의

³⁶ ГАРФ. ф.5283 оп.18 д.235 л.7.

³⁷ ГАРФ. ф.5283 оп.18 д.238 л.10.

³⁸ РГАСПИ. ф.17 оп.128 д.699 л.3.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비에트신보 편집국과 인쇄소 직원은 이전에 소련군사령부에 의해 발행된 ‘조선신문’의 편집국과 인쇄소에서 근무하던 소련군 장교나 한국인 인쇄노동자들로 충원되었다.

소비에트신보는 신문의 성격상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을 선전하기 위해 창간되었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도 이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1949년 2월 소비에트신보 기사의 주제별 계획안에 의하면,⁴⁰ 2월 2일자 신문에 게재될 기사 가운데, 사설란에 “진보적인 전 인류의 선봉으로써 소련”, 영광의 소련군 연대기란에 “스탈린그라드 방어전/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 패전 6주년”, M. 페트로브, 우리 달려란에 “천재적인 러시아 화학자, 멘젤레예브”, 주제란에 “이것은 단지 소비에트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몰로도프 연설 삽화, “문화적인 국가로 신장하는데 있었어 소련과 경쟁하기를 원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있다면, 스스로 나서 보시오!”, 편집기사란에 “인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소련의 투쟁” 등이었다.

북한은 소비에트신보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스탈린과 소련의 발전 경험을 접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북한체제형성에 있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소련측의 해답들이었다. 소비에트신보는 소련의 발전, 사회주의 건설 문제, 마르크스-레닌의 이념 등을 선전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한에 ‘인민민주주의 권력’을 세우는데 북한지도부를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2. 한국전쟁기의 소비에트신보

한국전쟁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신문발간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1951년 한 해 동안만 폭격 횟수가 1,096회에 달할 정도였다. 1951년 1월 12일과 2월 22일 폭격 이후에는 평양에 위치한 신문사 건물과 제반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6월 31일 폭격 때는 신문사편집서기가 사망하였다.⁴¹ 따라서 1951년 1월에 신문사는 기존 시설물과 자재 등을 거의 소실한 형편이었으며, 당시 편집국의 사정도 비슷하여, 정규직원 24명 가운데 단지 10명만이 복귀할 수 있었다. 우선 소련대사관은 신문사 책임자로 있던 카두린에게 시급히 신문사 복구를 지시하였

³⁹ ГАРФ. ф.5283 оп.18 д.224 л.113.

⁴⁰ РГАСПИ. ф.17 оп.128 д.699 л.4.

⁴¹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3~4.

고, 인쇄소장 이 비탈리(고려인: 이전에 조소석유회사 근무)와 경리계장 최 페.엘. (고려인: 이전에 평양소련중학교 근무)을 임명하도록 권고하였다. 당시 북한주재 소련대사 라주바에브이(В.Н. Разуваевъиц)는 신문사의 복구와 북한주민을 위한 소련신문으로써 신보의 재간행을 명령하였다.⁴²

북한주재 소련대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평양에 신문사 재건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 복구가 진행중이던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인쇄소시설의 이용이 결정되었다. 당시 소비에트신보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인쇄하던 각 지방도시 인쇄소와 조소문화협회 인쇄소를 통해 발간되었다.

1951년에 소비에트신보사는 노동신문사의 인쇄소 시설을 이용하여 신문 발간을 정상화하였다. 양측 신문사 간에 약정이 체결되었고, 소비에트신보사 측은 1호, 51,800부를 발간하는 데 10,000원을 북한정부에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⁴³ 1951년 1월에 신문사는 신보를 1회 인쇄하였으나, 2월에 4회, 3월중에 5회, 4월부터는 신문사가 거의 정상화를 회복하여 8~9회를 발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때부터 소비에트신보는 정기적으로 인쇄발간될 수 있었다. 8월에는 계획된 부수인 51,800부를 인쇄할 수 있었다. 1951년 한 해 동안에 소비에트신보는 88회 걸쳐서 발간되었으며, 총 부수가 300만 부에 육박하였다.⁴⁴ 이는 소비에트신보가 당시 전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에게 가장 폭넓게 보급된 일간지였던 것을 의미한다.

전시기간에 소비에트신보의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소련인들의 경제 및 정치투쟁에서 레닌-스탈린당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의 선전, 둘째,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자본주의에 비해 소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 소련인민의 성공적인 경험, 소련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 등 여러 분야의 발전, 소련정부의 레닌-스탈린 민족정책 등의 선전, 셋째, 소련의 도시 농촌, 공장 기업, 소호즈, 콜호즈 등지에서 소련인민의 전후복구 성공담의 선전, 넷째, 세계대전 기간에 전선과 후방에서 소련인민의 전승업적의 선전, 다섯째, 북한주민 대상으로 소련 문학, 예술, 음악 등의 대중화 선전, 여섯째, 소련정부의 대외정책과 새로운 세계대전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소련인민의 반대 투쟁의 선전, 일곱째,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 문화생활의 발전과 새로운 민주

⁴²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1~2.

⁴³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52.

⁴⁴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8.

주의 정체의 달성, 그리고 이를 위한 소련의 원조 등에 대한 선전, 여덟째, 소비에트 신보 매호마다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인민의 관심과 소련인민들의 미국-영국 간섭자들에 대한 한국인민의 증오와 투쟁에 대한 동조 지지의 선전 등이 그것이다.⁴⁵

1951년 5월까지 소비에트신보는 북한의 우편기구를 통해 무료로 배포되었다. 소비에트신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부와 신문사 양자 간에 체결된 특별협정에 근거해서 다른 북한내 출판물과 동일하게 체신부 출판국을 통해 배포되었다.⁴⁶ 1951년 8월의 경우 소비에트신보는 51,800부 인쇄되었으며, 평안남도-7,200부, 평안북도-7,170부, 자강도-3,708부, 황해도-7,520부, 강원도-4,500부, 함경남도-6,527부, 함경북도-7,243부, 평양시-7,243부, 조선인민군 정치참모국-900부가 배포되었다.⁴⁷ 이는 당시 소비에트신보가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이 배포되지 못하는 지역까지 배포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소비에트신보사 주최로 평양시와 각 도 군 부락 별로 소비에트신보 독자대회를 정기적으로 열었다.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 이 같은 독자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동 신문사는 각 지방의 사회단체와 당조직, 특히 조소문화협회 지부들의 지원을 받아 독자편지를 통해 북한 전 지역의 독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1951년에 평양시에서 3차례 독자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2월 28일 개최된 평양시 및 근교 소비에트신보 독자대회는 도당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기업체와 사회단체 당조직에서 112명이 참석하였다.⁴⁸ 신보사 편집국으로 보내진 신문에 관한 비평내용은 보통 북한사회에서 소비에트신보의 대중성, 그리고 북한주민들에게 소련인민의 생활을 알리는 데 주요한 매체임을 강조하는 것들이었다. 당시 문화선전부장 허정숙은 자신의 독자편지에서 “소비에트신보는 미국-영국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한 수호투쟁을 전개하는 인민에게 도덕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⁴⁹

소비에트신보사 편집국에서는 그 직원들의 정치이념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시하의 한국 정치상황에 관한 정규적인 정치학습을 실시하였다. 편집국 직원 가운데 14명은 “공산당선언”, “정치경제학비판 서문” 등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자율 학습하였으며, 그 외 직원들은 이론가와 함께 정치경제학, 볼셰비키공산당사, 소

⁴⁵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9~10.

⁴⁶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34.

⁴⁷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35.

⁴⁸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35~36.

⁴⁹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36.

련의 대외정책과 국제관계 등을 학습함으로써 정치이념을 고양시켰다.⁵⁰

당시 북한정부는 중요 언론매체이자 대중지였던 소비에트신보에 대해 나름대로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시도했다. 다음의 인용문은 소비에트신보에 대한 북한정부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쏘베트 신보는 소련의 선진적 사회주의 농업을 소개하는 데 주의를 돌렸다. 그러나 이 농업관계의 대부분의 기사는 기술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전문적을 치우치고 꼴호즈 소개에 있어서는 그의 성과를 표시하는 숫자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실제 농민독자들에게 애독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소련의 문학예술부문에 대하여…쏘베트신보가 북쓰(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 필자 주)의 기관지인 자기의 성격에 비추어 문학예술부문을 비롯한 일반문화관계 기사가 적게 취급되고 있다는 평을 면치 못하고 있다.”⁵¹

당시 북한정부는 소비에트신보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 다음과 같은 개선점들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소련의 선진문화 소개는 특수 신문으로서 자기 성격을 한층 더 살릴 것. 대체로 편집방향에 있어 자기성격을 살려왔다고 볼 수 있으나 때로는 순전한 정치신문으로 편집됨을 볼 수 있으니, 그 실례로 1월 30일부 신문은 1~3면이 레닌서거 27주년 보고로 편집되고 4면에 순전한 시사보도 몇 건이 게재되었을 뿐이다. 다른 실례로서는 10월 7일부 신문은 대일 강화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진술한 소련대표 그로미코의 연설이 신문 4면 전체를 차지하여 정치신문으로서도 볼 수 없는 기형신문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고 자기 성격을 살리기 위하여는 중요한 보고나 연설이라도 정치에 관해 이상 간단히 요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를 취급하지 않아도 좋다고 본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사령부의 보도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2. 선동원들이 손쉽게 담화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의 편집방향을 취할 것. 소련의 평화적 건설기사와 문화관계기사를 단편적인 것보다는 체계가 구비된 특집형식으로 편집하여 수준 낮은 선동원들이 자신의 종합 정리치 않아도 그대로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담화자료가 되도록 기사를 조직함이 요망된다
3. 숫자에 관한 문제. 건설사업기사 사업총결기사와 성과를 자랑하는 기사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숫자의 정확성을 기할 것은 물론 수준의 낮은 독자를 위하여 도표와 그래프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다.⁵²

당시 조소문화협회는 소비에트신보의 활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따라서 협회는 각 단위조직들의 ‘조쏘반’에서 반드시 신문을 구독하도록 지도했으며, 신

⁵⁰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46~47.

⁵¹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119~120.

⁵² “1951년도 발행 쏘베트 신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선전성, 1952 (ГАРФ. ф.5283 оп.18 д.237 л.111~129).

문이 배포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회람시키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당시 협회산하 18,689개의 조쏘반 모두가 소비에트신보를 구독했다. 따라서 소비에트신보는 “오늘 후방에서 싸우는 생산노동자들과 근로농민들에게 광범히 읽히고 있으며, 사무원 인테리겐차들에게도 사업상 넓게 보급되고 있다. 협회각급단체 강사들은 자기들의 강연회 자료를 작성할 때 소비에트신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⁵³

한국전쟁 종전후 북한정부는 소비에트신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소비에트신보는 조선신문 당시로부터 자기사업을 종결 지을 때까지 시종일관하게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하에 조쏘 당국간의 친선을 일층 강화하며 맑스 레닌주의 선전과 선진적인 쏘련의 과학 기술 문화 예술을 풍부히 소개하여주며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쏘련인민들이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각 분야에서 쟁취하고 있는 거대한 성과들과 고귀한 경험과 저명한 창의고안들을 널리 소개 선전하여 줌으로써 우리의 복구 건설사업에 많은 방조를 주었다…특히 소비에트신보는 쏘련 인민들이 사회주의 조국을 국내외의 온갖 적들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휘한 고상한 애국주의 및 영웅주의와 소비에트 사회제도의 우월성과 그 제도하에서 행복을 누르고 있는 쏘련인민들의 생활모습들을 다각도로 소개하여 줌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일층 제고시켰다.”⁵⁴

V. 결론

소련군의 철군이후 소련군사령부를 통한 직접적인 개입이 축소되었던 반면에 문화적 개입은 확대되었으며, 이는 한국전쟁기에도 마찬가지였다. 해방이후 북한체제 형성과정에서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했으며, 소련은 북한 내에서 소련문화원, 조소문화협회, 그리고 소비에트신보 등을 활용, 다양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련의 문화분야를 통한 영향력 행사는 한국전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소련의 북한체제형성에 대한 문화적 개입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를 중심으로 소련문화원과 조소문화협회, 소비에트신보 등을 통해 전개되었다고 할 수

⁵³ 리기영, “소비에트신보에 대한 조소문화협회 각급단체들의 리용정형 보고서,” 1952년 1월 17일(Г АРФ. ф.5283 оп.18 д.237 л.137~146)

⁵⁴ 1954년 8월 19일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13차회의 결정서 “소비에트신보 사업에 대하여.”

있다. 북한에서 소련문화원의 설립이전에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문화 선전활동은 주로 조소문화협회를 통해 전개되었다. 그러나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이후 문화원이 직접 조소문화협회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소련문화원은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의 북한지부로써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소련문화원의 중요한 과제는 소련과 북한 간의 문화교류활동을 촉진, 강화하고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를 선전하기 위한 중앙본부로 위치하는 데 있었다. 소련문화원에서는 소련의 국가체제나 사회제도와 관련한 강연회, 보고회, 좌담회, 야회 등의 정치선전사업이 조직되었고, 영화감상, 사진전람회, 씨름활동, 음악회 등의 대중문화사업이 전개되었다. 또한 소연방대외문화교류협회는 북한의 소련문화원을 통하여 소련대외정책의 선전활동을 강화할 수 있었고, 한반도에서 미국식 제국주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선전기구로써 활용하였던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중, 소련문화원과 조소문화협회, 그리고 소비에트신보는 전시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사업과 이데올로기 선전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북한군의 남한지역 점령상황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활동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점들은 소련이 북한체제의 형성기, 특히 문화기구를 통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자, 동시에 소련 사회주의문화의 북한전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흙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종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소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 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글을 주실 분들에게】

「통일정책연구」는 통일연구원에서 연 2회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는 북한의 실태, 한반도의 주변정세, 통일정책에 관한 논문을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실 글은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보내실 글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통일정책연구」 심사위원의 심사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편집방향과 편집기준에 따라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매수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집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원고는 반드시 본 연구원의 '원고 집필요령'을 참고하여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셔서 연락처와 함께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합니다.

투고하실 분은 먼저 담당자를 통해 투고 응모신청을 해주십시오.

<원고보내실 곳>

(142-076)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편집위원회

Tel: (02) 901-2613(간사)
(02) 901-4300(대표)
Fax: (02) 901-2544
E-mail: iskim@kinu.or.kr
Homepage: http://www.kinu.or.kr

【원고집필 요령】

1.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정도로 한다.
2. 200단어 정도의 영문요약문과 핵심어(key word), 영문제목은 반드시 첨부·제출해야 한다.
3. 본문은 순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이름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옆에 괄호 속에 기재한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별 대소번호는 다음 예에 따른다.

예) II, 2, 나, (2), (나), 2)

5.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쓰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1) **저서:**

김 덕,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p. 100.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 15.

(2) **논문:**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p. 135.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3 (September 1965), pp. 627-40.

(3) **신문:**

The Korea Times, May 18, 1999.
『한겨레신문』, 1999년 5월 18일

(4) **인터넷 자료:**

www.kinu.or.kr/elec_lib/library.html (검색일: 2002. 1. 15)

6. 앞에서 인용한 저서·논문을 재차 인용할 경우

(1) **저서:**

<바로 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
위의 책, p. 102.
Ibid., p. 22.

<바로 위의 각주가 아니며 앞에서 인용한 경우>

김 덕,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p. 102.
Huntington, *op. cit.*, p. 22.

(2) **논문:**

<바로 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
위의 글, p. 137.
Ibid., p. 629.

<바로 위의 각주가 아니며 앞에서 인용한 경우>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p. 137.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p. 635.

(3) **신문:**

위의 신문, 1999년 5월 18일.
Ibid., Dec. 25,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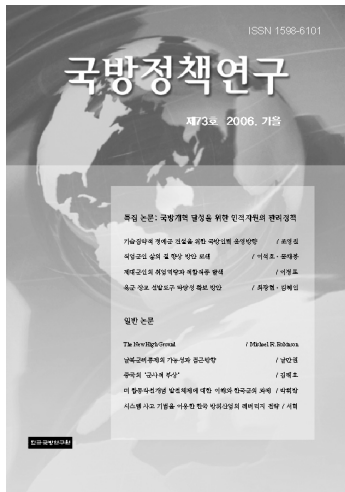
(4) **인터넷 자료:**

위의 인터넷 자료
Ibid.

7. 그림이나 도표의 경우 출처를 기재하며 그 형식은 각주와 같다. 출처와 각주가 반복될 경우에는 재인용의 예에 따른다.
8.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제목 우측 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할 수 있다.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다룬 논문과 연구자료를 수록하는 전문학술지 『국방정책연구』를 계간으로 발간 배포합니다.



통권 제73호

2006년 가을

특집논문 : 국방개혁 달성을 위한 인적자원의 관리정책 / 조영진
기술집약적 정예군 건설을 위한 국방인력 운영방향 / 조영진
직업군인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 / 이석호·문채봉
제대군인의 취업역량과 적합직종 탐색 / 이정표
육군 장교 선발도구 타당성 확보 방안 / 최광현·김혜인

일반 논문

The New High Ground / Michael R. Robinson
남북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접근방향 / 남만권
중국의 “군사적 부상” / 김태호
미 합동작전개념 발전체제에 대한 이해와 한국군의 과제 / 박휘락
시스템 사고 기법을 이용한 한국 방위산업의 레버리지 전략 / 서혁

■ 『국방정책연구』에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

1.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글이어서는 아니 되며, 순수한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 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3.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한글>로 작성하되,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자료의 경우 80매 이내, 서평의 경우 30매 이내로 제한합니다.
4. 기타 내용은 본지 말미 및 본원 홈페이지(www.kida.re.kr)의 기고 및 집필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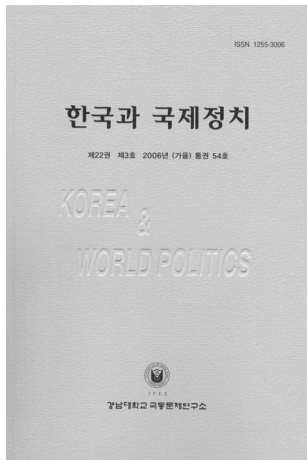
※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 한국국방연구원 출판부 『국방정책연구』 담당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우체국 사서함 250호(우편번호: 130-650)
전화 : 02)961-1227 e-mail : jdps@kida.re.kr 팩스 : 02)961-1195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연 4회 『한국과 국제정치』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입니다.

한국과 국제정치 제 22권 제3호 2006 가을호 (통권 54호)

목 차



-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아세안 정책 / 윤영덕
- 중국의 '한류'수용과 저항: 중국 문화정체성의 국제문화관계학적 함의 / 윤경우
- 북한 미사일 사태와 한반도 평화 / 조 민
- 북한 내각의 경제적 역할과 당정관계 / 김갑식·이무철
- 동아시아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연구 / 김의영
- 동북아 도시의 성장전략과 거버넌스 비교연구:
- 부산·오사카·상하이를 중심으로 / 박재욱·강문희·정해용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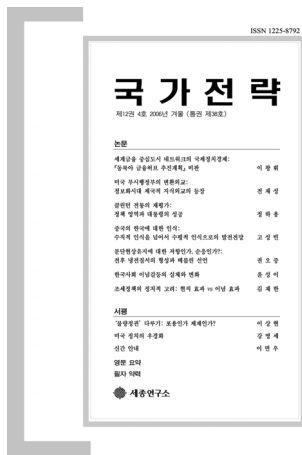
『한국과 국제정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연4회 발간되는 전문학술지로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는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 주변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정책을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이하
- 원고 보내실 곳: (100-23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7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실
전화: 02) 3700-0708 이메일 접수가능: sunyou@kyungnam.ac.kr

『국 가 전 략』

『국가전략』은 세종연구소에서 연 4회 발간하고 있는 정책지향성을 지닌 심사제 학술지로서, 국가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2002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내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국가전략』을 보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제12권 4호 2006년 겨울 (통권 제38호) ▣



【논문】

- 세계금융 중심도시 네트워크의 국제정치경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계획』 비판 / 이왕휘
- 미국 부시행정부의 변화외교: 정보화시대 제국적 지식외교의 등장 / 전재성
- 칼턴턴 전통의 재평가: 정책 영역과 대통령의 성공 / 정하용
-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수직적 인식을 넘어서 수평적 인식로의 발전전망 / 고성빈
- 분단현상유지에 대한 저항인가, 순응인가?: 전후 냉전질서의 형성과 베를린 선언 / 권오중
-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 윤성이
- 조세정책의 정치적 고려: 현직효과 대 이념효과 / 김재한

【서평】

- ‘불량정권’ 다루기: 포용인가 제재인가? / 이상현
- 미국 정치의 우경화 / 강명세

『국가전략』 원고 공모

- ▶ 보내실 글은 시사성과 학술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출판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 보내실 원고는 200자 원고지 내외의 길이로 제출하되, 어떤 경우에도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국가전략』 ‘원고집필 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응모시에는 원고와 200자 내외의 ‘논문 요약문’ 그리고 투고자의 주소, 전화·휴대폰·팩스번호,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750-7611, 031-723-8800(Fax), public@sejong.org (『국가전략』 편집위원회 간사)

KINU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Published biannuall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provides a forum for renowned experts, scholars and policy-makers from South Korea and overseas to share their advanced research, views, and diverse perspectives on unification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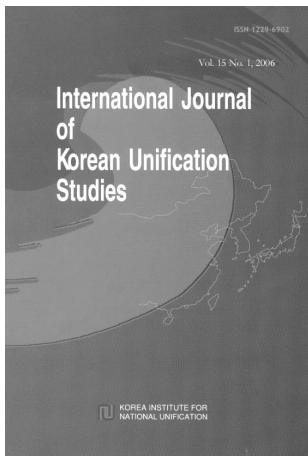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Vol. 15, No. 2, 2006

1. Assessing Engagement: Why America's Incentive Strategy Toward North Korea "Worked" and Could Work Again / *William J. Long*
2. Economic Sanctions by Japan against North Korea: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on Process for FEFTCL (February 2004) and LSMCIPES (June 2004) / *Satoru Miyamoto*
3. North Korea: A 'Dwarf' WMD State / *Ajey Lele*
4. Securing the Periphery: China-North Korea Security Relations / *Srikanth Kondapalli*
5. Economic Contacts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n Far East: 1992-2005 / *Larisa V. Zabrovskaya*
6. The Foundation of the MAC and the NNSC and the First Turbulent Years / *Gabriel Jonsso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welcomes your submission of articles on all unification-relevant issues that offer a new argument or perspective. Articles that you would like to submit should be your own and never published before. We will provide honorariums for the articles that have been chosen for publicatio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 a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35-353 Suyu 6-dong, Kangbuk-gu
Seoul 142-887, Republic of Korea
(Tel) (822) 9012 658 (E-Mail) kimmik@kinu.or.kr

Annual Subscription Rates (Two Issues)
Individual & Institution:
Korea 20,000 Won
Outside Korea US\$20.00 (plus for air-mail)

